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 전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하여 수집한 74개국의 경제정보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OTRA는 현재 발간하고있는 74개국의 경제정보를 국가별로
지정된 주기(분기/반기/연1회)에 따라 UP-DATING하는 한편 발간대상국을
확대하여 귀사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차 례

1.	국가개요	1
2.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경제동향 및 전망	3
3.	한국과의 무역관계	6
4.	한국과의 투자관계	8
5.	수입규제사례/대한 수입규제 현황	9
6.	현지히트상품	12
7.	진출 성공/실패사례	17
8.	주요이슈	23
9.	출입국/비자	26
10.	환전	28
11.	기후	29
12.	공휴일	30
13.	시차/근무시간	31
14.	호텔	32
15.	식당	33
16.	교통/통신	35
17.	유용한 연락처	39

18.	여행시 유의사항	43
19.	관광명소	46
20.	유용한 현지어 표현	51
21.	국토	53
22.	국민	56
23.	역사	60
24.	국가조직	65
25.	정치제도	67
26.	정치사회동향	70
27.	국가원수	77
28.	주요인사	78
29.	행정구역	80
30.	대외관계/한국과의 관계	82
31.	대외 관계	83
32.	국가경쟁력	87
33.	도량형	87
34.	관공서 관행	88
35.	국제공항 및 항구	89
36.	매스미디어	91

37.	주한 주재국기관	94
38.	현지화제 유머속담	95
39.	물가정보/물가정보 - 토론토	96
40.	물가정보/물가정보 - 밴쿠버	97
41.	경제발전사	98
42.	경제정책	100
43.	금융통화제도	102
44.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105
45.	주요산업동향/금융업	108
46.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110
47.	주요산업동향/식품산업	112
48.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116
49.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117
50.	주요산업동향/전자부품산업	121
51.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125
52.	주요산업동향/제약,의료산업	130
53.	주요산업동향/첨단제조업	136
54.	지적재산권	139
55.	소비자보호	141

56.	수입 관리 제도	143
57.	관세 제도	146
58.	통관 절차	147
59.	유통 구조	149
60.	국제입찰 제도	152
61.	외환 관리 제도	158
62.	시장 특성/시장 규모 및 특성	159
63.	상거래 시유의 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163
64.	전반적 투자 여건	167
65.	투자 유치 정책	170
66.	외국인 투자 제한	173
67.	투자 진출 절차	175
68.	지사 및 현지 법인 개설	177
69.	공장 설립	189
70.	산업 단지	190
71.	자유무역지대	201
72.	조세 제도	201
73.	사회간접자본	206
74.	노동 여건	209

75.	사회보장제도	213
76.	현지 생활여건	214
77.	이주정착가이드	217
78.	자녀 교육여건	221
79.	진출기업	225
80.	주요경제지표	235
81.	대외거래지표	236
8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출	236
83.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입	237
84.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입품	237
8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출품	238
8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규모	238
87.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입 상품	239
88.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 상품	240
89.	대외투자진출통계	241
90.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242
91.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243
92.	물가금융지표	244
93.	노동통계	245

94.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245
95.	지방자치구역동향/온타리오주 경제동향	255
96.	지방자치구역동향/BC주 경제동향	258
97.	지방자치구역동향/알버타주 경제동향	260
98.	지방자치구역동향/퀘벡주 경제동향	263
99.	지방자치구역동향/마니토바주 경제동향	266
100.	지방자치구역동향/사스카치완주 경제동향	269

1. 국가개요

1. 일반사항

국명	캐나다 (Canada)
위치	미주대륙 북부
면적	9,984,670 km ² (한반도의 46배, 남한면적의 101배)
기후	- 온대성 대륙성 (중부내륙지방) - 해양성 (태평양 대서양연안) - 한대성 (북극권)
수도	오타와 (Ottawa)
인구	3,208만명 (2005년1월)
주요도시	- Toronto (520만명), Montreal (361만명) - Vancouver (217만명), Ottawa (115만명) - Calgary (104만명), Edmonton (100만) - Quebec City (71만) 등
민족	-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 기타 유럽국가 (15%), 원주민 (2%) - 기타 아시아인,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
언어	공용어 (영어 59% 및 불어 23%), 기타(18%)
종교	카톨릭(44%), 기독교(29%), 그리스정교(1.6%), 유대교(1.1%), 기타(7.8%), 무교(16.5%)
건국(독립)일	1867년 7월 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 취임일 1952.2.6 ○ 총독: Adrienne Clarkson, (수상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취임일 1999.10.7 (5년 임기) - 2005년 9월 까지 임기 연장 ○ 수상: Paul Martin (실권자) - 취임일 2003.12.12 - 2004.12.28 집권 자유당의 총선 승리로 재임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2. 경제지표

GDP	C\$ 1조483억(2004년, 2005.6.29 현재 환율, C\$1=US\$0.8120)
실질경제성장률	2.9% (2004년 성장률, 전년대비)
GDP 1인당	C\$ 32,678 (2004년, 2005.6.29 현재 환율, C\$1=US\$0.8120)
실업률	6.8% (2005.5)
물가상승률	1.6% (2005.5, 전년 동기대비)
화폐단위	Canadian Dollar (C\$)
환율	CS\$ 1 = US\$ 0.120 (2005.6.29 현재)
외채	C\$1,610억 (2004년)
외환보유고	US\$ 350.3억 (2005.6.29 현재)
산업구조	금융(20.0%), 제조업(17.1%), 무역(11.8%), 운송(4.7%), 통신(4.2%), 건설업(5.5%), 광업(3.7%), 농수산업·임업(2.2%) (2005.6 현재)
교역규모	US\$3,160억(캐나다 수출), US\$2,729억(수입), 무역흑자 US\$431억 (2004년)
교역품	수출: 차량 및 부품, 항공기, 천연가스, 석유, 목재
	수입: 차량 및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기전자, 섬유류

(환율: C\$1=US\$0.8120, 2005.6.29 현재)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2005.6.29 현재)

3. 한-캐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 ('66) 낙농차관에 관한 협정 ('67) 소맥원조협정 ('70) 원자력개발응용협력협정 ('76) 이중과세 방지협정 ('81) 세관협력에 관한 상호지원협정 ('86) 양국간 항공서비스협정 ('89) 사회보장협정 ('97) 군사비밀정보교환 및 보호협정 ('99) 통신장비조달협정('99)
교역규모	US\$ 3,383백만(우리나라 수출); US\$ 2,189백만(수입) (2004년)
교역품	차량, 무선통신기기, 철강 (우리나라 수출)
	석탄연료, 목재펄프, 유기화학물 (수입)
투자교류	37건 US\$4천8백만 (우리나라의 캐나다 투자, 2004년)
	44건 US\$ 224백만 (캐나다 투자 국내유치, 2004년)
교민	총 교민 수 약 17~18만 명 (일시 체류자 포함) (2004.10)

(자료원: 캐나다 정부, 캐나다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2005.6.29 현재)

2. 경제동향 및 전망/2005년 경제동향 및 전망

<경제동향 및 전망>

1. 2005년 상반기 경제동향

□ 2005년 경제성장 및 생산성

○ 2005년 1분기 캐나다 경제, 3.3%의 안정적 성장 기록

- 2005년 1분기 경제 총생산은 내수소비 및 기업투자 호조에 힘입어 전기대비 0.6%, 전년 동기대비 3.3%의 만족할만한 성장을 기록
- 내수소비는 가구, 의류, 신발 등 소비재 품목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전기대비 1.5% 성장 달성
- 각종 경제지표 역시 경기호조를 증명
- 2004년 하반기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던 수출도 전기대비 1.5% 증가, 경제성장에 기여

○ 3월 경제는 제자리 걸음

- 3월 경제 총생산은 전월대비 0.1% 감소하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이는 자동차 제조업계가 판매부진으로 생산량을 크게 감축한 것에 기인. 완성차 제조부문 (-5.1%)과 부품업계 (-3.8%) 모두 큰 부진을 나타냄
- 제조업은 21개 분야 중 15개 분야가 부진을 기록, 전월대비 0.9% 감소

○ 소매판매, 최고기록 연이어 경신

- 4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5%,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인 C\$309억을 기록. 소매판매는 2월 이후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소매판매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상승세를 지속 (2004년 4월, 12월 제외)

○ 5월 소비자물가, 안정세로 반전

- 5월의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1%,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하며 그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물가가 5월 들어 안정세로 반전하였음을 시사
- 물가변동 폭이 큰 8개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된 근원소비자물가 (Core CPI)도 전년 동기대비 1.6% 상승

○ 고용시장도 안정세 유지

- 5월 고용시장은 총 9만 개의 신규직업이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000년 12월 이후 최저치인 6.8%를 기록하며 상반기 고용시장의 안정을 증명

□ 금융시장

○ 주 가

- 3월 초 4년만의 최고치인 9,800 포인트 선을 돌파한 주가 (TSX)는 이후 국제유가의 일시적 안정세로 인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5월 중순 이후 상승세로 반전. 6월 말 주가는 9,000 포인트 후반과 10,000 포인트 초반 사이에서 거래 중

○ 이 율 : 6월 말 현재 기준금리 2.50%, 우대금리 4.25% 선 유지

- 2004년 하반기 두 차례의 금리인상이 실시된 이후 추가 금리인상 계획은 모두 무산, 6월 말 현재 기준금리는 2.50%, 우대금리는 4.25% 선을 유지
- 현재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4분기 이전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

○ 환 율 : 2004년 상승을 거듭해온 캐나다화는 2005년 들어 안정세로 진입

- 2004년 12월 말 미화 82센트 선에서 거래되던 캐나다화는 2월 초 80센트 이하로 하락한 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다 6월 말 현재 80센트 선 초반을 유지

주요 국제금융 지표

	2002	2003	2004	2005					
	연말	연말	연말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주가 (TSX)	6,615	8,221	9,247	9,204	9,688	9,612	9,275	9,673	10,141
금리	2.75	2.75	2.50	2.50	2.50	2.50	2.50	2.50	2.50
환율 (US\$/C\$)	0.63	0.77	0.83	0.81	0.81	0.83	0.80	0.80	0.81
환율 (₩/C\$)	751	922	860	830	813	840	793	804	837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2005.6.29 현재)

□ 교역동향

○ 2005년 4월 현재 캐나다 상품수지: US\$131억 흑자 (2005년 1-4월 누계)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최신자료)

- 수출 : US\$1,127억
(주요 수출품목: 원유, 자동차 부품, 트럭, 항공기, 자동차, 목재 알루미늄)
- 수입: US\$996억
(하반기 주요 수입품목: 원유,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트럭)

- 2005년 5월 현재 한국의 對캐나다 상품수지: **U\$3억8천만 흑자 (2005년 1-4월 누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9 현재)

- 수출: U\$11억6천백만
(주요 수출품목: 승용차, 무선전화기, 선박, 타이어, 자동차 부품)
- 수입: U\$7억7천백만
(주요 수입품목: 펄프, 유연탄, 니켈, 알루미늄, 석유화학 합성원료)

캐나다 대외 교역 동향

(단위: U\$백만)

	2003	2004	2004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상품수지	32,594	43,497	4,136	3,379	2,298	3,321
(對한국)	△822	△1,194	△51	△98	△119	△119
수출	271,600	316,452	26,842	26,957	29,764	29,145
(對한국)	1,860	2,189	210	153	239	167
수입	239,006	272,955	22,706	23,578	27,466	25,824
(對한국)	2,682	3,383	261	251	358	286

(자료원: 캐나다통계청 (캐나다통계),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 2005.6.29 현재)

2. 2005년 총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캐나다 경제, 2005년 2.9%의 성장 전망
 - 2004년부터 지속된 내수소비 강화 및 기업투자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 고용시장 안정 등이 종합적으로 하반기 국내경기의 활황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
 - 경제성장의 유일한 변수는 미화대비 캐나다화 평가절상 현상으로 2004년 하반기 이후 시작된 수출약세와 수입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캐나다화 평가절상 현상이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수출은 4분기 이후 다시 성장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
- 내수소비와 기업투자, 경제성장의 원동력
 - 2005년 상반기 건실한 성장기조를 이어나간 내수소비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투자 역시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에 있어 올 한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
- 교역 : 캐나다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대외교역, 경제성장의 변수
 - 2004년 하반기 이후 캐나다화의 평가절상 현상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경제도 2005년 3.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미수출 호조와 교역수지 향상 전망

○ 한-캐 교역: 기존 주력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대폭 증대

- 對캐나다 수출: 내구성 소비재, 기계설비, 건설 기자재 등과 함께 철강제품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연이은 반덤핑조치 해제로 철강수출이 활기를 띠 전망
- 對캐나다 수입: 원자재 수입 중심의 현 추세 지속 전망, 특히 국제적인 원자재 수요증가로 원자재 가격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

○ 대미환율 : 2005년 들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 미화 80센트 선 초반 유지 전망

- 2004년 한해 간 전년대비 7.7% 상승한 캐나다화는 2005년 초반 안정세를 보이며 미화 80 센트 선 초반에서 거래 중
-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러한 환율의 안정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 하반기 추가 금리인상 단행 예정

- 2004년 3분기 이후 기준금리는 2.50% 선에 머물러 있었으나 4분기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Scotiabank, Royal Bank of Canada, 2005.6.29 현재)

3. 한국과의 무역관계

< 한국과의 무역관계 >

1. 교역규모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캐나다의 교역량은 1억불 미만으로 미미했으나 1980-1990년대 이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수출입 증가율을 기록, 상호 40억불 이상의 교역파트너로 발전하였고 2004년 한국의 수출실적은 처음으로 US\$30억을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는 천연자원과 1차 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캐나다와 자동차,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이러한 교역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캐 교역규모 추세]

(단위: US\$백만)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5월
수출	1,731	1,790	2,427	2,036	2,341	2,682	3,383	1,446
수입	1,465	2,604	2,108	1,821	1,846	1,860	2,189	979
수지	265	△814	319	214	495	822	1,194	46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2. 주요 수출입품목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품목은 1980년대까지 의류, 직물, 신발 등 경공업제품 및 컬러TV와

VTR 등 백색가전 제품이 주력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 및 컴퓨터가 수출주력품목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대 중반 들면서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기술집약적 상품이 주력품목으로 등장하는 등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품목이 점차 고도화되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류, 직물, 신발 등의 경공업제품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가격경쟁에서 약세를 기록,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변화 추이]

(단위: US\$백만)

순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1-5월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자동차	531	자동차	1,099	자동차	1,298	자동차	559
2	의류	179	무선통신기기	173	무선통신기기	308	무선통신기기	126
3	무선통신기기	92	컴퓨터	134	선박	133	선박	66
4	컴퓨터	91	의류	111	타이어	80	자동차부품	43
5	철강판	80	고무제품	80	자동차부품	79	타이어	40
총수출 (비중)	2,427 (40%)		2,682 (60%)		3,383 (56%)		1,446 (58%)	

주1: 순위는 2005년 1-5월 수출실적 기준

주2: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이에 비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입은 제지원료, 석탄, 석유화학 등 1차산품 등이 주력 품목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캐나다가 한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주요 교역국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 변화 추이]

(단위: US\$백만)

순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1-5월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1	제지원료	459	제지원료	357	제지원료	390	제지원료	137
2	유선통신기기	263	석탄	174	석탄	271	석탄	120
3	석탄	236	알루미늄	135	니켈	127	사료	86
4	석유화학	172	석유화학	104	석유화학	107	니켈	84
5	축산물	146	유선통신기기	96	알루미늄	103	칼륨비료	41
총수입 (비중)	2,108 (61%)		1,860 (46%)		2,189 (46%)		979 (48%)	

주1: 순위는 2005년 1-5월 수입실적 기준

주2: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4. 한국과의 투자관계

< 한국과의 투자관계 >

1. 캐나다의 해외직접투자동향

캐나다는 해외직접투자액이 세계 전체투자액의 4% 내외로 세계 10대 해외 투자국으로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한 국가이다. 2004년 캐나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C\$4,451억으로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세계시장에서 주요 투자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국은 미국으로 투자액은 1990년대 초에는 C\$450억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C\$1,939억으로 증가,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캐나다 전체 해외투자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어 해외직접투자의 선진국 편중이 심한 편이다.

2. 대한 투자동향

한국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1998년부터 캐나다의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도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여 캐나다의 대한투자액 전체 누계액 중 76%에 해당하는 U\$20억이 동 기간 중 유치되었다. 2005년 3월 말 신고기준 캐나다는 한국에 투자한 국가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캐나다기업들의 투자선호도는 높은 편으로 최근 2~3년간 아시아지역 국가 중 일본과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다음으로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1년 캐나다의 대한투자는 총 26건의 U\$15억을 기록,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한 국가로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그 후 캐나다의 대한투자는 다소 감소하여 2002년에는 U\$2억6천만, 2003년에는 36건의 U\$7천3백만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년의 대한투자액은 U\$2억2천만의 실적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2004년 말 기준 한국은 캐나다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현황]

(단위: U\$백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3월	누계 (1962-2005.3)
대한국 투자액	1,506	261	73	227	3,219

주: 투자액수는 신고기준

(자료원: 한국 산업자원부, 2005.6.28)

3. 대한 투자전망

2003년도에는 SARS 및 광우병 파동 등으로 경기가 다소 위축되었으나 2004년에는 미국 경기 회복 효과 및 현지화 강세에 따라 M&A 등 대한투자가 보다 확대되어 총 대한투자액은 U\$2억2천만을 기록하였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관련 제조업에 관한 대한투자가 2004년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시 캐나다기업들의 투자심리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제1의 투자대상지인 북미시장 이외의 신규 시장에서의 진출을 통한 위험분산의 필요성 증가, 에너지부문 공기업 민영화 사업 등 관심사업의 증가 등은 한국의 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1990년대의 금융위기를 훌륭히 이겨내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전반에 난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의 금리격차로 발생한 캐나다화 강세에 따라 캐나다 기업의 구매력이 증가, 캐나다의 투자활동은 앞으로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산업과 IT 업체들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한 캐나다 관련업체들의 대한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동향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는 1968년 이후 2005년 4월말까지 총 271건 U\$20억6천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동기간 한국의 주요 분야별 대캐나다 투자액은 농림수산업 U\$11억5천만을 비롯하여 제조업 U\$6억6천만, 도·소매업 U\$1억8천만이다.

현재 캐나다에 투자 중인 한국기업은 대부분 철강, 전자, 자동차, 타이어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캐나다의 자원개발 분야, 무역, 유통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 U\$백만)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4월	누계 (1968-2005.4)
대캐나다 투자액	80	9.7	36	49	2,061

주: 투자액수는 신고기준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2005.6.28)

5. 수입규제사례/대한 수입규제 현황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1. 캐나다의 2005년 수입규제 현황

□ 2005년도 수입규제 개요

- 캐나다는 2005년 6월 말 기준 47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
- 단일국가로서는 중국에 가장 많은 규제조치가 적용
- 전체 수입규제 대상 품목의 50%에 이르는 1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 또한 EU 국가들의 철강 (7개 품목)과 식품 (1개 품목), 건축자재 (1개 품목) 등에 대한 수입규제도 강화 추세

- 미국에 가전제품 2개 품목과 식품 2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가 적용
- 한국, 철강 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실행 중

□ 주요 수입규제품목 현황

현재 캐나다가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품목
반덤핑관세 (19개 품목)	자전거 및 프레임, 가정용 식기세척기, 가정용 건조기, 패스너(스테인레스 강철), 탄소강관(2종), 파이프 이음쇠 (탄소강), 후판 (2종), 구조용강관, 철근, 마늘 (2종), 감자, 신발 (3종), 목재 슬레이트, 크산틴산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6개 품목)	패스너 (탄소강), 후판, 열연강판, 스테인레스 강선, 정제당, 바닥재
Undertaking (1개 품목)	담배용 튜브

주: Undertaking- 가격인상약속. 수입규제 조치 대신 수출업체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제품의 수출가격을 자발적으로 인상할 것을 약속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 현재)

- 26개 품목 중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조치가 12건으로 전체 규제대상 품목의 42% 차지

□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 현황

- 캐나다가 수입규제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 34개국, 아시아 8개국, 북미지역 1개국, 중남미지역 3개국, 아프리카 1개국으로 총 47개국에 달하고 있음
 - 그 중 중국은 총 13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를 적용 받고 있어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현재 캐나다가 수입규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국가 및 규제품목 수
아시아 (8개국) (31개 품목)	중국(13), 대만(6), 인도(4),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2), 일본, 베트남(1)
유럽 (34개국) (48개 품목)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3),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핀란드, 불가리아, 체코, 러시아, 루마니아(2),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스웨덴, 영국, 라트비아, 몰도바, 세르비아-몬테그로, 사이프러스, 마세도니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베키아 공화국, 터키
북미, 중남미 (4개국) (9개 품목)	미국 (4), 브라질 (3), 아르헨티나, 멕시코 (1)
아프리카 (1개국) (3개 품목)	남아프리카 공화국 (3)
총계	47개국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 현재)

□ 한국제품 수입규제 현황

- 현재 진행중인 대한 수입규제는 철강 2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음
 - 수입규제 품목: 구조용 강관, 스테인레스 강선

[2005년 한국제품 규제현황]

품목	규제내용	규제현황
구조용 강관 (HSS)	- 03/04/07 덤핑제소 - 03/08/19 덤핑예비판정 - 03/11/17 덤핑최종판정	반덤핑 규제 중
스테인레스 강선	- 03/11/21 덤핑제소 - 04/04/02 덤핑예비판정 - 04/07/30 덤핑최종판정	반덤핑 규제 중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현재)

[규제 품목 HS Code]

품목	HS Code
구조용 강관	7306.30.10.23 7306.30.10.33 7306.30.90.23 7306.30.90.29 7306.30.90.33 7306.50.00.30 7306.60.90.12 7306.60.90.22 7306.60.90.29
스테인레스 강선	7223.00.11.00 7223.00.19.00 7223.00.20.00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 현재)

□ 규제종료 한국제품 현황

[2004-5년 한국제품 규제종료 현황]

품목	규제내용	규제현황
탄소강관	- 82/09/14 덤핑제소 - 83/03/30 덤핑 예비판정 - 84/06/27 덤핑 최종판정 - 90/06/06 재심, 규제연장 - 95/06/05 재심, 규제연장 - 00/06/05 재심, 규제연장 - 05/06/03 재심, 규제 해제	반덤핑 해제
스테인레스 봉강	- 98/12/03 덤핑제소 - 99/02/18 덤핑 예비판정 - 99/06/18 덤핑 최종판정 - 05/01/18 규제 해제	반덤핑 해제
철근	- 99/06/16 덤핑제소 - 99/09/14 덤핑 예비판정 - 00/01/12 덤핑 최종판정 - 05/01/11 규제 해제	반덤핑 해제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현재)

[규제종료 품목 HS Code]

품목	HS Code
탄소강관	7306.30.10.14 7306.30.10.24 7306.30.10.34 7306.30.90.14 7306.30.90.19 7306.30.90.24 7306.30.90.29 7306.30.90.34 7306.30.90.39
스테인레스 봉강	7222.11.00.11 7222.11.00.21 7222.20.10.11 7222.20.10.21 7222.20.90.11 7222.20.90.21 7222.30.00.11 7222.30.00.21
철근	7213.10.00.00 7214.20.00.00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05.6.24 현재)

2. 캐나다의 2005년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전망

-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형성
 - 한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캐나다는 광물, 목재, 농수축산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1차 산업 제품들을 주로 수출
 - 이에 따라 특정 한국제품의 對캐나다 수출급증 시에도 캐나다 국내업계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으로 전망, 별다른 對韓 수입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음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잇따른 규제조치 해제
 - 올 상반기 철강 3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종료되는 등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는 2005년 들어 대폭 완화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산에 대한 별다른 견제는 가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

6. 현지히트상품

<현지 히트 상품>

1. 한국산 타이어

최근 5년 동안 對캐나다 타이어 수출국 중 3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은 2002년부터 연평균 10% 이상의 수출증가세를 기록, 2004년 기준 8천3백만 달러라는 만족할 만한 수출실적을 나타냈으며 2005년에도 타이어 수입시장 확대 및 자동차시장 활황 등에 힘입어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캐나다 타이어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타이어 브랜드로는 미국의 Good Year, Bridgestone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회사들은 자동차 조립공장들이 밀집한 온타리오주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 Big3 자동차 제조업체에 주로 납품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브랜드인 미세린도 온타리오주에 생산공장을 설립한 이후 캐나다에서의 판매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타이어 수입시장은 아직까지 NAFTA 체결에 힘입은 미국이 전체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한국산 타이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 타이어제조업체의 캐나다 현지법인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산 타이어는 캐나다인들에게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한 타이어로 인지되고 있다고 한다. 즉, 예전부터 고품질로 지속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유럽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가격에, 처음부터 저품질 저가격을 앞세운 중국산에 비해서는 30%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가격대비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운전자들이 믿고 고를 수 있는 타이어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2005년에도 만족할만한 판매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다.

다만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바이어들의 저가선호 성향으로 인해 중국산 타이어의 수입이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캐나다 타이어 수입시장에서 부동의 2, 3위를 지키고 있던 한국과 일본의 타이어 수출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이 향후 수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타이어는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성이 최우선시 되는 품목인 만큼 캐나다의 운전자들이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선뜻 중국산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으로의 납품을 통해 소비자들이 한국산 타이어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도 금년 판매시장의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2004년 말부터 캐나다 제1의 대형유통매장인 Canadian Tire에 직접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며 금호타이어 역시 지속적인 판매망 확충을 통해 한국산 타이어의 인지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매하는 타이어 종류 역시 500여 개 이상에 달하고 있어 차종에 구매 받지 않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한국산 타이어의 금년 판매 호조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그 밖에도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신규모델 출시 및 차량교체 시기 도래에 따라 타이어시장의 전반적인 활황이 예상된다는 점도 한국산의 입지강화 및 수출확대에 긍정적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산 전문 미용기기 (전기 머리인두)

2004년 기준 캐나다의 전기머리인두 수입규모는 총 2천9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50% 이상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2001년 이후 연도별 수입실적 역시 매년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수입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의 전기머리인두 수입규모가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우선 최근 건강과 미용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관련시장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내경기의 호황지속 및 캐나다화 강세유지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 등도 수입증가 추세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전기머리인두 수입대상국 중 한국은 2004년 2백8십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 전년대비 600% 이상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론토 인근지역에 위치한 미용기기 유통업체 및 주요 체인점식 미용전문점 문의 결과 한국산은 일반 소매용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사용시에도 잔고장이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한국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캐나다의 전기머리인두 시장은 크게 전문용 제품과 일반 소매용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일반 소매용 제품들은 주로 대형 도매상에 의해 체인형 소매점이나 백화점, 약국 등에 납품되며 제품의 종류 또한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 특히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캐나다의 특성상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수요가 대체로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세라믹 열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컬링 및 스트레이트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모델들도 다수 출시되고 있다.

전문제품의 경우에는 미용기기 전문 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격 역시 일반 소매용에 비해 3-4배 정도 비싼 편이다. 그러나 일반 소매용 제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고 여러 종류의 탈착식 주변기기를 사용, 다양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관련업계 바이어들에 따르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산 전기머리인두의 평균 판매가격은 150 캐나다달러 선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3. 한국산 휴대폰

캐나다의 무선통신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산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2월 3일 발표한 국내 통신산업의 2004년 3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통신시장은 2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7.8%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순수익 역시 6억200만달러로 39.0%의 급격한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유선통신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1.0%의 부진한 매출증가를 기록해 무선통신산업의 성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러한 무선통신시장의 성장은 매년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2004년 9월 말 현재 캐나다 내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2.2% 증가한 14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보급률은 47%로 이는 미국의 보급률인 68%,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의 보급률인 80~100%에 비해 다소 적은 수치이지만 지금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캐나다의 무선통신 보급률 역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무선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는 곧 한국산 통신기기의 수출호조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 수입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휴대전화의 수출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며 캐나다 시장에서 그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현재의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시장을 석권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대전화를 포함한 한국 통신기기의 對캐나다 수출은 지난 1999년 중 4600만달러로 캐나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에 불과했지만 그 후 급격하게 증가, 2003년에는 수출액이 4억6200만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대비 무려 904% 증가한 수치로 시장점유율 역시 37.2%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2004년에도 지속돼 총 수출액은 5억2161만 달러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한국산 휴대전화는 캐나다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한국산 휴대전화를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산 휴대전화의 인지도는 매우 높으며 판매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의 휴대전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각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모델은 삼성이나 LG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산 제품은 부유하다는 징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국내 3대 통신 서비스업체 중 하나인 Telus Mobility에서 현재 판매하거나 출시 예정인 휴대전화 19종 중 한국산 제품은 무려 11종에 달하고 있어 Motorola나 Nokia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상품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시판되고 있는 한국산 휴대전화 중 특히 카메라를 내장한 제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카메라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 외에도 세계적인 통신강국으로써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한국산 홈시어터

캐나다의 홈시어터 시장이 본격적인 활황세에 있어 현지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산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캐나다 내 대형 전자제품 매장 및 백화점 실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홈시어터 판매는 전년대비 약 3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각종 신규모델이 출시될 예정인 금년 역시 홈시어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매장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말부터 시작된 건축 붐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모기지 론을 비롯해 대출 이자율 급락에 따라 30~40대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열기가 달아오르자 밴쿠버와 토론토에서는 콘도미니엄 및 아파트 신축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됐으며, 홈시어터를 비롯한 각종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홈시어터가 판매되고 있다는 점도 홈시어터 판매 급증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15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의 각종 브랜드에서부터 보스(Bose)와 같이 3500달러를 호가하는 최고급 모델까지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소비자들의 홈시어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서는 유선보다는 무선 홈시어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선 유선 홈시어터에 비해 설치가 간편하며, 후면 스피커 연결선이 불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스피커 연결선을 카펫 밑으로 두고자 할 경우, 카펫을 들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전문 설치업체를 부를 경우 대략 150달러가 소요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무선 홈시어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주요 홈시어터 브랜드로는 LG, 삼성, 소니, 파나소닉, JVC, 파이오니어, 샤프, 보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중 무선 홈시어터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는 LG, 삼성, 소니를 들 수 있다. 이들 브랜드들은 음질 면에서 유선 홈시어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격과 디자인 면에서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평가를 얻고 있어 향후 소비자들로부터 더욱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실제로 2003년 'Zenith' 라는 브랜드로 홈시어터 시장에 뛰어든 LG 전자는 2004년에만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에는 레코딩 및 내장형 하드디스크 탑재 등의 기능 강화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삼성전자 역시 무선 홈시어터 판매 호조로 인해 금년에도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자체도 전년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듯 무선 홈시어터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감에 따라 파이오니어, 파나소닉도 금년 내 무선 홈시어터를 출시할 계획에 있어 각 브랜드 별 시장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대형 프로젝션 TV와 빔프로젝터 등이 홈시어터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다가, 금년 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이 늘어남에 따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홈시어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한국산 헤드셋

캐나다의 헤드셋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캐나다 시장진출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캐나다의 헤드셋 총수입은 9600 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약 34%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본다면 금년도 수입은 약 1억 3000 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수입 현황에서는 전체 수입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1,2 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의 수출은 지속 늘어나는 반면 미국의 수출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기본적으로 캐나다는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2004 년도에만 100 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219%의 대폭 성장을 보였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주요수입대상국중 3 위에 올라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선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산 헤드셋은 대부분 OEM 방식으로 주요 메이커들에 납품되고 있어 시장에서 한국산을 직접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주요 수입상들과 현지 전문유통매장 관계자들은 한국산 헤드셋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한국산 전자 제품이 전반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호평받고 있어 한국산 헤드셋에 대한 이기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산과 유럽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나 품질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

향후 캐나다의 헤드셋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우선은 미국으로부터의 콜센터 아웃소싱 증가로서, 예전부터 다수의 미국 회사들은 운영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캐나다에 콜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로서 미국에 비해서는 대체로 콜센터 수요가 높은 편이며, 미국에 비해 콜센터 운영에 있어서 오랫동안 축적된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 역시 캐나다 내에 콜센터 운영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 따라 전체 헤드셋 수입에서 콜센터용 전문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20% 선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들 콜센터가 전체 헤드셋 수입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휴대폰 사용 증가에 따른 헤드셋(핸즈프리) 시장 수요증가로서, 최근 캐나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휴대폰 사용인구는 대략 1400 만이며, 이는 캐나다 전체 인구인 3천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휴대폰의 주 사용자층인 18 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전체 성인인구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93%에 달하고 있어 향후에도 휴대폰 사용 급증에 따른 관련기기 판매 역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운전중 핸드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휴대폰 사용 급증에 따라 언론과 전문잡지에서 핸드폰 전자파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 헤드셋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는 세련된 디자인의 충전용 무선 헤드셋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 주요 수입상과 도매상들에 따르면 디자인과 기능면에 있어서 제품간 차별성이 없었던 유선형 핸드프리는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충전용 무선 헤드셋의 경우, 유선형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참신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이 대거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 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모델은 대부분 Bluetooth(저가 단거리 무선통신규격)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충전용 무선 헤드셋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또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더욱 향상된 품질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서 향후 헤드셋 시장은 무선형 모델의 비중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무선형 헤드셋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는 미국 Plantronics 와 덴마크의 Jabra(GN Netcom 계열사) 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Sennheiser, Bogen, EnGenius, VTech 등의 제품이 주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7. 진출 성공/실패사례

<진출 성공/실패 사례>

성공사례 | 한국산 화장품

□ 개요

2004년 현재 2백만불에 가까운 화장품 수출실적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전체 수입대상국 중 18위를 기록 중에 있으며 전년대비 45%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또한 2005년 2월까지의 수출실적 역시 41만불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115%라는 급증세를 기록 중에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에는 약 4백만불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캐나다 동부지역에서 주로 판매되는 대표적인 한국산 화장품은 아모레의 설화수, 아이오페, 라네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브랜드들은 각기 다른 타겟 연령층을 상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120불에서부터 300불을 호가하는 설화수가 35세 이상의 중년여성들 사이에서의 인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100불 대의 아이오페는 20대 중반 이후의 직장여성들 사이에서, 80불 대의 라네즈는 대학생 및 20대 초반에서 고정 사용자층을 넓혀가고 있다고 한다.

□ 진출 성공 요인

○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

국내 화장품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상승 현상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변화한 데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유럽의 몇몇 유명 브랜드에만 의존하던 예전과 달리 사용자의 체질과 피부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화장품의 경우 한방 및 천연 소재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품질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계 여성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통해 이미 한국산 화장품의 효과가 널리 알려진 상태이며 백인 여성들 사이에서도 특히 설화수가 사용자 층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다.

○ 한국산 화장품 취급매장 지속증가

2, 3년 전부터 한국산 화장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상승에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의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대형 쇼핑몰들도 아모레 매장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최근 광역토론토 지역에 위치한 쇼핑몰 등에서 아모레 화장품 매장이 간이판매점의 형식으로 속속 입주하고 있다. 현재 아모레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의 수는 약 50여 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은 약 80여 군데에 이르고 있어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증가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매장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부는 한류열풍 영향

홍콩,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드라마 및 영화와 한류스타들의 인기도 한국산 화장품의 입지를 넓히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토론토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인 쇼핑몰과 차이나타운의 가전제품 매장에서는 대형 TV 및 자동차 AV시스템에 늘 한국의 인기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으며 DVD판매점에 문의한 결과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CD나 DVD를 구입하려는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아모레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들로부터 브랜드의 전속모델인 이영애의 포스터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전지현, 이나영 등의 포스터도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성공사례 - OEM 자동차 부품

□ 개요

자동차부품은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로 한국은 2004년 총 7천9백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한 자동차 제조업의 영향으로 온타리오주 토론토 인근에는 크고 작은 자동차부품 제조, 유통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부품업체와의 거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현재 한국업체와 크고 작은 규모의 거래를 진행 중인 캐나다 자동차부품업체의 수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중 OEM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한국업체가 최근 현지 Tier 1급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수출성약을 달성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OEM 자동차부품의 경우 작은 부품 1개의 품질결함도 완성차의 안전 및 완성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초상당에서 제조능력 및 경쟁력 확인, 공장실사, 샘플제작과 테스트 등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최종 구매결정에 이르기까지는 통상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업체인 S사는 바이어와 연결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시범오더를 수주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제품 생산라인에 부품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다른 부품의 공급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타 업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진출 성공 요인

○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S사는 2004년 6월 이후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토론토를 방문하였다. S사의 관계자들은 현지 바이어와의 협의과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어김없이 현지로 출장, 바이어에게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 주며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바이어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바이어의 질문과 자료요청에 즉시 회신

S사는 빈번한 현지출장 이외에도 바이어의 제품공급 검토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질문과 자료요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회신하는 자세를 보였다. 14시간이라는 시차에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요청할 경우 한밤중에도 즉각 대응, 바이어에게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바이어로부터 도대체 언제 자면서 일하느냐는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 문제발생 시 적극적인 해결의지 표명

S사는 또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어 바이어의 신용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부품공급 계약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추진되면서 선적일자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제품을 생산, 이미 공급된 부품이 바이어의 생산라인에 투입된 후 불량문제가 발생하였다.

S 사는 불량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문제발생 후 2-3 일 내로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문제원인을 바이어에게 설명하고 바이어가 요구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선별작업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주었다. 비록 수천 만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S 사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바이어로부터 신용을 얻고 장기적인 거래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기여하였다.

성공사례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업체 D사

□ 개요

흔히 자동차부품 하면 디트로이트를 떠올리게 되지만, 캐나다가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전세계 8 위의 자동차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토론토를 포함한 온타리오주가 디트로이트에 못지않은 자동차산업 지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 북미 시장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마저도, 디트로이트 출장길에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토에 들렀다가 현지업체와 상담을 해보고 나서야 자동차부품 시장으로서의 토론토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토론토무역관의 지사화업체는 절반 가량이 자동차부품 산업에 직, 간접으로 연관되는 품목을 생산 중인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무역관의 지사화 활동도 자동차부품 분야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국내 업체를 위한 무역관의 마케팅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 중국 변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타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도 중국제품의 시장 침투력은 실로 막강하여 이미 현지의 많은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중국 부품 아웃소싱을 위해 중국계 직원을 바이어로 채용하는 등 중국 편향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이 실감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산 부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한국부품을 수입 중이던 바이어들도 서서히 중국산 부품으로의 대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추며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꾸준한 바이어 관리라고 생각되어 무역관은 기존 바이어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한국업체를 소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전문화된 마케팅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관 지사화업체의 신규성약을 추가할 수 있었다.

□ 진출 성공 요인

○ 현지 무역관의 지사화사업을 적극 활용

무역관 지사화업체인 D 사는 자동차부품용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및 머시닝 전문업체로 2003 년 토론토를 방문, 시장개척단 상담회를 통해 현지시장의 유망함을 체감한 후 귀국 즉시 무역관에 지사화사업을 신청하였다.

지사화사업 초기, 무역관이 현지 자동차 OEM 부품시장의 관련 바이어 및 수입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지진출의 가장 큰 문제는 D 사의 동종 제품이 이미 다른 국내업체에 의해 캐나다에 많이 납품되고 있는 상태로, 같은 한국업체와의 경쟁 없이는 D 사의 시장진출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이였다.

이에 무역관은 동종 부품을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있는 바이어로부터 공약을 시작해 보았으나, 이들 업체의 경우 대부분 수요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송과정이 간단한 북미 공급업체로부터의 구입을 선호하고 외국과의 거래를 꺼리는 현상이 두드러져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았다.

답보상태이던 무역관의 지사화 활동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사화 2 차년도인 2004 년에, 무역관이 국내업체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던 바이어들에게도 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신을 해 오던 업체로부터 뜻하지 않게 찾아 왔다.

○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 성약 달성

캐나다 G 사의 경우, 이미 한국의 업체들과 동종 여러 제품들에 대해 거래를 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중인 한국업체가 경쟁력(특정 제품에 대해 전문성 결여)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구매가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된다는 소문에 따라 중국으로의 거래선 변경을 계획 중이었다.

일단 중국 쪽에 몇몇 제품에 걸친 구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고 나면 기존에 한국업체가 공급하던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절박한 시점에서, 무역관은 바이어와의 지속적이며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무역관 지사화 업체인 D 사가 해당 제품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경쟁력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 바이어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RFQ 진행 및 공장방문 실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D 사는 드디어 캐나다 G 사로부터 2004 년 말 20 만 불의 소규모 성약을 이뤄낼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5 년부터는 연간 100 만불 이상의 성약을 기대하고 있다. D 사가 북미시장에서 처음으로 성약을 이뤄냈다는 의미 이외에도 자칫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뻔한 물량을 지켜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었다.

성공사례 - 스노우보드용품

□ 개요

2004년 10월 밴쿠버에서 개최된 시장개척단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스노우보드용품 수출업체인 E사가 100만 불의 스노우보드 바인딩 및 부츠 공급계약을 체결, 세계 동계스포츠용품 시장에서의 한국산의 입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유일한 스노우보드용품 제조업체로 그 동안 일본시장 수출에 주력해 온 E사는 스노우보드 최대시장인 북미시장 공약을 위해 시장조사를 위해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였으나, KOTRA 밴쿠버무역관에서 준비한 캐나다 최대 스포츠용품 유통업체인 A사와의 수출상담에서 예상치 못한 대형 주문을 수주, 수년 내에 세계 스노우보드용품 시장에서 시장 주도업체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진출 성공 요인

○ 기존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최상급 모델 제품 납품계약 성사

상담회 도중 3 시간 이상의 마라톤 상담에도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양사는 다음날 상담장소를 A 사로 옮겨 상담을 속개, 6 시간 만에 합의점을 찾아내 스노우보드 바인딩 25,000 개, 스노우보드 부츠 3,000 개 등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어낸 바 있다.

그 동안 스노우보드용품 시장은 캐나다 주력업체들이 자체생산이나 중국의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공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E 사에서 기존제품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스노우보드 부츠의 경우 기존제품의 2 배 가격 수준의 최상급 모델인 B 모델 제품 납품계약을 얻어냄으로써 세계 스노우보드 부츠 패션의 고급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A 사는 스포츠용품업계에서는 북미시장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업체로 일부 모델의 경우 동사와 일본시장을 제외한 전세계시장 독점 판매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 사의 세계적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여 한국산 스노우보드용품이 전세계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서부지역의 밴쿠버와 휘슬러는 2010 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동계올림픽의 경제유발효과가 100 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공사 및 각종 스포츠용품 공급계약, 건축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출업계의 동계올림픽 특수를 겨냥한 적극적인 수주노력이 요망된다.

실패 사례 - 자동차 액세서리

□ 개요

C 사는 국내 중소기업로 자동차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업체임. 제품의 독창성으로 인해 시장개척이 가능한 여건이었으나, 잘못된 마케팅 전략의 실행으로 시장개척이 어렵게 되었다.

□ 진출 실패 요인

○ 에이전트들 간의 경쟁으로 가격 및 납품 조건 악화

C 사의 제품이 개별 소비자들에게만 직접 어필이 가능하다는 점, 기존 유사제품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량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수익타산이 맞는다는 점에 따라, Wal-Mart, Canadian Tire, Costco, Sam's Club 등 대규모 소매체인점을 주 타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이들 대규모 소매체인점과 접촉이 가능하고 C 사의 제품에 관심을 가진 에이전트는 모두 활용하기로 하였다. 일단 관심 있다는 에이전트 모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계약을 따오는 에이전트와 독점계약을 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 공급자측 입장에서는 마케팅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수의 에이전트를 쓰는 방법은 큰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에이전트들이 각각 Wal-Mart, Canadian Tire, Costco, Sam's Club 등의 바이어를 접촉하자, 바이어 측에서는 에이전트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과 납품 조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갔다. 에이전트들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고스란히 공급자측에 그대로 요구되었고 나중에는 원가에 가까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납품 조건도 불량품 발생시 교환, 모든 재고품 반환, 장기외상 지불조건 등 중소기업인 공급업체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을 요구함으로써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 에이전트에 대한 부족한 제품교육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품 소개 시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상 중에 바이어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등 제품과 공급업체에 대한 바이어들의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또한 대형 소매체인점의 바이어들과는 상담미팅은 물론 전화 접촉도 쉽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을 즉석에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기회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함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상담 자체까지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8. 주요이슈

<주요이슈>

[정치, 사회 이슈]

○ 집권 자유당, 스폰서십 스캔들로 이미지 훼손

- 1995년 실시된 퀘벡주 독립 찬반투표 이후 연방정부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1997년부터 ‘스폰서십 프로그램 (Sponsorship Program)’의 운영을 시작. 동 프로그램은 퀘벡주에서 신뢰를 잃은 연방정부의 이미지 쇄신과 각종 홍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 그러나 2002년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캐나다 감사원이 친자유당 성향의 기업들과 연방경찰 및 국영기업들에게 부당한 지원금이 제공되었음을 발견, 2005년 6월 말 현재까지 프로그램 관련 당사자들과 정부 고위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음
- 스폰서십 스캔들은 현 연방정부 수상인 폴 마틴과 집권 자유당 내각을 위기로 몰아 넣었는데 특히 야당인 보수당은 당시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을 지낸 폴 마틴 수상이 이번 스캔들에 깊숙이 연루되어있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결정
- 그러나 보수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은 자유당이 소수 정당인 신민당과의 연합세력 구축을 통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하며 부결됨. 비록 불신임안은

부결되었으나 자유당정부와 폴 마틴 수상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신뢰도 역시 하락

○ 캐나다, 동성결혼 합법화

- 2003년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등 일부 주 법원의 “이성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한 현행 결혼법은 동성커플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의 합법화 문제가 사회적인 주요 이슈로 부상
- 2004년 12월 9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둘러싼 정계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킴
- 폴 마틴 수상이 이끄는 집권 자유당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제1 야당인 보수당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등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범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름
- 교회 및 종교단체, 보수당 등은 동성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2005년 6월 28일 연방 하원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캐나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동성결혼 합법화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법안을 지지하는 자유당이 상원에서도 여당으로 되어 있어 상원의 최종승인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망

○ 캐나다, 2005년 연방정부 예산안 상정

- 캐나다 정부가 2005년 2월 23일 발표한 2005-2006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은 향후 5년간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C\$420억의 대규모 지출을 계획
- 캐나다 정부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수지 흑자현상을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캐나다의 고용시장과 1인당 국민소득은 G7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
- 2005-5 회계연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실한 운영, 경제성장의 지속추진,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한 대비책 마련, 의료 및 복지제도 향상,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외교 강화, 국방력 증강을 주요 골자로 하여 마련
-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 (FTA) 체결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할 예정
- 중국, 인도, 브라질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을 해외시장 개척의 핵심타겟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투자 및 마케팅 활동의 강화를 추진

[무역, 통상 이슈]

○ 캐나다, 미국의 버드 수정안에 대한 보복조치 시행

- 미국의 버드 수정안은 2000년 입법되었으며 미국정부가 외국 수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미국 기업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WTO에 불법판정을 받음으로써 철폐 요구를 받아 옴
- 그러나 미국이 버드 수정안 철폐를 거부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5% 부가세 부과 중. 이번 조치는 내년 4월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에 주를 이루고 있음
- EU 역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미국산 종이, 섬유, 기계류 및 농수산물에 대해 15%의 부가세 부과를 결정

○ 캐나다, 미국과의 무역분쟁 지속국면

- 2002년 캐나다 정부가 대미 연목(softwood)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였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따라 시작된 연목분쟁은 그 동안 양국정부가 NAFTA 와 WTO 무역분쟁 중재위원회에 수차례 중재를 요청하는 등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미국정부는 2004년 12월 NAFTA 무역분쟁 중재위원회가 내린 수입관세 재계산 판정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 캐나다 정부는 WTO에 C\$40억 규모의 보복관세 승인을 신청, 2005년 3월 현재까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양국간의 갈등악화로 인한 캐나다 경제발전 저해를 우려가 고조

○ 캐나다, 한국과의 FTA 체결 적극적으로 추진

- 캐나다 정부는 보다 성공적인 한국과의 FTA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또한 캐나다 아태재단 (Asia Pacific Foundation of Canada)은 칠레와 한국의 FTA 성공사례를 예로 들어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FTA 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FTA 체결을 공개적으로 지지
- 정부는 2005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상강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발표한 연방정부 예산안에서도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강화와 한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선언
- 양국의 FTA 체결 시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부족한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며 거대한 북미시장으로의 진출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세계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형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수출호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경제 이슈]

○ OECD, 2005년 캐나다 경제 2.8% 성장 전망

- OECD, 캐나다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대미수출 약세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유일한 요소라고 지적
- 대미수출 약세는 캐나다 정부가 추가 금리인상을 반복하여 보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

○ 정부, 교토의정서 준수 위한 세부정책 발표

- 2005년 2월 전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하였으나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안이 발표되지 않아 국민과 정,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우려가 고조
- 이에 따라 캐나다 환경부는 4월 13일 ‘프로젝트 그린 (Project Green)’ 이라고 명명된 세부 정책안을 발표
- 동 정책안은 교토의정서 준수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골자로 각 산업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도 필수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정책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교토의정서 준수와 관련된 사항 중 대부분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마련되었는데 그 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설립된 프로그램인 Climate Fund와 Partnership Fund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대표적
-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그린의 발표를 통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억7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총 C\$100억을 지원할 예정임

9. 출입국/비자

< 출입국 / 비자 >

1. 비자

1994년 5월 1일 체결된 우리 나라와 캐나다 간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6개월 미만의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개인별 체류기간은 방문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과 캐나다 입국 시 이민관 담당관리들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적어도 비자 만기일 30일 전 인근지역 소재 이민센터에서 신청서

(Application to Extend or Change Visitor's Status)를 입수,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 시 소요비용은 1인당 C\$75이며, 타당한 연장 사유, 연장기간 동안의 충분한 자금원 증명, 출국용 항공티켓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또는 불문으로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한글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된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이민센터 문의 전화

토론토	(416) 973-4444
몬트리올	(514) 496-1010
밴쿠버	(604) 666-2171
캐나다 전역 수신자 부담	1-888-242-2100

나.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비자종류를 막론하고 여권, 신청서, 여권용 사진 2매, 귀국용 항공표, 1년 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및 영문본 각 1통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는 장기비자로 간주하여 장기 체류사유서 및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비자 신청 시 신체검사(Medical Exam)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로의 재입국이 필요하면 비자 신청서에 복수 입국계획임을 명기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비자 발급처에 제출하여 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면 Multiple Entry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다. 방역

일반적으로 방문자 체류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신체검사가 불필요하나 장기체류자를 포함하여 서울소재 대사관측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동 신체검사를 필하여야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캐나다 입국 후에 비자기간 연장신청으로 인해 총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민국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비자 발급처

주한 캐나다 대사관

- 주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빌딩 10층
- 전화: (02)3455-6000
- 팩스: (02)755-0686
- 홈페이지: www.korea.gc.ca
- 휴일: 토, 일요일, 양 국가의 법정공휴일
- 서류신청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30분-11시
- 수령시간: 다음날 또는 신청2일 후 오후 2시-4시
- 소요비용(방문비자 수수료): 단수 입국 C\$75, 복수 입국C\$400, 가족C\$400
('주한 주재국 기관' 항목 참조)

2.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기내에서 배부된 입국카드(세관신고 포함)를 작성한 후, 입국심사관(Immigration Officer)

에게 여권, 항공티켓과 함께 제출하고 방문목적, 체류기간, 휴대품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입국허가인을 받고, 탁송화물대(LUGGAGE CLAIM)에서 본인이 부친 화물을 찾은 후 세관통관대로 가서 세관원의 관세물품여부 심사를 받는다.

가. 휴대품 통관 시 제한사항

식물, 식품류, 농산물, 가축 등은 세관원으로부터 별도의 통관허가를 받는다.

규정상 주류는 와인이 LIQUOR 1.14 Liter, 맥주 12병, 담배 200개피, 시가 50개피, 담배가루 1Kg이하는 면세 통관된다.

나. 유의사항

해외방문이 처음인 경우에는 최소한 출발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취업 또는 파견근무의 경우 비자수속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하여야 한다.

(자료원: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05.6.28 현재)

10. 환전

< 환전 >

1. 화폐단위

캐나다 화폐의 기본단위는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로 보통 \$ 로 표시되며,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에는 보통 C\$로 표기된다. 1달러는 100 Cents이다.

주화단위	1 cent	5 cent	10 cent	25 cent	\$1	\$2
명칭	penny	nickel	dime	quarter	loonie	toonie
	페니	니클	다임	쿼터	루니	투니

지폐는 \$5, \$10, \$20, \$50, \$100, \$1,000 액권의 6종류이며 \$1,000 액권은 범죄예방차원의 일환으로 2000년 5월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2001년 하반기부터 \$100 위조지폐의 사용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소매업소들 중에는 \$100 지폐를 받지 않는 곳이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50 지폐도 받지 않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장치를 설치한 업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환율

대 미화 환율	05.6.20	05.3.31	04.12.31	04.9.30	04.6.30
US\$1=	C\$1.2320	C\$1.2096	C\$1.2036	C\$1.2639	C\$1.3404
대 원화 환율	05.6.20	05.3.31	04.12.31	04.9.30	04.6.30
C\$1=	820.34원	839.63원	859.82원	910.75원	862.07원

(자료원: 캐나다 중앙은행, 2005.6.20 현재)

환율제도: 자유시장 환율제를 채택, 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세금, 보조금 등은 없다.

3. 환전

환전서비스는 공항, 호텔,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그 날의 환율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환전시 2% 내외의 환전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환전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주요 환전소로는 Thomas Cook, Western Union 등이 있으며, 시내 곳곳에 지점이 위치해 있다.

시내에는 역 구내나 대형 쇼핑센터에 대개 환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은행은 주말에는 쉬지만 공항의 환전소에서는 휴일에도 환전을 해 준다.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 후 공항에서는 당장 필요한 약간의 돈만 환전하고 시내에 온 후 가까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최근에는 캐나다 현지 환전기관에서 원화의 환전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원화의 미화 또는 캐나다화로의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원화환전은 토론토와 밴쿠버에 소재한 한국외환은행의 캐나다 지점에서 가능하다.

11. 기후

<기후>

1. 기후 특성

해양성기후를 띤 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은 겨울에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잦은 반면, 중부 내륙지방은 여름에 강우량과 습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보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 6개월(11월-4월) 정도로 매우 긴 편이다.

- 태평양연안: 온기있는 따뜻한 온대성기후
- 대서양해안/오대호부근/세인트로렌스저지: 해양성기후
- 북극권: 한대성기후
- 중부내륙: 대륙성기후
- 내부평원지대: 건조하며 기온차이가 심함

2. 주요 도시의 기후

[주요 도시별 기온 및 강수량]

도시	겨울(1월)		여름(7월)		강설량	강우량	우천일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연간	연간	연간
	℃				Cm	mm	일
Vancouver	5.7	0.1	21.7	12.9	54.9	1,167	164
Victoria	6.5	0.3	21.8	10.7	46.9	858	153
Regina	-11.0	-22.1	26.3	11.9	107.4	364	109
Calgary	-3.6	-15.7	23.2	9.5	135.4	399	111
Edmonton	-8.2	-17.0	23.0	12.0	129.6	461	123
Winnipeg	-13.2	-23.6	26.1	13.4	114.8	504	119

Toronto	-1.3	-7.9	26.5	17.6	135.0	819	139
Ottawa	-6.3	-15.5	26.4	15.1	221.5	911	159
Montreal	-5.8	-14.9	26.2	15.4	214.2	940	162
Quebec City	-7.7	-17.3	24.9	13.2	337.0	1,208	178
Fredericton	-0.4	-15.4	25.6	12.9	294.5	1,131	156
Halifax	-1.5	-10.6	23.4	13.2	261.4	1,474	170
St. John's	-1.4	-8.7	20.2	10.5	322.1	1,482	217
Charlottetown	-3.4	-12.2	23.1	13.6	338.7	1,201	177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최신자료)

12. 공휴일

< 공휴일 >

1. 캐나다의 공휴일

공휴일	2005년	2006년	2007년
New Year's Day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Good Friday	3월 25일	3월 24일	3월 23일
Easter Monday	3월 28일	3월 27일	3월 26일
Victoria Day	5월 23일	5월 22일	5월 21일
Canada Day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Civic Holiday	8월 1일	8월 7일	8월 6일
Labour Day	9월 5일	9월 4일	9월 3일
Thanksgiving Day	10월 10일	10월 9일	10월 8일
Remembrance Day	11월 11일	11월 11일	11월 11일
Christmas	12월 25일	12월 25일	12월 25일
Boxing Day	12월 26일	12월 26일	12월 26일

*참고: 캐나다의 일부 공휴일은 특정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관례 및 법령에 따라 매년 변동(자료원: 캐나다 인력자원부, 2005. 6.28 현재)

법정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대형 상점 등이 모두 휴무하며 소규모 상점들은 상점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영업여부를 결정 짓는다.

2. 출장 지양기간

□ **여름 휴가시즌 (6-8월)**: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 경제관련 단체 등이 동 기간중 2주에서 1개월간 휴가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 출장시 사전확인이 필수적이다.

□ **겨울 (11-2월)**: 캐나다의 겨울은 우리나라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강추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출장 시 기후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12월 중순에서 1월 초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연이어 장기 휴가를 내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 **봄 (3월)**: 3월 중에 학생들의 1주일간의 봄방학(March Break)이 있어 가족을 동반한

휴가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를 요한다. 봄이라고는 하나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3월은 늦겨울이기 때문에 ‘봄방학’ 대신 March Break’ 이라는 말로 널리 통용된다.

13. 시차/근무시간

< 시차, 근무시간 >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한국표준시간) - 12.5시간에서 17시간에 이르는 6개 표준시간대로 구분된다.

- 썸머타임기간(+1시간): 4월 첫째주 일요일 -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2005년: 4월 3일 - 10월 30일)

표준시간대 (서->동)	주요도시	평시 시차	썸머타임 시차
Pacific S.T.	Vancouver	KST - 17:00	KST - 16:00
Mountain S.T.	Edmonton, Calgary	KST - 16:00	KST - 15:00
Central S.T.	Winnipeg	KST - 15:00	KST - 14:00
Eastern S.T.	Toronto, Montreal	KST - 14:00	KST - 13:00
Atlantic S.T.	Halifax	KST - 13:00	KST - 12:00
NFLD S.T.	St. John' s	KST - 12:30	KST - 11:30

(* S.T. = Standard Time)

한국 시간으로 6월 20일 오전 9시 경우 (썸머타임 기간 중),

- 토론토: 6월 19일 오후 8시 (Eastern S.T.)
- 밴쿠버: 6월 19일 오후 5시 (Pacific S.T.)

한국 시간으로 12월 1일 오전 9시일 경우,

- 토론토: 11월 30일 오후 8시 (Eastern S.T.)
- 밴쿠버: 11월 30일 오후 5시 (Pacific S.T.)

2. 근무시간

관 청	월-금	08:30 - 16:30
은 행	월-금	09:00 - 16:00 (도심지역)
상업권	월-금	09:00 - 17:00 (도심지역)
대형쇼핑센터	월-금	10:00 - 21:00
	토	10:00 - 19:00
	일	12:00 - 18:00

* 은행의 일부 투자신탁 지점은 직장인을 위해 평일 20:00, 토요일 14:00까지 근무함

14. 호텔

< 호텔 >

캐나다의 숙박요금은 일반호텔의 경우 지역, 계절, 투숙기간, 할인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크나 일반적으로 토론토 지역의 경우 특급호텔이 C\$170-C\$250 수준이고 고급호텔은 C\$100-150수준이다.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이 가능하며 모든 호텔이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ner's Club 등의 신용카드를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의 관광성수기나 큰 행사가 있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호텔이 만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같은 호텔에서도 며칠 간격으로 숙박요금이 조금씩 차이를 보일 경우가 가끔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유념해 두는 것이 좋다.

* 캐나다 내 호텔 검색 관련 링크

www.hotel--canada.com/ , <http://canada.worldweb.com/Wheretostay/HotelsMotels/>

[주요 도시별 호텔 리스트]

호텔명	위치	전화번호	가격
토론토			
Toronto Hilton	토론토 시내 145 Richmond St. W.	(416) 869-3456	C\$209-249
Sheraton Centre Toronto	토론토 시내 123 Queen St. W.	(416) 361-1000	C\$185-209
Comfort Hotel Downtown	토론토 시내 15 Charles St. E.	(416) 924-1222	C\$99-139
Holiday Inn on King	토론토 시내 370 King St. W.	(416) 599-4000	C\$169-239
Hotel Inter-Continental	토론토 시내 220 Bloor St. W.	(416) 960-8269	C\$179-229
Hotel Victory Downtown	토론토 시내 56 Yonge St.	(416) 363-1666	C\$110-169
Sutton Place Hotel	토론토 시내 955 Bay St.	(416) 924-9221	C\$149부터
Westin Harbour Castle Hotel	토론토 시내 1 Harbour Square	(416) 869-1600	C\$189-289
Toronto Eaton Centre Marriott	토론토 시내 525 Bay St.	(416) 597-9200	C\$169-179
Corporate Residences Canada	토론토 시내 120 Carlton St.	(416) 925-7556	장기숙박 아파트호텔 C\$2,500/월

밴쿠버			
The Pan Pacific Hotel	밴쿠버 시내 999 Canada Place	(604) 662-8111	C\$150-400
Hyatt Regency Vancouver Hotel	밴쿠버 시내 655 Burrard St.	(604) 683-1234	C\$199-264
Hotel Vancouver	밴쿠버 시내 900 West Georgia St.	(604) 684-3131	C\$160-270
Holiday Inn Vancouver Centre	밴쿠버 시내 711 West Broadway Ave.	(604) 879-0511	C\$99-127
Carlton Plaza Hotel	밴쿠버 시내 642 Johnson St.	(604) 388-5513	C\$109-149
몬트리올			
Hotel Intercontinental Montreal	몬트리올 시내 360 Rue St-Antoine Ouest	(514) 987-9900	C\$175-245
Chateau Versailles	몬트리올 시내 1659 Rue Sherbrooke Ouest	(514) 933-3611	C\$145-220
Holiday Inn Montreal Centre-Ville	몬트리올 시내 99 Ave. Viger Ouest	(514) 878-9888	C\$130-160
오타와			
Fairmont Chateau Laurier	오타와 시내 1 Rideau St.	(613) 560-7000	C\$249-279
Westin Hotel Ottawa	오타와 시내 11 Colonel By Dr.	(613) 560-7000	C\$139-239
Best Western Victoria Park	오타와 시내 377 O' Conner St.	(613) 567-7275	C\$119-149

- * 주 별로 다르나 온타리오 주의 경우 호텔요금에 12%의 세금이 추가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밴쿠버의 경우에는 17%, 알버타 주의 경우에는 14%의 세금이 추가됨
- * 보다 경제적인 숙박시설로는 C\$60-100수준의 모텔도 있으며 대다수의 모텔들은 도시 변두리나 입구,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음

(자료원 : www.hotel--canada.com/,

<http://canada.worldweb.com/Wheretostay/HotelsMotels/>, 2005.6.28 현재)

15. 식당

< 식당 >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이 어우러진 캐나다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서양요리, 중국요리, 일식, 한식은 물론 인도,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 자메이카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맥도날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피자헛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도 많아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대중음식점에서의 1인분 식사는 보통수준으로 C\$8-20, Fast food는 C\$5-10수준이다.

토론토의 경우 한국음식점은 다운타운의 Bloor Street의 선상에 있는 한인타운 및 North York의 Yonge & Sheppard부터 Yonge & Steel 사이에 밀집되어 있으며 중국식당은 Spadina & Dundas 선상의 차이나타운과 토론토 북쪽 Markham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 다운타운 Bloor Street 선상 한인타운: 지하철 Bathurst 또는 Christie 역 하차
- Spadina & Dundas 선상 차이나타운: 지하철 Spadina 역 하차 후 전차 이용

밴쿠버의 경우 한국음식점은 다운타운 근처의 Broadway, Kingsway 및 한인 상점이 밀집해 있는 Burnaby시와 Coquitlam시 접경의 North Road선상에 집결되어 있다.

고급식당의 경우 양식당은 2인기준 C\$70-100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한식, 일식, 중식당의 경우에는 1인당 C\$15-30 정도를 예상하면 된다. 토론토의 경우 C\$4 이상의 식사에는 15%의 세금이 추가로 적용되고 팁으로 음식가격의 10~15%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주요 식당 리스트]

식당명	위치 및 주소	전화번호	종류
토론토			
호수	시내, 2352 Yonge St.	(416) 848-9456	한식, 일식
나미 일식당	시내, 55 Adelaide St. E.	(416) 362-7373	일식
코리아하우스	시내, 666 Bloor St. W.	(416) 536-8666	한식
호심	시내, 100 King St. W.	(416) 368-0125	한식, 일식
일번지	시내, 668 Bloor St. W.	(416) 534-7223	한식, 일식
한국관	시내, 628 Bloor St. W.	(416) 536-0290	한식, 일식
세종회관	시내, 658 Bloor St. W.	(416) 535-5918	한식, 일식
물레방아	시내, 3 Christie St.	(416) 534-6833	한식
기소야	서부, 5084 Dundas St. W.	(416) 233-2727	일식
신라회관	서부, 1161 Weston Rd.	(416) 247-2007	한식
만두향	북부, 6068 Yonge St.	(416) 512-2007	한식
남산	북부, 879 York Mills Rd.	(416) 441-6060	한식, 일식
불고기하우스	북부, 41 Spring Garden Ave.	(416) 250-6094	한식
북촌	북부, 6012 Yonge St.	(416) 250-8383	한식
사리원	북부, 7388 Yonge St.	(905) 881-5103	한식
삼정	북부, 1865 Leslie St.	(416) 510-3300	한식, 일식
서울옥	북부, 7089 Yonge St.	(905) 731-2711	한식
장수면옥	북부, 2437 Finch Ave. W.	(416) 740-7233	한식
청기와	북부, 5817 Yonge St.	(416) 225-8090	한식, 일식
서울관	북부, 3220 Dufferin St.#1A	(416) 782-4405	한식, 일식
Buffet City	북부, 3160 Steeles Ave. E.	(905) 474-9899	중식 부페
차이나 부페킹	서부, 4141 Dixie Rd.	(905) 629-2288	중식 부페
Jade Garden	시내, 222 Spadina Ave.	(416) 599-6000	중식
Ho Yuen	시내, 123 Dundas St. W.	(416) 813-0788	중식
Hua Sang	시내, 43 Baldwin St.	(416) 596-1628	중식, 해산물
LaMaquette	시내, 111 King St., E.	(416) 366-8191	프랑스

Little Anthony's	시내, 121 Richmond St. W.	(416) 368-2223	이태리
Al Frisco's	시내, 133 John St.	(416) 595-8201	지중해식
Mediterra	시내, 133 Richmond St. W.	(416) 861-1211	해산물
Bardi's	시내, 56 York St.	(416) 366-9211	스테이크
Tom Jones	시내, 17 Leader Lane	(416) 366-6583	스테이크
밴쿠버			
북경반점	시내, 1639 Robson St.	(604) 689-3898	중식
아리랑하우스	시내외곽, 2211 Cambie St.	(604) 879-0990	한식, 중식
서울관 로얄	시내외곽, 1215 W. Broadway	(604) 738-8285	한식, 중식
서울관 원조	시내외곽, 36 E. Broadway	(604) 874-4131	한식, 중식
장모집	시내, 1719 Robson St.	(604) 642-0712	한식
조선갈비	동부, 3486 Kingsway	(604) 434-1222	한식, 중식
한우리	버나비시, 5740 Imperial St.	(604) 439-0815	한식, 중식
코리아나	시내, 1256 Robson St.	(604) 688-2101	한식, 중식
신포우리만두	시내, 833 Bute St.	(604) 633-0667	한식

16.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가. 직항항공편

대한항공이 주 3회 (성수기 기준, 비수기에는 주 2회 운항) 토론토와 밴쿠버에, 싱가포르항공이 주 3회 밴쿠버에 직항 운항하고 있다. Air Canada는 1994년5월 직항노선을 개시, 밴쿠버에서 매주 7회 운항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토론토와 서울을 연결하는 직항편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Air Canada를 포함한 캐나다 항공사들이 캐나다 전역에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캐나다 주요도시로 빠르게 연결될 수 있다.

나. 미국 경유편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는데 캐나다 서부지역의 경우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시애틀을 경유하면 밴쿠버로 갈 수 있고, 동부지역은 시카고나 뉴욕을 경유하여 토론토나 몬트리올로 갈 수 있다.

중부는 미네아폴리스나 디트로이트를 경유하여 에드먼턴, 캘거리, 위니펙 등으로 갈 수 있다.

Air Canada, United Airlines, American Airlines 등의 북미 항공사는 모두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다. 일본 경유편

그 밖에도 일본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Northwest Airlines 와 일본계 항공사가 동경을 경유하여 밴쿠버로 연결하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2. 국내 교통편

캐나다 내 주요도시간 여행은 주로 버스, 기차, 비행기,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출장과 장거리 여행 시에는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시내교통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으로 토론토의 경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C\$2.25, 택시의 기본요금은 C\$2.75로 공항에서 다운 타운 까지 약 C\$35-40 정도의 요금이 든다. 한편, 이밖의 공항-시내간 교통편으로는 에어 포트 버스, 리무진 등이 있다.

밴쿠버의 경우, 택시의 기본요금은 C\$2.56이며 킬로미터당 C\$1.39가 추가되어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다운타운까지는 약 C\$27이 소요된다.

□ 택시 이용

시내의 경우 택시는 특별히 따로 승강장이 없고 한국에서와 같이 노상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으며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심을 벗어난 주택가나 교외지역에서는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아 미리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택시요금은 시간/거리 병산제이며, 토론토 및 밴쿠버 등에서 시내 이동시 대체로 C\$5-15불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팁은 미터기에 나타난 금액에 10% 정도를 더하여 지불하면 되며, 영수증을 요구하면 운전기사가 발급해 준다.

□ 지하철 이용

토론토 지하철은 남북노선(Yonge Line)과 두 개의 동서노선(Bloor Line, Sheppard Line)만 있으나 시내에서는 토론토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 및 전차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만 알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편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지하철에서 버스나 전차로 갈아탈 경우 지하철역 내에 위치한 빨간색 Transfer 발급기에서 티켓을 뽑아 환승시 운전기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버스나 전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탈 경우 운전기사에게 직접 Transfer를 요청하면 된다.

지하철을 이용할 시에는 역 입구에서 토큰을 구입하여 투입기에 넣고 탑승하면 되며 하차 시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내리면 된다. 버스나 전차를 이용할 경우 미리 지하철 역이나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한 토큰이나 현금을 지불하여 탑승하면 된다.

토큰 하나의 가격은 C\$2.50이며, 10개를 한 번에 구입할 시 C\$20 이다.

밴쿠버 지역의 경우에는 SkyTrain 이라는 경전철이 운행 중인데 킹조지(King George) 라인과 밀레니엄(Millennium) 라인 등 2개 노선이 있다. 1번의 승차권 구입으로 정해진

시간 내 SkyTrain, 버스, Sea Bus 등으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1회 탑승요금은 지역에 따라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C\$ 2.25, C\$ 3.25, C\$ 4.50 이며 1일 무제한 이용권(C\$ 8.00), 1개월 패스 및 10매 일괄 할인구매 등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무역관 오는 방법]

토론토무역관

○ 택시이용

- 공항 출구로 나와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에게 무역관 주소를 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함
- 요금 : 미터기를 사용하는 일반택시와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공항택시 두 종류가 있는데 요금은 약 C\$35-40 내외로 거의 비슷함. 거리/시간 병산제로 경우에 따라 약간의 차이 발생 가능.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의 10%를 팁으로 줌.

○ 공항버스 이용

- 공항출구로 나와 Airport Express 버스 매표소에서 다운타운의 Sheraton Hotel까지 가는 표를 구입하여 승차. 무역관은 Sheraton Hotel 동쪽에 위치 (도보 5분 거리)한 Thomson Building 6층에 위치
- 요금: 1인 C\$20 (편도)

밴쿠버무역관

○ 택시이용

- 이용 가능시간: 24시간
- 비용 : C\$ 25-30 내외
- 참고 :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통상적으로 캐나다달러, 미국달러, 주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 에어포터 (공항 리무진 버스)

- 이용 가능시간: 새벽 6:30부터 익일 00:10까지 매 15분 간격으로 운행
- 국내 및 국제선 도착 터미널에서 출발
- 비용 : 성인기준 편도 C\$ 12, 왕복 C\$ 18
- 참고 : 밴쿠버 시내의 주요 호텔 경유
- 무역관 인근 경유 호텔: Hotel Vancouver 승하차(약 50분 내외 소요)

3. 국제통신

수신자부담통화(Collect Call)

0을 돌리고 교환수에게 통화를 신청한다. 요금은 상대가 지불한다.

□ 지명통화 (Person to Person Call)

지명한 상대와 통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요금이 가산되며 상대가 부재중일 때는 무료이다. 신청방법은 수신자부담통화와 동일하며 신청 시에 미리 지명통화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두어야 한다.

□ 국제 다이얼통화 (Direct Call)

교환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통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다. 우선 국제전화 코드인 011을 돌린 다음 한국 고유번호 82, 이어서 0을 뺀 상대 시외국번, 번호의 순으로 돌린다 (011+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대의 번호가 02-123-4567인 경우에 011-82-2-123-4567 순서대로 걸면 된다.

교환수를 통하지 않는 다이얼 통화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심야에는 3분에 C\$5 정도로 할인된다.

4. 국내통신

□ 공중전화

공중전화는 시내 빌딩 내외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찾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며 동전을 사용하는 것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시내통화의 경우 25센트를 넣으면 시간제한 없이 통화가 가능하며 동전은 5, 10, 25센트 3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호텔이나 역, 공항밖에 없지만 장거리 통화시 편리하다. 사용법은 전화기 옆에 표시되어 있다.

□ 시내통화 (Local Call)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25센트를 투입(5, 10, 25센트 동전 사용가능)하고 번호를 누르면 되며 통화시간에 제한은 없다. 전화번호 문외는 시내는 411로, 다른 도시의 경우는 지역번호+552+1212로 알아본다.

전화번호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White Pages는 인명별, Yellow Pages는 업종별이다.

토론토 광역시 및 밴쿠버에서는 10자리 전화번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시내통화에도 지역번호를 포함한 10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한다.

(예: 토론토무역관은 416-368-3399, 밴쿠버무역관은 604-683-1820의 10자리 숫자 입력)

□ 시외통화 (Long Distance Call)

처음에 0(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필요)을 누르고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계속 누르면 교환수가 나와 처음 3분간의 요금을 알려준다. 3분이 경과되면 통화 중에 교환수가 끼어들어 필요한 요금을 말해주는데 그 때 추가요금을 집어넣는다. 공중전화기 아닌 일반전화일 경우 1+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누르면 된다.

17. 유용한 연락처

< 유용한 연락처 >

1. 한국기관

대한민국 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50 Boteler St., Ottawa, Ontario, K1N 5A6 - 전화: 613-244-5010 - 팩스: 613-244-5034 - 인터넷주소: www.emb-korea.ottawa.on.ca
몬트리올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Montr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H3B 2C4 - 전화: 514-845-2555 - 팩스: 514-845-1119 - 인터넷주소: www.koreanconsulate.qc.ca
토론토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ro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555 Avenue Rd., Toronto ON, M4V 2J7 - 전화: 416-920-3809 - 팩스: 416-924-7305 - 인터넷주소: www.consulatekorea-tor.org
밴쿠버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ancou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 전화: 604-681-9581, 9582 - 팩스: 604-681-4864 - 인터넷주소: www.koreanconsulatevan.org
토론토 무역관 (KOTRA, Toro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5 Queen St. W., Suite 600, Toronto, Ontario, M5H 2M5 - 전화: 416-368-3399 - 팩스: 416-368-2893 - 이메일: info@kotra.ca - 인터넷주소: www.kotra.ca (무역관 자체 홈페이지)
밴쿠버 무역관 (KOTRA, Vancouv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Suite 1710, One Bentall Centre, 505 Burrard St., Vancouver, B.C., V7X 1M6 - 전화: 604-683-1820, 687-7322 - 팩스: 604-687-6249 - 인터넷주소: www.kotra.or.kr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Korea National Tourism Corporation, Toro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700 Bay St. Suite 1903, Toronto, Ontario, M5G 2Z6 - 전화: 416-348-9056 - 팩스: 416-348-9058 - 이메일: toronto@knto.ca - 홈페이지: http://english.tour2korea.com/toronto/

2. 한인단체

토론토 한인회 (Korean Canadian Cultural Association of Metro Toronto)
-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tario, M3C 2J6 - 전화: 416-383-0777 - 팩스: 416-383-1113
오타와 한인회 (Korean Canadian Association of Ottawa)
- 주소: 3593 Trappers Rd., Gloucester, Ontario, K1G 2R2 - 전화: 613-731-5663
몬트리올 한인회 (Korean Community of Greater Montreal)
- 주소: 3480 Decarie Blvd., Montreal, Quebec, H4H 3J5 - 전화: 514-481-6661 - 팩스: 514-481-0062
밴쿠버 한인회 (Korean Society of British Columbia)
- 주소: 1320 East Hastings St., Vancouver, B.C., V5L 1S3 - 전화: 604-255-3739 - 팩스: 604-255-3443
에드먼턴 한인회 (Edmonton Korean Association)
- 주소: P.O.Box #68103, Bonnie Doon Mall, Edmonton, Alberta, T6C 4N6 - 전화: 780-468-3177 - 팩스: 780-988-6128
캘거리 한인회 (Calgary Korean Cultural Association)
- 주소: 1901 30 St. S.W., Calgary, Alberta, T3E 2L5 - 전화: 403-216-4600
노바스코샤 한인회 (Nova Scotia Korean Association)
- 주소: 1800 Argyle St. # 800, Halifax, N.S., B3J 3N8 - 전화: 902-425-6846
뉴브런즈윅 한인회 (New Brunswick Korean Association)
- 주소: 162 Prime William St., Moncton, N.B., E2L 2B6 - 전화: 506-693-0884 - 팩스: 506-642-7263
마니토바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of Manitoba)
- 주소: P.O. Box 800 150 River Ave., Winnipeg, Manitoba, R3L 0A9 - 전화: 204-589-7513 - 팩스: 204-952-9893
한인 무역인협회 (Korean Canadian Traders Association)
- 주소: 750 Millway Ave., Unit 8, Concord, Ontario, L4K 3T7 - 전화: 905-738-5556 - 팩스: 905-738-5884

3. 한인 언론기관

캐나다 중앙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55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L1 - 전화: 416-533-5533 - 팩스: 416-533-5500 - 이메일: info@joongangcanada.com - 인터넷주소: www.joongangcanada.com
캐나다 중앙일보 (서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4501 North Road, Unit 320, Burnaby, B.C. V3N 4R7 - 전화: 604-420-6033 - 팩스: 604-420-6022 - 이메일: info@joinscanada.com - 인터넷주소: www.canadajoongang.com
캐나다 한국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287 Bridgeland Ave., Toronto, Ontario, M6A 1Z6 - 전화: 416-787-1111 - 팩스: 416-781-7777 - 인터넷주소: www.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서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9940 Lougheed Hwy, Unit 303, Burnaby, B.C. V3J 1N3 - 전화: 604-420-3650 - 팩스: 604-420-3653 - 인터넷주소: www.koreatimes.net

4. 은행

캐나다 외환은행 (Korean Exchange Bank of Can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4950 Yonge St. Suite 1101, Toronto, Ontario, M2N 6K1 - 전화: 416-222-5200 - 팩스: 416-222-5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어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627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 전화: 416-533-8593 - 팩스: 416-531-10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사가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90 Burnhamthorpe Rd. W., #120, Mississauga, Ontario, L5B 3C3 - 전화: 905-272-3130 - 팩스: 905-272-3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밴쿠버 - 버나비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4900 Kingsway, #100, Burnaby, B.C., V5H 2E3 - 전화: 604-432-1984 - 팩스: 604-432-1964

○ 밴쿠버 - 코퀴틀람 지점 - 주소: 4501 North Road, #202A, Burnaby, B.C., V3N 4R7 - 전화: 604-420-0019 - 팩스: 604-420-0066
로얄은행 한인금융센터 (Royal Bank Financial Group)
- 주소: 5001 Yonge St., North York, Ontario, M2N 6P1 - 전화: 416-512-4554 - 팩스: 416-512-3077
몬트리올은행 블루리지점 (Bank of Montreal - Bloor Branch)
- 주소: 640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9 - 전화: 416-533-8810 - 팩스: 416-533-7609
TD 은행 (Toronto Dominion Bank)
- 주소: 5650 Yonge St., North York, Ontario, M2M 4G3 - 전화: 416-250-2263 - 팩스: 416-733-3989
한인신용조합 (Sharons Credit Union) - 본점
- 주소: 1055 Kingsway, Vancouver, B.C., V5V 3C7 - 전화: 604-873-6490 - 팩스: 604-873-6498

5. 한인여행사

여행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토론토		
대한여행사	(416) 588-6800	(416) 588-6805
세방여행사	(416) 241-0504	(416) 244-9497
나라여행사	(416) 225-2580	(416) 225-6200
하나여행사	(416) 730-0101	(416) 730-8201
얼워렌여행사	(416) 534-7557	(416) 534-7559
신라여행사	(416) 250-8990	(416) 250-8992
세진여행사	(905) 949-6654	(905) 949-4421
로얄여행사	(416) 222-5586	(416) 222-0336
밴쿠버		
고려여행사	(604) 872-0747	(604) 872-0700
대한여행사	(604) 876-6646	(604) 876-6316
미주관광여행사	(604) 939-0043	(604) 603-8508
블루버드여행사	(604) 688-1994	(604) 688-1950
서울여행사	(604) 872-5600	(604) 872-8848
한국관광여행	(604) 438-0234	(604) 433-8762

6. 콜택시

토론토	
Aerofleet (24시간)	(416) 678-7077
Airport Taxi (24시간)	(905) 624-2424
Beck	(416) 751-5555
Yellow Cab	(416) 777-9222
Crown	(416) 750-7878
Diamond	(416) 366-6868
Metro Cab	(416) 504-8294
밴쿠버	
Vancouver Taxi	(604) 871-1111
Yellow Cab	(604) 681-1111
Black Top & Checker Cabs	(604) 683-4567

7. 비상연락처

긴급전화 (화재, 도난, 경찰, 응급의료 등)	911 (토론토 경우 한국어 통화가능)
전화번호문의	411
날씨문의	416-739-4826 (토론토)
	604-664-9033 (밴쿠버)
대중교통문의	416-393-4636 (토론토)
한국 수신자부담 직통전화	1-800-663-0682(한국 교환원)
기타 지역정보 문의	211 (현재 토론토만, 캐나다 전역 확장 진행 중)

18. 여행시 유의사항

< 여행시 유의사항 >

1. 여행준비

 의복준비

캐나다의 기후는 여름에도 상당히 서늘한 편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므로 방한용 스웨터나 겉옷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한다. 겨울철에는 산악지방의 기온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등 추운 날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 여행할 경우에는 두꺼운 오버코트,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하여 겨울 추위에 철저히 대비하고 특히 겨울이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간 지속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름철에는 대체적으로 기온이 서늘해 여행하기 좋은 편이나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며칠 간 지속되다가도 며칠 후 기온이 20도 아래로 급락하는 등 기후변동의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광활한 국토를 지닌 나라인 만큼 지역에 따른 기후차이가 심하다. 밴쿠버 근처

태평양 연안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여름에 선선하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흐린 날이 많고 습하다. 반면, 서부의 록키산맥에서 동부의 5대호에 이르는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은 춥고 길며, 여름은 덥고 짧다.

□ 의약품준비

여행 중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현지조달이 가능하지만 의약품은 종류에 따라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것이 있고 현지에서 구입한 약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가지고 것이 바람직하다.

* 필요한 상비약의 예 : 위장약, 감기약, 반창고, 진통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연고 등

□ 전기 규격

사용 전력은 110V, 60Hz인 관계로 이에 맞는 전자제품을 준비하거나 전력변환용 어댑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행여건

□ 치안

캐나다의 대도시는 미국의 가장 안전한 지방도시와 비교될 만큼 범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편으로 아직까지는 야간외출, 단독여행, 전철 승차 시 크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사회적 치안상태도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택시

시내 어느 곳에서나 택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주소를 제시하면 거의 어디든지 대부분 찾아갈 수 있다.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부를 수도 있으나 가급적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택시를 불러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한 편이다. 다만, 야간에 여성 혼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팁 관행

음식점에서는 청구금액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단 청구금액에 서비스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지불한다고 해도 소액의 잔돈 정도면 충분하다. 또한 드문 경우지만 팁의 액수까지 적은 청구서를 가지고 오는 레스토랑도 있으므로 2중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단체 손님일 경우(8-10명 이상) 계산서 작성시 서비스요금을 미리 추가하는 음식점도 있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요금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 50센트는 주는 것이 예의이다. 인원 수가 많거나 짐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더 준다. 특히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할 시 자동차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운전사가 직접 짐을 운반해 줄 때에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호텔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C\$1정도의 팁을 지불하면 된다. 그리고 호텔의 침실 청소 시에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1인당 C\$1정도 놓아두는 것이 적당하다. 룸서비스를 부탁한 경우 보통 요금의 10-15%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며 부족한 수건이나 담요 등을 가져다 주면 50센트-C\$1정도의 팁을 지불한다.

□ 비상의료 대책

병원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므로 비상시에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Emergency Room)로 직접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나 긴급한 상황에는 전화번호 911을 돌리면 응급 구조대가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한국어 911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911 연결 후 교환에게 한국어 사용을 부탁)

[주요 대도시 소재 병원]

토론토 시내 주요 병원	주 소	전화번호
Mount Sinai Hospital	600 University Ave.	416-586-42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Ave.	416-595-3111
Hospital for Sick Children	555 University Ave.	416-813-1500
North York General Hospital	4001 Leslie	416-756-6000
Etobicoke General Hospital	101 Humber College	416-747-3400
Sunnybrook Hospital	2075 Bayview Ave.	416-486-3000
Toronto General Hospital	200 Elizabeth	416-595-3111
St. Michael's Hospital	30 Bond	416-360 4000
밴쿠버 시내 주요 병원	주 소	전화번호
Vancouver General Hospital	899 West 12 th St.	604-875-4111
BC Children's Hospital	4480 Oak St.	604-875-2345
UBC Hospital	2211 Westbrook Mall	604-822-7121
St. Paul's Hospital	1081 Burrard St.	604-682-2344
St. Vincent's Hospital	749 West 33 rd Ave.	604-876-7171
Mount St. Joseph Hospital	3080 Prince Edward	604-874-1141

□ 쇼핑

캐나다 주요 도시의 중대형 상점에서는 좋은 품질의 유럽 유명 브랜드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을 캐나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산 특산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풍 시럽 (Maple Syrup), 인디언 카우칭 스웨터, 캐나다의 원주민 이누이트 에스키모의 수공예품 등이 선호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상품 구입시에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 Tax: GST)가 7% 부과되는데 관광객에게는 출국시 환급된다. 또한 알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판매세 (Provincial Sales Tax: PST)가 연방세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 그 세율은 주에 따라 4~12%로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19. 관광명소

< 관광명소 >

1. 온타리오주

□ 토론토 (Toronto)

온타리오 주의 주도이자 캐나다 최대의 도시인 토론토는 활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토론토는 온타리오 호수에서 세인트로렌스 강을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수로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으며 5대호를 사이에 두고 미국의 미시건, 뉴욕 주 등과 접해 있다. 거리는 남북을 관통하는 영 스트리트 (Yonge Street)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되었으며 온타리오 호수에서 바라보는 시가지의 전경은 뉴욕의 마천루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토론토가 뉴욕과 크게 다른 것은 이곳이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으로 유명한 People City, 즉 사람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점이다. 또한 토론토는 캐나다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토론토는 캐나다 최고의 문화 중심지이다. 뉴욕과 동시에 최신 영화가 개봉되고 유명 뮤지컬이 장기 공연되고 있으며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스포츠 시설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연극, 미술, 쇼핑, 요리 등의 다양한 볼거리 또한 무궁무진하다.

[주요 관광명소]

- 신, 구 시청: 다운타운의 베이 스트리트 (Bay Street)와 퀸 스트리트 (Queen Street)가 교차하는 일대에 위치하여 있으며 시계탑이 있는 청록색의 지붕을 가진 어두운 빛깔의 오래된 건물이 1891년 건축된 구 시청이다. 구 시청 서쪽으로 반원형의 2동 짜리 고층 빌딩과 원형 의회장을 갖춘 건물은 신 시청으로 1965년에 건축되었다. 신 시청 앞에 위치한 네이던 필립스 광장 (Nathan Phillips Square)은 여러 문화행사가 펼쳐지며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시민 광장이다.
- CN Tower: 다운타운의 최남단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CN Tower의 전체 높이는 533m이며, 전망대에는 바닥이 유리로 된 부분(Glass Floor)이 있어 346m 높이에서 바닥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엘리베이터를 갈아타면 447m 높이의 Sky Pod 전망대에 올라 토론토 시내와 근교를 볼 수 있다.
- 토론토 아일랜드 (Toronto Island):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서 10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면 토론토 아일랜드에 도착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도시의 모습을 모방해놓은 공원과 자전거로 하이킹하기에 좋은 산책로, 피크닉을 즐기기에 좋은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다.

□ 앨공퀸 주립공원 (Algonquin Provincial Park)

토론토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11번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북상하면 몇 개의 호수가 펼쳐져 있는 무스코카 (Muskoka) 지방에 도착한다. 2만 개의 커티지 (Cottage)와 130개의 리조트 호텔이 있어 토론토 주변 사람들이 여유롭게 여름휴가를 보내는 피서지인 이 곳은 사람들에게 Cottage & Country Resort 로 불린다.

무스코카 지역의 최대의 즐거움은 대자연을 무대로 즐기는 다양한 레저스포츠이다. 낚시, 수상스포츠 등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호수가 자리잡고 있으며, 메이플 가도의 단풍나무 명소로 알려져 있는 아름다운 숲에서는 골프나 보트놀이를 즐길 수 있다. 무스코카 지역에서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깊은 숲에 둘러싸인 원시림인 앨공퀸 주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앨공퀸 주립공원에서는 무스 (Moose)나 곰 등의 야생동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강원도에 필적하는 크기의 방대한 앨공퀸 주립공원의 가장자리 쪽으로는 리조트나 호텔 등의 숙박시설이 집결되어 있고 안쪽에는 카누나 하이킹 등을 통해 가야 하는 격리된 캠프사이트들이 있다.

□ 나이아가라 폭포 (Niagara Falls)

토론토 대안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기도 하며, 과거 나이아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탐험대가 거대한 폭포로 인해 갈 길이 막혔던 곳이기도 하다. 5대호의 하나인 에리 호수 (Lake Erie)의 물이 호수의 끝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어 한꺼번에 흘러 떨어진 후 계곡을 지나 온타리오 호수로 흘러든다. 폭포는 고트섬 (Goat Island)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 폭포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누어지는데 거대한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미국 폭포보다 웅대하여 인기가 한층 높은 편이다.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폭포의 웅장함을 한층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카지노, 유락시설, 기념품 상점 등도 풍부해 온타리오 주의 주요 외국 관광객 유치 지역이기도 하다.

□ 오타와 (Ottawa)

오타와는 1857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캐나다의 수도로 선정된 도시이다.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의 중간에 위치한 오타와는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국가의 심장부를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리 위치하려는 목적으로 수도로 지정되었다. 정연한 시가지가 색색의 튜립으로 가득 차는 봄은 이 도시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시기 이다.

오타와 강에 면한 견고한 언덕에는 시가지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으로 국회의사당이 위치하여 있고 그 주변에는 국가의 중추기관들이 집결되어 있다. 거리 여기저기에 공원과 미술관이 있으며 오타와 강을 사이에 둔 연안의 퀘벡 주의 도시 헐 (Hull)과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헐 교외에는 단풍나무의 명소로 유명한 광대한 가티노 파크 (Gatineau Park)숲이 펼쳐져 있다. 행정도시인 만큼 화려함은 떨어지지만 미술관을 순회하고 리도 운하를 항해한 후, 헐 거리까지 구경하면 충실한 관광이 될 것이다.

[주요 관광명소]

- 국회의사당 (Parliament Hill): 다운타운 북쪽의 오타와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위치하여 있으며 1866년에 완성되었다. 중앙, 동쪽, 서쪽 건물의 3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중앙에는 넓은 광장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 건물에서 가장 높이 솟은 탑은 평화의 탑이라고 불리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캐나다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름 관광시즌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125명의 위병들이 벌이는 위병교대식이 열리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주변에 약 1,000여 개의 전등이 켜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Sparks Street Mall: 국회의사당 앞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뒤편으로 놓여져 있는

거리로, 차량이 통제되는 보행자 전용 거리이다. 거리 양 옆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점들과 음식점, 환전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2. 퀘벡주

□ 몬트리올 (Montreal)

세인트로렌스 강에 떠있는 섬 도시인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프랑스계 주민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서 북미의 파리라고 일컬어진다. 중세의 분위기가 흠뻑 풍기는 구시가지와 현대적인 분위기의 고층건물이 늘어진 신시가지로 구분되는 몬트리올은 과거와 현대의 매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도시로써 전세계에서 파리 다음으로 큰 프랑스어 사용도시이기도 하다.

[주요 관광명소]

- 노틀담 대성당 (Notre Dame Basilica): 1829년에 세워진 대성당으로 몬트리올 구시가지 최대의 볼거리이다. 19세기 후반에 개, 보수를 거친 성당 안은 화려한 분위기이며, 특히 천장에 꾸며진 스테인드글라스는 매우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건물 한쪽으로 대성당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투어도 제공된다.
- 자크 카르티에 광장 (Place Jacques-Cartier): 시청의 맞은 편에 위치한 광장으로 세인트로렌스 강 쪽으로 지대가 낮아지며 음식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마차로 관광하는 사람 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 구 항구 (Vieux Port):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구시가지가 형성되는 일대에 약 2km 정도 이어지는 공원지대로 강 연안을 따라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퀘벡 시티 (Quebec City)

캐나다의 프랑스 문화권 내에서도 가장 문화가 풍부하고 역사가 깊으며 볼거리가 풍부한 도시가 바로 퀘벡시티이다. 특히 구시가지의 다운타운은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보존지구로 지정될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살아 있는 박물관이다. 퀘벡시티는 또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구시가지 외에 바깥쪽으로 신시가지가 펼쳐져 뚜렷한 두 가지 색깔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3.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밴쿠버 (Vancouver)

태평양에 접한 밴쿠버는 캐나다를 동양권과 연결시키는 서부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캐나다 제3의 도시이다. 인정미 넘치고 친절한 사람들, 깨끗하고 안전한 주위 환경, 풍요롭고 아름다운 생활 방식들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을 지닌 도시와 함께 웅장한 산과 깊고 푸른 바다의 자연이 만들어 내는 조화는 세계 어디서도 체험할 수 없는 밴쿠버만의 매력을 자아낸다.

[주요 관광명소]

- 개스 타운 (Gas Town): 다운타운 북쪽의 워터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타운으로 기념품 가게나 의류상점,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개시의 동상과 오래된 증기 시계 (Steam Clock)가 이 곳의 명물인데 특히 증기 시계는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기적소리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받고 있다.
- 캐나다 플레이스 (Canada Place): 흰 돛 모양의 하얀 지붕이 인상적인 건물로 1986년 엑스포에서 캐나다 가설 건축물로 세워진 후 현재는 국제회의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스탠리 공원 (Stanley Park): 다운타운 북서쪽에 위치한 공원으로 밴쿠버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다.

□ 밴쿠버 섬 (Vancouver Island)

32,000 Km²의 면적으로 제주도의 약 20배 크기인 밴쿠버 섬은 북미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섬 중 가장 큰 섬으로 중심부에는 2,100 m 높이의 산이 우뚝 솟아 있다. 섬의 서해안은 굴곡이 심한 피요르드 해안이고 동해안은 완만한 해변으로 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산이 많다. 밴쿠버 섬의 관광지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중적인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은 빅토리아와 밴쿠버 섬 서쪽 해안에 위치한 퍼시픽 림 국립공원 (Pacific Rim National Park)이다.

4. 알버타주

□ 캐네디언 로키 (Canadian Rockies)

북미대륙의 서쪽에는 연안 지대와 중부 대평원을 가르는 거대한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바로 로키산맥이다. 로키산맥의 캐나다령이 캐네디언 로키로 이 곳에는 밴프, 자스퍼, 요호, 코트니, 글레이셔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의 보고가 가득하다. 캐네디언 로키 관광의 거점이 되는 곳은 밴프(Banff)와 자스퍼(Jasper) 두 도시이다. 캐네디언 로키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청명한 하늘, 맑은 물,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웅장한 로키산, 무한한 삼림, 끝없는 대초원이 잘 보존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이로 하여금 캐나다 특유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 캘거리 (Calgary)

캘거리는 밴쿠버에서 로키산맥을 넘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대도시이다. 또한 캐나다의 중부 대평원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하다. 서쪽에는 로키의 웅대한 모습이, 동쪽에는 광대한 프레이리(대초원)가 있는 캘거리는 캐나다의 역동하는 자연을 양 팔에 안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캘거리의 별명은 '소의 도시' 인데 알버타 주에서 생산되는 소로 요리된 스테이크가 캘거리의 명물요리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캘거리 스탬피드 (Calgary Stampede)' 축제 기간에는 세계 도처에서 관광객이 찾아온다.

[주요 관광명소]

- 캘거리 타워 (Calgary Tower): 다운타운의 중심에 위치한 190.8m 높이의 관광타워이다. 전망대에서는 캘거리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며 로키산맥과 캘거리 주변으로 넓게 펼쳐진 대평원을 바라볼 수 있다.
- 스티븐 애비뉴 몰 (Stephen Avenue Mall): 시청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8번 애비뉴와 3번 스트리트가 만나는 부근까지 조성된 일대의 상업지역이다. 차량이 통제되며 거리 양 옆으로 음식점과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 개척시대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인상적이다.

□ 에드먼턴 (Edmonton)

알버타주의 주도인 에드먼턴은 유전을 바탕으로 하여 캐나다의 '오일 캐피탈'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도시이다. 이 도시의 자랑거리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쇼핑센터로 천지가 눈으로 뒤덮인 엄동설한의 겨울에도 쾌적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유원지와 인공호수를 유리의 돔으로 덮은 거대한 몰을 갖추고 있다. 또한 비교적 짧은 여름을 실컷 즐기려는 듯 여름에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페스티벌 시티'로서도 알려져 있다.

[주요 관광명소]

- 알버타 주의사당 (Alberta Legislation Building): 1912년에 건축된 그리스 양식의 건물로 도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드먼턴 성채 유적지에 건설되었으며, 알버타 주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과 도서관, 본회의장 등을 갖추고 있다.
- 포트 에드먼턴 공원 (Fort Edmonton Park): 다운타운 남서쪽에 위치한 역사공원으로 18세기 중순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5. 애틀란틱 캐나다 (Atlantic Canada)

캐나다 동쪽의 대서양에 면한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NF), 뉴브른즈윅 (NB), 노바스코시아 (NS),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P.E.I.)의 네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영국과 프랑스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역이다. 특히 P.E.I.는 '빨강머리 앤'의 섬으로서 네 주 중에서 관광지로서 가장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이들 네 주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그리고 개척 당시의 전통과 분위기를 지금까지 전해주는 목조 가옥 마을 등을 보유, 그 곳을 찾는 이로 하여금 웅대한 로키의 자연이나 세련된 토론토, 유럽풍의 몬트리올 등과는 또 다른 캐나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자료원: 캐나다 정부, 2005.6.28 현재)

20.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유용한 현지어 표현 >

1. 공용어

캐나다는 공식 언어로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 공항과 버스터미널의 교통 표지물에는 물론 각종 안내문 등에도 영어와 불어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영어와 불어가 병기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퀘벡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영어가 실질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퀘벡주는 프랑스계 주민들의 거주 지역으로 불어가 주로 사용되며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퀘벡주에서 쓰이는 불어는 프랑스에서 쓰이는 불어와는 억양 면에서 차이가 난다. 여행이나 출장을 목적으로 퀘벡주를 방문할 경우 숫자, 날짜 등 간단한 불어회화를 미리 익히고 가는 것이 좋다.

캐나다인의 영어 억양은 상당히 표준적(neutral)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 뉴스 캐스터로 활약하는 캐나다인도 다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미국과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영어는 미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영국식 철자법을 따르고 있는 몇몇 단어들도 존재한다.

예) 항구: harbor (미) = harbour (영) = harbour (캐)
 색: color(미) = colour(영) = colour(캐)
 중간: center (미) = centre (영) = centre (캐)

2. 일상회화 (영어 및 불어)

안녕하세요.	Hello. / Hi. Bonjour. / Salut. [봉쥬르 / 살뤼]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Comment allez-vous? [꼬망 딸레부]
안녕히 계세요	Good bye. / See you. Au revoir. / A bientôt. [오 브와 / 아 비엥또]
예,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so much). Oui, Merci (beaucoup) [위, 메르시 (부꾸)]
천만에요.	You are welcome. Je vous en prie.[주 부장 프리] / De rien.[드 리엥]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Can you speak English? Parlez-vous l'anglais? [빠를레 부 랑글레]
저는 불어를 할 수 없습니다.	I can't speak French. Je ne parle pas la francais [즈 네 팔 빠 라 프랑세]

모르겠습니다.	I don't understand. Je ne comprends pas. [주 느 콩프랑 빠]
미안합니다.	I'm sorry. Pardon. [빠르동]
실례합니다.	Excuse me. Excusez-moi. [엑스퀴즈 무아]
괜찮습니다.	That's all right. / That's OK. D'accord. [다꼬르]
누구/언제/어디	Who / When / Where Qui / Quand / Ou [끼 / 깡 / 우]
이것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Qu'est-ce que c'est? [게스 꼬 세]
그것을 주세요.	I'll take it. Je le prends. [즈 르 프랑]
아주 좋았습니다.	It was very good. C'est tres bien [세 트레 비엥]
가격이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C'est combien? [세 콤비엥?]
지금 몇 시입니까?	What time is it now? Quelle heure est-il? [퀄 러 에 띵?]
지하철역이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subway station? Oú est le metro? [우 에 르 메트로?]
택시 승강장이 어디입니까?	Where is the taxi stand? Oú sont les taxis? [우 송 레 택시?]

3. 월

1월	January	Janvier [장비에]
2월	February	Fevrier [페브리에]
3월	March	Mars [마르스]
4월	April	Avril [아브릴]
5월	May	Mai [메]
6월	June	Juin [쥐엥]
7월	July	Juillet [주이에]
8월	August	Aout [우(우뜨)]
9월	September	Septembre [셉탕브르]

10월	October	Octobre [옥토브르]
11월	November	Novembre [노방브르]
12월	December	Decembre [데상브르]

4. 요일

일요일	Sunday	Dimanche [디망슈]
월요일	Monday	Lundi [뤽디]
화요일	Tuesday	Mardi [마르디]
수요일	Wednesday	Mercredi [머크르디]
목요일	Thursday	Jeudi [즈디]
금요일	Friday	Vendredi [벵드르디]
토요일	Saturday	Samedi [사메디]

5. 방향

북	North	Nord (노드)
남	South	Sud (수드)
동	East	Est (에스뜨)
서	West	Ouest (웨스뜨)

21. 국토

< 국토 >

1. 위치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반부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 북대서양, 서쪽으로는 북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미국의 북부와 접하고 있다.

2. 면적

997만 km² (세계 2위, 한반도의 46배, 남한 면적의 101배)

- 육지면적: 922만 km²

- 내수면적: 75만 km²

캐나다는 북미대륙의 북쪽 3분의 1을 차지하는 997만 km²의 광대한 국토를 가진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나라이다. 이는 미국의 936만 km², 유럽의 494만 km²를 훨씬 능가하며 한반도 면적의 46배, 남한의 101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그러나 산악지대나 한대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은 이유로 넓은 영토의 크기에 비해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면적은 매우 적으며 전체 영토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내수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7.6%인 75만 km²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의 지형이 대체적으로 북극해를 향해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피요르드식 해안과 빙하호가 많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해안선 총연장은 세계 최장으로 본토만 28,600km, 섬들을 포함하면 95,500km에 이른다.

3. 지형

캐나다는 북쪽으로는 엘즈미어 (Ellesmere)섬의 컬럼비아 岬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리 호 (Erie Lake)의 미도르 섬까지를 국토로 하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은 나라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동쪽으로 대서양·데이비스 해협 및 배핀 만, 서쪽으로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와 태평양에 접해 있으며 북쪽은 북극해와 붙어 있고 남쪽은 미국 본토의 12개 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알래스카 국경선 근처에서 동쪽인 배핀 제도 (Baffin Island)까지의 북극해상의 섬들은 캐나다에 속해 있다.

캐나다는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으나 지질구조나 이를 배경으로 하는 지형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서부에는 태평양을 따라 3,000~6,000m의 고봉이 많은 로키산맥이 뻗어 있으며 중앙부에는 대평원을 비롯하여 위니펙 호 (Winnipeg Lake) 등 많은 호수와 늪이 있고, 동부에는 래브라도 반도가 대서양으로 뻗어 있는데 지엠즈 만, 허드슨 만 (Hudson Bay)을 포함한다.

남부의 5대호 지방과 세인트 로렌스 강 유역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허드슨 만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분지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대서양 연안의 여러 섬들과 퀘벡주 동남부를 포함한 애팔래치아 지역, 퀘벡주 북서부 및 온타리오주를 포함한 5대호·세인트 로렌스 지역, 허드슨 만을 끼고 캐나다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캐나다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서쪽의 광대한 내륙평원, 로키산맥을 주체로 하는 코르디에라 지역 및 북극지역의 6개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4. 부존자원

□ 지하자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하자원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심한 추위로 땅이 얼어붙은 지역에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개발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하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광물자원은 캐나다가 도시형 공업경제로 이행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캐나다는 니켈·아연의 생산량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석면, 우라늄, 몰리브덴, 석유, 구리, 철광, 황, 석회, 은, 카드뮴, 코발트, 금, 마그네슘, 백금, 납 및 천연가스 등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이다.

아연과 납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동부 킴벌리가 주산지이다. 백금은 온타리오주의 서드베리 광산이 주산지인데 이곳에서의 생산량이 전세계 생산량의 70%에 달해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우라늄은 그레이트 베어 호안의 포트레이디엄 광산, 그레이트

슬레이브호 북연안의 옐로나이프 광산, 애서배스카 호안의 비버로지 광산과 에스광산이 널리 알려진 세계적 대산지이다. 금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유콘 준주의 클론다이크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가 주산지이다. 구리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가 주산지로 전체의 80% 이상을 생산한다. 철광석 또한 세계 유수의 산지인 유콘 준주·래브라도 지방·뉴펀들랜드 섬·벨섬 등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석유는 미국,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나 1947년 이후 알버타주의 에드먼턴근처 지역과 사스케추완주, 매니토바주에서 석유 채굴이 시작되어 세계적인 석유 자원국이 되었으며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는 원유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며, 원유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이어 2004년 전체 수출의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원유는 주로 알버타주와 뉴펀들랜드의 해상 유전에서 생산되며 석탄은 알버타주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굴지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 생물자원

캐나다의 농업과 목재생산은 1950년대까지 캐나다 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다. 5대호에서부터 로키산맥에 이르는 기름지고 평탄한 중부 대평원지역은 기름진 곡창지대이며 에리호와 휴론호 사이에 있는 온타리오주 최남단 지역에서는 담배와 과일이 많이 생산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담배는 양질의 버지니아 품종으로 영국으로 많이 수출된다.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은 날씨가 매우 추워 작물재배나 가축사육에는 부적합하고 전국토의 불과 5%에 해당하는 지역만이 작물재배에 적합하다. 대신 캐나다 영토의 1/3이상이 삼림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중 일부가 세계적인 침엽수림대, 즉 타이가로서 풍부한 임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침엽수림대는 캐나다 북부를 가로질러 분포하는데 여름철에 강이 녹으면 나무를 베어 수로를 통해 운반한다. 캐나다의 목재 생산량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임업이나 농업에 비하여 캐나다의 동물이나 수산자원은 다소 빈약한 편이지만 연어, 송어, 참치가 비교적 많이 잡히는 편이다. 1977년 캐나다 정부는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200마일의 어로구역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대서양 연안의 어종 멸종 위기에 따라 게, 대구 등에 대한 조업 중지령이 내려져 있어 향후 캐나다 수산업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그 외에도 소, 돼지, 양의 순으로 가축의 생산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에너지자원

캐나다는 에너지 자원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캐나다 내에 수력발전 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 모두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원들은 주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북극권과 대서양의 대륙붕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 여부 결정과정에서도 높은 수송비가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력발전은 과거 캐나다의 전력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높은 송전비용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점차 원자력이나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캐나다에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등이 상당량 매장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들 자원 중 많은 양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미국 내 시장가격

및 수입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다. 현재 캐나다 중서부의 알버타주 일대에는 대량의 오일샌드 (모래와 중질유의 혼합물)가 매장되어 있어 원유 추출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출한 원유의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도 진행 중에 있다.

22. 국민

< 국민 >

1. 인구

캐나다의 인구는 2005년 1월 기준 32,078,819명으로 2006년에는 32,229,000명, 2011년에는 33,362,000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밀도는 2000년 현재 1km²당 약3.1명으로 극히 희박한 편이다. 기후의 특성상 총 인구의 90%가 미국과의 국경선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동부지역의 5대호 부근 및 세인트로렌스강 부근은 인구밀집지역으로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인근에 총 인구의 62%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통계]

인구성장률	4.8% (1996-2001기준)
출생률	천명당 10.4 (2003.7-2004.6 기준)
사망률	천명당 7.3 (2003.7-2004.6 기준)
유아사망률	출생아 천명당 5.2 (2001기준)
성별 분포	남자 49.5%, 여자 50.5% (2004 기준)
연령별 분포	15세 미만: 17.9% 15-24세: 13.6% 25-44세: 32.0% 45-64세: 25.6% 65세 이상: 10.9 (2004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5 현재 최신자료)

□ 인구 분포

캐나다 인구는 미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남부 약120만km²의 지역에 집중, 전 인구의 90%가 국토의 약12%에서 살고 있다. 이들 중 3/4 가량이 강수량이 많은 동부 평야 지역에 거주하며 나머지는 건조하고 산이 많은 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한편, 남부지역 역시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5개의 인구밀집지역으로 구분되며, 이들 인구밀집 지역은 미국의 여러 대도시들과 근접하여 있다.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은 보스턴과, 오타와에서 세인트로렌스 강 인근 지역은 뉴욕과, 5대호 연안 지역은 버팔로, 디트로이트, 시카고와, 중부의 평원지역은 미네아폴리스와, 태평양 연안지역은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와 연결된다. 이로 인해 캐나다 내에는 미국에서 이주한 주민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역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할 수 있다.

2. 종족

□ 인종 구성

영국계 28%, 프랑스계 23%, 기타 유럽국가 출신 15%, 인디언 및 에스키모 2%, 기타 아시아인, 흑인, 아랍계 6%, 기타 혼혈 26%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별 분포

지역에 따라 인종의 분포도가 다양한데 뉴펀들랜드주에서는 영국계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퀘벡주의 경우 프랑스계가 80% 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서부의 마니토바주, 사스카치완주, 알버타주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국가 출신들이 주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뉴브런즈윅주에 새로운 프랑스 문화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프랑스계 주민의 일부는 20세기 초반부터 메인 주를 비롯한 미국 뉴잉글랜드 지방의 주로 이주하고 있다.

□ 이민

캐나다는 소수의 원주민과 세계 각국에서 이민한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다. 초기 이민자들은 인종, 국적, 종교, 문화가 유사한 민족 별로 사회를 이루어 살았지만 그 후 다수 민족인 영국계나 프랑스계의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영국계와 프랑스계를 제외한 이민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구대륙 문화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영국계 캐나다 문화를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다수 민족의 대표격인 영국계는 전 영토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영위하고 있으며, 퀘벡주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계는 현재까지 일부에서 캐나다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을 만큼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독일계, 이탈리아계 주민들은 오랜 이민 역사를 발판으로 대도시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계 중국인들의 투자이민이 급증, 또 하나의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계 주민의 경우 아직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아 토론토, 밴쿠버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형성이 미약한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서남아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의 이민자 커뮤니티도 꾸준한 성장추세를 기록 중에 있다.

3. 언어

공용어 및 상용어로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 구사능력만 보유한다면 퀘벡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의사 소통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문맹률은 매우 높아 1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민족의 이민을 장기간 장려해 온 관계로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외국어가 많은 이민자들의 제2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 모국어 사용비율: 영어 59%, 불어 23%, 기타 18%

4. 종교

캐나다인의 종교분포는 카톨릭 44%, 기독교 29%, 그리스정교 1.6%, 유대교 1.1%, 기타 7.8%, 무교 16.5%로 구성되어있다.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1880년부터 1945년까지의 산업화, 도시화에 이은 이민의 증가로 사실상 종교의 다원화가 이루어진 편이다. 비록 인구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참여도가 상호 갈등을 초래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비교적 평온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국민성

캐나다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여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독특한 캐나다만의 국민성을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인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보수적이지만 질서 의식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일을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는 성향이 짙어 성격이 급한 편인 한국인들은 다소 답답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시간관념이 철저하고 서로 주고 받는 한계가 분명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이 기본이 되어 있는 반면 융통성은 매우 적은 편이다.

캐나다인은 영국계, 프랑스계를 불문하고 대부분 우호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를 방문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여성을 위해 문을 여는 에티켓을 지켜야 하며 또한 여성에게 필요 이상으로 허물없이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도 해야 한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에 대한 답례 역시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사탕발림 세일즈」 방식을 앞세워 접근하는 것에는 경계심을 품기도 한다.

캐나다인들은 극히 현실적인 편이며 그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을 자랑스러워 하며 애국심이 강하고 법률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다. 미국과의 유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인들은 자신은 미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퀘벡 주민들은 그들이 대화하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유산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캐나다로 가장 먼저 이주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동시에 사고방식이나 문화적인 취향 면에서는 순수 북미인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부지역 주민들이 대체로 솔직하고 친절한 편인데 비해 동부 온타리오 주민들은 조심스러우며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긴다. 이는 대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생활의 변화 속도도 빠른 동부와 여유로운 생활을 중시하는 서부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6. 가족생활

캐나다 사회에서 가족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중시되고 있다.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이면 모두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고 소득 및 지출을 남녀 모두가 책임지고 있기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평균 가족 구성원 수는 3.5명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가족 내의 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가정의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의견이 끼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방국가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결혼의 중요도는 예전보다 약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이외의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평균 결혼 연령은 남성의 경우 28세, 여성이 26세 정도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와 동거의 형식을 빌어 가정을 이루는 이들의 수 역시 적지 않다. 캐나다의 이혼율은 무려 50%에 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 캐나다 사회의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7. 문화생활

□ 캐나다 문화

미국과 캐나다 모두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지만, 미국이 인종의 도가니로 일컬어지는데 반해 캐나다는 인종의 모자이크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캐나다가 2개 국어 병용의 테두리 안에서 각기 다른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의 융합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캐나다 독자적인 특색 있는 문화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민자들은 고국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캐나다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모자이크의 조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은 인디언과 에스키모를 위한 학교를 따로 설치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장려하고 있는 정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 존중은 미국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캐나다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남쪽에 인접하고 있는 거대한 이웃 나라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캐나다에는 미국의 TV, 라디오, 영화, 출판물 등의 문화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입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미국문화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지만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캐나다인들이 그들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캐나다에서 계속 지켜 나가려는 의지로 미국과의 문화적 통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인들은 각종 문화, 예술 관련 행사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은 편으로 특히 연극,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등을 포함한 공연 작품들은 토론토와 몬트리올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문화, 예술 행사는 방문객들에게도 높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캐나다 방문 시 볼 만한 문화, 예술 행사를 문의하여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캐나다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좋아하는 운동

유달리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캐나다인들은 여름에는 골프, 각종 수상 스포츠, 테니스, 야구, 낚시 및 피크닉 등을 즐기며 겨울에는 스키, 아이스하키 등에 열중한다. 가장 즐겨 시청하는 프로스포츠로는 겨울에는 아이스하키, 여름에는 야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Toronto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프로야구단인 Blue Jays팀은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는 등 최고의 실력을 과시한 바 있으며

아이스하키팀인 Maple Leafs도 북미 하키리그의 4강 대열에 드는 강팀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아이스하키는 캐나다의 국기로 여겨질 만큼 국민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Raptors'라 명명된 토론토소속 프로농구팀이 창설되어 1995년부터 미국 NBA (프로 농구연맹)시리즈에 출전하고 있다.

23. 역사

< 역사 >

Canada라는 국가명은 캐나다 원주민중의 하나인 이로쿠어 (Iroquois) 족이 사용하던 Kanata에서 파생된 단어로 마을 또는 정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역사는 3천여 년 전 인디언이나 이로쿠어 족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며 광활하고 풍요로운 캐나다 땅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10세기경 바이킹들이 캐나다를 발견, 동부 지역으로 들어오면서부터이다. 그 후로 이탈리아의 존 가보트가 1497년 동해안의 케이프 브레턴 섬을 발견하고 다음 해에 덴마크인이 뉴펀들랜드를 발견함으로써 유럽인들의 탐험에 의한 근대와 현대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다. 이후 450년간 여러 번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으나 이를 슬기로이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 캐나다 역사의 출발

약 3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과 시베리아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었던 시기, 캐나다 최초의 원주민인 아시아계 인디언들은 그 땅을 건너와 북아메리카에 이주하여 수렵, 농경, 어로생활을 영위하며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에스키모인들이 아시아계 인디언들의 뒤를 따라 현재의 캐나다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 캐나다에는 약 1만 5천명에 불과한 에스키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정착으로 인디언은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현재 캐나다 내에는 인디언과 메티스라고 불리는 인디언과 백인의 혼혈민족이 25만 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New France의 건설

그뒤 프랑스인이 본격적인 탐험에 착수, 1593년 프랑스인 자크 카르티에가 세인트로렌스 만에 도착하여 이곳을 캐나다라고 명명하였다. 1605년 노바스코샤에 소수의 정착이 시작 되었으며 17세기 초까지는 소수의 프랑스인이 이주하는 정도였으나 1603년 노바스코시아에 도시가 건설되고 1608년 프랑스인들에 의해 퀘벡 요새가 건설되면서 5대호 지방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이민자들은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북미 대륙의 남서부로 진출하며 'New France'라고 불리는 프랑스 식민 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당시의 탐험가들은 모험심에 사로잡혀 신 국가의 건설과 그에 수반하는 부의 획득을 위해, 혹은 포교를 위한 신앙심에 불타서 캐나다를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에서도 대서양 어장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대구와 같은 물고기나 내륙지방에서 사는 동물인 비버의 모피무역을 통한 부의 획득이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한편, 1600년대 초기에 많은 영국사람들이 뉴프랑스 남쪽에 상륙, 모피무역을 둘러싸고 프랑스인들과 자주 마찰을 빚곤 하였는데, 1629년에는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이 지키고 있던 퀘벡을 한동안 점령했으나 1632년 프랑스인에 의해 재탈환되었다.

1663년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는 이 지방을 프랑스의 직할식민지로 선포하고 많은 군대를 파견, 이로쿼이 인디언과 전투를 하게 한 후 행정관을 보내 이 지방을 통솔하게 하였다. 뉴프랑스의 인구는 1666년 약 3,000명, 1673년 6,700명, 1688년에는 10,000명에 달하였으며 그 국경선도 서부와 남부로 확장되어 남쪽으로는 미시시피강과 아칸소강이 합류하는 곳까지 이르렀다.

□ 영국, 프랑스 간의 전투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영국과 프랑스의 충돌은 북미지역의 식민지 건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랑스 이민의 급증에 따라 영국계 주민과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17세기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 계속된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식민지 전쟁 끝에 1713년 Utrecht 조약이 체결되어 프랑스가 영국에게 노바스코샤와 뉴펀들랜드, 허드슨 만 남쪽지역 전체를 양도하게 되었다. 또한 1756년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발발한 전쟁은 176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군은 퀘벡과 몬트리얼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 결과 파리조약이 체결,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캐나다 내의 식민지(뉴프랑스)는 모두 영국령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의 국경이 정해지면서 캐나다의 국토가 확정되었다. 이 무렵 영국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는 3,500명 이상의 영국 왕당파 주민들이 영국에서 이주해 왔으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영국계 미국인들도 영국 본국에 충성심을 발휘하고자 캐나다로 이주하여 왔다.

□ 1837년의 봉기

1830년대에는 Upper Canada (현재 온타리오주)와 Lower Canada (현재의 퀘벡주)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본국 정부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식민지의 모든 행정이 영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의사는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1837년 Lower Canada 폭동이 발발하였지만 곧 진압되었고, 이는 Upper Canada 지역까지 파급, 반란이 일어났으나 이 역시 실패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폭동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1838년 빅토리아 여왕이 반란의 원인규명을 위해 더한 경을 캐나다에 파견하였다. 조사 후 더한 경은, Upper Canada와 Lower Canada가 다시 하나로 합병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며 캐나다 국내 행정은 식민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결과, 1840년 영국 정부는 'Act of Union'을 의결하고 1841년 이를 공포함으로써 Upper Canada와 Lower Canada가 연합, Province of Canada로 통일되었다.

□ 캐나다 연방 탄생

1867년 영국 본국의 국회가 영국령 아메리카 조례 (British North American Act; BNA Act)를 의결함에 따라 Upper Canada, Lower Canada, 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의 4개 식민지를 하나로 하는 캐나다연방 (Dominion of Canada)이 탄생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캐나다 헌법의 모체가 되고 있다. 연방제도는 영국의 의회 형태를 모방,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과 임명으로 구성되는 상원을 두고 하원에서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의 당수가 연방 정부를 통솔하는 수상이 되는 정치체도로 외교권은 영국 정부가 장악하며 영국의 왕이 연방의 수반이 되는 것이었다. 1870년 캐나다 연방 정부는 서부개척지역인 루퍼스랜드 (1760년 영국의 왕인 찰스 2세가 왕자인 루퍼트에 캐나다를 개척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붙여진 명칭으로 영국의 공인 척석회사인 허드슨 베이사의 사유지인 지역을 캐나다 정부가 사들임)를 소유하게 되었고 영국으로부터 노스웨스트 준주까지 양도받게 되었다. 같은 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의 5번째주로서 마니토바를 영입하게 되었고 1871년에는 브리티시컬럼비아와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가 각각 6, 7번째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가 되었다. 1905년에는 알버타와 사스카치완도 연방정부에 동참하였고 1898-1908년 무렵 골드러쉬가 기세를 더하자 유콘 준주 또한 연방정부의 일부가 되었다.

□ 완전한 독립국

대영제국에 의해 진행되어 오던 캐나다의 국제 외교는 차차 마찰을 빚기 시작하여,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외교문제를 독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게 되었다. 1922년 영국과 터키와의 전쟁 당시 캐나다 킹 수상은 영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하였고 1923년 미국과의 어업 협정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관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26년 킹 수상은 영국 런던에서 영국정부 및 의회 지도자와 회동하여 캐나다의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31년 캐나다가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원으로 남아 있는 조건 하에 완전한 독립국(외교, 군사 포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 제 2차 세계대전

캐나다는 1939년 9월 10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일본에는 1941년 12월 8일 선전포고를 하며 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 총 1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이 참전하여 9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었다. 전쟁 후 캐나다는 기존 1차 산업국으로부터 세계의 선진 공업국으로 변모하였고 1945-1956년 사이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독일, 이태리,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에서 이주해 왔다. 1945년에는 UN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1949년에는 NATO를 주도적으로 구성한 멤버가 되었고, 같은 해 뉴펀들랜드가 열 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됨으로써 지금의 캐나다 연방이 형성되었다. 한편, 캐나다는 약 2만2천명의 군대를 한국전쟁(1950-53)에 파견한 바 있다.

□ 1960년대의 도전

1960년대의 캐나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률은 11% 에 달하였으며 프랑스계 주민들로 이루어진 퀘벡주는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는 해외무역에 전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 중국과 기타 공산주의 국가에 다량의 밀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캐나다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의 촉진 또한 시도하였다. 1963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집권함에 따라 수상이 된 피어슨은 1964-5년 국민연금의 지불계획 및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마련하였고 1965년 단풍잎을 상징으로 하는 지금의 캐나다 국기를 제정하였다. 1967년에는 캐나다 연방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국제박람회인 Expo67이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1968년 피어슨이 사임하고 프랑스계인 트루도가 수상으로 선출, 퀘벡 분리주의를 약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트루도는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 1969년 공용언어법(Official Language Act)를 의회에 상정, 통과시켰는데 10% 이상의 불어 사용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 기관은 영어와 불어를 대등하게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 1970-80년대 캐나다

캐나다는 서방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과 소련에 접근하여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국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1970년대 초기 캐나다 경제는 노동력의 증가에 따르지 못할 정도로 침체되었고 인플레이가 극심하였으나 천연자원이 풍부한 알버타주, 사스카치완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지역은 석유, 천연 가스등의 대량 생산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1980년대 초반 캐나다 경제는 또 다시 악화되어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으나 멀로니가 수상으로 선출된 후, 1985년부터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1988년 4월에는 실업률이 7.7%까지 하락하였다. 1981년에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캐나다의 헌법개정을 위한 영국의회의 승인절차를 철폐하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1987년 퀘벡주가 동 헌법 개정안을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멀로니 수상과 10개 주 수상들이 미치 레이크에 회동, 퀘벡주를 특수사회로 인정하고 연방정부의 새로운 전국적 사업계획에 대한 주정부의 참여 거부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 초안에 합의하였으나 뉴펀들랜드주와 마니토바주 의회에서 비준이 좌절되었다.

□ 1990년대 - 2000년대 캐나다

1992년 10월 정부는 미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 멀로니 정부의 인기도가 급락하여 1993년 2월 수상의 사임이 발표되었다. 이어 6월 캠벨이 새 수상으로 선출되었으나 10월 총선에서 자유당에 참패함으로써 보수당 정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는 1988년 미국-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1993년 6월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 1994년 12월 WTO 시행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다. 1999년 4월에는 노스웨스트 준주에서 분리된 누나부트 준주가 신규 설립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국력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전세계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이민자 유입이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 2000년대에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각국에서의 이민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2005년 6월 말에는 그 동안 논란이 지속되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상원의 최종승인을 받은 후에 캐나다는 세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 역사

1000	뉴펀들랜드 지방에 바이킹 상륙
1497	이탈리아인 카보트 캐나다 동부해안 발견
1534	프랑스의 카르티에, 두번째 탐험에서 세인트로렌스 하구를 발견
1583	영국의 길버트가 뉴펀들랜드를 최초의 영국 식민지로 만듦
1604	프랑스의 샹플랭이 노바스코샤를 식민지로 삼음.
1608	샹플랭이 이끄는 프랑스인, 퀘벡 진출
1615	샹플랭, 휴런 호수지방을 탐험.
1627	프랑스, '뉴 프랑스' 설립
1628	영국, 노바스코샤를 식민지화
1642	프랑스인, 몬트리얼 발견
1759	영국군 퀘벡 함락, 프랑스령 끝남.
1763	영/불 간의 전쟁에서 영국의 승리로 파리조약에 의거, 캐나다 전체가 영국의 식민지화
1778	세인트 폴 브리티시컬럼비아 해안 탐사
1791	영국 의회 캐나다를 상하로 양분, Upper Canada(온타리오) 성립
1812	1812년 전쟁, 미국이 캐나다와 영국에 선전포고
1832	캐나다 최초의 철도 설립
1837	Upper and Lower Canada 반란

1839	반란진압에 파견된 Durham경이 캐나다의 통일과 캐나다의 치적 독립을 영국정부에 권고
1840	연합법(캐나다법)에 따른 상하 캐나다 통일 실현
1849	빅토리아 브리티시컬럼비아 성립, 자치를 인정받음
1867	오타와를 수도로 연방성립, 영국왕정 끝남
1870	Louis Riel 반란, 마니토바주 성립
1874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RCMP) 창설
1885	캐나다 퍼시픽 철도(CP) 건설
1885	노스웨스트 반란
1895	최초 국립공원 지정 - 밴프
1931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따라 영연방내의 독립국으로 승격
1949	10개주와 2개준주(TERRITORIES)의 연방국가 성립
1951	정식국명을 캐나다연방(DOMINION OF CANADA)으로 정함.
1962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 완공
1976	몬트리얼 하계 올림픽 개최
1982	캐나다 연방헌법(THE CONSTITUTION ACT, 1982년) 선포
1988	캘거리 동계 올림픽 개최
1988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989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
1990	Meech Lake 비준 실패
1992.8	북미자유무역협정 타결
1992.10	통일헌법개정안(Charlottetown Agreement) 비준 실패
1993.2	멀로니 수상 사임발표
1993.6	캠벨 국방장관이 수상으로 당선
1993.10	총선에서 자유당이 압승
1993.11	자유당 당수 크레티엔 제20대 수상에 취임
1994.12	UR협정 공식 타결
1994.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공식 발효
1994.12	UR협정 이행법안 의회 통과
1995.6	G 7 헬리팩스 정상회담 개최
1995.10	퀘벡주 독립투표 부결
1995.12	퀘벡주 개헌 비토권 부여 의회 발표
1997.6	연방총선에서 자유당 과반수의석 확보하여 재집권 성공
1998.2	퀘벡 제외 9개 주, 사회봉사 프로그램 협력 의정서 서명
1999.4	누나붓 준주 설립
2000.3	국민투표 어문의 명료성을 골자로 하는 Clarity Act 승인
2002.12	교토의정서에 크레티엔 수상 준수 서명
2003.12	크레티엔 수상 사임. 후임으로 마틴 前재무장관이 수상으로 취임
2004.10	교토의정서 공식 체결, 의정서 준수 위한 대책마련 개시
2005.2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
2005.6	연방 하원, 동성결혼 합법화 통과

(자료원: 캐나다 정부, 2005.6.29 현재)

24. 국가조직

< 국가 조직 >

1. 국가 형태

캐나다는 연방제에 바탕을 둔 입헌군주국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이다. 각 주의 정부와 연방정부라고 불리는 국가의 정부가 동시에 존재하는 2중의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국가조직과 흡사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캐나다는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2세를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력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공화제와는 달리 국민의 통일적 상징으로서의 군주(영국 여왕, 총독이 여왕을 대표)를 받드는 점이 캐나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주는 상징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연방수상이 행정적 수반으로서 전권을 행하는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다.

□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로 구성

구 분	주 명	수 도 명	면적비(%)	인구비(%)
대서양	New Foundland	St. John' s	4.1	1.6
	Prince Edward Island	Charlottetown	0.1	0.43
	Nova Scotia	Halifax	0.6	2.9
	New Brunswick	Fredericton	0.7	2.3
중 부	Quebec	Quebec	15.5	23.6
	Ontario	Toronto	10.7	38.8
서 부	Manitoba	Winnipeg	6.5	3.7
	Saskatchewan	Regina	6.5	3.1
	Alberta	Edmonton	6.6	10.0
	British Columbia	Victoria	9.5	13.2
북 부	Northwest Territories	Yellowknife	14.4	0.1
	Yukon Territories	Whitehorse	4.8	0.14
	Nunavut	Iqualuit	20.0	0.09

주: 인구비(%)는 2005년 1월 1일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7)

2. 행정부

□ 여왕, Queen

법률안의 재가(裁可), 의회소집 및 해산, 외교사절의 접대 등의 행정권을 내각의 조언을 받아 행사한다.

□ 총독, Governor General

수상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며,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1952년 이래 캐나다인이 임명되도록 제정되었기에 총독의 지위는 더욱

명목적인 것이 되었다. 영국 정부와 캐나다 연방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소집, 휴회, 의회해산, 법안에 대한 동의 등 기타 행정적인 권한을 갖는다.

□ 내각, Cabinet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수상을 수반(首班)으로 한다. 내각구성 절차에 관한 헌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내각의 각료는 주로 하원의원 중에서 임명되고 상원의원 중에서도 일부 임명이 가능하며, 하원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한다. 행정부 각 부서의 장이 되는 내각은 행정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회계규정이나 행정조항 등의 법안을 가결할 권한을 갖는다. 4개의 위원회 (사회정화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주일에 1회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수상 이외에 22명의 각료가 있다.

3. 사법부

□ 헌법

캐나다의 헌법은 관습법 체계이므로 여러 가지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영국 연방의 일부 법률 조항들이 넓은 범위의 캐나다 헌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영국 연방 의회법 중 왕위승계, 총독, 상원, 하원, 선거구, 선거 및 왕의 호칭에 관한 조항들을 캐나다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한 예이다.

법체계는 대부분 영미법을 따르고 있으나 퀘벡주의 법체계만은 프랑스의 시민법 체계를 토대로 했다.

□ 조직

크게 연방 법원과 주 법원으로 분류된다. 연방 최고재판소(Supreme Court of Canada)를 정점으로 연방 재판소(Federal Court of Canada), 주 최고재판소(Superior Court), 각 지방(County)의 재판소 및 하급 재판소(가정재판소)의 순서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형의 체계로 되어 있다. 최종심을 다루는 연방 최고재판소(Ottawa소재)는 연방 재판소 및 각 재판소의 민사, 형사 쌍방의 판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헌법 문제와 연방법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한다.

연방 재판소는 국가에 관련된 소, 해사사건, 세금문제, 연방 정부 기관에 관한 상소, 주간의 사건 등을 취급한다. 주 재판소에는 주 공소재판소와 고등재판소가 있다. 주 법원은 삼심제도에 따라 최고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다. 주의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4. 의회

캐나다의 입법권은 캐나다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의회는 영국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과 상원 (Senate), 하원 (House of Commons)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은 상징적인 존재이며 실질적인 입법권은 상·하원이 수행한다.

캐나다 의회는 국군통수, 무역과 상업, 은행, 통화와 파산, 우편, 어업, 특허권, 저작권, 인구조사, 조세, 교통, 통신 등과 관련된 법을 통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 밖에도 주 의회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등을 위한 입법권을 가진다. 모든 법안은 상·하원의 동의와 총독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상·하원은 모두 법안의 발의권을 가지나 상원에는 공공 지출이나 과세에 따르는 법안의 발의권은 없다.

상원의 의석수는 105석으로, 수상의 조언에 의해 주 별로 할당되어 총독이 임명한다. 임기는 종래 종신이었으나 1965년에 75세로 개정되었다. 상원의원의 임명 시 각 주의 이익을 옹호하도록 각 주 출신의원의 의석수가 정해져 있다. 재정에 관한 법안의 결의권은 하원이 갖지만 상원은 성문법상 하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실제로 정부에 제출되는 법안은 통상 하원에서 심의되고 있으며 상원의 입법활동은 극히 저조하다. 상원은 주의 이익 보호, 하원의 착오 시정 및 과격한 정책의 억제, 자본가 및 보수층 이익의 의회 반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상 하원은 선거에 의해 국민의 대표를 구현하고 예산과 세법상의 결의권을 갖는 등 상원에 우선하는 권한을 가지며, 실제 입법과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하원의 우월적인 지위는 국민을 대표하며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원은 내각의 수반을 지명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임 등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후 제1당이 된 당의 당수는 내각의 수반에 지명되며 총독으로부터 내각을 조직할 권리를 위촉 받는다. 하원은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할당되며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되는 30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성문법상 5년이지만 관습에 의해 4년부터 4년 반 사이에서 해산하는 것이 통례이다. 총독의 승인을 얻어 임기 내에도 해산할 수 있다.

25. 정치제도

< 정치제도 >

1. 선거제도

캐나다 연방의회의 의원선거는 상원의 경우에는 임명제로 되어있고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정해져 있다. 단원제인 주의회의 경우도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되어 있다. 선거제도는 의회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선거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우되며 의회의 세력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상원의원 선출

캐나다 상원의원 정수는 105명으로 모든 상원의원은 수상과 내각의 추천 하에 총독이 임명한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대서양 연안지역 및 서부지역에서 각각 24명, 뉴펀들랜드주에서 6명, 3개의 준주에서 1명의 상원의원이 선임된다. 1965년 6월 2일 이전에 취임한 상원의원들은 종신으로 그 직을 보유할 자격을 갖는 한편 그날 이후 취임한 상원의원은 75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 하원의원 선거

○ 선거권

1970년의 선거법에 의해 연방의회 선거권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막론하고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출정하는 국민은 당연히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근거에서 모든 군인은 연령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관리관, 재판관, 형무소나 정신이상자 수용시설에 있는 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피선거권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을 가진다. 입후보자는 선거구 내에서 250명의 지명을 받아야 하며, 200달러의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 공탁금은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당선자의 반수의 표를 얻은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정당에 소속될 필요는 없으나 개인이 정당에 소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형무소, 정신이상자 시설에 수용중인 자, 선거 부정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은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 선거구

캐나다 하원의원 정수는 301명이다. 의석은 원칙적으로 각 주의 인구 크기에 따라 배분된다. 각 주의 하원 의원수가 상원 의원수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 4석, 뉴브런즈윅 주에 10석을 최소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연방의 창설 당시 소규모의 주들이 거대 주들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규모 주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주에 대한 배려의 의미로, 국세조사 결과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주의 경우에도 의석수의 15% 이상은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301명의 의원수에 해당되는 301개의 선거구가 존재하며, 각 선거구에서는 한 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따라서 각 주는 각각 배당된 의원수에 해당하는 하원의원 선거구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에 따라 투표가치의 차이 또한 초래되는데, 그러한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4년에 '선거구 구획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선거구 구획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행해지는 국세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데, 각 주의 주민 수를 총 의원 수로 나누어 선거구의 평균 주민수를 산출, 그 수치에 상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선거구를 분할한다.

2. 정당제도 및 현황

연방창설 이후 보수당과 자유당이 전통적인 캐나다의 양대 정당으로 군림하여 왔지만, 보수당은 1990년대 초의 재정악화와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얻은 이후 입지가 상당히 악화되었지만 최근 캐나다 동맹당과 합병하여 재차 제1 야당으로 도약하였다. 2005년 현재 자유당이 집권 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1997년 총선 결과에 따라 캐나다의 이중 언어 체계를 반대하고 서부 지역의 지지에 기반을

둔 개혁당과 Meech Lake 협상 실패 이후 불어 문화권을 옹호해 온 퀘벡 블럭당 (Bloc Quebecois) 이 제2, 제3 야당으로 대두하였으며 신민당은 정치적 입지가 약한 소수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

□ 정당현황

정당명	당수	하원의원수	상원의원수
자유당 (Liberal Party: Lib.)	Paul Martin (현 수상)	133	63
보수당 & 진보보수당 (Conservative Party: Cons. Progressive Conservative)	Stephen Harper	98	27
퀘벡 블럭당 (Bloc Quebecois: B.Q.)	Gilles Duceppe	54	0
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N.D.P)	Jack Layton	19	1
무소속 (Independent)		4	5
공석 (Vacancy)		0	9
합계		308	105

(자료원: 캐나다 38대 의회, 2005.6.29 현재)

- **자유당 (Liberal Party):** 1867년 연방의 창설 이후 현재까지 총 20차례 집권한 대표적인 정당으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 등 동부지역의 도시 층에서 강한 정치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권력강화, 이중언어정책 등을 통한 국민통합 도모와 사회복지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폴 마틴 연방수상이 소속되어 있는 집권 여당이다.
-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최근 집권 자유당이 각종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사이 캐나다 동맹당과 진보보수당의 합병으로 창설된 정당이다. 동맹당은 중앙집권지역으로부터 소외된 서부지역과 농민층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으로 재정적자의 축소, 사회복지개혁, 이중언어정책 반대 등을 추진하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져 왔다. 진보보수당은 연방창설 이후 ‘보수당’ 이라는 당명으로 총 15 차례 집권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으로 자유무역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을 고수한 정당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장기불황과 헌법개혁의 실패 이후 그 당세가 급속히 약화되었다.
- **퀘벡블럭당 (Bloc Quebecois):** 1990년 Meech Lake 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당시 집권당인 진보보수당을 탈퇴한 일부세력이 퀘벡분리독립 등을 위해 별도로 원내그룹을 결성함으로 창설되었다. 퀘벡주가 유일한 지지기반인 지역정당으로 1995년 이후 그 당세가 약화되었다. 한편, 퀘벡블럭당 당수였던 Lucien Bouchard는 1996년 2월 보궐선거에서 퀘벡주수상으로 당선되었으나, 2003년 4월 자유당에 패배함으로 재선에 실패했다.
- **신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사회주의 정당으로 서부 B.C.주와 사스캐치완 주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다.

26. 정치사회동향

< 정치사회동향 >

1. 최근 캐나다 정치사회동향

연방과 주의 권력 분기 문제

1867년 Confederation의 출범 당시부터 존재해 온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불분명한 권력분할은 이들간의 의견 상충을 초래, 불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정치형태가 2차에 걸친 헌법개정 노력의 실패로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다.

지역적, 인종적 대립

영국계와 프랑스계 국민간의 역사, 문화, 감정적인 대립 이외에도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연유하는 각종 형태의 불협화음, 퀘벡분리운동, 서부제반 주들의 분리 지지운동 등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남아있다.

국가적 정체성 문제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동시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근접국으로서 경제, 사회적 대미 의존도의 심화로 인해 캐나다만의 고유한 정체성 정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

1980-1990년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적자 및 누적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큰 장애가 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난 수년간 현 집권 자유당의 예산삭감 노력의 결실로 1997년6월 G 7 국가 중 처음으로 1998/1999 회계연도 균형예산을 발표하게 된 캐나다 정부는 향후 수년 간의 재정흑자 운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실제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걸친 재정흑자의 지속현상으로 인해 부채의 당감이 활발하게 진행, 1990년대 중반에는 70% 에 육박하던 부채의 비율이 현재 40%선으로 감소하였다.

미국과의 정치, 무역분쟁 문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근접하여 높은 경제, 정치 의존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미국과의 연목분쟁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로 인한 분쟁)과 쇠고기 수입금지문제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미국의 쇠고기 수입금지) 등의 무역분쟁 및 정치적 견해 차이로 발생한 갈등이 향후 캐나다 경제발전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주요 정치사회 역사

1993.10 연방총선에서 제 1야당이었던 자유당이 9년간 집권한 진보 보수당을 누르고 압승, 의회 운영시 안정성 확보

1994.1.18

연방정부 시정연설 발표.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사업확대 및 중소기업진흥에 역점을 둔 정책전개 약속. 특히 청소년층 인구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직업공사 (Youth Service Corp.)와 주택 보수개발계획 등을 통한 직업창출 방안 집중 모색.

1994.2.22

1994/1995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지출을 1993/1994 회계연도 대비 0.7% 증가하는 선으로 억제하고 수입은 8.0% 늘려 정부의 재정적자를 C\$397억 축소. 일체의 세금인상 계획 없이 국방예산, 이전지출 등의 공공지출 삭감에 주력

1994.3.23

크레티엥 수상, 멕시코 공식방문. 살리나스 대통령과의 환담 이외에도 캐나다정부가 주최한 EXPO 1994에도 참석. 대미통상 압력의 효과적인 견제를 위하여 멕시코와의 공동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강조

1994.6.17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도의 회복 및 행정윤리기강의 확립을 위한 대정부로비활동 규제강화안 발표

1994.6.28

연방, 주정부 간 국내 무역장벽 해소협정 체결, 1995.1.1일을 기해 발효예정. 각 주간 무역행정 및 분규해결체제 확립 기반 마련

1994.9.12

퀘벡주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이 집권자유당을 누르고 퀘벡주 총선에서 승리, 차기 집권당으로 선출됨에 따라 퀘벡주가 캐나다연방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 잠재

1994.12.7

신임 작파리조 퀘벡주 수상, 퀘벡주 독립 초안을 발표하고 독립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1995년 중에 실시할 계획 발표.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독립을 원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1년 내에 퀘벡주를 독립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

1995.1.30

캐나다 수상, 브라질, 칠레 등을 포함 중남미 6개국을 약 195개 캐나다 업체, 250명의 경험사절단을 대동, 1월 19일부터 2월 3일까지 순방. 동 방문시 체결된 거래액은 총 C\$28억으로 추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세력을 견제할수 있는 계기로 평가

1995.2.8

캐나다 제25대 총독으로 르블랑 공식임명

1995.2.23

미국 클린턴 대통령 2월 23일, 24일 이틀 간의 캐나다 공식방문.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과 캐나다 할리팩스에서 개최되는 G7 국가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논의

1995.5.10

퀘벡당이 집권 이후 처음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주민들이 퀘벡주의 독립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을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 제1야당인 자유당은 이는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협박이라고 주장, 무리하게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급급하다고 비난

1995.6.9

6월 8일 실시된 온타리오주 총선에서 보수당이 전체 유권자의 45% 지지를 확보하며 10년 만에 정권을 탈환. 주요공약을 재정적자의 감축으로 내세운 보수당의 집권에 국내 산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 국내 부동산업계,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주요 소매업계 관계자들은 보수당의 경제정책이 직업창출, 금융시장 활황 및 경제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1995.8.24

캐나다 뉴펀들랜드주에서 개최된 연례 주수상 회의에서 대부분의 주수상들은 퀘벡주가 독립될 경우 퀘벡주와 타주간의 무역협정 및 경제협력관계 등은 모두 무효화 되어 차후 주 운영에 큰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 당초 퀘벡주 수상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주들은 독립 퀘벡주와 무역, 사회, 복지, 경제 유대 등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1995.9.7

퀘벡주 수상, 독립 초안 퀘벡주 의회에 상정. 캐나다 연방주의가 퀘벡주 번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 10월 30일 퀘벡주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예정. 한편 캐나다화가 외환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투자자들은 퀘벡주의 독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

1995.10.30

10 월 30일 퀘벡주 독립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총 유권자의 50.6%가 반대, 근소한 차이로 퀘벡주 독립안은 부결. 이에 따라 퀘벡주 수상, 파리조는 자진 사퇴하였으며 퀘벡블록당 당수인 부샤르가 후임자로 지목됨. 부샤르는 1997년 4월 퀘벡주 독립투표를 재실시할 것이라고 천명

1995.12.4

퀘벡주에 관한 비토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연방통합안이 144대 76으로 연방의회의 제1독회를 통과.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 퀘벡주, 온타리오주,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개헌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 동 법안의 골자. 퀘벡블록당 당수는 동 법안이 헌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정부에 의해 언제든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비난

1996.1.25

연방수상 1993년 정권 인양 후 처음으로 개각단행. 외무부장관, 무역통상부장관, 문화부장관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 특히 퀘벡주의 문제해결에 주력할 목적으로 퀘벡주 출신의 민간인을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의 조율을 담당하는 총무장관으로 임명

1996.2.27

연방정부 시정연설 발표. 연방세 (GST)와 주정부세 (PST)를 병합한 NST세의 도입 계획 발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및 연방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합의. 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지속예정. 신규 실업보험제도를 1996년7월 대체할 계획 발표. 직업훈련, 산림, 광산, 레저 관련 정책의 수립을 주정부에 일임

1996.3.6

1996/1997 연방정부의 예산안 발표. 1996/1997 재정적자 목표치를 C\$243억으로 지정, 1997/1998 재정적자 목표치는 C\$171억으로 예상.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세금 동결. 2003년까지 노후연금을 위한 저축불입액 고정 등 엄격한 규제실행. 낙농업, VIA철도, 주택업, 수송업 등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삭감

1996.3.25

6개 지역구에서 실시된 연방보궐선거에서 집권 자유당이 퀘벡주를 제외한 5개 지역에서 승리. 1996년 1월 개각 시 퀘벡주 전담장관으로 임명된 스테판 디옹과 피에르 페티르루 장관 모두 연방의원으로서 당선.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연방의회의 의석 수는 자유당 177석, 퀘벡블럭당 53석, 개혁당 52석, 신민당 9석, 보수당 2석, 무소속 2석으로 변경. 퀘벡블럭당의 트렝블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샤르 전 블럭당 당수가 1993년 총선 당시 획득한 지지율을 능가하여 퀘벡주의 독립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음을 입증

1996.5.2

캐나다 부수상 겸 문화부장관이던 콥스가 1993년 자유당의 선거유세 당시 선거공약 중 하나인 연방세 폐지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 발표. 7월 중 온타리오주 해밀턴 동부지역의 보궐선거 입후보 출마를 천명

1996.5.8

연방수상은 6월 20일-21일 경 퀘벡주를 특수사회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새 연방제안을 논의하고자 주수상 회담개최를 요구. 다수의 주가 퀘벡주를 특수사회로 인정하는 헌법수정안의 반대를 표명하는 가운데 연방수상은 퀘벡주의 독립주의자들이 동의하는 한 이는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 또한 수상은 연방으로부터의 탈퇴원칙을 주장하는 퀘벡주와 법정투쟁을 벌이는 것은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

1996.6.17

GST 철폐공약으로 5월 사임한 콥스 전 부수상이 지역구 보궐 선거에서 승리, 연방의원직에 재임. 콥스 전 부수상은 사임 이후에도 자신의 선거구 내 정치적 지명도가 워낙 높은 탓에 정계복귀는 시간문제로 간주되어 왔음

1996.7.11

연방 내각회의에 자유당 선거 책임자들이 참가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이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의문이 증폭. 정부관계자도 본 회의가 1997년 가을 이후로 예정된 선거를 위한 전략회의였음을 부인하지 않음

1996.8.21

연례 주수상 회의 개최. 연방-주정부(및 준주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이내에 연방-주정부의 공조 하에 교육, 보건 등의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단일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제출하도록 합의. 퀘벡주 부샤르 수상은 이 방안에 동의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퀘벡주의 독자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를 전개하며 유일하게 반대

1997.2.12

무역통상부장관 에글턴은 캐나다와 칠레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된 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 1996년 11월 18일 캐나다 수상과 칠레대통령은 오타와에서 양국 자유무역협정에 이미 공식적으로 서명한 바 있음. 동협정은 1997년 6월 2일부터 발효

1997.2.18

1997/1998 연방정부 예산안 발표. 1996/1997 재정적자 C\$190억 이하로 예상. 당초 목표보다 C\$53억 이상 초과 달성. 금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목표 C\$170억, 내년 C\$90억 예상. 1998/1999 회계연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부채상환을 위한 신규차입이 없을 것으로 전망. 개인, 법인, 단체 세금 동결. 지출 삭감에 관한 추가계획 없이 전년도에 발표된 삭감계획 계속 유효. 대학, 병원 등의 설비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전담할 연방혁신재단 설립. 향후 동재단을 통해 5년간 연간 C\$1억 8천만 지원 예정

1997.4.27

크레티엔 연방수상 차기 총선일 발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집권 자유당정부는 퀘벡주와 알버타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평균 47%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 자유당 정부의 인기도가 집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차기 총선일을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결정

1997.6.2

크레티엔 수상이 이끄는 자유당이 연방선거에서 과반수의 하원의석을 확보, 재집권에 성공. 자유당은 동, 서부 주에서 부진을 보임. 개혁당은 종전보다 10석이 늘어난 60석을 획득, 퀘벡블럭당을 제치고 제1야당 자리에 군림. 진보보수당은 사례 당수의 인기로 20석을 차지. 신민당은 동부 지역에서의 약진으로 21석 차지. 퀘벡블럭당은 44석을 차지, 야당 중 유일하게 의석수와 득표율의 하락을 기록

1997.6.11

연방수상, 자유당의 재집권과 함께 신규내각 발표. 부수상, 무역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을 포함한 일부 장관의 교체 이외에 지난 내각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유지. 연방수상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조화문제 및 퀘벡주 문제에 주력, 예전과 동일한 정책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을 시사

1998.2.16

연방대법원, 퀘벡주 독립선언의 위헌여부에 대한 공청회 시작. 이제껏 일방적 독립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연방정부와 퀘벡주 정부는 독립절차 및 독립의 인정문제 등으로 대립상태를 유지. 연방정부의 제소로 열리게 된 동 공청회는 사상 최초로 독립문제의 위헌여부를 유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

1998.2.24

연방정부 1998/1999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7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예산안을 발표하며 캐나다는 G 7국가 중 최초로 균형예산을 달성한 국가로 기록. 연방정부는 경제성장 유지와 사회전반의 안정을 2대 목표로 제정, 균형예산을 바탕으로 하여 막대한 부채삭감을 점차 감소할 방침이며 향후 3년간 중,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실시 예정

1998.3.26

사례 연방보수당수는 4월 3일 부로 당수직의 사퇴를 발표. 4월 30일 치러질 예정인 퀘벡주

보궐선거에 출마, 승리할 경우 퀘벡자유당의 당수직 승계 예정. 연방보수당수 후임으로는 클레인 알버타주 수상이 유력시됨

1998.7.16

연방정부의 4월 중 재정흑자는 전년대비 C\$1억4천만 증가한 C\$15억84백만으로 집계. 연방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8/1999 회계연도의 첫 달인 4월 세입은 C\$125억으로 전년동기대비 C\$2억 증가한 반면 정부프로그램 운영 및 부채상환 등으로 인한 지출은 C\$6천만 증가하여 전반적인 재정흑자 기록. 세출 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출은 C\$74억62백만으로 전년대비 C\$8천만 증가, 부채 상환액은 C\$34억54백만으로 C\$13백만 감소. 당시 연방정부의 총 부채는 C\$6,100억에 달함

1998.8.20

연방대법원은 퀘벡주의 독립선언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해 퀘벡주는 독자적으로 독립을 결정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 연방정부에게 법적인 승리를 선사. 또한 국제법과 관련된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 하지만 퀘벡주민들의 절대다수가 국민투표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퀘벡주 분리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확산시킬 일말의 소지를 남김

1998.8.18

연방자유당은 보건, 교육 등의 각종 사회프로그램들에 관한 전면적인 예산 및 집행권의 주정부 이전안과 관련,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1998.10.7

연방개혁당, 신민당, 퀘벡블럭당 등 3개 야당은 최근 각 주정부에 보낸 서신을 통하여 주정부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사회, 보건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Social Union안의 토의를 제안. 이에 대해 연방수상은 자치권 이전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

1998.10.28

퀘벡주 총선일이 11월30일로 확정. 현 집권 퀘벡블럭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향후 독립투표 실시 거론 등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뿐 아니라 주식시장과 환율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이번 선거는 퀘벡주의 독립을 희망하는 주수상 부샤르와 이를 반대하는 퀘벡자유당의 당수 샤레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짓는 승부가 될 전망

1998.11

연방 재무성은 1998년 상반기 (회계연도 기준) 재정흑자는 전년동기대비 C\$21억이 증가한 C\$104억에 달한다고 발표. 금년 재정흑자는 전년도의 총 흑자인 C\$35억을 초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한편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반기의 세입 증가는 급감할 것으로 전망

1998.11.27

여론조사 결과, 향후 퀘벡주 및 캐나다 전체 정계구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퀘벡주 총선에서 독립주의를 표방하는 퀘벡블럭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은 것 전망. 부샤르 주수상이 이끄는 퀘벡블럭당은 46%, 퀘벡자유당은 39%의 지지율을 각각 확보, 퀘벡당의 대승이 예상되며 동 추세로 보아 주의회의 125석중 80석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됨

1999. 1. 25

크레티앵 연방수상이 2002년 차기총선을 앞두고 내년 중 자유당 당수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유력한 차기 자유당수로 마틴 재무부장관, 토빈 뉴펀들랜드 주수상, 락 보건부장관, 페티그루 인력부장관 및 맥키너 전 뉴브런스윅 주수상이 물망에 오름

1999. 1. 25

연방정부의 1998/1999 회계연도의 재정흑자가 C\$70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 연방재무부는 회계연도의 시작인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재정흑자는 총 C\$97억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 동 회계연도 말까지 C\$150억 상당의 재정흑자가 가능하지만 상당액의 예산집행이 회계연도 하반기로 미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흑자는 C\$70억으로 전망

2000. 11. 13

온타리오주의 지방자치제 선거 실시. 라스트만 토론토 시장이 90%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재선에 성공

2000. 11. 27

캐나다연방 총선거 실시. 크레티앵 연방수상이 이끄는 자유당이 3회 연속 과반수 집권에 성공. 자유당은 총 301석 중 173석, 캐나다 동맹당은 66석, 퀘벡블럭당은 37석, 신민당은 13석, 보수당은 12석을 차지

2001. 01. 11

부샤르 퀘벡주 수상의 사임으로 란드리가 새로이 취임.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적 있는 란드리는 퀘벡주 독립문제에 관하여 급진주의 성향을 지님

2002. 06. 02

마틴 재무부장관을 대신하여 맨리 부수상이 재무부 장관직을 겸임

2003. 04

퀘벡주 수상 선거에서 퀘벡블럭당 대신 자유당이 집권에 성공, 퀘벡주 독립의 움직임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

2003. 12. 8

1990년대 초반 집권 당시 장기불황의 영향으로 소수정당으로 전락하였던 진보보수당이 캐나다 동맹당과 합병. 통합된 당의 명칭은 진보보수당으로 유지하기로 결정

2003. 12. 12

마틴 前 재무부 장관이 은퇴를 선언한 크레티앵의 후임으로 연방수상에 부임

2004. 3. 27

진보보수당 당수로 전 캐나다 동맹당 당수인 하퍼가 당선

2004. 6

캐나다 전역에서 총선 실시 예정. 1990년대 초부터 집권당으로 군림해 온 자유당은 2003년 각종 부정부패 스캔들에 휘말리고, 온타리오주에서 의료보험 부담금 납부제도를 재도입하여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 현 상황에서 마틴 수상의 자유당과 하퍼의 진보보수당이 유력한

집권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과반수 집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04.6.28

캐나다 전역에서 총선 실시. 집권 자유당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1979년 이후 25년 만에 여소야대 정부 탄생. 전국 6만 4천여 개 투표구에서 4개 주요정당이 308개의 의석을 놓고 경합. 자유당은 135석, 보수당은 99석, 퀘벡블럭당은 54석, 신민당은 19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

2004.7.20

개각 단행. 9명의 총선 당선자를 신규 영입하는 한편, 15명의 현 각료를 내각 내에서 교체 이동하고 14명의 장관을 유임. 기업 경영자 출신으로 실물경제에 밝은 에머슨을 신임 산업부 장관에 임명

2004.10

연방정부의 2003/2004 회계연도의 재정흑자가 C\$91억을 기록, 당초 예상치인 C\$19억을 4배 이상 초과. G 8 국가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재정흑자 지속

2004.10

1999년 10월에 취임, 5년간의 임기를 마친 후 퇴임 예정이었던 클락슨 연방총독의 임기를 2005년 9월로 연장

2005.6

연방정부의 ‘스폰서십 프로그램 (Sponsorship Program)’ 스캔들과 관련, 프로그램 관련 당사자들과 정부 고위관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진행 중. 야당인 보수당은 프로그램 운영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낸 폴 마틴 수상이 깊이 연루되었음을 주장,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결정하였으나 부결

2005년 6월 말 연방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 캐나다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27. 국가원수

<국가원수>

1. 영국 여왕

직위	영국 여왕, 국가수반 (British Monarch, Canada's Head of State)
성명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즉위일	1952.2.6
인적사항	1926.4.21 출생

2. 총독

직위	총독 (Governor General of Canada)
성명	Madame Adrienne Clarkson
취임일	1999. 10. 7
인적사항	1939년 홍콩 출생
학력	토론토대학 영문학 전공 (학사, 석사학위 취득)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CBC 방송국 방송작가 및 프로듀서 (1965-1982) - Agent General for Ontario in Paris (1982-1987) - 언론사 McClelland & Stewart 회장 및 발행인 (1987-1988) - 'Adrienne Clarkson's Summer Festival' 및 'Adrienne Clarkson Present'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 (1988-1997) - 캐나다 문명박물관 이사장 (1997-1999) - Int'l Audio-Visual Assoc. of Music, Dance and Cultural Programmers(IMZ) 이사장 (1997-1999) - 캐나다 CBC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자 (1997-1999) - 캐나다 연방총독 취임 (1999. 10) - 2005년 9월 퇴임 예정

3. 최고실권자

직위	연방 수상 (Prime Minister)
성명	Mr. Paul Martin
정당	자유당 (The Liberal Party, 현 집권당)
취임일	2003. 12. 12
인적사항	1938. 8. 28 Windsor, Ontario 출생, 부인 Sheila Ann Cowan 사이에 3남
학력	토론토대학 법학 전공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ecutive, Power Corporation of Canada - Chairman & CEO, Canada Steamship Lines - 연방국회의원 당선 (1988) - Associate finance critic & critic for the environment (1991 - 1993) - 재무장관 (1993. 11 - 2002. 6) - Co-Chair, U.N. Commission on the Private Sector and Development - 자유당 당수 취임 (2003. 11. 14) - 연방수상 (총리) 취임 (2003. 12. 12)

(자료원: 캐나다 정부, 2005. 6. 25 현재)

28. 주요인사

<정부각료 및 기타 주요 인사>

직위	영문 직위	인사
총독	Governor General	Adrienne Clarkson
수상	Prime Minister	Paul Martin
상원의장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Senate	Jacob Austin
교통부 장관	Minister of Transport	Jean-C. Lapierre

재무부 장관	Minister of Finance	Ralph Goodale
부수상 겸 안전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Anne McLellan
국가원수 추밀고문관겸 정무부 장관	President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and Minister of Intergovernmental Affairs	Lucienne Robillard
환경부 장관	Minister of the Environment	Stephane Dion
외무부 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ierre Pettigrew
원주민복지 장관	Minister of Indian Affairs and Northern Development and Federal Interlocutor for Metis and Non-Status Indians	Andy Scott
국제통상부 장관	Minister for International Trade	James S. Peterson
농업부 장관 겸 국무장관 (북부 온타리오 경제개발)	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and Minister of State (Feder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for Northern Ontario)	Andrew Mitchell
국방부 장관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Bill Graham
보훈부 장관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Albina Guarnieri
재정위 장관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and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Canadian Wheat Board	Reginald Alcock
수산부 장관	Minister of Fisheries and Oceans	Geoff Regan
하원의장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House of Commons	Tony Valeri
국제협력부 장관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M. Aileen Carroll
법무장관	Minister of Justice and Attorney General of Canada	Irwin Cotler
천연자원부 장관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Ruben J. Efford
문화유산부 장관 겸 여성부장관	Minister of Canadian Heritage and Minister responsible for Status of Women	Liza Frulla
이민성 장관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Joseph Volpe
노동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and Housing	Joseph Fontana
조달청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Scott Brison
보건부 장관	Minister of Health	Ujjal Dosanjh
사회복지부 장관	Minister of Social Development	Ken Dryden
산업부 장관	Minister of Industry	David Emerson
인적자원부 장관 겸 민주개혁 담당	Minister of 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and Minister responsible for Democratic Renewal	Belinda Stronach
국무장관 (북방 개척)	Minister of State (Northern Development)	Ethel Blondin-Andrew
국무장관 (다문화주의)	Minister of State (Multiculturalism)	Raymond Chan
국무장관 (인적자원개발)	Minister of Sta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laudette Bradshaw

서부경제개발부 장관 및 국무장관 (체육)	Minister of Western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Minister of State (Sport)	Stephen Owen
국무장관 (보건)	Minister of State (Public Health)	Carolyn Bennet
국무장관 (산업기반, 공동체)	Minister of State (Infrastructure and Communities)	John Godfrey
국무장관 (가정, 복지)	Minister of State (Families and Caregivers)	Tony Ianno
하원 부의장, 국방부 차관 겸 공용언어 사용과 대내교역 담당	Minister for Internal Trade, Deputy Leader of the Government in the House of Commons, Minister responsible for Official Languages and Associate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Mauril Belanger
세무부 장관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John McCallum
대서양지역 개발부 장관	Minister of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Joseph McGuire
퀘벡지역 경제개발부 장관	Minister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gency Of Canada for the Regions of Quebec	Jacques Saada
중앙은행장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David A. Dodge

(자료원: 캐나다 정부, 2005.6.28 현재)

29. 행정구역

< 행정구역 >

캐나다 연방정부는 10개 주(Province) 및 3개의 특별지역/준주(Territories)로 구성되어 있다.

주 (Province)

Ontario (온타리오), Quebec (퀘벡), British Columbia (브리티시컬럼비아), Alberta (알버타), Manitoba (마니토바), Saskatchewan (사스카치완), Nova Scotia (노바스코샤), New Brunswick (뉴브런즈윅), Newfoundland (뉴펀들랜드), Prince Edward Island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특별지역/준주(Territories)

Northwest (노스웨스트), Yukon (유콘), Nunavut (누나뭇)

온타리오 주	
면적	107만 Km ²
인구	1244만 명
수도	토론토 (인구 520만 명)
주요산업	Automobiles, Mining, Forestry
퀘벡 주	
면적	145만 Km ²

인구	756만 명
수도	퀘벡시티 (인구 71만 명)
주요산업	Forest Industry, Mining,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면적	95만 Km ²
인구	421만 명
수도	빅토리아 (인구 33만 명)
주요산업	Lumber, Newsprint, Pulp & Paper, Mining, Fishing
알버타 주	
면적	66만 Km ²
인구	321만 명
수도	에드먼턴 (인구 100만 명)
주요산업	Wheat, Crude Oil, Natural Gas
마니토바 주	
면적	65만 Km ²
인구	117만 명
수도	위니펙 (인구 70만 명)
주요산업	Food, Transportation, Livestock, Mining
사스카치완 주	
면적	65만 Km ²
인구	100만 명
수도	레지나 (인구 20만 명)
주요산업	Grain (Wheat), Oil & Natural Gas, Softwoods
노바스코샤 주	
면적	5만6천 Km ²
인구	94만 명
수도	핍스 (인구 38만 명)
주요산업	Fishing, Mining, Forestry
뉴브런즈윅 주	
면적	7만4천 Km ²
인구	75만 명
수도	프레드릭턴 (인구 7만2천명)
주요산업	Food & Beverages, Pulp & Paper, Sawmills
뉴펀들랜드 주	
면적	41만 Km ²
인구	52만 명
수도	세인트 존스 (인구 18만 명)
주요산업	Fishing, Mining, Newsprint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면적	5,660 Km ²
인구	14만 명
수도	살롯타운 (인구 1만5천명)
주요산업	Agriculture, Fishing, Food Processing
노스웨스트 준주	

면적	11억7천2백만 Km ²
인구	4만3천명
수도	오타와 (인구 1만5천명)
주요산업	Mining, Oil & Gas, Fishing
유콘 준주	
면적	48만 Km ²
인구	3만1천명
수도	화이트호스 (인구 1만6천명)
주요산업	Mining, Fur Trade, Forestry, Fishing
누나붓 준주	
면적	19억9천4백만Km ²
인구	2만7천명
수도	이칼루이트 (인구 4200명)
주요산업	Mining, Oil & Gas, Fishing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년 1월 1일 기준.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30. 대외관계/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의 관계 >

1949. 4	한국 정부 승인
1953. 1	국교 수립
1954. 12	수도 오타와에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설치
1973. 10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설치
1981. 9	트루도 캐나다 수상 한국 방문
1982. 8	전두환 대통령 캐나다 방문
1986. 5	멀로니 캐나다 수상 한국방문
1988. 2	나티신 캐나다 법무장관 방한
1989. 9	제10차 한-카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1991. 4	제11차 한-카 통상장관회담 개최(오타와)
1991. 7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방문
1991. 11	월슨 캐나다 통상장관, 맥두걸 외무장관 APEC서울총회 참석
1992	제12차 한-카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1993. 11	제5차 APEC 각료회의 및 정상회담
1994. 1	1994 한-카 경제협력위원회 공동회담 개최(서울)
1994. 2	한승주 외무부장관 캐나다 방문
1994. 3	한-카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1994. 4	나티신 캐나다총독 방한
1994. 6	제1차 한-카 에너지광물자원협의회 개최(오타와)
1994. 7	캐나다 외무장관 방한
1994. 10	김철수 상공장관 오타와 방문
1995. 9	캐나다 부수상 방한
1995. 10	한-카 정상회담 개최(오타와)
1995. 10	한-카 사회보장 협정논의

1997. 1	크레티앵 캐나다 수상 대동한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한
1999. 7	김대중 대통령 캐나다 방문
2000. 1	캠벨 캐나다 무역부차관 방한
2000. 6.	캐나다 국방장관 방한
2000. 7	한-카 외무장관회담, 카-북 외무장관회담(방콕) - 카-북간 국가승인 발표
2001. 4	파크타칸 캐나다 외무부 아시아 담당 차관 방한
2001. 4	카플란 캐나다 이민성장관 방한
2001. 6	제17차 한-카 원자력정책협의회 개최(서울)
2003. 1	한국-캐나다 수교 40주년
2003. 10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방문(한-카 통상장관회담-오타와)
2003. 10	헤이즈 캐나다 상원의장 방한
2003. 10	페티그루 캐나다 통상장관 방한
2004. 1	스펠러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 방한
2004. 6	클레인 알버타주 수상 방한 - 허상만 농림부 장관 면담
2004. 8	노성대 방송위원장 캐나다 방문
2004. 11	한-카 정상, 제12차 APEC 정상회의 양자회담
2005.1	제1차 한-카 FTA 예비협의를 (한국)
2005.1	캐나다 하원의원단 방한
2005.3.31~4.1	제2차 한-카 FTA 예비협의를 (오타와)

(자료원: 한국 외교통상부, 캐나다 외교부, 2005.6.28 현재)

31. 대외 관계

< 대외관계 >

1. 외교노선

2005년 6월 말 현재 캐나다의 기본 외교노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자유주의, 중립주의 견지로 제3세계와도 우호관계를 수립
- 영연방(Commonwealths) 및 불어권(Francophone)과의 우호적 관계유지
- 외교관계의 다변화 추구를 통한 극동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
-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제분쟁 해결 노력
- 경제, 기술 협력 및 대외원조를 통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
- 미국 및 NATO와의 제휴를 통한 국가와 세계 안보확립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1, 2차 세계대전 참전, 한국전쟁 참전, 북미 항공협정(NORAD) 체결 등을 통해 대미협조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그렇지만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한 외교의 다각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잠시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1984년 멀로니 정권 수립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킨 바 있으며 전통적으로 대미 협조관계를 기본으로 한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 양국 수뇌의 상호방문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멀로니 정권은 경제, 방위문제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강화를 모색했다.

크레티엔 정권은 전 정권의 대미 일변도적인 외교방향을 수정, 아시아, 태평양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또한 중시하고 있다. 1994년 11월 크레티엔 수상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회의(APEC)의 비공식 수뇌회의 출석을 계기로 중국, 베트남을 처음 방문하였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영연방 등 다국간의 국제포럼 또한 중시, 정부개발원조(ODA), 유엔평화유지활동(UNPKO)등의 참여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라크전의 경우에도 UN의 승인이 없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주의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외교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미국, 유럽공동체 및 일본과의 협력강화를 도모하고 G 8 국가로서의 영향력 유지,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 아태 지역국가들과의 관계증진 도모 등을 캐나다 주요 외교정책의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세계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안보 협력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UN) 분담금의 확대를 통해 유엔(UN)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UNPKO) 활동에도 이미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여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북태평양 안보회의 및 CSCE, OAS, ASEAN-PMC 등 지역적 기구의 역할 확대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지역협력체 참여정도

전 집권 보수당 정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기득권 보호 및 미국과 동등한 멕시코 시장진출 기회 확보 (통신, 금융, 에너지 산업)를 위해 NAFTA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1993년 6월23일 최종 비준을 NAFTA 3개국 중 최초로 완료하였다. 1993년 10월 연방총선에서 제 1야당인 자유당이 승리함으로써 11월17일 NAFTA 협상의 하원비준을 끝마친 미국 측에 당초 선거 공약대로 에너지 및 수자원 보호, 덤핑 및 정부 보조금 규정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 강경적 자세에서 급선회하여 일방적인 해설서(Letter of Interpretation)를 발표한 후 1994년 1월1일 NAFTA 정식 발효를 공식적으로 인정, NAFTA에 관한 협상 논의를 종결시켰다.

캐나다는 NAFTA 출범 이후 멕시코 시장진출 확대 및 미국 시장에서의 기득권 보호를 통해 캐나다의 서비스 및 상품수출 신장을 유도해오고 있다.

- 멕시코 시장을 통한 중남미 시장 접근 촉진
- 운송 및 통신 산업기반 마련, 풍부한 에너지 자원, 고급 노동인력, 첨단 사회, 복지 서비스 기술이전 노력
- 캐나다 정부 멕시코시티에 비지니스센터 설립 계획: 1993년 총 6,500명의 캐나다 기업인이 멕시코 방문. 주멕시코 캐나다 대사관은 이들 기업인에 대한 유료 서비스 제공
- 캐나다와 미국 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부문 조세감면 협정 체결: 양국간의 투자유치 및 자국자본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에 의해 발생된 캐나다측의 투자배당금, 이자 및 로얄티에 대한 적용세율 하향 조정
 - 배당금 10% -> 5%. 이자 15% -> 10%. 로얄티 10% -> 철폐
- 1994년 9월 캐나다 몬트리얼 은행, NAFTA 관련업체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멕시코 뱅코머사와 합작으로 NAFTA 상호부금(NAFTA Advantage Fund)개설
- 1995년 1월 캐나다 수상 일행의 중남미 국가 방문: 외교적인 측면에서 미국 세력을 견제하고 미주 국가들에게 캐나다가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또한 이는 1994년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 국가들간의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자유무역지대(FTAA) 활성화 촉진의 일환으로 작용하였다.

- 1998년 1월 NAFTA 하에 미국과 캐나다간의 무관세화 절차가 완전 성립

3. 주요 국가별 외교관계

□ 미국과의 관계

캐나다는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기본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캐나다 전체무역의 70% 이상이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캐나다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미국, 캐나다 간의 무역 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국의 경제 관계는 지극히 긴밀한 편이다. 1988년 1월 미국과 10년간 쌍방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1989년 1월부터 발효시켰으며 미국,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상을 벌여 1994년 1월부터 북미 자유무역협정 (NAFTA)을 발효시킴으로 인해 북미시장의 통합이 진전되었지만 반면에 미국과의 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존재하고 있다.

NAFTA의 발효를 앞두고 취임한 크레티앵 수상은 반덤핑, 보조금 규정의 명확화를 위한 재교섭을 요구하였고 미국도 이에 동의, 수용의사를 표명함으로써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2000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 당시보다 다소 소원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양국의 관계는 밀접하다. 그러나 캐나다는 환경문제를 근거로 미국이 유콘주주의 근접지역인 알래스카에서 진행중인 원유개발사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1996년 양국 간에 협의되었던 연목협상이 2001년 3월 만료됨에 따라 그에 관한 논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2003년 이라크전에 캐나다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다는 평이 있다.

또한 미국의 버드수정안 (미국 정부가 외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피해보장의 목적으로 국내업체에게 배분하는 법령으로 2000년 입법되었으나 WTO로부터 불법판정을 받음)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1일부로 캐나다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부가세를 징수하기 시작하는 등 양국간 무역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러시아와의 관계

캐나다는 러시아 연방의 민주화 및 경제개혁을 적극 지지하여 1993년 4월 밴쿠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2억불 상당의 대러시아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G 7 정상회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 증대를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캐나다에 구 소련 출신의 이민자들과 그 자손이 다수 (우크라이나계가 약 100만 명)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의 인권, 민족 문제에 대단한 관심을 쏟고 있다. 1994년 9월 6일 양국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형의 흑연 감소화로의 안전문제에 대해 협력하는 것에 합의, 캐나다의 전문가가 러시아의 원자력발전소에 상주하며 안전 관리의 지도를 맡고 있다.

□ 중국과의 관계

크레티앵 전 캐나다 수상은 1994년 11월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예방하였다. 이는 1986년 5월 멀로니 수상 이후 캐나다 수상으로서는 8년 반 만의 중국 방문이었으며, 양국은 원자력 이용협력 협정과 중국의 행정, 법률, 경제개혁을 위한 개발 협력문서에 조인하였다. 중국은 캐나다에게 있어 미국, 일본의 뒤를 따르는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계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문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차 커지는 추세이다. 캐나다는 중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경제협력 관계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중국의 인권 문제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강대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예정이지만 경제협력 문제와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거대한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2005년 통상정책중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국가들과의 통상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 일본과의 관계

일본은 캐나다에게 있어 미국 다음의 제 2의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의 주요수출품은 목재, 석탄, 어패류, 펄프 등이다. 일본으로부터 수입의 약 40%는 자동차이고 그외 자동차 부품, 사무용 기기, 철못 등이 주로 캐나다로 수입되고 있다. 일본의 대캐나다 직접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캐나다는 1993년 7월 동경에서 개최된 G 7 정상 회담을 통해 유럽공동체 및 일본과도 전반적 경제협력 및 정책조화 방안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 1994년 7월에는 웨렛트 외무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9월에는 당시 하시모토 대장상이 캐나다를 방문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초 양국은 향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를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관계

캐나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연합회의인 APEC의 보다 구체화, 내실화가 캐나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캐나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 중 하나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현재 중국, 인도 등에 대한 통상 및 투자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도 현재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개발 도상국/ 최저 개발국과의 관계

캐나다는 저개발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품목별로 향후 10년간 일반특혜관세(GSP) 수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저개발국은 현재 LDCT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에 의해 더 큰 관세혜택을 받고 있으며, 2003년 1월을 기해 아프리카 등지의 최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여 섬유제품 관세 및 쿼타를 전면 해제하기도 했다.

□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국가들과의 관계

캐나다는 2005년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로 중국, 인도, 브라질로 대표되는 신흥시장

('Emerging Market') 국가들과의 교류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월 수상과 국제통상부 장관, 기업인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사절단의 중국방문과 4월로 예정된 인도 방문은 이들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교류강화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높은 관심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원: 캐나다 정부, 2005.6.28 현재)

32. 국가경쟁력

< 국가경쟁력 >

1.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 2004 종합순위: 3위, 총점 86.626점 (미국 1위, 100.000점 / 한국 35위, 62.201점)

□ 요소 별 연도별 경쟁력 순위

요소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Economic Performance	10	11	11	11	12	14	6	8
Government Efficiency	12	13	15	12	10	10	4	6
Business Efficiency	5	7	11	9	11	5	3	8
Infrastructure	4	4	9	10	8	6	3	6

(자료원: IMD, <http://www02.imd.ch/wcc/>, 2004년 10월 발표자료. 2005.6 현재 최신자료)

33. 도량형

<도량형>

1. 표준 도량형

캐나다는 1980년 이전까지는 미국과 함께 임페리얼(Yard, Pound) 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체중, 신장, 목재, 음료 사이즈 등을 측정할 경우에 미국의 Yard, Pound법이 흔히 사용되기도 한다.

[미터법-야드/파운드법 환산표]

길이	마일 (mile)	야드 (yard)	피트 (feet)	인치 (inch)	미터 (m)	센티미터 (Cm)
1 cm	0.000006	0.010936	0.0328	0.39370	0.01	1
1 m	0.000621	1.093613	3.2808	39.3701	1	100
1 inch	0.000016	0.027778	0.0833	1	0.0254	2.54
1 feet	0.000189	0.333333	1	12	0.3048	30.48
1 yard	0.000568	1	3	36	0.9144	91.440
1 mile	1	1760.00	5280.0	63360.1	1609.4	160935

무게	파운드 (lb)	온스 (oz)	톤 (ton)	킬로그램 (Kg)	그램 (g)
1 g	0.00221	0.0353	0.000001	0.001	1
1 Kg	2.20459	35.273	0.001	1	1000
1 ton	2204.59	35273	1	1000	1000000
1 oz	0.06250	1	0.000028	0.0284	28.3503
1 lb	1	16	0.000454	0.4536	453.599

부피	갤런 (gal)	입방야드 (yd ³)	입방피트 (ft ³)	입방인치 (in ³)	리터 (L)	입방미터 (m ³)
1 m ³	264.19	1.3082	35.317	61027	1000	1
1 L	0.2642	0.0013	0.0353	61.027	1	0.001
1 in ³	0.0043	0.00002	0.00058	1	0.0164	0.000016
1 ft ³	7.4817	0.03682	1	1728.3	28.321	0.0283
1 yd ³	203.21	1	27.16	46943.8	769.23	0.7692
1 gal	1	0.00492	0.13366	231.01	3.7853	0.0038

넓이	평	에이커 (acre)	제곱야드 (yd ²)	제곱피트 (ft ²)	아르 (a)	제곱미터 (m ²)
1 m ²	0.3025	0.00025	1.196	10.7683	0.01	1
1 a	30.25	0.02471	119.6	1076.83	1	100
1 ft ²	0.0281	0.00002	0.111	1	0.00093	0.09287
1 yd ²	0.2529	0.00021	1	9.0038	0.00836	0.83614
1 acre	1224.2	1	4840.04	43578.7	40.4693	4046.93
1 평	1	0.00082	3.95367	35.598	0.03306	3.3058

2. 전기규격

대부분의 주택, 건물, 호텔 등에 110V/ 60Hz가 공급되고 있어 220V용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에 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34. 관공서 관행

< 관공서 관행 >

1. 민원 처리절차

캐나다에서 각종 민원의 처리를 위한 관공서의 방문 시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담당하는 기관을 찾는 일이다. 캐나다의 정부는 연방과 주, 시정부의 3단계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자 고유적으로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연방정부는 주로 무역이나 이민 등의 국가적 차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각주 각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는 교통, 보건사업 등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맡고 있고 시정부는 치안, 교육 등을 담당한다.

관공서를 방문하기 이전에 관할지역 내의 어느 정부의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한다면 여러 관공서를 불필요하게 방문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홈페이지 (www.canada.gc.ca) 에는 정부의 각 기관이 관장하는 업무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나열함으로써 민원 처리시 필요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기관별로 업무시간과 공휴일 등이 표시되어 있어 사전에 관공서 방문일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방문자를 대할 때 대부분 관공서 직원들은 친절한 편이나 거의 예외 없이 선착순으로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관공서를 방문할 경우 비치되어 있는 번호표의 발급을 통해 자신의 순서를 배정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이 순서를 무시할 수 없으며,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으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공서 직원들이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관계로 변칙적인 방법을 활용한 빠른 일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민원처리 절차는 융통성의 결여현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대신 질서를 무엇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부당하게 당하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한편 관공서의 특정인물을 방문하고자 할 시에는 미리 약속을 한 후, 약속시간 5분 전쯤에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는 것이 관례이며 사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을 철저하게 구비하고 방문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5. 국제공항 및 항구

< 국제공항 및 항구 >

1. 국제공항

캐나다의 주요 국제공항은 토론토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몬트리얼 (Dorval International Airport, Mirabel International Airport), 오타와 (Ottawa Macdonald 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및 밴쿠버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국제공항]

Toronto Lester B.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주소: P.O. Box 6031, 3111 Convair Drive, Toronto AMF, Ontario, L5P 1B2(Greater Toronto Airports Authority, 광역토론토 공항 관리공단) 전화: (416) 776-3000(관리공단), (416) 247-7678(제1,2 터미널), (416) 776-5100 (제 3 터미널)
Montreal Pierre Elliott Trudeau International Airport
주소: 975 Romeo-Vachon Blvd. North, Suite 317, Montreal, Quebec, H4Y 1H1 전화: (514) 394-7377 / (1-800) 465-1213
Montreal Mirabel International Airport

주소: 12600 Aerogare A-1 street, Suite 4480, Mirabel, Quebec, J7N 1C9
전화: (514) 394-7377 / (1-800) 465-1213

Ottawa MacDonald-Cartier International Airport

주소: 1000 Airport Parkway Private, Ottawa, Ontario, K1V 9B4
전화: (613) 248-2000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주소: 3211 Grant McConachie Way, Richmond, British Columbia, V7B 1Y7
전화: (604) 207-7077

우리나라 방문객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공항은 토론토의 피어슨 국제공항으로 총 3개의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터미널마다 주재항공사가 상이하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Airport Express 라는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시에는 택시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제1터미널: Air Canada 및 기타 항공사
- 제2터미널: Air Canada, Air New Zealand, Air Wisconsin, United Airline
- 제3터미널: 기타 항공사 (대한항공 포함)

□ 택시이용

- 공항 밖으로 나오면 택시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기사에게 가고자 하는 주소 및 지도를 주면 안내가 가능
- 요금: 미터기를 사용하는 일반택시와 일률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공항택시 두 종류가 있는데 요금은 시내까지 약 C\$35 내외로 거의 비슷함. 거리/시간 병산제로 약간의 차이 발생 가능. 일반적으로 이용요금의 10%를 팁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

□ 공항버스 이용

- 공항출구로 나오면 공항버스 정류소가 있음. Airport Express버스 매표소에서 특정장소까지 가는 표를 구입하여 승차. 요금은 편도 C\$14.95, 왕복 C\$25.75

□ 대중교통 이용

- 대중교통인 TTC를 이용,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동 가능. 요금은 C\$2.50 (토큰 구입시에는 10개 C\$20)
- 192번: 제1, 3 터미널 <--> Islington Station
- 307번: 제1터미널 <--> Eglinton Station
- 58번: 제1터미널 <--> Lawrence West Station

경유지 공항으로는 서해안의 관문인 밴쿠버공항을 들 수 있는데 비즈니스 출장이나 관광차 캐나다를 방문할 시에는 출입국 관리와의 대화시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입국절차 도중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2. 국제항구

캐나다의 주요 국제항구는 밴쿠버 (Vancouver Port), 몬트리올 (Montreal Port), 할리팩스 (Halifax)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물품은 주로 밴쿠버항을 통하여 대량 선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빙서류나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선적지연사태의 발생률은 낮은 편이다.

최근 캐나다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와 캐나다를 잇는 서부 밴쿠버항에서의 화물 적체현상 심화는 물품의 배달지체를 초래하여 캐나다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큰 사업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캐나다 연방정부는 밴쿠버항의 터미널 중 한 곳의 수용능력을 38% 증가시키기 위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북부에 위치한 또 다른 대규모 항구인 프린스루퍼트항의 확장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국제항구]

Port of Vancouver
주소: 100 The Pointe,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T4 (The Vancouver Port Authority, 밴쿠버 항만관리공단) 전화: (604) 665-9000 / (1-888) 777-8826
Port of Montreal
주소: Port of Montreal Building Wing No. 1, Cite du Havre, Montreal, Quebec, H3C 3R5 (Montreal Port Authority, 몬트리올 항만관리공단) 전화: (514) 283-7011
Port of Halifax
주소: Halifax Port Authority, P.O. Box 336, Halifax, Nova Scotia, B3J 2P6 (Halifax Port Authority, 할리팩스 항만관리 공단) 전화: (902) 426-8222

36. 매스미디어

1. 신문과 잡지

현재 캐나다 내에서 발행되는 전국지로는 Globe and Mail과 National Post가 있으며, 지방지로는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에서 발행되는 각종 조간신문들이 있다.

[캐나다의 주요 신문]

(발행부수 단위: 백만 부, 2003.10 - 2004.3 평균)

신문	발행부수(주당)	발행지
영어		
Toronto Star	3.29	토론토
The Globe and Mail	1.97	토론토

Toronto Sun	1.59	토론토
National Post	1.50	토론토
Ottawa Citizen	0.99	오타와
The Gazette	1.02	몬트리올
The Vancouver Sun	1.17	밴쿠버
The Province	1.00	밴쿠버
불어		
Le Journal de Montreal	1.93	몬트리올
La Press	1.43	몬트리올

(자료원: Canadian Newspaper Association: CAN,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캐나다의 주요 잡지]

잡지	발행지
영어	
Chatelaine	토론토
Maclean's Magazine	토론토
Saturday Night	토론토
Canadian Business	토론토
불어	
L'Actualite	토론토
Chatelaine	토론토

토론토에서는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영자신문을 구입할 수 있지만 프랑스어 신문은 입수하기가 힘들다. 일간지로는 Toronto Star, The Globe and Mail 및 Toronto Sun (타블로이드판 대중지) 등이 있다. The Globe and Mail은 캐나다 최대의 전국지이며 다른 신문에 비하여 경제면이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몬트리올의 경우 현재 발행되는 신문은 모두 지방지이며 주요 신문으로는 유일한 영자신문인 가제트 (The Gazette), 프랑스어 신문인 라 프레스 (La Press), 루 드보아르 (Le Devoir) 등이 있다.

밴쿠버 시의 신문으로는 The Province 및 The Vancouver Sun이 있으며, 전국지인 The Globe and Mail도 구독할 수 있다.

2. 라디오

1919년 몬트리올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된 이래 캐나다의 국영 및 민영 라디오 방송은 크게 발전하여 현재 캐나다 국민의 99%가 라디오 가청권내에 살고 있다. 전국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의 2 개의 라디오 방송망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지방 방송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국영방송국인 캐나다 방송공사 (CBC: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는 많은 지국과 중계소를 이용하여 전국에 라디오

방송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민간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방송국은 CBC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BC는 유럽,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 포르투갈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헝가리어로 매일 단파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다. 또한 캐나다 북부의 인구가 적은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아닉 (Anik) 통신위성을 통해 라디오 방송을 송신하고 있다.

몬트리올의 라디오 방송국으로는 CBC, 네트워크화된 공공방송 CBF (프랑스어), CBM (영어) 외에 민간 방송국으로 영어방송 4개국, 프랑스어 방송 3개국, 영·불 양국어 방송 1개국이 있다. 밴쿠버의 라디오 방송망은 전국 네트워크인 CBC 외에 주 내 AM과 FM 방송망이 있다.

2005년 6월 중순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CRTC)가 2개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위성 디지털 라디오방송을 승인, 향후 캐나다의 유료 디지털 라디오방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RTC는 같은 날 1개 라디오방송 사업자에게 유료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국내 유료 라디오방송업계가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디오 방송국과 특징]

방송국	특 징
CBC	국내 뉴스 및 현황, 정치 비평, 문화 뉴스
CFTR	뉴스 전문
The Fan	스포츠 전문
CFRB	뉴스, 시사비평, 정보
CEMX	클래식 음악
CHUM	현대 음악
CIUT	토론토대학 라디오 방송, 시사, 실험음악, 예술전반
CJRT	시청자 지원 방식의 재즈, 클래식 방송

3. 텔레비전

캐나다에는 1,000여개 이상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는데, 이 중 3분의 2 가량이 민영방송국이다. CBC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방송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민간방송국이 CBC와 결연관계를 맺고있다. 주요 상업방송으로는 텔레비전 방송망 (TVA)과 글로벌 방송 (Global Television Network)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1970년 이래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는 유선방송국의 수가 현재 수백 개에 달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내 주요도시에서는 발달된 민영 유선방송망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으며, 미국의 TV 방송도 수신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는 3개의 영어 방송, 2개의 프랑스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데 영어 방송은 민영방송 2개국 (CTV, Global TV)와 공영방송인 CBC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캐나다 방송 7개국의 방송과 미국 3대 네트워크(ABC, CBS, NBC) 외에 CNN의 방송 등이 시청 가능하다. 몬트리올의 경우 역시 CBC의 공공 채널이 시청 가능하며 CBFT (프랑스어), CBMT (영어) 외에 민간 채널인 CFCF (영어), CFTM (프랑스어)의 방송 시청 등이

가능하다. 또한 유료 유선방송 시스템에 가입한 시청자들은 ABC, CBS, NBC 등의 미국방송 및 프랑스 국영방송 또한 시청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대표로 구성되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 (CRTC)는 캐나다의 모든 방송 및 통신회사의 설립허가를 포함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TV 방송국과 특징]

방송국명	특징
CBC	국내 프로그램
CTV	미국 방송 혼합
TSN	스포츠 전문
NEWSWORLD	뉴스 전문
CITY TV	토론토 시 전문
CFMT	복합문화 방송
MUCH	현대음악 전문

37. 주한 주재국기관

< 주한 주재국 기관 >

주한 캐나다 대사관
<p><대사관 업무시간 안내> 월요일 - 금요일: 8:00 AM - 4:30 PM</p> <p><이민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00 PM - 3:00 PM , 일부 한국 공휴일 및 캐나다 공휴일 휴무</p> <p><영사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9:00 AM - 11:00 AM, 2:00 PM - 4:00 PM 수요일: 2:00 PM - 4:00 PM, 금요일: 9:00 AM - 11:00 AM</p> <p>-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빌딩 9층, 사서함 6299호, 우편번호(100-170) - 전화: 02) 3455-6000 - 팩스: 02) 755-0686 (대표), 02) 774-6989 (상무과), 02) 3455-6131 (공보과) 02) 776-0974 (이민, 비자과), 02) 3455-6123 (행정, 영사과) - 웹사이트: www.korea.gc.ca</p>
부산주재 캐나다 영사관
<p>- 주소: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72 동성화학 (주) , 우편번호 (604-721) - 전화: 051) 204-5581, - 팩스: 051) 204-5580</p>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24층 - 전화: 02) 2259-0607 , - 팩스: 02) 2259-0609 - 웹사이트: www.ccck.org
캐나다 대사관 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2-5 조선일보 광화문 빌딩 3층 - 전화: (02) 757-2444, - 팩스: (02) 6325-2747 - 웹사이트: www.studycanada.ca/southkorea/index.htm - 이메일: cecinfo@cec.or.kr
캐나다 관광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4호 우편번호 110-755 - 전화: 02) 733-7790, - 팩스: 02) 733-7739 - 웹사이트: www.travelcanada.or.kr - 이메일: ctcseoul@travelcanada.or.kr
알버타주 서울 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서울 중구 무교동 45 코오롱 빌딩 10층 캐나다 대사관 알버타주 정부 사무실 우편번호 100-170 - 전화: (02) 3455-6000, - 팩스: (02) 733-8966 - 웹사이트: http://www.albertakorea.com - 이메일: alberta@seoul.gc.ca

(자료원: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05.6.28 현재)

38. 현지화제 유머속담

<"Living next to the U.S. is in some ways like sleeping with an elephant. No matter how friendly and even-tempered is the beast, one is affected by every twitch and grunt.">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근접한 캐나다는 비록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전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특히 미국의 정세, 경제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시국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 한시라도 미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Money isn't everything, but Canada is">

직역하면 "돈은 전부가 아니지만 캐나다는 전부다"라는 뜻인데 삶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없으며 이보다는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행복과 가치의 척도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캐나다는 풍부한 천연자원, 광활한 국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 혜택 등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천혜의 사업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의미 또한 함축하고 있다.

<"We don't want to be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because then everyone would hate us">

최고가 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캐나다인들이 미국인이 아닌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을 훨씬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견제하고 적대감을 갖게 되기가 쉽다. 이러한 미국과는 달리

최강대국이 아닌 캐나다는 전세계 국가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계속 우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기에 캐나다인임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I wouldn't let someone take my Canadian citizenship from me for anything">

이 역시 캐나다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말로 캐나다 시민권이 개인 소지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나라의 국적보다 캐나다 국적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캐나다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곧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의 사고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Canadians, like their historians, have spent too much time remembering conflict, crises, and failures. They forgot the great, quiet continuing of life in a vast and generous land. A cautious people learns from its past; a sensible people can face its future. Canadians, on the whole, are both">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과거의 시행착오로부터 배우고 발전해온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어두운 면만을 기억하지만, 캐나다인들은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내다보고 발전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Canadian dream is success without risk">

이웃국가인 미국에 비해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캐나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일컬은 말이다. 실제로 캐나다의 빈부격차는 미국에 비해 적은 편이며, 노동자가 사무직 종사자와 맞먹는 수입을 올리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39. 물가정보/물가정보 - 토론토

< 물가 정보 - 토론토 >

(적용 환율: US\$ 1 = C\$ 1.235, 2005.6.29 현재)

항목	기준품목	금액 (US\$)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5.71	1인분
	햄버거	2.42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N/A	판매불가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3,000 전후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615 전후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4,720 전후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27,396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2.03	1구간
	택시요금	2.06	기본요금
	택시요금	0.80	추가요금, km당

통신기	공중전화요금	0.19	시내, 3분
	국제전화 (할인)	0.36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07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37.03	1개월 기본료
교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14,137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N/A	외국인 학교 없음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49.82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9.87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료	병원진료비	32.19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텔	특급호텔 숙박료	295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130	할인, 싱글 1박
임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1,760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2,315	대졸, 초임

40. 물가정보/물가정보 - 밴쿠버

< 물가 정보 - 밴쿠버 >

(적용 환율: US\$ 1 = C\$ 1.235, 2005.6.29 현재)

항목	기준품목	금액 (US\$)	품목 내역
식품 기호품	김치찌개	7.03	1인분
	햄버거	2.40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8.36	카멜 1갑, 20개피
주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387~3,977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592~2,387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2,784 전후	150m2/월
교통 차량	자동차 2000cc	27,673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1.85	1구간
	택시요금	2.11	기본요금
	택시요금	1.14	추가요금, km당
통신기	공중전화요금	0.21	시내, 3분
	국제전화 (할인)	0.40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05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35.22	1개월 기본료(고속 인터넷)
교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12,343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N/A	외국인 학교 없음
레저 오락	골프장 그린피	44.02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9.01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료	병원진료비	28.48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289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145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1,990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2,386	대졸, 초임

41. 경제발전사

캐나다 경제의 역사는 지금의 캐나다 지역에 최초로 식민지를 건설한 프랑스와 영국 등의 유럽국가들을 위한 자원 조달지로서의 역할을 최초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처음에는 프랑스인, 포르투갈인, 스페인인, 영국인들이 대서양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주목, 캐나다의 동부연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프랑스와 영국인들이 모피교역사업을 위해 내륙지방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인들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모피교역업체인 Hudson's Bay Company는 영국정부를 대신하여 식민지에서의 경제활동을 관리하던 대표적인 척식회사로 현재는 대형 백화점 체인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후 19세기 들어 유럽의 산업역명이 가속화되며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목재의 수요가 증가하자 캐나다는 새롭게 목재공급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토론토에서 시작하여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St. Lawrence 수로는 당시 목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개발된 수로이다.

그렇지만 20 세기 들어 캐나다는 단순히 유럽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숲과 호수와 자원의 나라'에서 '숲과 호수와 자원도 많은 선진산업국가'로의 전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중요한 전환기를 겪게 된다.

첫 번째는 디펜베이커 수상 정권부터 피어슨 수상 정권에 이르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캐나다가 전통적으로 수호해 온 영연방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캐나다를 위한 새로운 국가주의를 영입한 시기였다. 퀘벡주에서는 당시 퀘벡독립당의 지도자인 르네 레베크를 포함한 프랑스계 지식인들이 고요하게 개혁을 진행시키는 한편 캐나다 경제의 새로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Royal Commission 보고서가 발표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피어슨 캐나다 수상이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던 미국의 존슨 대통령과 캐나다-미국 자동차협정을 조인한 시대였다.

동 시기에는 디펜베이커 정부에 의해 개발된 초음속 비행기가 당시의 미국의 비행기보다 훨씬 앞서 성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연 그 생산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캐나다의 항공기산업은 크게 침체에 빠졌지만 자동차산업과 기타 생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기존 천연자원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던 캐나다 경제가 선진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었다.

캐나다 경제발전사에 큰 변혁을 가져온 또 한번의 전환기는 1980년대 초 북미를 휩쓴 불황의 시기였다. 1980년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북미 지역경제는 높은 이율과 심각한 경기부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는데 미국보다 캐나다의 피해가 더욱 심각했다. 캐나다의 불황이 더욱 심각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급격한 속도로 발전한 알버타주를 포함한 서부 캐나다 지역의 석유가스산업이 급격한 축소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석유파동 후에도 미국과 캐나다는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의 트루도 수상 정권은 대폭적인 재정융자를 통해 불황을 일시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들어 정부의 적자재정이 심화되어 석유파동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보다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1980년대 초반의 불황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캐나다의 실업보험과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으로 1929년의 대공황 시기만큼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1980년대 초반은 여전히 캐나다 경제사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가져온 시기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극심한 불경기 하에서도 캐나다 국민들은 풍부한 자원과 정부의 복지제도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극심한 불경기를 겪는 동안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높고 낮음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이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퍼진 것이 두 번째 캐나다 경제의식 혁명의 결과이다.

제1차 석유파동 직후 미국 경제 역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캐나다 정부는 재정확장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을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등의 역효과만 초래하게 되었다. 이 시기 캐나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미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잦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상실은 G 7 국가들 중 가장 많았다.

1980년대 초의 불황은 이와 같이 캐나다 경제 성장의 둔화현상을 초래한 반면, 근로자들에게 복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주목할 점은 불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1981년부터 캐나다의 평균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한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실질적으로 캐나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조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전투적인 태세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 임금 상승을 저해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동시에 노동환경, 연금제도, 사회복지제도, 의료제도와 고용기회의 유지확대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오늘날 캐나다가 세계적인 근로복지제도를 갖추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제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두 차례의 불황 이후 1988년까지 G 7 국가들 중 일본 다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캐나다 경제는 1989년을 기해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불경기의 원인으로는 1988-1989년 온타리오주의 경기과열에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제지하려는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인상 정책 외에도 캐나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이 불황을 거듭, 캐나다 제품의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 지목되고 있다.

1994년 NAFTA의 체결을 계기로 캐나다의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조약 체결 당시에는 캐나다의 경제가 기술력과 생산성이 뛰어난 미국 시장에 잠식당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NAFTA 체결은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보다 심화되었지만 미국 기업의 캐나다 내 지사 유치가 한층 용이해지고 미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과의 교역 증가는 현재의 캐나다 경제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대미 무역흑자는 NAFTA 체결 이후 한층 심화되어 캐나다는 타 국가와의 무역적자를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보충하며, 타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 생산한 완제품 및 부분적 완성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NAFTA 체결로 인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됨과 동시에 캐나다의 경제는 다시 불황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는 1994년 NAFTA 체결 이후 1995-1996년 경 경제회복이 시작되는 시기에 성급하게 금리인상이 단행되었기 때문이다.

1995-1996년의 불황 이후 캐나다 경제는 미국경제의 동향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 후반의 인터넷 기업의 성공, 2000년의 IT 버블 붕괴, 2001년의 9/11 사태 등에 따른 미국경제의 변화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2004년 현재 국가총생산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과 실업률도 안정세에 접어드는 등 경기안정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등 캐나다의 경제는 전에 없는 건실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5년 2월 발표된 캐나다 연방정부의 2005-06예산안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한 균형예산을 통해 축적한 재정흑자를 향후 5년간 각 정부사업에 지출할 예정인데 그 규모는 약 C\$ 420억에 달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42. 경제정책

1. 경제정책 개요

크리티앵 수상의 자유당 정부 이후 2003년 12월 12일 취임한 신임 수상 폴 마틴이 이끄는 자유당 정부는 재정분야의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마틴 수상이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단행되었던 재정적자의 축소정책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감세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고용대책은 여전히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며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정부지출의 삭감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수출시장 자유화 및 다양화, 특히 미국, 아시아, 중남미지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2. 재정정책

크레티앵 정부 이후 재정적자의 축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실시한 결과, 1990년대 초 G 7국가 중 재정수지가 가장 불안정한 국가 중 하나였던 캐나다는 1994년을 기해 균형재정을 달성한 후 재정흑자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기업 및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삭감, 국방비의 절감, 공공부문의 고용감축 등의 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 금융기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96년 후반부터 경제가 회복세로 반전됨에 따라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의 증가와 항공 관세 시스템의 민영화에 따른 매각수입 증가가 세입재정의 확대를 초래하였으며, 긴축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세출이 감소한 것 역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축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에는 재정흑자를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 재정수지 흑자의 사용여부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크레티앵 정부는

총선을 의식, 여론을 감안한 후 감세정책과 복지지출 확대정책을 실시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최근 발표된 2005-06년 예산안에서는 당해 년도에 C\$ 40억 흑자를 달성함은 물론 그 동안 축적해온 재정흑자 중 향후 5년간 C\$ 420억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3. 금융정책

캐나다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과 예금준비율 조작에 중점을 두는 금융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공개시장의 조작은 1960~1970년대에 도입된 소득정책의 실시를 위한 금리제한정책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을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과잉수요의 억제에 크게 기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과거 있었던 악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경기의 반복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의 연간 잠재 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 물가상승률을 2% 내외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4. 외환정책

외환시장에서의 캐나다화의 상승은 항상 득과 실을 동시에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캐나다의 대외 수출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인데 실제로 2002년까지 캐나다는 낮은 캐나다화의 영향으로 G7 국가 중 가장 건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캐나다 경제가 호조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화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캐나다화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02년 후반부터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캐나다화 상승세가 시작, 2004년 말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러 대비 80센트 선을 넘어서는 등 캐나다화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5. 무역정책

전통적으로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캐나다는 무역자유화를 통상정책의 주축으로 삼고 수출확대를 위해 많은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무역자유화협정 및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 멕시코와 NAFTA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96년에는 이스라엘, 칠레와 각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FTAA를 창설하였으며,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예비협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이 상호 보완구조를 이루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권 제3기를 맞고 있는 자유당정부는 캐나다의 대외 통상정책과 관련,

- ① 무역자유화의 촉진
- ②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강화
- ③ 투자자유화를 위한 국제교섭에 적극 참가
- ④ 중남미시장으로의 진출방안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무역기회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그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0년 초에는 크리티엔 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규모 통상사절단이 중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1월 중 마틴 수상의 중국방문을 시작으로 하여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상사절단을 파견하는 계획을 수립, 보다 적극적인 통상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43. 금융통화제도

< 금융정책 >

1. 금융시장개황

캐나다의 금융 제도는 국내와 해외의 기업활동을 위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캐나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시중 공인은행 간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시킨다. 공인은행과 신탁회사들은 예금, 신용, 지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증권 거래소와 투자 중개 회사들은 공개 상장된 주식의 거래를 담당한다. 보험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리를 통해 각종 금융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이처럼 발달된 금융산업은 캐나다의 국가 주력산업 중 하나로 50만 명 이상의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2. 은행제도

□ 캐나다 중앙은행 (Bank of Canada)

Bank of Canada는 캐나다의 중앙은행으로 연방정부에 의해서 공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화폐 발행과 같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국채를 발행하고 관리함으로써 정부의 금융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나친 물가상승을 방지하여 캐나다 화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연간 물가상승률의 목표를 지정한다.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정한 연간 물가상승률의 목표는 1-3% 이다.

물가상승률과 환율의 안정은 기준금리의 조정에 의해 실행되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은 'Overnight Rate' 라고 불리는 은행 간의 단기융자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이러한 단기금리는 기타 시장 내 단기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

□ 공인은행

캐나다의 은행 제도는 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건전하다는 평가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현재 9 개의 캐나다의 공인은행은 모두 중앙은행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대규모의 5개 은행(국내 소유)의 총 자산은 약 C\$1조5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인은행은 예금, 자동이체, 대출 등의 기본 은행업무와 각종 투자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의 금융제도는 공인은행의 지점 설립을 허용하고 있어 현재 캐나다 전역에는 약 8,000여 개의 공인은행 지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은행업무의 처리자동화가 발달되어 있어 현재 36,000여 개의 현금 자동 지급기가 설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신탁대출 은행

신탁대출 은행은 연방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들 은행의 영업에 관련된 규제는 신탁대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신탁대출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예금을 이용,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업무를 제공하는 면에서 공인은행들과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다.

전국적 차원으로 설립된 신탁대출 은행의 수는 현재 총 48개로 이중 절반은 공인 은행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탁대출 은행은 개인이나 기업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한다.

3. 보험회사

보험회사들은 생명, 건강, 재산, 상해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에는 현재 140여 개의 생명보험 회사들과, 230여 개의 재산 및 상해보험 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생명보험 회사들은 금융시장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금기금을 포함한 특화된 투자기금을 관리한다. 보험회사들은 예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개인과 기업에게 중, 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면에서 타 금융 기관들과 경쟁관계에 있다.

재산 및 상해 보험회사들은 재산이나 부채 등과 관련된 비 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동성 자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유동성 자산으로의 전환이 빠른 주식들을 주로 취급한다.

4. 정부의 금융 기관

정부 소속 금융기관들의 주 업무는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이들은 민영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주력하기보다는 대출과 보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정부 금융기관에는 캐나다 사업개발 은행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과 수출진흥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EDC)가 있다.

캐나다 사업개발 은행은 대출, 보증, 수출 금융 지원, 벤처 자본, 경영 지도, 경영 트레이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캐나다의 대규모 공인은행과 협력하여 운영된다.

수출진흥공사는 캐나다 기업들의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EDC는 수출신용보험, 판매금융, 수출보증 등 각종 금융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벤처 자본 기금

벤처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노동부 산하 투자기금, 사기업 지원, 정부 보조기금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캐나다의 벤처자본 제공제도는

미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도가 높아 개인 투자자들의 자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투자시장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관련부문의 규제 및 개입 완화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6. 투자중개 회사

투자중개 회사는 자본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을 중개하며, 신규 공개상장주식을 인수한 후 매매활동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주식을 매매할 경우 투자중개 회사는 주식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양도해야 하는데, 개인 의뢰의 경우에 관한 규제는 공개 주식의 경우에 대한 규제보다 심하지 않다.

캐나다에는 현재 170여 개의 투자중개 회사들이 영업 중이며 이중에는 대규모의 외국 투자중개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중개 회사 협회(Investment Dealers Association) 회원들의 주식거래 규모는 캐나다의 총 주식거래의 95%를 차지한다.

7. 증권시장 및 증권거래소

토론토 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S&P/TSX)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거래는 국내 주식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S&P/TSX는 북미에서 두 번째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증권거래소인 동시에 세계 10위의 증권거래소이기도 하다. 소규모의 증권거래소들은 몬트리얼, 밴쿠버, 캘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니펙에는 상품거래소가 위치하고 있다.

증권 거래소에 기업의 주식을 상장시키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각 증권거래소마다 상장 규칙은 조금씩 다르다. 캐나다 내 증권거래소의 주식상장에 관한 요건은 미국 증권거래소의 요건과 유사하다.

기업은 채권과 무담보 사채의 발행을 통해 증자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의 인수와 분배는 주로 투자중개 회사들이 전담하고 있다. 2차 장외거래 시장은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보장한다.

8. 금융시장 규제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금융시장의 일부를 규제하고 있는데, 공인은행의 규제는 오직 연방정부만이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재무부, 캐나다 중앙은행, 금융기관 감독원, 캐나다 예금보험공사 등이 있다. 주 정부는 해당 지역의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은행을 제외한 금융산업 전 분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일조한다.

1987년과 1992년 실시된 금융 관련법 개정으로 전통적인 금융산업 분야의 영역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은행, 신탁대출 회사, 투자중개 회사, 보험 회사들은 그 동안 취급하지 않았던 신규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금융산업 분야에도 자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계의 경쟁은 한층 강화되었다. 공인은행과 신탁 회사들도 증권시장과 각종 투자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모든 공인은행들이 증권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1997년 2월 추가적으로 정부 개혁정책을 도입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률안은 1997년

6월 30일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소매거래의 중단을 바라는 은행은 이제 캐나다 예금보험공사를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 기관 간의 합작사업은 보다 용이해졌으며 보험 회사 간의 자본 확보 역시 용이해졌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캐나다 내 지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금융계의 개혁들은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을 심화시켜 다수의 금융기관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개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금융기관들의 규모가 미국에 비해 작아 소위 'critical mass' 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금융기관 간의 인수와 합병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4. 주요산업동향/전체 산업 동향

<전체 산업 동향 >

1. 전체 산업 총괄

캐나다는 선진공업국 중에서는 드물게 자원과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이러한 자원들은 공업제품과 함께 주요한 수출품목의 하나가 되어있다. 초기 캐나다 산업은 1차 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모피, 목재, 농수산물, 에너지 등이 순차적으로 산업을 주도했으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지식기반 산업에 꾸준히 자리를 내주고 있다. 1차 산업은 캐나다 총생산량의 6%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은 국가 총생산량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캐나다 산업을 생각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존재이다. 무역 면에서도 대미무역이 수출입이 전체의 각각 80%, 60%를 넘고 있고 대미무역 흑자액은 전체의 무역 흑자액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무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캐·미 자유무역협정 교섭이 진전되어 1987년 10월에는 기본 합의에 달했고, 1989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캐나다 각 주 차원에서는 산업구조의 차이에 의해 (공업주, 자원주, 농업주 등) 이해가 똑같지 않아 찬반양론이 있었다. 정부는 1984년부터 자원 의존형의 산업구조의 전환과 첨단 기술산업에의 대응 등을 경제재건의 과제로 내걸고 외국투자의 촉진을 꾀하기 위해서 외자 심사청을 투자청으로 개칭하고 투자환경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생산의 산업별 분포]

(단위: C\$백만)

분야	2002	2003	2004	% 비중 (2004)
농림수산업	20,147	22,979	23,203	2.22
광업	34,081	35,573	38,645	3.69
유틸리티	26,411	25,843	25,835	2.47
제조업	177,432	177,007	181,230	17.31
건설업	52,480	54,727	58,292	5.57

운송업	45,873	45,800	49,644	4.74
도/소매업	114,961	119,410	126,067	12.0
금융, 보험, 부동산	199,031	202,485	210,062	20.1
유희	9,171	9,577	10,118	1.0
숙박/음식	23,235	22,685	23,256	2.22
보건/사회복지	58,070	60,349	62,230	5.94
교육	45,552	45,590	45,203	4.32
총생산량	992,319	1,012,891	1,047,254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 현재 최신자료)

2. 주요산업별 현황

가. 농림수산업

농업은 GDP구성비율 2.2%, 고용인구비율 3.5% 선으로 경지면적이 총 7천만 ha에 달하고 있으며 1인당평균 231 ha 규모 이다. 사스카치완주와 알버타주의 경지면적은 총 C\$4천7백만 ha로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낙농축산품이 농업부문 총수입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물류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임업의 경우 캐나다의 삼림면적은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며 347만km²에 이르고 국토 총 면적의 40%를 차지한다. 이 풍부한 삼림자원 가운데 상업화하기 쉽고 규칙적인 목재 벌채에 적합한 삼림면적은 197만km²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침엽수 벌채량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임산지대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수산업에 있어 캐나다는 세계 최대의 생선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이 50%이상, 기타 일본, EU 국가들이 대부분 수입해가고 있다. 캐나다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체 어획량의 75% 차지하고 있으며 200해리 영해 밖의 어획활동 규제를 위해 현재 북대서양 수산업기구(NAFO)에 가입 중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그랜드뱅크스에 접하고 있어 생선 수출국으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나. 에너지산업

캐나다는 선진국 가운데 많지 않은 산유국임과 동시에 원료탄의 생산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세계 신문용지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목재 외에 천연가스, 포스트 (POST) 석유로 기대되고 있는 오일 샌드 (OIL SAND), 일반탄, 우라늄 그 밖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세계 유수의 에너지 자원국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산물 생산 가운데 80%가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광산물 생산액으로는 온타리오주가 34.7%를 차지하여 제 1위, 이어서 퀘벡주 15.7%,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1.6%의 순이다.

다. 식료품산업

캐나다에서 식료품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하게 제공되는 고급 농산물과 발달된 가공 기술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으로 인하여 캐나다의 식료품 산업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식품 가공 산업은 캐나다의 제조와 자원 가공 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산업은 최근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용류, 곡물류, 비스킷 제품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육류와 육류 가공 제품, 사료 등이 그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로, 증가하는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에 기인한 것이다. 노령화 추세와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인종은 건강하고 편리한 식료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미 시장의 관세 인하는 캐나다 식료품 산업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식료품 산업에서 첨단 가공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라. 의약산업

캐나다의 의약품 시장은 선진 공업국 중 8번째로 크다. 캐나다의 의약 산업은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약 회사의 40% 이상은 연간 매출액이 C\$2백만 이하이다. 의약품 시장 내의 세분화된 시장마다 많은 의약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의약 회사에는 브랜드 의약 회사, 일반 의약 회사, 바이오 의약 회사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마. 의료기기산업

캐나다의 의료기기산업은 위생 약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등에 쓰이는 기기들을 생산한다. 이 산업의 주요 기기들은 수술용 기기, 모니터, 의료영상 장비, 보조 기기, 진단 기기, 이식관, 치과 장비, 의료용 레이저, 의료 수술 도구 등을 포함한다. 새로 부각되는 분야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과 가정 건강 서비스의 제품 분야이다. 약 800여 개의 의료기기 업체가 집계되고 있으며, 950여 개의 주정부지원 병원이 75%의 수요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규모는 U\$15억이며, 수입의 70%를 미국이 차지한다.

바. 정보기술산업

정보 기술 부문은 캐나다 내의 15,000여 개의 기업에서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정보 기술 산업의 연구 개발은 캐나다의 총 연구 개발 중 37%를 차지한다. 이 산업은 무역 지향적이어서 총 생산의 3/4을 수출하고 있다. 정보 기술 산업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정보 통신제품, 인터넷, 컴퓨터-전화 통신 통합 (CTI) 분야이다.

사. 전자부품산업

캐나다의 전자부품 산업은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부문은 전자부품 산업 생산의 절반 가량을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는 50개의 회사가 진출해 있다. 이 회사들의 제품은 CMOS IC회로, 실리콘 bipolar IC, ASIC와 기타 다양한 복합 반도체들을 포함한다. 반도체 산업에 고용된 인원은 연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포함해 약 6,000명 가량 된다. 수입규모 또한 거대해, U\$100억에 이르며, 최종제품에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로 수입을 하고 있다.

아. 첨단제조업(고도생산기술산업: ATM)

캐나다의 AMT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해왔다. 이 산업에는 500개 이상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동 산업은 무역지향적으로 수출은 미국에, 수입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즉, 총수출 중에서 3/4은 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78%는 수입품이 장악하고 있는데, 수입품의 2/3이상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이며 나머지 1/3은 독일에서 수입한 것이다. 또한, 캐나다의 AMT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독일에 수출되고 있다.

자. 자동차산업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여 제조업 주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규모 면에서 세계 8위에 해당된다. 자동차 제조업의 대부분은 미국의 Big 3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캐나다 법인 혹은 부품공장이다. 2003년 총하는 자동차 생산의 경우 C\$693억이었으며 부품제조는 C\$314억으로 집계되었다.

차. 금융업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은행과 신탁회사가 최근 들어 합병이 허용됨으로써 국내 최대 은행인 Royal Bank가 Royal Trust Co를 인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금융·보험산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 향후 보다 많은 기업합병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Royal Bank, CIBC, Bank of Montreal, Bank of Nova Scotia, Toronto Dominion Bank 등 5대 은행으로서 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카리브해 연안지역에도 지점을 설치 영업영역을 확대해 놓고 있으며 8개 국내은행이 8,000개 지점, 54개 외국은행이 271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캐나다 내에서의 영업활동이 규제되어 왔으나 FTA 및 NAFTA 협정의 영향으로 미국을 위시한 외국 금융기관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45. 주요산업동향/금융업

< 금융업 >

1. 산업 개요

캐나다의 금융, 보험회사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 주정부가 캐나다인들의 투자에 대한 보호는 물론 금융기관이 올바른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각종 정부규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서 행정부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연방의회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캐나다에도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지방은행, 신탁회사, 용자회사 등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은행이 캐나다 금융산업의 골격을 이루며 외환거래도 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총 5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위니펙, 퀘베크, 몬트리얼, 토론토,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다. 캐나다의 증권시장과 미국의 증권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주로 캐나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보험산업에서의 규제완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민간은행과 신탁회사의 합병이 최근 들어 허용됨으로써 국내 최대 은행인 로얄뱅크(ROYAL BANK)가 ROYAL TRUST CO. 를 인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업 합병을 통한 대형 금융기관의

출현이 예상된다. 1994년 7월 몬트리올 은행이 캐나다 굴지의 증권사인 Burns Fry社를 인수하여 몬트리올 은행 소유인 Nesbitt Thomson社와 합병시켜 Nesbitt Burns社 (3,800명 고용)를 탄생시켰다.

2. 금융·보험기관별 기능

가. 중앙은행 (The Bank of Canada)

1934년 설립,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유사한 국가 금융·통화정책 수행기관으로 통화량 조절, 일반금융기관 대출, 국공채 관리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나. 조폐국 (The Royal Canadian Mint)

화폐발급기관으로 국영기업이나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 캐나다저축보험공사 (CDIC: Canada Deposit Insurance Corp.)

1967년 설립된 국영기관으로 회원금융기관이 지급불능의 사태에 이르렀을 때 이들 기관의 고객 1인당 최고 C\$60,000까지 저축보험 제공한다.

라. 시중 공인은행(Chartered Banks)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Royal Bank, CIBC, Bank of Montreal, Bank of Nova Scotia, Toronto Dominion Bank 등 5대 은행으로서 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카리브해 연안에 까지 지점을 설치 영업 영역을 확대해 놓고 있으며 8개 국내은행이 8,000개 지점, 54개 외국은행이 271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

마. 외국계 은행

최근 스케줄2 은행으로 불리는 외국계은행들의 결손누적으로 인한 철수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낮은 고객예금 유치율로 자금력의 부족함이 주 이유이며 캐나다 정부의 관련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 연방산업개발은행 (FBDB: Federal Business Development Bank):

1974년 창설된 국영기관으로 일반시중은행에서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융자신청을 하게 된다.

사. 기타

이밖에 신탁, 모기지 대출기관이 있어 고객들의 투자거래중개 및 자산 신탁 업무 제공한다. 또한 중앙신용조합은 총 13개, 지방신용조합이 총 2,613개이며 보험관련업체는 총 900개로 이중 공식등록업체가 총 334개사에 달한다.

46. 주요산업동향/농림수산업

< 농림수산업 >

1. 농업

캐나다의 면적은 소련에 이어 세계 제 2위이지만 그 중 농지로 적합한 곳은 불과 7%에 해당하는 43,767,000ha로 거의 대부분이 기후관계로 남부 국경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국토가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기후, 토양, 지세가 다르고 이 때문에 농업은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캐나다 농업은 17세기 이후로 세인트로렌스 강 유역에서 이루어졌으며 1885년 Canada Pacific Railway 가 중앙 대평원 지대를 지나면서 개간이 진척되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캐나다는 세계 유수의 농업국이 되었으며, 고도로 전문화·과학화된 대형 가족농장 형태를 띠고 있다. 평원지역 (마니토바주, 사스카치완주, 알버타주)이 캐나다 전 농토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토양, 기후 조건이 곡물, 油種 종자에 적합하며 광대한 초원을 이용한 축산업도 캐나다의 주요 산업의 하나이다.

세인트로렌스 지역 (온타리오주, 퀘벡주의 일부)은 캐나다의 인구집중지대 (캐나다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로 과수재배와 야채생산이 활발하고 낙농, 축산도 번창하고 있다. 산맥지역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서양연안 지역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주) 및 퀘벡주 일부는 혼합농업, 과수재배가 번창한 곳이다.

농지 규모는 지역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있고 일반적으로 평원 주의 농지 규모는 동부보다도 크며 농지의 평균 규모는 약 500 에이커 (acre)이다. 최근 농지의 수, 농업인구의 감소현상 등이 눈에 띠지만 농지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의 농업 취업인구는 약 33만 명으로 전 캐나다 취업인구의 2.1%, 또 농업수익 (실질)은 전 캐나다 GDP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귀리 등으로 밀은 대표적인 곡물로 생산량의 4분의 3 이상을 수출하며 국제시장 공급량의 10~20%를 차지하고 있고 유니펙이 생산의 중심지이다. 귀리는 태평양 연안과 세인트로렌스 저지 평야지대에서 재배되며, 보리는 마니토바주, 호밀은 중부평야지대, 감자는 세인트로렌스 저지와 태평양 연안지방이 주산지이다.

캐나다의 농업 수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축산물이며 그 다음이 낙농제품, 밀, 과일 및 채소의 순서이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육우 사육과 양돈을 하며 혼합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육우는 알버타주의 서부 로키산맥 동쪽 기슭의 초원지대, 낙농은 세인트로렌스 강 유역의 온타리오주, 퀘벡주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주로 미국 시장에 수출된다. 노바스코샤주의 아나폴리스와 온타리오주에서는 사과가 특산물로 재배되고 있다.

농업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연방 및 주 정부의 과잉보조금 지원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UR 타결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농업생산이 약 17% 감소할 것으로 OECD는 예상하고 있다.

2. 임업

캐나다의 삼림면적은 소련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크며 약 347만km²에 달해 국토 총 면적의 40.2%를 차지한다. 이 풍부한 삼림자원 가운데 상업화하기 쉽고 규칙적인 목재 벌채에 적합한 삼림면적은 197만km²로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침엽수 벌채량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세계 임산지대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찍부터 임업이 발달하였고 아직까지도 임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캐나다 GDP의 3.0% (C\$ 337억, 200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삼림은 면적의 80% 이상을 주정부가 소유하고 나머지를 연방 정부와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각 주 정부는 연방 소유의 삼림을 제외한 삼림에 관해서 행정권을 캐나다 헌법에 의해 부여 받고 있고 주 정부 소유림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업은 각 주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삼림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7만km²)로 전체 임산 제품의 85%를 생산한다. 그 뒤를 이어 온타리오주 (38만km²), 퀘벡주 (34만km²) 등이다.

또한 캐나다는 세계 최대 임산물 수출국가(2004년 기준)로서 임산물 중에서도 신문용지 생산은 전세계 신문용지 생산의 22.5%를 차지하여 제 1위의 수준이다. 2003년 캐나다의 신문용지 수출은 C\$56억으로 집계된다.

최대의 수출시장은 미국으로 총 수출의 약 70%를 차지한다. 펄프 수출량은 스웨덴 다음이다. 캐나다의 제재 수출은 대미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경기, 주택 건설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는 점으로 볼 때 제 3국으로의 수출시장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이 미국에 이어 유력한 제재 수출지로 부상하고 있다.

3. 수산업

세계 3대 어장의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펀들랜드주의 조지뱅크스 등에 좋은 어장이 있어 일본과 대적할만한 수산물 수출국이다. 연어, 송어, 참치가 비교적 많이 잡힌다. 캐나다 정부는 1977년에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에 200마일 어로구역을 설정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그랜드뱅크스에 접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생선 수출국 중 하나이다.

대서양 수역에서는 뉴펀들랜드주 주변의 대륙붕, 그 중에서도 그랜드뱅크스가 중심지로 대구, 가자미, 조개, 새우 등이 많으며 성어기에는 유럽 어선들이 대규모로 어로활동을 벌인다. 최근에는 알래스카 근해의 어획고가 줄어들어 수출가가 상승했고 수자원 보호를 위해 대서양의 대구잡이 대신 바닷게의 어획허용 쿼타를 38%로 올려 바닷게 잡이가 활발하다. 태평양 근해에는 청어, 넙치가 많으며 프레이저 만의 연어잡이는 널리 알려져 있다. 흑조(黑潮)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밴쿠버 섬 일대가 그 중심지이다.

47. 주요산업동향/식품산업

< 식품산업 >

1. 산업 현황

식료품 산업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식료품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하게 제공되는 고급 농산물과 발달된 가공 기술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으로 인하여 캐나다의 식료품 산업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식료품은 Salon International de l'Alimentation과 같은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자주 수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의 와인, 맥주, 야채, 비스킷, 인스턴트 가공 야채식품 등의 식료품은 최고의 상을 수상했다.

캐나다는 거대한 농산물 생산 국가이다. 캐나다는 68만km²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C\$250억 규모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생산량의 1/3가량은 곡류와 유지 종자가 차지하고, 다른 1/3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이 차지한다. 유제품이 1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주로 사료와 원예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알버타주, 사스캐치완주, 마니토바주 등의 중앙 대평원 지역의 주들은 곡류와 유지 종자를 주로 수출하는데 이들의 수출은 캐나다 전체 식료품 수출의 1/3이상을 차지한다.

식품 가공 산업은 캐나다의 제조와 자원 가공 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산업은 최근에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용류, 곡물류, 비스킷 제품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육류와 육류 가공 제품, 사료 등이 그 다음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세는 주로 증가하는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에 기인한 것이다. 노령화 추세와 아울러, 갈수록 다양해지는 인종은 건강하고 편리한 식료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북미 시장의 관세 인하는 캐나다 식료품 산업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식료품 산업에서 첨단 가공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캐나다 식료품의 절반 가량은 캐나다 소유의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다. 캐나다 내의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나 제휴 회사는 나머지 반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유동적인 기업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큰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보다는 유동적인 가공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기업의 이와 같은 적응력은 대규모 회사와의 여러 계약을 통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가공할 수 있게 만들었고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지역적 분포

캐나다의 식료품 산업은 여러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들 각 지역은 많은 자원과 타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놓여있는 장점을 살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지역의 식료품 산업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대서양과 태평양 해안에 위치한 해산물 공장들은 바다, 호수, 강 등에서 건져 올린 어패류를 가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어와 갑각류 어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과일과 야채 산업은 여러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양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 알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에서 육류 교환 센터가 설립되어 캐나다의 모든 지역에 육류의 안정된 공급을 하고 있다.
- 퀘벡주는 유제품 생산과 가공 분야의 선두 주자이며 이 분야의 연구 기반 역시 최고이다.
- 퀘벡주의 St. Hyacinthe에 위치한 연방 정부의 식료품 연구 개발 센터 (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는 규모가 작은 첨단 식품 기술을 갖춘 기업과 바이오 성분을 생산하는 기업을 키워왔다. 이와 비슷한 기관은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알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도 설립되어 있다.
- 곡물류 제품과 유지 종자의 생산과 가공 시설은 주로 알버타주, 사스캐치완주, 마니토바주 등 중앙 대평원 지역과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다.
- 부가가치를 가진 식료품의 가공시설 중 40%는 온타리오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5%는 퀘벡주에 위치해 있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캐나다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들이다.

3. 연구 개발(R&D)

캐나다 농산물과 식료품 연구의 오랜 전통은 19세기에 일어난 우수한 품종의 호밀 개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날 캐나다는 바이오 기술에서 세계 선두 주자이다. 식료품 연구는 캐나다의 매우 훌륭한 R&D 환경에서 번창하고 있다. R&D 전략의 핵심 요소는 식품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 산업, 정부의 연구자들간 협력이다.

캐나다 농산물과 식품청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의 연구 부서는 식품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R&D를 관장하고 있다. 이 연구 부서는 해당 지역에 특수하게 발달한 식품 산업에 대하여 캐나다 전역에 연구소와 실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부서의 각 기관들은 19개의 Centres of Excellence 내에 위치하고 있다.

1995년에 AAFC는 식료품 연구 개발에 상응하는 투자 이니시어티브 (Agri-food Research and Development Matching Investment Initiative)라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의 연구와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AAFC는 연구 협력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주정부는 주로 대학, 연구소, 식품 기술 개발 센터 등에서 행해지는 R&D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 주는 식품 가공 '인큐베이터' 시설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고 신제품과 가공 기술의 상업화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기업의 경영 책임자들과 연결되어 캐나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은 12개의 대학과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운영하는 18개의 식품 연구소가 지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알버타, 마니토바의 주립 대학과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토론토, 구엘프 대학에는 정부-산업-대학간의 협력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구엘프 식품 기술 센터는 협력 시설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 기관은 새로운 식품 기술을 상업화시키기 위하여 식품 산업 대표자와 대학 연구자들이 세운 기관이다. 이 기관은 현재 식품 산업 대표자, 온타리오주 정부, 노조, 구엘프 대학간의 파트너쉽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농산물과 식품 연구에 대한 효율적인 R&D 지출은 캐나다 식료품 연구 위원회(Canadian Agri-food Research Council)를 통해서 관리된다. R&D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이 위원회에는 식품, 가축, 농작물, 자원을 책임지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들은 정부, 민간 R&D 기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캐나다 식료품 연구 위원회는 새로운 연구를 설정하고 연구 파트너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식료품 분야의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관리하고 있다.

4. 경쟁력 및 특성

가. 수요가 많은 국내 시장

식료품의 국내 판매 규모는 매년 800억불이 넘고 있다. 판매의 2/3는 슈퍼마켓과 일반 상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식품 서비스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식료품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인구의 노화는 식료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양해지는 인종 또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맞벌이 부부와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식품의 재료와 첨가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 결과로 식품 판매 증가율이 인구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다. 일인당 가공 식품의 소비도 자연 식품의 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냉동 식품의 경우, 가장 높은 소매 식품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품목에는 인스턴트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앙트레, 디저트, 에피타이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포함된다. 전자렌지의 높은 보급률은 냉동 식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고 있다. 소스, 스프레드, 조미료 등의 제품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인의 식비 지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식당들이 다양한 메뉴, 다양한 민족의 음식, 빠른 서비스, 일관된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식품 가공 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식품과 정확한 분량의 식품을 시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빠르게 이에 적응하고 있다.

나. 해외 시장 진출

북미의 인구는 4억만명 이상으로 캐나다 식료품 회사들은 이러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캐나다는 1차 농수산물의 40%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0억불을 초과한다. 식료품 가공업체들은 총 생산량 중 18%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캐나다의 가공 식품 수출 중 70%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최근 3년간 42%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인구가 1억명 가까이 되는 멕시코는 캐나다 식료품 회사들에게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캐나다 식료품 회사의 주요한 타겟 시장은 약 2,000만명의 중산층이다. 이러한 비교적 부유한 소비자들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 조사에 의하면, 멕시코 소비자들이 캐나다에서 가공된 식료품의 높은 품질과 좋은 가격에 대하여 큰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쟁력 있는 지역 비용

매년 지역 비용을 조사하는 KPMG Canada 보고에 의하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KPMG Canada는 냉동 식품 가공 시설 분야를 13개의 캐나다 도시와 10개의 미국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 비용을 비교했다.

이 두 나라의 지역 비용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2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조사한 모든 캐나다 도시들은 미국의 도시들보다 낮은 비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가 가진 비용 우위는 주로 미국보다 낮은 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KPMG Canada의 보고서에서, 유럽 5개국의 15개 도시를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캐나다가 식품 가공 시설 분야에서 가장 낮은 지역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관대한 규제 정책

캐나다의 식품 검사 제도는 모든 식료품이 일정한 안전 수준과 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또한 제품이 상표에 표기된 재료와 영양 성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규제로 인하여 캐나다의 식료품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출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캐나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엄격하지만 기업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캐나다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정부는 규제 정책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연방정부 기관의 동·식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AAFC의 식품 생산과 검사부 (Food Production and Inspection Branch)는 검사 제도의 주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다른 연방 부처, 주정부, 지방 자치 단체, 식료품 산업의 기업들도 일부 책임을 지고 있다. 1997년에 새로 설립된 캐나다 식료품 검사 기관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기관은 다른 주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검사 제도를 통합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국제 표준 규격에 자국의 기준을 맞추는데 노력할 것이다.

5. 전망

캐나다의 식료품 산업은 새로운 자본과 기술을 찾고 있다. 외국 회사들은 세계 시장 또는 북미 시장에서 자회사를 통해 그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료품 산업에 대한 대부분의 투자는 수출을 위한 공급량과 품질 기준을 맞추는데 투입되고 있다.

전망이 밝은 식료품 분야는 편의와 다양한 인종을 고려한 제품 분야이다. 특히 냉동 식품, 육류 가공 식품, 스낵, 소스, 조미료 등의 분야는 전망이 매우 밝다. 성장이 빠른 다른 분야는 바이오 재료, 해산물, 음료 등의 분야이다. 많은 캐나다 회사들은 이 분야의 외국 기업들과 합작이나 제휴를 추진하는 중이다.

48. 주요산업동향/에너지산업

<에너지 산업>

캐나다 경제발전의 역사는 그 풍부한 국내자원 개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생성 초기에는 모피무역 및 목재수출로 번영했고 전후에는 미국산업에 대한 자재 공급기지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현재는 선진국 가운데 많지 않은 산유국임과 동시에 원료탄의 생산국이기도 하다. 더욱이 세계 신문용지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목재 외에 천연가스, 포스트(POST) 석유로 기대되고 있는 오일샌드 (OIL SAND), 일반탄, 우라늄 그 밖의 광물자원을 혜택 받은 세계 유수의 에너지 자원국이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산물 생산 가운데 80%가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광산물 생산액으로는 온타리오주가 34.7%를 차지하여 제 1위, 이어서 퀘벡주 15.7%,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11.6%의 순이다. 광업 관계기관으로서 광물 에너지 기술센터(CANMET)가 있고, 광산의 설계·자동화, 채굴법 연구, 환경보호, 안전성 등의 문제에 몰두하고 성과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별의 구성은 석유,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수력, 천연가스의 비율이 높다. 정부가 공표한 2005년까지의 에너지 수급전망에 의하면 장기적 에너지 수요는 경제성장률이 2~3%라는 전제로 연간 1.4~1.8%씩 성장할 것으로 보여진다.

1. 석탄

캐나다의 석탄 매장량은 1,180억 쇼트 톤(Short ton)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약 80%가 알버타주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나머지가 사스카치완주 및 노바스코샤주에 매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석탄은 속지성(屬地性)이 높은 상품이며 생산지 근교에서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주 별로 보더라도 최다 생산주인 알버타주에서는 주 내의 소비가 약 73%를 차지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예외로 석탄 화력발전의 점유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온타리오주로의 판매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의 소비량을 상회하고 있다.

수출 면에서는 세계 4위의 석탄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는 있으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소재 광산은 과거 노동과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폐광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국제 시세 호조에 힘입어 재생산을 개시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수출의 80% 이상이 제철용 탄이며 주로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발전용 탄의 경우에도 약 70%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 수출된다.

2. 석유

캐나다 석유협회 (CDA)에 따르면 캐나다 원유의 가채 매장량은 685,600만 배럴로 그 약 83%가 알버타주에 매장되어 있다. 매장량을 늘리기 위해 북권 보취트海, 동부 해안지대 및 매켄지 삼각지대 등에서 석유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캐나다의 일반 석유 추정 매장량은 400억~500억 배럴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매장량 1.6조 배럴의 오일샌드를 포함할 경우, 전체 캐나다 원유 추출 가능매장량은 1,750억 배럴로 크게 늘어나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유 보유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의 원유개발은 1947년에 개시되어 연간 생산량은 1973년에 66,000만 배럴로 절정에 달했고, 그 후 감소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 캐나다는 1970년대에는 석유 수입국이었으나 현재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수출국의 위치에 있다.

원유의 수출국은 거의 100% 미국이다. 또, 주요 수입국은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미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수입원유는 주로 동부 캐나다에서 소비된다.

3. 천연가스

캐나다의 천연가스 가채 매장량은 현재 818,000억 입방피트로 추정되고 있고 그 약 86%가 알버타주에 매장되어 있다. 생산량은 1986년에는 171억㎥로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의 생산국이었다. 현재 극북(極北)지역에서 신규 가스밭의 탐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북극권 보취트해, 매켄지 삼각지역이 가장 유망시 되고 있다. 캐나다 동부 해안 지대는 일찍부터 석유, 천연가스 매장이 예측되었는데도 탐사활동이 지연되었으나 뉴펀 들 랜드주 라바도르 해역, 노바스코샤주 세븐아이란즈 부근의 해역에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 기타

우라늄의 추정 매장량은 258,000톤으로 세계적이며 1984년 이후 생산, 수출량은 세계 제 1위이다. 전력은 총 발전량 5,015억 KW, 수력발전이 62%, 원자력 발전이 15%, 증수감속형 원자로(CANDU) 17기가 가동 중으로 4기가 건설 중이다.

49. 주요산업동향/자동차산업

< 자동차산업 >

1. 캐나다 자동차산업 개요

캐나다의 자동차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2%를 차지하여 제조업 주에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는 8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의 대부분은 미국의 Big

3(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캐나다 법인 혹은 부품공장이며 캐나다는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는 2.5백만대로서 NAFTA 자동차 생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출하는 자동차 생산의 경우 C\$693억이었으며 부품제조는 C\$314억으로 집계되었다.

캐나다 자동차 산업을 구성하는 세부요소의 규모 및 특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완성차 조립

캐나다의 완성차 조립산업은 승용차 조립산업과 중대형 산업용 자동차 조립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으로 세부 분할되는데 이 3개 산업의 총 고용규모는 51,000명이며 연간 생산량은 2백50만대로 집계된다.

1) 승용차 조립산업

승용차 조립산업의 경우 현재 캐나다에는 13개의 대규모 조립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연간 매출은 C\$656억이다. 승용차 조립산업은 수출의존도가 극도로 심해 생산 자동차 중 82%가 수출되고 있다.

승용차 조립 산업은 비단 자동차 생산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투자 유치에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메이커의 생산라인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바뀌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설비투자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성차 조립 공장 주변에 부품제조 산업이 형성되는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완성차 조립 산업이야 말로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 중대형 산업용 자동차 조립산업

캐나다는 연간 33,126대의 중대형 산업용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립시설은 35개소로 집계된다. 연간 출하는 C\$37억이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수출 집약적이어서 생산량의 87%가 수출되고 있다.

3)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차체 및 트레일러는 자체 주행능력을 가지지 않은 자동차를 일컫는 것으로 컨테이너 트럭의 트레일러가 대표적인 예이다. 동 산업은 연간 출하가 C\$37억으로 집계되며 생산량의 28%가 수출되어 타 분야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약한 편이다.

나. 시스템 및 부품 제조업

현재 캐나다에는 933여 개의 부품 제조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 조립공장 인근에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고용규모는 103,413명으로 완성차 조립산업의 고용규모를 능가한다. 연간 출하는 C\$314억이며 생산량의 63%를 수출하고 있다.

다. 자동차 딜러망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이외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망도 전체 자동차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캐나다에는 26개 자동차 메이커의 3,367개의 딜러가 있으며 도·소매를 합한

전체 자동차 판매산업의 고용규모는 165,510명이다. 연간매출은 C\$821억(중고차 포함)이다.

라. 애프터마켓 시장

애프터마켓은 비순정 부품 생산, 서비스, 독립 정비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고용규모는 168,019명이며 연간 매출은 C\$184억이다.

2. 생산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캐-미 자동차조약, NAFTA 등으로 통합된 막대한 북미시장의 진출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NAFTA 역내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는 16.2백만 대에 이른다.

현재 캐나다의 자동차 판매는 연간 1,625천대인데 반해 생산량은 2,553천대로 생산이 국내 수요를 능가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미 자동차 시장의 통합을 통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 효율은 세계 제일 수준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이다. Harbour and Associates Inc. 에 따르면 캐나다의 생산성은 미국에 비해 6.2% 높아 자동차 한대 생산에 소요하는 시간은 22.49시간이다. 또한, 캐나다의 근로자는 일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연간 52대로 미국의 45대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용도 저렴하다. 캐나다에서의 자동차 제조비용은 미국에 비해 31%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FTA 역내국 자동차 산업]

구분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인구 (천명)	31,630	290,810	104,200
자동차 판매 (천대)	1,625	16,967	999
자동차 생산 (천대)	2,553	12,087	1,575
완성차 조립 근로자 (천명)	49	268	52
부품산업 근로자 (천명)	103	707	387
근로자 일인당 자동차 생산량 (대)	52	45	30
인구 천명당 자동차 판매량 (대)	51	58	10

주: 멕시코의 통계수치는 2002년 자료 기준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2003년 기준,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이러한 높은 생산효율은 캐나다가 비교적 적은 인구에 비해 강대한 자동차 산업을 가지게 하여 현재 캐나다는 세계 8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전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

[연도별/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단위: 천대)

국가	1993	2002	2003
미국	10,873	12,280	12,087
일본	11,228	10,258	10,286
독일	4,032	5,145	5,507
중국	1,297	3,251	4,444
프랑스	3,156	3,693	3,620
한국	2,050	3,148	3,178
스페인	1,768	2,855	3,030
캐나다	2,253	2,633	2,553
영국	1,569	1,821	1,846
브라질	1,391	1,793	1,827
멕시코	1,081	1,805	1,575
이태리	1,277	1,427	1,322
러시아	1,619	1,220	1,280
기타	3,191	7,649	7,776
총계	46,785	58,978	60,331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2003년 통계,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온타리오주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내 주요 자동차 산업 생산시설]

Alliston, Ontario	
입주업체	혼다
생산품목	승용차 (생산능력 368천대) 스탬핑 부품
Cambridge, Ontario	
입주업체	토요타
생산품목	승용차 (생산능력 211천대) 스탬핑 1.8L 직렬 엔진
Ingersoll, Ontario	
입주업체	CAMI (GM-Suzuki 조인트 벤처)
생산품목	SUV (생산능력 107천대) 스탬핑
Oakville, Ontario	
입주업체	포드
생산품목	미니밴, 픽업트럭 (생산능력 294천대)
Oshawa, Ontario	
입주업체	GM

생산품목	중형 승용차 (생산능력 566천대) 픽업트럭 (생산능력 234천대) 자동차 부품품 (배터리, 서스펜션, 차체 스탬핑)
St. Thomas, Ontario	
입주업체	포드
생산품목	승용차 (237천대 생산능력)
Windsor, Ontario	
입주업체	포드, GM, 다임러크라이슬러
생산품목	포드: 철, 알루미늄 주조 V6/V8 엔진
	GM: 자동변속기
	다임러크라이슬러: 미니밴 (생산능력 273천대) 대형밴 (생산능력 111천대)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3. 판매

캐나다의 자동차 판매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2004년 판매량은 1,700천대로 추정된다.

구매 성향을 본다면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소형차 선호도가 높으며 이는 미국에 비해 작은 가처분소득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국민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최근 캐나다의 자동차 구매성향은 SUV 등의 경트럭이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1984년 전체 판매량의 24%에 불과했던 경트럭은 2003년 45.6%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NAFTA 역내국 승용차 차종별 판매 비율]

(단위: %)

차종	캐나다	미국	멕시코
소형	30.3	14.1	62.6
중형	17.6	20.8	6.3
대형	1.6	2.9	0.1
고급	4.9	7.9	1.5

(자료원: 캐나다 산업부, 2003년 통계 (2005년 6월 현재 최신자료))

50. 주요산업동향/전자부품산업

<전자부품산업>

1. 산업전망

캐나다의 전자부품 산업은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이나 IT 버블 붕괴 이후의 세계적인 IT 산업 불황에 타격을 입고 있다. 2000년에 이 산업은 C\$997억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버블붕괴 이후 2002년 매출은 C\$597억을 기록하였다. 전자부품 산업의 제품에는 반도체, 인쇄회로,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변압기, 유도자 등이 있다. 이러한 부품들은 소비자, 산업, 방산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 생산에 쓰인다.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부문은 전자부품 산업 생산의 절반 가량을 이루고 있다.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는 50개의 회사가 진출해 있다. 이 회사들의 제품은 CMOS IC회로, 실리콘 bipolar IC, ASIC와 기타 다양한 복합 반도체들을 포함한다. 반도체 산업에 고용된 인원은 연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포함해 약 6000명 가량 된다. 반도체 회사들은 주로 오타와 근교지역에 밀집되어 있지만, 퀘벡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알버타주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의 3/4을 수입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은 대규모 반도체 사용 회사들이 운영하는 사내 시설에서 생산된다. 생산량의 2/3는 자체적으로 쓰이고 25%는 주로 미국 등지로 수출되며 나머지는 국내 시장에 판매 된다.

캐나다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는 아래의 4개 회사들이 있다.

- Nortel (Northern Telecom Ltd.)은 모회사와 하청업체의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를 위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한다. Nortel은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ion) 웨이퍼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Mitel Corporation은 600여 종류의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S 공장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가 1996년에 생산한 8,800만불 어치의 반도체 제품 중 약 20%는 자체 수요로 쓰였다.
- ATI Technologies Inc.는 세계적인 그래픽 프로세싱 칩 생산업자로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는 나머지 회사들은 그 규모가 작으며, 주로 틈새 시장을 겨냥한 전문 제품을 생산하거나 반도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Bell Northern Research도 이 같은 회사 중 하나인데 이 회사는 주로 갈륨 비소 계열 합금 (GaAs)을 생산한다. Newbridge Microsystems와 Genesis Microchip과 같은 중소기업들은 다른 회사들의 반도체 제품을 판매 한다.

2. 연구 개발(R&D)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생산시설과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은 총 수익의 20%를 R&D에 재투자한다.

캐나다는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기 위하여 훌륭한 연구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마이크로 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보조한다. 캐나다내의 32개 대학이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대학, 정부, 산업 분야에서 활동중인 연구원들의 노력은 마이크로 전자를 중심으로 한 여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다.

- Canadian Microelectronics Corporation은 32개 대학과 15개 산업 기관에서 개발한 IC회로의 설계와 실험을 용이하게 한다. 1984년 이후 2,700개 이상의 회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회사는 연방 정부 보조로 운영되고 있다.

- Micronet은 캐나다가 운영하는 Networks of Excellence의 일부다. 이 회사는 ULSI (ultra large-scale integration)를 위한 마이크로 전자 소자, 회로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Micronet은 9개 대학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데 여기엔 70명의 고급 연구원들 250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Micronet에는 16개의 산업 기관들과 5개의 정부 기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Institute for Microstructural Sciences는 연방정부 기관인 국가 연구 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소속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전자 장비, 광전자 공학, 광학 재료 등의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소에는 현재 100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 Communications Research Centre는 새로운 마이크로 전자 소자와 회로 분야 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특히 갈륨 비소 계열 합금(GaAs)과 GaAlAs (gallium aluminum arsenide) 등의 복합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Alberta Microelectronics Centre는 첨단 전자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과 대학 연구소를 지원한다. 이 연구소는 Alberta주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실리콘 칩을 설계하고 생산한다.
- 이 기관은 또 가스 센서를 위한 초박형 반도체, 센서 조립과 통합 같은 전자 물질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 Optoelectronics Consortium은 광전자 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정부와 산업간의 협력 기관이다. 현재의 연구는 주로 갈륨 비소 계열 합금 (GaAs) 기술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는 점차 인화 인동 기술 연구로 발전될 것이다. 이 컨소시엄 시설은 국가 연구 위원회의 Institute of Microstructural Sciences내에 위치하고 있다.
- Strategic Microelectronics Consortium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마이크로 전자업계 전반의 네트 워킹과 협력을 원활하게 한다. 이 컨소시엄은 특히 산업전략 계획의 수립과 연방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를 비롯한 여러 소규모 회사들도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캐나다 의 Microelectronics Corporation 과 Micronet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운영된다.

3. 경쟁력 및 특성

< 관대한 세금 제도 >

연구개발비용(R&D)에 대한 관대한 세금 제도는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투자비용을 매우 저렴하게 한다. 캐나다는 선진 공업 국가 중 R&D에 대한 가장 관대한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금 혜택은 캐나다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한 R&D를 하는 모든 종류의 기업에게 제공된다. R&D를 캐나다 기업에게 위탁하는 외국 기업도 비용 절감 등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 >

캐나다의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은 반도체 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양성했다. 39개 대학이 공학부를 갖추고 있으며 30개 대학이 공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아울러 200여개의 전문 대학들은 매년 15,0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을 배출한다. 북미의 공대 중 상위 20위권 대학에 캐나다의 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상위 40위권에는 1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 경쟁력 있는 지역 비용 >

매년 지역 비용을 조사하는 KPMG Canada 보고에 의하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는 캐나다의 7개 도시와 미국의 5개 도시를 비교했다. 이 보고는 기업의 10년간 운영비의 35 %를 차지하는 지역에 민감한 비용 요소들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도시의 지역 비용이 미국 도시보다 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RAM 공장의 운영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거의 2,160만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북미 시장 진출 >

캐나다는 1989년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꾸준한 대미 수출을 보이고 있다. 1994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NAFTA 체제는 4억 규모의 소비자 시장을 자유 무역 지대로 만들었다. WTO의 정보통신기술 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의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아울러 NAFTA 협정은 원산지에 따른 관세 특혜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국 반도체 회사들이 북미 지역에 자사의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매우 유리하게 되었다.

< 향상된 지적 재산권의 보호 >

캐나다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파리 협정 (Pari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을 승인한 국가이다. 캐나다의 특허법에 따라, 특허 개발자는 자신의 특허품에 대한 생산, 사용, 판매를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다. 아울러 IC 회로 설계도 법령 (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은 IC 회로 설계자의 독점권을 10년 동안 인정한다.

4. 전망

향후 캐나다의 전자부품 산업은 세계적으로 IT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2004년부터는 회복의 길로 접어들 예정이다. 특히 대미 수출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미국 경제의 회복이 산업 회복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 실제 제조 등이 중국 등지의 인건비가 싼 국가로 수주되는 추세로 캐나다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연구/개발만 하는 'fabless'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인 산업이 규모는 앞으로 계속 축소될 전망이다.

51. 주요산업동향/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산업>

1. 산업 현황

정보통신 기술 부문은 캐나다 내의 15,000여 개의 기업에서 58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2003년 이 분야의 GDP는 C\$548억이었으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0%에 이른다. 정보 기술 산업의 연구 개발은 캐나다의 총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중 40% (C\$ 50억, 2004년)를 차지한다. 캐나다의 정보통신산업은 무역 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총 생산의 89% 를 수출하고 있다.

정보 기술 산업의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정보 통신제품, 인터넷, 컴퓨터-전화 통신 통합(CTI) 분야이다.

가. 정보통신 제품

전세계적인 정보 통신 시장의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연간 8% 의 성장이 예상된다. 정보 통신 시장의 성장은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있는 개발 도상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들은 날로 정보화 되고 있는 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최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로의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다.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보통신 제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1% 로 연간 생산은 2002년 기준 C\$115억으로 된다. 이 산업은 온타리오주, 퀘벡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집중된 300개 이상의 회사에서 4,6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동 산업은 최근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다. 캐나다의 전체 정보통신산업이 1997년에서 2002년 사이 연평균 10.7%의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제품 산업은 2000 IT 버블붕괴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퇴보를 겪고 있으며 2002년에는 생산이 전년대비 무려 15.1%나 감소하였다. 이는 캐나다 정보통신산업이 제조에서 서비스 위주로 전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디자인, 연구, 개발만 국내에서 행하고 실제 생산은 해외로 발주하는 'fabless'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캐나다의 정보 통신 제품 산업은 신상품의 개발 및 응용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3개의 캐나다 기업은 세계 50대 정보 통신제품 제조 기업에 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Northern Telecom (7위), Newbridge Networks Corporation (35위), Mitel Corporation (50위)이다. Northern Telecom(Nortel)은 이중 가장 큰 규모이며, 전 세계에 65,000명의 직원이 있고 총 매출이 110억불에 달한다. 이보다 작은 규모의 30개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탄탄한 기반을 쌓고 있다. 이 그룹에는 Newbridge, Mitel, MPR Teltech, Alcatel, Eicon, SR Telecom등의 기업이 있다.

250여 개의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체 들은 국내외 틈새 시장에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다.

나. 인터넷

인터넷의 빠른 성장은 정보 기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광대역 사용자 비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인터넷 사업은 전통적인 정보 기술 산업의 분류에 뚜렷하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최근 Yorkton 증권 회사의 보고는 상품과 서비스 구분에 따른 5가지의 명확한 인터넷 사업의 종류를 규명했다.

-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들은 사용자들과 인터넷을 접속시키고 연결시키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 시설과 장비 공급자들은 인터넷 전송망을 설치하고, 전화선을 ISP업체들에게 임대하는 일을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인터넷상에서의 화상과 텍스트의 검색, 전자 출판, 전자 상거래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내용물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화상과 텍스트 작업을 주로 한다.
- 보안 전문가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한다.

캐나다의 인터넷 공급업체들은 위에서 말한 모든 분야의 일을 다루며, 이중 일부 업체는 세계 최대의 공급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Nortel, Newbridge Networks Corporation, Corel Corp. 와 같은 대규모 기업에서부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중소 기업까지 매우 다양하다. 캐나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의 공급자 명단은 캐나다 인터넷 제품 박람회 사이트 (<http://www.canadait.com>)에 가면 찾을 수 있다.

다. 컴퓨터와 전화 통신간 통합 (Computer-Telephony Integration: CTI)

CTI 분야의 기업들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개발한다. CTI 산업은 개발의 초기 단계이고, 1994년도 세계 시장의 규모는 불과 4억5천만불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장의 규모가 20세기말까지 8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성장 잠재력은 캐나다 CTI 기업과 외국회사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정부는 CTI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Canadian CTI Initiative 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캐나다 CTI 산업의 장점을 알리고, 세계 시장에 좀 더 근접할 수 있게 하며 외국의 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현재 6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가 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는 개인용 PC 음성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Call Centre' 시스템 기술, 데이터 전송 제품, 음성과 데이터 통합 제품, 실시간 운영 시스템 등의 분야이다.

1개의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수 없으며 완벽한 CTI 환경을 홀로 제공할 수도 없다. CTI 산업에는 캐나다의 주요 정보 통신 기업을 비롯하여,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많은 중소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작, 파트너십, 전략적 결합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 개발 (R&D)

캐나다의 광대한 R&D 산업 시설에는 정보 기술 산업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특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학, 정부, 기업간의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협력들은 캐나다가 정보 통신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구, 산업, 교육의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Canadian Network for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dustry and Education: CANARIE)는 캐나다의 연구 공동체들을 각 주의 지역 네트워크와 연결시켜 주는 통신망으로 CA*net에 의해서 제공된다. CANARIE는 이러한 기반 시설을 통해 통신망을 R&D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적인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종류의 광대역 통신망 서비스들이 추진 중이다. 한 예로 OCRInet은 수도 지역의 산업, 대학, 정부 연구소들을 위해 광섬유로 이루어진 ATM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 Centres of Excellence 네트워크 >

500명의 캐나다 최고의 연구원들은 여러 Centres of Excellence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두 네트워크는 최첨단 통신 분야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캐나다 정보 통신 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s Research)는 광대역 통신과 무선 통신 분야에 주력한다.
- 소자, 회로,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Microelectronic Devices, Circuits and Systems for ULSI(Micronet)를 통해 이루어진다.

< IT 연구 협력 >

다양한 연구 협력이 IT관련 분야의 대학, 산업, 정부 연구원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 BC Advanced Systems Institute는 비영리 기관으로 산업, 학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최첨단 분야인 인공 지능, 로봇, 전산, 정보 통신,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의 연구를 주로 한다.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Laboratories는 광전자, 무선 통신, 네트워크 제공 분야의 연구를 한다.
- Alberta Research Council은 전자와 정보 통신 분야의 내용을 검토한다.
- 캐나다 Centre for Marine Communications는 해양 통신의 장비, 시스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 Pre-Competitive Applied Research Network(PRECARN)는 캐나다의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관들로 이루어진 국가 컨소시엄이다. PRECARN의 주된 임무는 Intelligent System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데에 있다.
- National Optics Institute는 광학 시스템, 광전자 공학, 시각 시스템, 이미지 분석 기술 분야를 연구한다.
- Centre de recherche industrielle du Quebec은 비디오, TV, Teledistribution, 음성 압축, 오류 정정에 대한 신호 처리를 연구한다.
- Centre de recherche informatique de Montreal은 최첨단 컴퓨터 과학 기술 분야의 R&D

를 연구한다.

- Canadian Strategic Software Consortium은 서로 협력하여, 문자 집약적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Optical Processing and Computing Consortium은 광전자 공학 시스템의 경쟁력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신속한 개발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 Centre of Expertise and Services in Applications of Multimedia는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AV, 매스미디어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과 기관들을 상호 연결시킨다.
- New Media North는 창의력 있는 내용, 생산 기술, 멀티 미디어 네트워크의 개발을 위한 Centres of Excellence를 설립한다.

< 대학 연구 >

많은 대학들은 IT 연구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전문 분야의 산업 연구 프로젝트들을 설립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IT 분야의 다양한 R&D를 추진 중이다. 국가 연구 위원회의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는 주로 산업에 관련된 연구를 지원한다.

이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각 정보 기술, 쌍방향 정보 기술, 통합 사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연방정부는 통신 연구 센터 (Communications Research Centre)를 운영하는데 이 기관은 통신 장비와 부품을 포함한 통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경쟁력 및 특성

< 개방된 국내 시장 >

캐나다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들과 사용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큰 수요자들이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화 보급률을 자랑한다. Bell Canada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역 및 장거리 전화 전송로는 전자식이다. 광통신 전자 교환 기술, 무선 통신 분야는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 고급 인력 >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고 저렴한 교육 환경을 가진 캐나다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 컴퓨터 공학도, 기술자들을 대학과 기술 관련 전문 대학에서 배출한다. 이 중 많은 인력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학에 계속 남아 최첨단 연구에 참여 한다. 북미의 공대 중 상위 20위권 대학에 캐나다의 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 상위 40위권에는 19개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 해외 시장 진출 >

캐나다 IT 회사와의 합작은 곧 북미에서 싹트고 있는 IT 시장으로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이다. NAFTA 협정으로 인해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무역 지대를 형성하였다. I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는 1995년까지 199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라졌다.

캐나다 정부는 통신 분야의 장비 실험과 허가에 대한 상호 인정 협약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또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각종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에는 WTO, APEC, 정보 통신을 위한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간 위원회 (Inter-America 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가 있다.

캐나다는 국제 정보 통신 연맹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과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도 가입했다.

WTO회원 국가로서 캐나다는 IT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시키기 위한 협정에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FTA와 NAFTA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세 철폐도 추진 중이다.

< 경쟁력 있는 지역 비용 >

매년 지역 비용을 조사하는 KPMG Canada 보고에 의하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KPMG Canada가 조사한 7개의 산업 분야에는 정보 통신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산업의 지역 비용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PMG Canada의 보고에서, 유럽 5개 국가의 15개 도시를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캐나다가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낮은 지역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대한 규제 환경 >

연방정부는 IT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경쟁력의 강화와 외국인 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1992년에 캐나다는 장거리 정보통신 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그리고 캐나다 라디오 TV 정보통신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Telecommunication Committee)는 1994년의 포괄적인 구조의 설립을 통해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통신 분야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캐나다의 국내 정보 통신 시장에서 독점 공급자에게 제한된 분야는 없다. 현재 캐나다의 정보 통신 분야는 미국보다 규제가 약하다. 이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캐나다의 IT 산업에 많이 진출하는 추세이다.

< 강화된 지적 재산권 보호 >

캐나다의 강화된 지적 재산권 법률은 특별히 IT 부문의 제품을 보호하고 있다. 개인은 IC 회로 설계도에 대한 독점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로 설계도를 10년 동안 보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는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는 그들의 특허법에 의해 인정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는 최근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체결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에 승인하였다.

< 산업간 협력과 전략적 제휴 >

기업간의 강한 협력은 캐나다가 IT 분야에서 계속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보 통신 산업은 전자 부품, 소프트웨어 산업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인터넷 관련 회사들과의 전략적 제휴 또한 널리 퍼져 있다.

4. 전망

캐나다 정보 통신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기반이 잘 갖춰진 회사뿐만 아니라, 매우 전문화된 제품을 가지고 부상하는 중소 기업들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모든 회사들은 캐나다가 제공하는 훌륭한 R&D 기반 시설, 인적 자원, 선진 공업 국가 중 가장 관대한 R&D 세금 인센티브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장점들은 캐나다의 IT 회사가 최첨단 기술 발달의 선두 주자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거대한 북미 시장으로의 진입이 날로 증가하면서 캐나다에 위치한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산업에 참여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52. 주요산업동향/제약, 의료산업

< 제약, 의료산업 >

1. 의약 산업

1. 산업 현황

의약 산업은 매우 역동적인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료 보험 제도의 예방 의약품과 비용 절감 분야는 그 비중이 날로 더 해 가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특정 질병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캐나다 의약산업의 규모를 보면 총 고용인구는 2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간 매출은 C\$100억으로 전세계 시장의 1.8%를 차지한다.

캐나다의 의약 산업은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약 회사의 40% 이상은 연간 매출액이 2백만 불 이하이다. 의약품 시장 내의 세분화된 시장마다 많은 의약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의약 회사에는 브랜드 의약 회사, 일반 의약 회사, 바이오 의약 회사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브랜드 의약 회사는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온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이다. 약 60개의 가장 큰 회사들이 브랜드 의약품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체 판매의 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 전체 자산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분야의 거의 모든 R&D를 이들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 분야에 속한 회사들은 매출의 12% 이상을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매우 작다. 의약 산업 중 일반 의약품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매 시장의 10%이고 단위 판매로는 21%를 차지한다. Apotex와 Novopharm라는 두 회사가 일반 의약품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이 두 회사의 의약품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 회사는 R&D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50개 회사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바이오 의약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의약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다.

바이오 의약 분야에는 200백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백신, 의약품,

유전자 치료, 진단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 분야는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개발(R&D)

R&D는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건강 서비스 부문의 R&D 지출은 방대하며 그 중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지출은 C\$1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매출대비 R&D 투자 비율이 20%에 달함을 뜻한다. 캐나다 건강 서비스 산업의 기반 시설과 R&D 능력은 의약 산업의 R&D 투자 유치에 훌륭한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의약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캐나다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광대한 R&D 세금 인센티브 이외에도 의약 산업의 R&D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는 의학 연구 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of Canada)와 국가 연구 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가 있다. 이 기관들은 협력, 네트워크, 제휴 등의 개발을 통하여 탄탄한 의약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경쟁력 및 특성

가. 북미 시장 진출

캐나다의 의약 산업 시장은 대규모의 북미 시장에 통합되어 있다. NAFTA 협정에 의해 캐나다 의약 회사들은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의약품 수요 국가이며, 전체 수요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된 FTA로 인해 캐나다 의약 회사들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6배 증가하였다. 규모는 비록 미국에 비해 작지만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나. 고급 인력

현재 캐나다 의약 산업에는 20,000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중 1/4이상은 대학 졸업자이다. 캐나다는 의약 산업과 같은 지식 기반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있고 캐나다의 의사와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의약산업을 차세대 전략사업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인력을 육성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캐나다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 분야는 의학 R&D 분야이다.

다. 경쟁력 있는 지역 비용

매년 지역 비용을 조사하는 KPMG Canada 보고에 의하면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캐나다가 낮은 수준의 지역 비용을 유지하는 것은 주로 저렴한 임금과 복리 후생비 때문인데 KPMG Canada에 따르면 캐나다는 유럽 및 다른 북미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지역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비용 효율적인 의학 실험

캐나다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비용 효율적인 의학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면적인 의학 실험은 캐나다 의료 보험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매우 발달된 의학 실험 네트워크는 의약 회사들이 신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마. 장점이 많은 규제 환경

캐나다의 규제 시스템은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조성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의약품 승인 과정은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중과 의약 산업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캐나다가 의약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과 효능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약품은 캐나다의 보건청이 관장하는 식품과 의약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이 규제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 공업국들의 규제와 비슷하며 상호 호환되는 부분도 많다.

의약품은 판매를 위해서 처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의약품 확인 번호 (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에 따라 구분된다. 처방 의약품은 약사나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판매될 수 있다. 비처방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의약품은 가게,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다. 수의약품은 수의사, 약사, 일부 소매상들에 의해 판매된다.

비록 캐나다 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출 대상국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 캐나다는 모든 의약품의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시장에 대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와 상호 승인 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추진 중이다.

바. 강화된 지적 재산권 보호

캐나다는 최근에 개정된 특허 법령으로 인하여 기업이 의학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 1993년에 시행된 이 법령으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가 다른 산업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이 법령으로 창의적인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평균적으로 3년 동안 연장시켜 총 특허 보호 기간은 17-20년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에 시행된 지적 재산권 개발 법령은 특허의 신청, 검사, 승인 등에 관한 규칙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품에 대한 특허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 지적 재산권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뉴클레오티드 (Nucleotides)와 펩티드 (Peptides)의 순차적 데이터를 전자 형태로 도출하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캐나다는 부다페스트 협정을 승인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생물학 물질을 국제 기관에 기탁하여 매장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특허권 위반으로 간주된다.

사. 협조적인 투자 환경

캐나다의 금융시장은 첨단 기술 회사들의 순수가치와 부채에 대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을 한다. 캐나다의 벤처 자본 기업들도 의약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의약 산업을 주로 지원하는 기금은 다음과 같다:

- 캐나다 의학 발견 기금 (Canadian Medical Discoveries Fund)
- MDS 의학 발견 기금 (MDS Medical Discoveries Fund)
- 건강서비스&바이오테크놀로지 벤처기금 (Health Care and Biotechnology Venture Fund)
- 바이오 자본 (Bio-Capital)
- 신경과학 협력 기금 (Neurosciences Partners Fund)
- Societe Innovatech
- BC Life Sciences
- Ventures West

아. 전략적 제휴

캐나다 의약 회사들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작으며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많은 의약 회사들은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rnst & Young의 캐나다 의약 산업 보고에 의하면 83%의 의약 회사들이 이런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기업간 제휴는 자국 캐나다나 미국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동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캐나다의 기업간 전략적 제휴는 의약과 정의약의 독립적인 회사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3. 전망

캐나다 의약 산업은 건강 서비스 분야의 발달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생의약품이 시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북미 실험실에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의약품의 절반은 생의학 분야의 결실이다.

관대한 R&D 세금 제도, 탄탄한 산업 기반 시설, 효율적인 규제 환경 등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캐나다에 R&D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생의약 회사와 같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의약 산업에 대한 R&D 투자의 전반적인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전문 분야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캐나다에 위치한 의약 회사들은 정부의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캐나다는 아시아, 중남미, 동유럽 국가들과 상호 승인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II. 의료기기 산업

1. 산업 현황

의료기기산업은 위생 약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등에 쓰이는 기기들을 생산한다. 이 산업의 주요 기기들은 수술용 기기, 모니터, 의료영상 장비, 보조 기기, 진단 기기, 이식관, 치과 장비, 의료용 레이저, 의료 수술 도구 등을 포함한다. 새로 부각되는 분야는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관리 시스템과 가정 건강 서비스의 제품 분야이다.

캐나다 의료기기산업에 약 500개의 기업들이 있으며 고용규모는 22,000명이다.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과 중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약 3/4 가량은 캐나다의 기업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캐나다 내 자회사들은 그 규모가 매우 크지만 원래는 공장을 통하여

캐나다 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졌고 R&D 능력도 거의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융통성이 있는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들로 도전을 하고 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한 세계적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특화된 기업들이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기업들이 제품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로 인해 전체 R&D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의 2%를 R&D에 투자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매출의 20%까지 R&D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

의료 수술용 도구들은 캐나다의 의료 기기 생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최첨단 의료 기술의 성공적인 상업화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 심장 혈관 기기
- 진단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 로봇 자동화 기술
- 소형화 된 도구
-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한 제품
- 의료영상과 뇌좌표 기술
- 바이오 물질
- 정보 시스템

캐나다의 많은 기업들은 새롭게 부각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공동 R&D 개발과 자본 투자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2. 연구 개발(R&D)

캐나다의 의료 연구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세기 내내 캐나다의 과학자들은 진단과 치료에서 많은 선구자적 발견을 하였다. 최근 캐나다의 과학자들은 생의학, 면역학, 유전자 치료, 암 진단과 치료 등의 분야에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이러한 업적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의 수준은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보건의 차지하는 R&D 지출의 규모는 정보 통신 다음으로 크다.

캐나다는 탄탄한 건강 서비스 R&D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대학은 건강 서비스의 R&D 지출 중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은 이중 21%를 차지하고 병원과 의료 연구 센터는 합쳐서 19%를 차지한다. 캐나다에는 대학, 병원, 독립 기관 등 100개 이상의 클리닉 시설이 있다.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가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의료 기기 회사들은 대학 주도의 R&D 성과를 상업화시키기 위한 특별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기업, 대학, 병원간의 교류는 기본 원형, 실험, 최종 생산 등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에 대한 뒷받침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많아지도록 장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사기업들의 건강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 실험, 제품 개발을 위하여 각종 재정 지원을 한다. 3개의 핵심 기관들이 이러한 지원을 담당한다.

- **국가 연구 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자체 기관이 운영하는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me: IRAP)을 통해 재정 지원
- **의료 연구 위원회 (Medical Research council):** 대학이 생의학 연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
- **자연 과학 & 엔지니어링 연구 위원회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Council):** 과학과 공학 분야의 대학 연구를 진흥시킨다.

주정부는 독자적으로나 연방정부와 협력하여 의료 기기 산업의 R&D를 지원한다.

3. 경쟁력 및 특성

가. 높은 국내 수요

캐나다인은 높은 수준의 건강 서비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인당 의료 기기에 대한 수요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절대 규모로 평가했을 때, 캐나다는 세계 10대 시장중의 하나며 총 매출액은 30억불로 추정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 시장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의료 수술 도구는 의료기기 전체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반은 비슷한 규모의 5개 부문 (의료영상장비, 이식관, 병원 장비, 진단 기기, 보조 기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수출을 위한 뛰어난 여건

미국은 전세계 의료 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의 많은 부분을 수입으로 충족시킨다.

캐나다가 생산하는 의료 기기의 약 60% 가량이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의 약 87%는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에 대한 수출 관세는 1998년까지 철폐되었다. NAFTA협정 이후 멕시코의 수입 관세는 1994년 1월1일을 기점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었다.

다. 고급 인적 자원

캐나다 의료 기기 산업은 약 2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산업에는 교육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은 수많은 전문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캐나다는 건강 서비스 분야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의료 기기 연구는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39개 대학은 공학과 응용과학 분야를 학부 과정으로 두고 있고 35개의 대학은 이 분야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두고 있다. 16개 대학은 의학부를 두고 있으며 이중 14개 대학은 생의학 엔지니어링 분야의 특별 과정을 두고 있다.

라. 경쟁력 있는 지역 비용

2002년 KPMG가 조사한 캐나다와 미국의 사업비 항목에는 전자 기계적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모델 의료 기기 시설에 대한 비용이 있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본 지수에서 지역비용지수가 90.6으로 90.0의 영국에 이어 선진국 중 2번째로 낮은 지역 비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낮은 캐나다의 노동 비용 때문이다.

마. 관대한 규제 환경

건강 서비스 분야에 관한 규제는 보건청의 건강 보호부의 소관이다. 이 규제는 캐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워졌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졌다. 규제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연방정부는 산업체와의 합의와 자발적인 협조를 구한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의 규제 환경은 수출을 촉진시키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수출을 위해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국의 기준과 규정에 따라야 하지만 캐나다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서 많은 소규모 기업들은 수출에 치중한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캐나다의 혜택과 미국에 비해 장점이 많은 환경을 인식하고 있다. Everest & Jennings, Medtronic, Johnson & Johnson, Mallinckrodt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캐나다 내의 자회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4. 전망

의료 기기 산업은 건강 서비스 분야에서 불고 있는 비용 절감 추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저렴한 제품과 혁신적인 건강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들어서면서, 의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 기기 시장인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에 위치한 기업들은 북미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시장화 시키기 좋은 위치에 놓여있다.

53. 주요산업동향/첨단제조업

< 첨단제조업 >

1. 산업 현황

고도의 생산 기술(AMT: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ies)은 제조 방법의 탄력성, 생산성, 일관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생산과정의 설계로부터 보관까지의 완전한 생산 과정을 향상시키고 통합하는데 쓰인다. 컴퓨터 원용 설계 (Computer-aided design: CAD) 시스템은 컴퓨터로 운영되는 기계에 연결되어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정확한 관리와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고도의 품질 조절 시스템은 일관된 최종 생산물과 적은 불합격품을 보장하고 just-in-time(JIT) 재고 관리는 자동화된 창고와 더불어 유통 비용을 줄이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산 기술의 혁명을 가져왔고 캐나다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두 요소로 인하여 설계 과정과 생산 사이클이 짧아졌고 생산 공간도 줄어들었다.

이와 비슷한 기술들이 채취 산업, 운송, 공공 사업의 생산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AMT 회사들은 캐나다 곳곳에 위치해 있지만 이중 80%는 온타리오주에서 활동 중이며 나머지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퀘벡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AMT 산업이 외국의 대규모 기업들이 지배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캐나다 기업들이 높은 부가가치 제품과 틈새 시장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캐나다 AMT 회사들은 보통 매출액의 약 3-5%를 R&D에 재투자한다. 또한 이들 회사들은 캐나다의 고급 기술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2. 연구 개발(R&D)

캐나다의 방대한 R&D 기반 시설은 AMT 산업을 지탱하는 여러 전문적인 산업 자동화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 지능 시스템 연구소(Institute for Robotics and Intelligent Systems: IRIS)는 캐나다 Centres of Excellence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IRIS는 23개의 대학, 13개의 기업, 2개의 병원, 4개의 다른 연구 기관 등에서 온 150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소는 인공 지능 시스템 분야에 R&D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 연구소의 전문 분야는 인공지능 수리, 인간과 기계간의 인터페이스, 기계 감지와 발동, 통합 시스템 등이다.

IRIS는 캐나다의 다른 AMT 연구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Pre-Competitive Applied Research Network(PRECARN)인 데, 이 컨소시엄은 인공 지능 시스템의 R&D를 위해 협력하는 37개의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RIS와 PRECARN은 1996 에서 2000년까지의 AMT 연구를 위해 6,500만 불을 배정했었다.

캐나다 첨단기술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들이 PRECARN과 IRIS의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을 가진 14명의 연구원들이 이러한 연구 프로그램에 중요한 그들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프로그램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국가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는 상당한 AMT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NRC의 17개 연구 기관 중 4개의 기관은 생산기술 그룹 (Manufacturing Technologies Group)의 일원이다. 이 기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산업과 협력하고 있다.

NRC가 운영하는 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IRAP)은 160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26명의 산업 기술 고문 (Industrial Technology Advisors)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기업을 위주로 매년 10, 000여 개의 회사들에게 기술에 관련된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으로 신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캐나다 기술 네트워크(CTN)는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R&D 연구원 인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의 멤버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의 생산 연구 공사 (Manufacturing Research Corporation of Ontario: MRCO)다. MRCO는 온타리오주 내의 대학에서 운영되는 생산 기술 연구를 기업에게 제공하고 산학 연구 컨소시엄을 관리한다. 다른 주에서도 R&D 협력 프로그램과 기술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경쟁력 및 특성

가. 세금 지원 제도

캐나다의 세금 제도는 R&D에 매우 관대하므로 이는 R&D 투자가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AMT 산업에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Deloitte & Touche 사가 연방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를 위해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세후 R&D 비용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제조 분야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기업세를 공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여러 생산 기계와 장비에 대하여 누진 상각을 적용하고 있다.

나.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

캐나다는 AMT 산업에서 약 16,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AMT와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흔히 캐나다의 많은 고급 인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 캐나다 협의 위원회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이 캐나다에서 R&D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고급 인력 때문이라고 나타났다.

캐나다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의 임금이 미국보다 낮다는 사실은 많은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캐나다의 협의 위원회가 캐나다에 있는 외국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설문에 의하면 연구원 일인당 비용이 미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강화된 지적 재산권의 보호

AMT 산업은 특별히 산업 디자인과 IC 회로 설계를 보호하는 법률의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생산 제품에 적용된 산업 디자인은 최소한의 관리비를 부담하면 10년 동안 유효한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IC 회로의 설계 또는 디자인의 경우, 개인은 디자인이나 설계에 대하여 10년 동안의 독점 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라. 북미 시장 진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NAFTA 협정은 캐나다와 미국간 맺어진 FTA에 멕시코를 자유 무역 지대에 포함함으로써 확대되었다. 캐나다의 수출품은 대부분 관세 없이 미국에 진입할 수 있고, 이 관세는 1998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철폐되었다. 멕시코는 NAFTA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다양한 AMT 제품의 관세 없는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AMT 제품은 플라스틱 가공 장비, 포장 기계, 제지 생산 기계, 저울, 재료 관리 제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는 산업 장비에 대한 남아있는 관세를 200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마. 산업간 협력과 전략적 제휴

캐나다의 AMT 회사들은 북미 시장에 깊이 연관되어 있고 자동차, 항공, 플라스틱, 전기, 자원 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다. AMT 공급자들과 까다로운 사용자간의 관계가 이 산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AM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최첨단 제품의 개발에 달려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캐나다 AMT 회사들은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창의력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4. 전망

캐나다의 AMT 산업은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그 미래 또한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기계 산업 분야보다 AMT 산업의 판매와 노동 생산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 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 산업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높다. 많은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과 같은 개발 도상국의 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5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제도>

1. 개황

캐나다는 기본법령으로 새로운 발명, 방식, 제조법 등의 다양한 지적재산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모든 국제협정을 승인한 바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국제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등을 정의하고 관련법령을 제정, 실행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 기술이나 집적회로(IC)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지적 재산권 역시 법령으로 인정되며 보호된다. 기업과 개인이 그들이 소유한 지적재산이 올바르게 보호되는 것을 원한다면 등록된 특허대리인 또는 저작권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지적재산권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 집적회로설계법, 캐나다 식물재배법 등 여섯 개의 연방법령에 의해 보호되는데 캐나다 농무부가 식물재배법령을, 연방산업부의 지적 재산권 보호국이 나머지 다섯 개의 법령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2. 특허권

캐나다 법률에 의해 특허의 소유자는 특허품의 생산, 활용, 판매에 관하여 특허출원의 발효시기로부터 20년 동안 단독관리를 가진다. 또한 경쟁사로부터 특허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특허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 특허품이란 새롭게 개발된 유용한 제조법, 기계, 물질의 생산과 구성 또는 이 모든 것의 개선품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캐나다는 산업재산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한 파리협정의 회원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특허품의 최초 출원날짜를 자국에 적용시키는데 이러한 보호관리를 받기 원하는 특허출원자는 자신의 특허를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등록시켜야 한다. 캐나다의 특허신청자들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국내의 주소지가 없을 경우 거주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특허에 관한 공문을 받고 모든 관련사항에 대해 캐나다 정부와 협상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3. 상표권

상표란 생산자나 공급자의 상품과 용역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 또는 상징을 의미한다. 상표의 등록이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표법에 의해 등록될 경우 상표의 소유자는 독점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15년이며 재신청은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상표출원 신청자는 상표의 사용용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 이전에 이미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는 상표신청자 역시 캐나다 거주자 중에서 대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의 작품을 독점적으로 출판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저작권은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품 자체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 안무작업, 캐릭터 제작에 사용된 디자인, 예술작품을 전시할 권리 등을 보호하기도 하며 상업적으로 이를 훼손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한다.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등록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캐나다는 국제 저작권 협정(문학과 예술작품 보호에 관한 Berne 협정)의 회원국으로 저작물이 처음 발간되거나 창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작자는 영연방의 국민이거나 Berne협정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캐나다는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제작했을 경우에도 저작권을 보호한다. 캐나다는 저작권의 유효기간을 보통 제작자의 사후 50년 후로 지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처음 제작된 시기가 증명되어야 한다. 공연예술단체를 포함한 많은 예술단체 중에는 작품의 첫 제작 시기를 기록하여 향후 저작권 사용에 관한 로열티를 대신 회수해주는 기관도 있다.

5. 산업디자인

산업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에 적용되는 모든 독창적인 모양, 패턴, 장식물 등은 산업디자인 법령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정 디자인이 모델 또는 패턴으로서 50개 이상의 제품에 사용되어 산업디자인 법령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적인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디자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예술품인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소유자 역시 제작 후 1년 내에 특허청에 디자인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독점사용권은 10년이며 그에 따른 유지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집적회로 설계

집적회로 설계법은 특정 개인에게 집적회로를 디자인 또는 설계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한다. 집적회로가 처음 출시된 후 2년 내에 캐나다에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10년간 보호된다. 하지만 타인이나 기업체가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분석, 연구, 교육의 목적으로 집적회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7. 식물 재배권

캐나다 법률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튼튼한 식물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고 있다. 식물 재배자들은 식물 재배권을 신청할 경우 18년간 재배권을 소유할 수 있다. 재배권을 보유한 개인은 식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권리와 이 식물을 이용하여 다른 품종으로 개량할 권리를 갖는다. 이 법률에 의해 곡물, 과일, 야채, 꽃 등 23개 종류의 식물이 보호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민 외에도 '새로운 식물 품종의 보호를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국 국민 역시 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5.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1. 개황

캐나다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도덕정신이 결여된 경영행위를 하는 기업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선의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련법규를 제정했다. 이러한 관련법규는 크게 2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과대광고나 포장과 상표의 허위 기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와 산업폐기물 등의 방출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나뉘어진다. 과대광고나 포장, 상표의 허위 기재를 규제하는 법률은 다른 선진공업국이 제정한 법률과 유사하며 상품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보의 종류를 지정, 허위광고 및 오도된 제품정보의 유포를 방지하는데 제정목적은 두고 있다. 환경보호 관련법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며, 시 당국의 토지구획설정에 대한 부칙을 통해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포장과 상표

포장과 상표의 표기에 관련된 소비자법령은 포장과 상표의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식별하도록 한다. 이 법령은 캐나다 내에서 제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 소매업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생산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된 방식으로 상표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광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상표의 표기 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와 불어로 병기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퀘벡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불어로 된 상표를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제품에 부착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상표에는 항상 제품명, 용량(미터법을 기준으로 한 단위 사용), 주 판매지와 생산지가 표기되어야 한다. 포장과 상표의 표기에 관련된 소비자법령은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의 표준규격과 그 모양을 규제하기도 한다.

캐나다 관세법은 60개 항목의 제품에 대해 명확한 원산지 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가 요구되는 제품은 개인용품, 가정용품, 하드웨어, 신 고안품(새로 고안,

발명된 제품), 스포츠용품, 제지류, 출판물, 의류 등이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당시 올바르게 표기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부착이 있어야 한다.

< 섬유류와 가구류 >

연방 섬유상표부착 법령은 의류 제품과 섬유가 덧대어진 가구에 부착되는 상표의 표기기준을 지정하고 있다. 온타리오, 마니토바, 퀘벡주는 섬유가 덧대어 지거나 속이 섬유로 채워진 제품에 대한 상표의 부착기준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식품 >

모든 식품의 상표에는 제품명, 용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판매 전에 포장된 대부분의 식품에는 함유된 내용물, 유효기간, 보관방법, 첨가된 인공감미료의 종류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의 용량이 몇 인분을 대상으로 하고 1인분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도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분의 표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선호도와 향후 있을 정부규제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표기하는 것이 좋다.

식품과 의약 법령은 특정 식품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 법령은 특정 식품에 대한 보관, 판매 등의 규제기준을 지정하여 제품이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도록 하며, 또한 특정 음식의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3. 무게와 측량

무게와 측량에 관련된 법령은 질량, 무게, 부피, 용량, 길이, 면적, 온도, 시간 등을 측정할 때 쓰이는 단위의 기준을 정의한다. 캐나다가 미터법을 도입한 이후 이 법령은 영국의 법정 표준단위와 미터법 표준단위 간의 전환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캐나다 측량청이 이 법령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와 판매 시 사용되는 측량기의 정확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4. 제품의 표준과 규칙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품과 용역에 대한 성능과 안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업체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선을 설치하거나 전기 장비, 기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를 심하게 받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이다. 많은 기업체들은 또한 자신의 사업이나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각기 설정한 제품의 기준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 전기 안전 기준과 관련된 법률에 관해서는 모든 주들이 캐나다 기준 협회(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의 규제와 공인된 서비스 규칙을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관련규제에 대한 조사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두 단계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당 정부 부서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표준 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는 독립된 기관으로 자발적인 제품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캐나다 표준 위원회와 서비스의 표준을

제공하는 다른 여러 단체들은 국가의 표준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가 표준 시스템 위원회의 회원들은 표준을 지정한 후 제품의 실험과 공인과정을 통해 기업의 표준화 수준을 평가한다. 캐나다 표준 위원회는 회원들을 위한 공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와 국제전자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캐나다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공인 마크를 정기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에 제품의 업계표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환경법

캐나다 내에서는 기업이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유해물질을 생산, 보관, 처리할 경우 환경법에 의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경보호 법령과 유해물질 관련법령은 환경보호 관련 핵심 법규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기업이 유해물질을 폐기하거나 운반할 때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자는 환경보호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캐나다 환경보호 법령(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은 생태계에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규제하는 기본 법규로 유독성 물질의 배출 방지를 핵심 요소로 규제하고 있다. 이 법령은 캐나다 환경청에 의해 관리되며 환경보호 규칙, 행동 원칙, 집행 제도 등을 지정한다. 환경청은 보다 효율적인 오염의 측정과 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해물질 관련법령은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광고, 판매, 수입을 규제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상품의 표기방법을 지정하고 있다.

56. 수입관리제도

1. 관련법규

- **관세법 (Customs Act):** 수입행위, 관세평가, 감세, 환불, 관세환급, 면세, 수출행위 등에 관련된 법의 집행 규정
-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관세부과와 부과관세의 환불 규정
- **소비세법 (Excise Tax Act):** 관세율법에 규정된 품목의 국내세, 주(州)세, 판매세, 우표세, 인허가세, 수출상품 관세 환급 및 청구, 용역, 서비스세(GST)등을 규정
- **상품용역세법 (GST: Goods and Service Tax):**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연방 판매세(7%)에 대한 규정
-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 잠정관세, 특별부과세, 덤핑 판정, 보조금지급 조사 판정 등의 관련법

- 수출입 허가법 (Export & Import Permits Act): 수출입 쿼타제, 특수품목의 수출입 허가 규정

2. 관세 장벽

우리나라 상품의 경우 약 2,500 품목(전체품목의 81.5%)이 일반특혜관세 (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들은 최혜국관세 (MFN Tariff)가 적용되고 있다. GPT는 전체 공여품목의 2/3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3. 수입규제품목

위조품, 공격용 무기, 포르노사진, 멸종위기 품종 등 캐나다의 관세율표 (Tariff Schedule) VII에 열거된 품목들은 캐나다로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의 수입통제 리스트에 열거된 품목들은 수출국의 수출 허가 또는 캐나다 외교통상부의 수입 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되는데 주로 낙농제품 및 닭고기 등의 제품이 이에 속한다.

2003년 1월 1일을 기하여 WTO소속 최저 개발국과 아프리카 최저 개발국의 섬유제품에 대해 쿼타 전면해제 및 무관세 적용을 실시한 바 있으며 WTO 도하개발협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로 WTO 전회원국가산에 대한 섬유 및 의류제품 쿼타제도를 전면 해제하였다.

4. 수입허가품목

수출입 허가법상 수입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농산물과 의류, 신발류, 섬유제품, 철강제품, 무기 및 탄약류, 천연가스, 원자력에너지 관련제품, 위험한 야생동물, 식물 및 그 부산물 등이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품목들이다. 이 밖에 동, 식물의 방역과 공중 위생상의 이유로 육류제품, 식품, 묘목, 살아있는 동물, 조류 해산물, 해충 구제제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출국(기관)의 증명 또는 캐나다 정부(기관)의 검사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5.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상의 문제

캐나다는 GATT회원국으로서 원칙적으로 동 규정에 의한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규정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과 상이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는 GATT 규정 XXIV에 따른 지역적 통합시 최혜국 대우(MFN)규정의 예외적용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6. 반덤핑, 상계 관세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의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반덤핑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정품목의 반덤핑 의혹이 제기되어 그에 따르는 반덤핑 관세를 산출할 때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관세 산출에 불충분할 경우 타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반덤핑 협정'에의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규정은 덤핑 피해의 산정 시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를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7. 기타 일방적 조치

캐나다 관세법 (Customs Tariff Act)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국에 취할 수 있는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정식으로 발동한 경우는 없다. 이러한 독자적인 무역보복 조치 관련 규정은 타국의 관행이나 제도의 공정성 여부를 캐나다 정부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WTO의 기본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참고사항: AMPS제도 시행

캐나다 관세청은 2002년 10월 7일을 기하여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System(AMPS)을 도입하여 통관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AMPS의 기본내용은 수입 통관 절차시 작성하는 통관문서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경고 처분으로 끝낸 기존 작성오류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AMPS는 우선 상업목적의 수입 제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관광을 주목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하는 여행자들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문서 작성시 HS Code, 원산지 표시, 제품 설명 등의 사항을 기입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MPS는 관세법 (The Customs Act), 관세표(율) (The Customs Tariff),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 등의 모든 수입 관련 규제에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단순 경고에서 최고 \$25,000의 벌금형, 또는 제품의 압수 및 고발조치에 이르기까지 경우에 따른 각종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AMPS는 수입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록이 누적되어 우범자에 대해서는 통관 절차상의 각종 편의 혜택을 박탈하며, 정밀검사와 감사 등의 규제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통관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수입업자들은 앞으로도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겠지만 문서상 자주 지적되어왔던 업체들에게는 특별감사와 정밀통관조사 등이 자주 실시될 예정이므로 수입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AMPS의 위반 시 페널티는 3-Strike제도를 도입하여, 첫 위반시 단순경고로 문제가 마무리되지만, 위반사례가 AMPS 시스템의 기록에 남아 향후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의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차후 AMPS의 모든 위반사례와 위반업체들의 기록을 여론에 공개, 업체들의 대외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9. 현재 반덤핑 규정에 따라 수입규제중인 한국제품 (2005.6월말 현재)

- 스테인레스 강선 및 구조용 강관 등 2개 품목
- 철근, 스테인레스 봉강, 및 탄소강관에 대한 수입규제는 각각 2005. 1.11, 2005. 1.18, 2005. 6.3 부로 해제

57. 관세제도

1. 개황

캐나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 상 상품을 분류할 때 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2. 관세율 종류

캐나다에서는 상품의 종류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12가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 최혜국관세 (MFN: Most Favoured Nation Tariff)

GATT 제1조의 원칙에 따라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 적용된다.

나. 일반특혜관세 (GPT: General Preferential Tariff)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이며 GPT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캐나다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한 "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GPT 수혜대상국에 속해 있다.

다. 최저개발국관세 (LDC: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라. 일반관세 (GT: General Tariff)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되는데, 다른 관세들에 비해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알바니아, 북한, 리비아, 오만, 몽고, Palau Island 등의 국가들이 일반관세 적용대상국에 속한다.

마. 기타 특혜관세

1) 대미, 대멕시코 관세 (UST, MT, MUST)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3개국간 무역거래시 적용되는 모든 관세는 NAFTA협정에 의거,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가 명시되어야 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대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 (AUT, NZT, CT, CIAT)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3) 카리브해 영연방국가들 (CCCT; 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3.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관세청은 1985년 1월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 새로운 관세평가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 즉, 판매가격으로 대치함으로써 관세평가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평가제도에 의해 평가된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평가에 불복할 경우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시 Import Duty (관세) 외에 Excise Tax (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 (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이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 (GST)도 부과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 부과된다.

4.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적용

캐나다는 모든 한국산 상품에 대해 보통 일반특혜관세 (GPT)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산 상품이 관세율 적용규정에 명시된 저율의 G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공인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발행의 원산지증명서 Form A가 첨부되어야 한다. GPT 수혜대상품목이 아니거나 혹은 완전하게 작성된 Form A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최혜국관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재 한국산 철강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 (SIMA)"에 의한 반덤핑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대한 수입규제 동향' 참조)

(자료원: 캐나다 관세청, 2005.6.28 현재)

58. 통관절차

1. CADEX 시스템

CADEX (Customs Automated Data Exchange) 시스템은 1988년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해 도입된 관세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종전의 정식 통관절차와 비교하였을 때 데이터 입력비용,

문서작성비용, 발송비용, 오류발생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며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전 과정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에 직접 출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주는 등 정부와 관련기관은 물론 수출입 관련업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CADEX 가입자는 통관필수 구비서류인 적하 목록 (Manifest) 및 화물통제 서류 (Cargo Control Documents), Form B3 등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규정 양식대로 입력한 후 전송하게 된다.

전송이 완료된 다음날 오타와에 위치한 세관본부는 Form B3의 접수를 증빙하는 Form K84를 수입업자에게 컴퓨터로 전송하는 동시에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납부통지서를 송신한다.

그 후 CADEX 가입자 (수입업자 또는 브로커)가 지정관할 내에 위치한 항만세관을 방문, 부과된 관세 또는 내국세를 납부하면 즉시 세관창고에서 물품의 인도가 가능하게 된다.

물품이 여러 곳의 항구로 도착될 경우, 1 곳의 항구 세관에서 전 물품에 대한 관세납부가 가능한데 향후 이러한 관세의 납부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세관의 전문 검사반들은 정기적으로 CADEX 시스템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관리하는 업체를 방문, 운영실태를 감사(Audit)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식품 및 농산물의 통관

캐나다 내 식품 및 농산물의 통관절차는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관리한다. 하기 웹사이트의 AIRS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항목에서는 식품 수입에 필요한 품목별 구비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웹사이트: www.inspection.gc.ca/

3. 공산품의 통관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 할 수 있는 화학, 기계, 의료품, 화장품 등의 제품에 대하여는 Health Canada 의 Product Safety Programme (PSP)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장난감은 수입 전 Consumer Product Safety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 대상품목

- consumer products
- cosmetics
- workplace chemicals
- new chemical substances
- products of biotechnology
- radiation-emitting devices
- environmental noise
- solar UV radiation

○ 웹사이트: www.hc-sc.gc.ca/hecs-sesc/cps/index.htm

- 화장품의 통관
 - 化妆품을 수입하기 전 Cosmetic Notification Form 을 작성하여 Product Safety Bureau에 제출해야 한다.
 - 웹사이트: <http://www.hc-sc.gc.ca/hecs-sesc/cosmetics/index.htm>
- 의료용품 및 장비의 통관
 - 캐나다는 모든 의료용품 및 장비를 4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낮은 Class I 품목으로부터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Class IV로 분류하고 있음.
 - 캐나다로 의료용품 및 장비로 분류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국내 제조업체가 캐나다 Health Canada를 통해 Medical Device License를 신청하여 발부 받아야 함.
 - 신청서: http://www.hc-sc.gc.ca/hpfb-dgpsa/tpd-dpt/index_devices_information_e.html

59. 유통구조

1. 유통구조 개황

풍부한 부존(賦存)자원을 보유,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캐나다는 방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더욱이 인구의 지역별 편재 현상이 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본의 축적비율이 낮아 미국의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제는 미국경제와 외국인 투자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인구의 대부분이 미국과의 국경지역에 집중되어 있기에 대규모의 시장은 토론토, 몬트리얼, 밴쿠버 등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다.

상품이 유통되는 단계는 그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입상 (혹은 생산자), 공급업자, 소매상의 순서로 유통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국내외 기업을 막론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현지 공급업자들과의 유대를 통해 물품유통을 하고 있으며, SEARS나 Wal-Mart와 같은 미국의 대형 유통체인들은 직매장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캐나다 현지 판매상이나 공급업체들을 통한 유통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수입절차나 수입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그다지 까다로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도매상이나 공급업체들이 물품을 직수입하거나 국내 생산업체들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소매상으로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간소화되어 있어 물품 공급과정에 있어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마진 자체도 높지 않아 유통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다.

2. 소비특성

캐나다에서는 소비재 상품은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산물, 에너지원료, 광산물, 중간 원재료 등이 수출되며 기계류를 포함한 다양한 경공업품과 일상용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소비재상품의 수입은 백화점이나 소매점 등의 구매담당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공급대상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는 가격경쟁력이다. 가격경쟁력이 우선

검토된 후에 상품의 품질, 디자인, 다양성 등의 요소가 구매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구매태도는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는 캐나다인의 소비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품질에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선호하는 태도와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수입시장의 가장 큰 거래처는 미국이며 그 외에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취향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어 가격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라고 해도 품질 면에서 캐나다인의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잡한 상품은 싸구려 제품으로 인식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작은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또한 비교적 유행에 민감한 편이 아니며 실용적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캐나다인들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물건을 되도록 저렴한 값에 구입하려고 노력하며 타인의 생활방식을 자신의 생활방식과 비교하지 않는 북미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민성도 가지고 있다.

소비지출에 있어 캐나다인들의 특성은 주택, 자동차, 가구집기, 식기 등 주택과 관련된 부문에는 필요한 지출을 아끼지 않지만 의류와 식품류에 관계되는 지출은 그에 비해 되도록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운 겨울의 영향으로 주택을 단순한 거주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여기는 국민성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스포츠 용품 및 레저 용품의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최근의 소비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품가격을 인하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대형창고에 물건을 쌓아 놓고 파는 새로운 운영방법인 창고식 세일방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소매업계에서는 정찰판매가 백화점이나 특정 상품 전문점 등을 불문하고 원칙화되어 있으며 일정기간마다 세일(SALE) 판매가 실시되고 있다.

캐나다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비재상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인 이유로 소매업체들이 상품을 미리 매입하여 축적하여 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재고물량을 줄여 자금의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일판매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의 지불형태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주를 이룬다.

3. 백화점 소매유통

캐나다의 백화점은 크게 중, 상급제품의 판매를 주로 하는 The Bay, Sears 백화점과 중저가 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Zellers, Wal-Mart 등의 주니어 백화점으로 나누어진다. 1993년부터 이들 주니어 백화점들은 매출의 호황을 기록, 백화점의 수익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백화점들이 매출의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여 이윤의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Costco 등의 대형 창고식 할인매장은 지속적인 번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업계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동시에 가격경쟁력도 갖춘 대형 소매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 백화점 내 또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개인매장들도 즐겨 찾는 편이다.

[주요 유통업체 리스트]

백화점
Hudson's Bay Company (The Bay), Sears
대형 할인판매 체인점
Zeller's, Wal-Mart
기타 소매 체인점
Loblaws, Dominion, No Frills, Food Basics, Sobeys (대형 식품 체인점) Tip Top Tailors, Banana Republic, Harry Rosen (남성복) Fairweather, Banana Republic (여성복) Club Monaco, Roots (캐주얼 의류) Chapters, Indigo, Coles (서적) Future Shop, Best Buy (컴퓨터 및 전자제품) Sport Check, Foot Locker (스포츠용품) Leon's, Idomo, de Boer's, Bricks (가구) Canadian Tire, RONA, Home Depot (철물, 자동차 부품, 하드웨어)
캐나다 진출 미국 소매 유통업체
Wal-Mart Stores, Costco (대형 할인 유통매장) Sports Authority (스포츠용품) Home Depot (홈하드웨어) The Gap / Banana Republic (남성, 여성 의류) Toys "R" Us, Disney Store (완구) PETs MART (애완용품)

4. 수입품 유통

가. 수입상품

수입상품의 품질에 관한 캐나다 소비자들의 취향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어, 품질이 조악한 상품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아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중저가품의 선호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제품의 판매가격에는 주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온타리오주의 경우 8%,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경우 7.5%) 및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7%)가 부과되므로 수입공산품의 경우 전반적인 판매가격이 미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나. 효율적인 마케팅

한국산 제품이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부가가치 및 첨단기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하여 저가품과의 경쟁을 피하고 중, 고가품 시장을 겨냥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시아 개도국에서 OEM으로 제작되어 캐나다로 수입되는 의류나 가전제품들의 경우 그 품질이 한국산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향상되고 있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한국제품의 경우 무엇보다도 단순모델의 대량생산 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모델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상품이 선보이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보다 개성 있는 디자인들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의 구매태도와 업계의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는 것만이 지속적인 고객의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다양한 유통조직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요구되는데 중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보다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유통과정을 단축시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아국업체의 자체 직판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여러 업체의 협력을 통한 현지 판매장이나 세일을 위한 창고 설치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지 자사 거점에 원료나 반제품을 수출한 후 재가공하여 미국시장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북미시장 통합에 대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산업기술협력, 현지 부품비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 투자진출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역시 모색할 수 있다.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의 획득이 가능한 제품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캐나다 진출이 유리한 편이다. 한국상품 이미지 격상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판촉활동 역시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로 현지 세일즈 방문 및 사절단 파견 강화, 전시회 참가, 현지 판매대리점이나 직접 참가형식을 통한 전문박람회 참가 적극 추진 등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고급제품 인식 제고를 위해 디자인 및 포장의 고급화로 구매 동기 유발 및 고부가가치 획득에 주력해야 한다.

60. 국제입찰제도

1. 개요 및 규모

캐나다 연방정부의 연간 구매실적은 약 50만 건, C\$ 130억 규모로 추정되는데, 이중 각 부처에서 입찰과정 없이 임의로 구입하는 구매실적을 제외한 순수 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5만 여건에 C\$102억 규모에 달한다.

연방정부 구매실적 중 건당 C\$25천이상이 건수기준으로 4.4%에 불과하나 금액기준으로는 87.8%에 달하며 이중 경쟁입찰로 이뤄지는 것이 전체 구매실적의 78.8%(금액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발주는 조달대상 분야 및 금액에 따라 각 부처와 공공사업부(PWGS: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에서 행해지고 있다.

각 부처별로 자체조달 권한이 있는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동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공공사업부에 구매를 의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C\$ 5천이하의 물품 및 대부분의 서비스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공공사업부는 100여 개 연방정부기관의 구매의뢰를 받아 17,000여종 이상 품목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있으며, 연간 C\$ 25억 내외의 구매실적을 기록한다.

2. 공공사업부 구매절차

연방정부 내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공공사업부의 구매절차는;

- ① 수요부처의 구매의뢰
- ② 공급업체 소싱방법 결정
- ③ 공급업체 견적/제안서 의뢰 및 접수
- ④ 평가
- ⑤ 계약승인 및 체결
- ⑥ 대금결제의 순으로 진행됨

주정부의 조달은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구매지침에 의해 시행되나 전반적인 구매절차는 연방정부의 그것과 유사하다.

① 수요부처의 구매의뢰

자체조달 가능금액을 상회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사유 발생시 각 부처는 부처별 Material Manager의 검토를 거쳐 공공사업부에 동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요청함

② 공급업체 소싱방법 결정

□ 경쟁입찰

- 공개입찰 : 일정금액 이상의 정부조달은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MERX)과 정부 조달 잡지(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를 통한 공고를 통해 공급 업체 발굴
- Source List 활용 : 대체로 C\$ 25,000 이하의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 보유중인 정부조달 공급관심업체 D/B (SELECT, SRI, ACCORD, SPEC)를 활용, 공급업체 발굴

□ 비경쟁입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구매기관에서 공급업체를 경쟁 없이 선정 (ACAN : Advanced Contract Award Notice)

- 긴급구매: 공개입찰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 저작권, 독점계약 등으로 하나의 공급업체만 존재하는 경우
- 국가안보 등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경우

[조달금액별 경쟁입찰 방법]

구분	설계/엔지니어링	건설	상품/서비스	출판
MERX등	C\$ 89,000이상	C\$ 100,000이상	C\$ 25,000이상	C\$ 10,000이상
Source List 활용	상기 금액 미만	좌동	좌동	좌동

주: 최근에는 상기 기본금액 미만의 조달도 MERX에 공개입찰하는 건수가 증가 추세

③ 공급업체 견적/제안서 의뢰 및 접수

- **전화구매 (T-Buy):** C\$ 25,000 미만의 구매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전화상으로 견적의뢰 및 접수
- **견적의뢰 (Request For Quotation):** C\$ 25,000 미만의 구매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견적서 제출을 의뢰하여 접수
- **입찰초청 (Invitation To Tender):** C\$ 25,000 이상의 구매건으로 요구조건이 명확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 가격견적을 요청 (최저가 낙찰 기준 적용)
- **제안서 의뢰 (Request For Proposal):** C\$ 25,000 이상의 구매건으로 요구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최저가 기준 적용이 어려울 때, 가격 및 사업계획, 설계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접수
- **잠정오퍼 의뢰 (Request For Standing Offer):** 정부의 수요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게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에 공급약속을 받아두는 형태

④ 평가

- 접수된 입찰서를 대상으로 각 입찰조건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
 - 의무조건(mandatory requirement) 충족여부 및 세부기준 별 평가
 - 주로 가격, 납기, 품질, 비용을 검토
 - 응찰자가 한명일 경우 응찰자와 조건 및 가격을 협상

⑤ 계약승인 및 체결

-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이전, 동 조달관련 지출에 대한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공공조달부 관리자급에서 결정되나 조달금액이 매우 크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의 승인이 있어야 함

⑥ 대금결제

- 원칙적으로 인보이스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제

3. 해외업체의 정부조달 참여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과정은 공개·비차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1996년 1월부터 발효된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따라 연방정부가 구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 시 WTO-AGP 회원국 모두에게 공평한 응찰기회가 주어짐

□ 개방 기준금액: 물품 및 서비스는 C\$ 261,300 이상, 건설은 C\$ 10,000,000 이상

□ 개방의 예외

- 국가안보 및 노동착취와 관련된 물품 및 서비스
- R&D / Health & Social / Financial / Utilities / Communications, Photographic, Printing & Publication 관련 서비스
- Shipbuilding and Repair / Urban Rail & Transportation Component, Materials, Iron, Steel and Equipment / Transportation Services / Communication, Detection & Radiation Equipment / Oil Purchases related to Any Strategic Reserve Requirement
- Transport, Communications, Fisheries and Oceans 담당 부처용 Automatic Data Processing Equipment, Software, Office Machines, Visible Record Equipment, Special Industry Machinery

1999년 7월 체결된 한-캐 통신장비조달협정 (CKTEA: Canada-Korea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greement)에 의거, 외국기업의 참가가 제한되는 연방정부의 통신장비 및 관련 서비스 조달입찰에도 한국기업은 C\$261,300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구매입찰에 참가가 가능함

또한,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과 관련, 불투명한 업체결정 과정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별 조달과정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의 조달과정은 더 한층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4. 진출전략

1) 조달시장 참가를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자

□ 여러 업체와의 경쟁에서 선택될 수 있는 가격경쟁력 보유

- 연간 C\$ 100억에 달하는 연방정부 조달금액의 약 80% 정도가 경쟁입찰로 이뤄지고 있는 점 및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C\$ 25,000미만의 구매에서는 대부분 최저가격 제시업체로 낙찰됨을 감안할 때, 여러 업체와의 경쟁에서 선택될 수 있을 만큼의 가격경쟁력 보유는 필수적임

□ 제품의 국제품질인증 획득

- 업체별 품질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거나 정부구매 단가가 높은 품목일수록 가격 이외에 품질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품질인증 (ISO시리즈)은 물론 캐나다 정부규격을 획득 시 낙찰의 기회가 그만큼 증가될 것임
- CGSB(Canadian General Standards Board)에서는 사무기기, 페인트, 석유, 종이 등 비교적 수요가 많은 1600여 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으로, CGSB에 의해 표준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품질보유 공급업체(Pre-Qualified Supplier) 리스트에 포함되어 낙찰기회를 높일 수 있음
- CGSB 홈페이지: <http://www.pwgsc.gc.ca/cgsb/text/eng-e.html>

2) 타겟시장을 정하여 마케팅노력을 집중하라

-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부처별, 품목별, 금액별로 담당자가 세분화되어 있어 이들 구매자층 자사의 능력에 적합한 품목과 부처를 선정, 마케팅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국내업체의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시장 참가는 직접응찰과 간접 응찰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여부 및 주요 마케팅 수단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입찰금액제한	주요 마케팅	비고
직접 참가	국내법인자격으로 참가	C\$261,300 이상만	MERX	성공가능성 희박
	현지법인 설립 후 참가	제한 없음	MERX, SRI	중장기적 검토
간접 참가	로비스트, 에이전트 활용	제한 없음	-	시장진입초기에
	Sub-Contractor로 공급	제한 없음	-	적절

3) 타겟시장에 적합한 마케팅수단을 강구하라

□ 국내법인 자격으로 현지입찰 참가

○ 참가가능 분야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C\$ 261,300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와 C\$ 10백만 이상의 건설분야
- 한-캐 통신장비조달협정에 의한 C\$ 261,300 이상의 통신장비 및 관련 서비스

○ MERX 활용을 통한 정부조달 참가

-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인 MERX(<http://www.merx.cebra.com>)에 가입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공개입찰 정보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입찰이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입찰서류를 입수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외국기업에 개방되는 입찰의 경우, 평균 40일 정도의 입찰 응모기간을 허용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참여가 가능

□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입찰 참가

- 외국기업에 개방되는 공개입찰이라도 현지법인이나 웨어하우스가 없을 경우 운송비, 관세, 납기 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이 입찰에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것이 현지 정부조달 관계자의 중론임. 현지법인 설립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나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므로 정부조달 외 캐나다 시장 진출 목적의 업체라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 캐나다 내 사업등록절차 안내 웹사이트
 - 영문 : <http://bsa.cbasc.org/scdt/startup/interface2.nsf/engdoc/0.html>
 - 국문 : <http://www.koreatimes.net/Business/bcontents.htm>

○ Source List 등록을 통한 정부조달 기회 확보

- 건당 C\$ 25천 미만의 조달은 공급에 관심 있는 업체를 분야별로 등록 받아 D/B화 한 후 조달건이 있을 때마다 동 D/B에 등재된 업체들을 접촉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외에도 긴급구매 등의 사유로 공개경쟁하지 않는 등 공급업체 D/B를 활용한 입찰건이 전체 입찰금액의 20% 정도에 달하므로 반드시 등록할 것을 추천함
- 공급 관심업체 D/B(Source List)의 형태는 SRI(일반제품/서비스), CCORD(건설), SPEC (설계, 엔지니어링)로 구분되며, 동 List에 가입하면 PBN(Procurement Business Number)를 받게 됨
- 동 Source List에의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세부가 발급한 사업자등록 번호 (Business Number)와 e-mail 주소가 필요함
- 등록웹사이트: <http://contractscanada.gc.ca/en/regist-e.htm>

□ 에이전트/로비스트를 통한 간접참가

- 정부 로비스트로 활동중인 현지 컨설턴트와의 계약을 통해 이들이 관련 정부인사를 만나 입찰공고 이전의 사전정보 입수, 국내업체 홍보 등의 로비활동 및 경쟁사 파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 물색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연방정부 로비스트 확인 및 등록: <http://strategis.ic.gc.ca/lobbyist>
- 현지에 기존 거래선이 있는 경우, 동 거래선을 이용하여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임. 기존 거래업체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현지에 웨어하우스를 두고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Standing Offer와 같은 신속한 배달이 필요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상품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거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에이전트일 경우, 정부측에서 볼 때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할 수 있음

□ 현지업체의 Sub-Contractor로 간접참가

-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고 현지에 거래선도 없는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지 정부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공급업체 D/B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나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현지업체의 Sub-Contractor가 되어 이들에게 납품하는 것임. 이러한 간접참가 및 실제 납품경험을 통해 자사의 제품성과 경쟁력 등을 확인한 후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참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순서일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MERX)을 통해 응찰업체 정보를 입수한 후 해당업체를 접촉하여 자사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임. 간접적인 입찰참가의 기회와 현지 파트너 발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의 성과를 단기간 사이에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4) 입찰서류 제출시 세부사항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라

□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 관심 있는 입찰을 입수하였으면 입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조금이라도 의심 나는 점이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다면 문서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담당자의 전화 또는 팩스로 확인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음

□ 완벽한 응찰문서를 준비하라.

- 입찰마감 기일과 모든 요구문서의 첨부이 무엇보다 중요함. 관계자에 의하면 입찰 마감날짜뿐 아니라 시간이 1분이라도 늦거나 첨부해야 할 문서가 누락된 경우라도 실격처리 되므로 가능한 최소 24시간 전에 모든 문서를 갖추어 보내는 것을 추천함

□ 간결하게, 정확하게.

- 구매담당자들이 요구하는 문서는 거창하고 유창한 영작이 아니라 이해하기 편하게 문장의 간결함과 정확도를 강조한다고 말함. 응찰문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중요

□ 잊지 말아야 할 사항

- 입찰문서 번호 및 공공사업부 고유번호, 입찰 공개일시, 응찰업체 정보(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요약문과 목차를 준비함은 물론 페이지마다 회사로고나 회사명을 기입하는 것도 담당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요령임. 또한 입찰문서에서 요구한 복사본 부수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응찰문서에 반드시 서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됨

61. 외환관리제도

1. 환율제도

캐나다는 1990년 6월을 기해 시장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지만 환율을 국내 금융정책과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있기도 한다.

또한 1994년 4월 26일에는 NAFTA 북미 3국이 환율의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북미 3개국 통화안정 강화협정(Swap Agreement)을 체결하는 등 환율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달러의 대미달러 환율은 1980년대 후반 경기침체에 따른 미국의 저금리 정책과 물가상승을 우려한 캐나다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양국의 금리차이 확대현상이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이어짐에 따라 1991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한 금융완화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의 금리차가 축소, 캐나다 달러는 약세로 반전하게 되었고 공공부문의 적자와 채무누적, 퀘벡주의 분리운동 등의 영향으로 1999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대미달러 환율이 하락하였다. 그후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던 대미달러 환율은 2002년 후반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에 진입, 현재 2005년 6월말 현재 1 캐나다 달러는 미화 81센트 선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변동 추이]

(단위: C\$)

	2003.6	2003.12	2004.6	2004.12	2005.3	2005.6
미국 달러	1.355	1.318	1.340	1.227	1.210	1.231
유로	1.559	1.625	1.633	1.641	1.456	1.487
영국 파운드	2.240	2.309	2.430	2.363	2.285	2.235
한국 원	0.00114	0.00111	0.00116	0.00116	0.00119	0.00120
일본 엔	0.0113	0.0123	0.0123	0.0118	0.0113	0.0112

주1: 월말 기준 환율

주2: 2005.6월 환율은 2005년 6월 28일 환율

(자료원: 캐나다 중앙은행)

2.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외환관리제도

캐나다는 IMF 8조국 회원으로 캐나다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외환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본금 투자 및 회수, 이익 및 배당금 송금, 대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외국에 대한 로열티와 비용의 지급 등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며 원천징수세만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외국기업들에 의한 손실의 이전, 이전가격 조작 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4월 연방하원은 이전가격에 대한 엄격한 통제, 영업수익의 명확한 해석, 세금포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등 외국계 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62. 시장특성/시장규모 및 특성

< 시장특성 >

1. 시장규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캐나다 시장의 규모를 과소평가, 수출시장개척에 그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의 인구는 2005년 1월 현재 약 3천2백만으로 미국에 비해 1/7수준이며 경제규모 역시 캘리포니아주보다 작아 미국 총 경제규모의 1/10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캐나다를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변국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대형시장의 개척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3천2백만 명의 많지 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2004년 캐나다는 수출 US\$3,165억과 수입 US\$2,730억을 기록, 국가총생산(GDP)에서 국제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에 달해 G7국가들 중 가장 무역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캐나다는 천연자원 생산량의 3/4 이상과 제조업 제품의 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의 수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캐나다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그들의 재화 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2004년 캐나다의 총수입은 US\$2,730억으로 이중 한국제품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6% 내외이다.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참조) 최근 국내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구당 소득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수년간 캐나다 수입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특성

가. 경제권의 지역적 편재

지역별 경제규모(국가총생산 기준) 분포도는 중부권 (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니토바주) 65%, 서부권(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알버타주, 사스카치완주) 29%, 그리고 대서양권 (뉴펀들랜드주,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5.8%로 주요 경제활동이 중부와 서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경향이 있다.

나. 경제권의 미국과의 관계

캐나다의 총 수출입 중 對미 수출은 85%, 對미 수입은 60% 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캐나다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위치하였다는 사실 이외에도 이렇듯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큰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경제는 미국 경제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경기의 침체는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를 감소시켜 캐나다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캐나다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성장이 1% 의 하락을 기록한다면 이는 대미 캐나다 수출이 2% 하락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 국제시장근접

캐나다 시장이 보유한 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국제시장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NAFTA협정 체결 이후 형성된 방대한 북미시장은 국제 투자가 및 수출업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캐나다는 인구가 적고 인종의 구성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가진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주요기업들은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며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로 하는 최첨단 제품들을 생산한다.

라. 인구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3천2백만 명 정도에 불과하며 연간 인구 증가율 역시 1% 에 미치지 않는다. 국토 면적은 1000만km²에 가깝지만 인구의 수가 적은 이유로 캐나다의 인구밀도는 선진 공업국가들 중 가장 낮다. 대규모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과의 국경에 근접한 남부에 치중되어 있으며 인구의 90%가 미국과의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62%의 인구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남부에 밀집하여 살고 있다.

캐나다 연령별 인구구조는 다른 선진 공업국과 유사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현상이 그 어느 국가보다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캐나다 소비시장의 2/3를 형성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 소득

캐나다인의 소득수준과 구매력은 매우 높은 편으로 최근 평균 가계소득은 US\$45,486 가량이며 구매력은 (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득 중 투자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비율은 현재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가 보조하는 퇴직금 및 연금은 소득의 17%를 차지한다. 개인의 명목소득은 최근 매년 평균적으로 2-3% 증가하고 있다.

바. 소비특성

캐나다 소비자들은 매년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에 US\$5000억 가량을 소비한다. 소비 지출의 절반 이상은 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택구입에 소비되는 지출이다. 비내구성 소비재는 소비지출의 25% 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의 구입에 소비되는 지출이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내구 소비재의 지출은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자동차 구입에 관한 지출이다.

높은 소득수준과 구매력을 자랑하는 캐나다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선조들의 근면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근검절약을 중시하는 생활습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나 보석, 의류의 구입을 중시하기 보다는 연극이나 오페라 관람 등의 문화생활이나 골프와 스키 등의 각종 스포츠 활동에 시간과 비용을 적극적으로 할애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폐품을 재활용하는 "Recycling"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홍콩계 중국인들의 경우 아직 이민역사가 짧은 관계로 각종 레저와 문화활동에 관련된 소비지출은 활성화되지 않은 반면 주택이나 사업체, 자동차의 구입 등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부문에서는 활발한 소비활동이 진행, 간접적으로 캐나다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근래 소비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창고 판매방식은 실내장식과 판매요원 관리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를 줄이고 대신 제품 가격을 인하시켜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캐나다인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세련되게 장식된 매장 대신에 대형 물품창고에 상품을 축적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이러한 Warehouse의 세일에 많은 소비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비교적 적은 수의 인구가 광활한 국토에 분산되어 거주하기 때문에 토론토나 몬트리얼과 같은 대도시 내 지역상권이 발달한 곳 이외의 지역에서는 교통 및 유통구조의 발달이 부진하여 소액, 소량 주문이 일반화된 시장소형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종 공산품 위주의 수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 상품화와 유통

많은 캐나다 소비자들은 물건의 선택에 있어서 높은 안목을 소유하고 있기에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디자인과 포장은 성공적인 제품판매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물건을 구입할 시 캐나다 소비자들은 정시배달과 확실한 사후서비스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며 대부분의 내구 소비재의 경우 장기간의 품질 보증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캐나다인들은 많은 양의 상품 광고를 접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브랜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대형할인매장의 영향으로 유명회사에서 제조되지 않은 제품들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소비재의 유통구조는 대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편인데 전통적으로 식품류를 제외한 소비재의 유통은 일부 대형 백화점들이 주도하였지만 최근 들어 대형할인매장들과 "Big Box"소매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 구매시즌

캐나다 소비자들의 연중 최대 구매시즌은 종교적 명절인 크리스마스, 부활절 (Easter day, 4월 둘째 주)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10월 둘째 주) 등에 앞선 구매기간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액을 소비하는 시기이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마다 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등의 세일이 실시되어 할인기회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어진다. 그 밖에도 매년 9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Back To School" 세일기간은 1년 중 학생용품의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밖에 특이한 점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12월말(또는 1월 초)까지 "Boxing Day Sale"이 계속된다는 것으로 상당수의 도, 소매업주들이 구모델이나 재고상품 등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할인 폭이 큰 대규모의 세일을 실시, 알뜰한 소비자들의 대량구매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각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연중 내내 판촉세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 동일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국내 주요 바이어들은 주로 1년 중 판매시장이 가장 한산한 2월에 집중하여 공급업체들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섬유류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계절별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소량주문을 위주로 하는 기타 일반 소비 제품은 1년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63. 상거래시유의사항/상거래 체크포인트

< 상거래 시 유의사항 >

1.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하게 규정된 문화적 금기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국가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 민족, 성,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개인적인 농담의 수용여부가 한국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용납되는 수준의 농담이 캐나다에서는 실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 이 역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개개인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끌어 나가는 것이 캐나다인과의 대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바이어 접촉 시 유의사항

가. 최초의 접촉이 향후 거래성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바이어와 최초로 접촉할 때 일단 팩스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거래의사를 타진한 후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적인 거래의 성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캐나다의 바이어들은 기존 거래선을 바꾸거나 신규 거래선을 모색하는 과정을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회사와 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바이어가 단순하게 거래를 제안하는 내용의 팩스나 이메일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접촉을 시도할 때부터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의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의 송부가 불가능하거나 회사와 제품의 보안등의 이유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에는 최소 간단하게 회사와 제품을 설명하는 소개서와 카탈로그만이라도 함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담당 바이어의 이름과 직함을 분명히 알고 접촉해야

캐나다 바이어와의 성공적인 거래를 원한다면 정확한 구매담당자의 직함이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To whom it may concern'의 문장으로 시작하는 수취인이 불분명한 팩스나 이메일은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담당장의 정확한 직함과 명칭을 안 후 그 담당자에게 직접 자료나 편지를 보내야만 진지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편지와 자료가 담당자에게 전달되지도 못한 채 버려지게 될 확률이 더욱 커진다. 담당자의 이름을 모를 경우이라도 담당부서의 이름은 정확하게 쓰는 것이 좋다.

다. 영어자료는 필수, 퀘벡주의 바이어는 불어자료 선호

구매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캐나다 바이어들을 접촉, 회사와 제품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때에 영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영어자료보다 불어자료가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대도시인 몬트리올이 위치한 퀘벡주는 대표적인 불어사용 지역으로 이 지역 바이어들을 접촉할 때에는 불어로 된 자료가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모든 제품의 포장에는 영어와 불어가 함께 병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 자료송부 이후 접수확인 및 검토결과 문의는 팩스로

자료를 바이어에게 송부한 후 접수확인 및 검토결과를 문의할 때에는 팩스를 통한 접촉이 더욱 효과적이다. 자료송부 이후 수신여부나 제품의 검토결과를 문의하는 것은 자료를 수신한 담당자로 하여금 거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이메일 교신에 대한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문의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많은 광고메일과 이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염려로 사전지식이 없는 대상에게서 발송된 메일은 확인하지 않은 채 삭제하는 바이어의 수가 상당하며 이메일 사용에 관한 개인적인 선호도가 바이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각 바이어의 이메일 사용에 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나서 이메일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마. 회사와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이메일에 대한 선호도가 확인되면 이메일이 편리

회사와 제품에 대한 바이어의 관심과 이메일 사용에 관한 선호도가 확인되면 이메일을 주 연락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의 개인사서함으로 들어가는 이메일은 사적인 친밀감과 회신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보다 자세한 진행상황을 단시간 내에 알 수 있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다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어 사용권인 퀘벡주의 바이어들의 경우 이메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바. 조급함은 금물

캐나다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편으로 처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한 불만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거래선을 신규 거래선으로 쉽게 교체하려 하지 않으며 위험성이 없는 검증된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 가격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사전지식이 없는 신규 업체와의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검토작업을 거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긴 편이다. 현지 기업인의 의견에 따르면 캐나다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미국 바이어들에 비해서 2배 이상 길다고 한다. 따라서 캐나다 바이어들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길은 인내심을 가지고 제품과 회사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 외상거래가 빈번한 신용사회

해외무역에 익숙한 많은 캐나다 바이어들은 대부분의 공급업자들이 계약 체결 시 L/C나 T/T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해외업체들에게 보통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몇 차례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업체에게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거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높은 교역의존도는 바로 양국 간에 신용거래가 빈번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캐나다 바이어들이 미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성사된 사실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수입업체의 외상거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으므로 미리 바이어와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최소주문량’ 에 난색

한국 기업과 캐나다 업체가 거래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업체가 주장하는 ‘최소주문량’ 이다.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주문 물량을 보장받고 싶어하지만 캐나다 바이어들은 오히려 재고축적의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캐나다 수입업자들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소주문량을 처음부터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고 현지마케팅을 통해 시장성 유무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 제품의 소량만 주문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업체 측이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수출하기를 주장, 협상이 진행되어가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업체와 소규모의 거래를 시작한 후 한 두 업체를 최종 선정, 본격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집중 공략을 시도한다면 캐나다와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상담 시 유의사항

합작투자나 거래 파트너를 선정할 시에는 가급적이면 상대방 회사의 신용도 검증을 위해 전문 자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거래업체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적인 신용도 측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는 한국업체 역시 캐나다 기업과의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급상품뿐 아니라 매출실적, 거래업체, 캐나다 규격인증 취득여부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기업소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시 명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상담에 임하는 쌍방간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상담의 진행 중에 명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그 즉시 의문을 제기, 확실하게 의문점을 해결해야만 다음 상담 또는 거래진행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미리 없앨 수 있다.

항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하며 주말이나 연휴는 피해 방문일정을 잡는 것이 좋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금요일도 오후에는 업무를 일찍 끝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진행과 Follow-up 을 위해서는 금요일 늦은 오후에

상담일정을 잡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의 상담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면담 장소까지의 소요 시간을 산출할 때에는 교통 체증이나 러시아워 등을 충분히 고려해 두어야 한다.

또한 출국 전 상담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의 가격조건의 상당수가 Term 조건이므로 은행이자와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손 등에도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인내를 가지고 신용장의 내도 시까지 바이어와의 Follow-up을 해나가야 하며 너무 참을성 없이 단기에 신용장을 요구하거나 상담 후 거래가 신속적으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바이어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4. 비즈니스 에티켓

캐나다의 사업 에티켓은 다른 선진 공업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에티켓과 유사하다. 사업가들 간에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철칙으로 준수되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매너로 통용된다. 만약 20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약속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상 갖게 되는 미팅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주로 악수로 시작한다. 명함의 교환은 미팅 중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공식화 된 절차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방문하는 회사에 비서가 있을 경우에는 비서에게 명함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사업 미팅에서는 카탈로그와 같은 홍보물을 교환할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대동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을 방문할 때에는 보안을 위해 실시되는 신분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가능한 한 이를 감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좋다. 신분 검사 이후에는 미리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점심 식사는 사업 상대와의 격의 없는 미팅을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첫 만남의 장소로는 다소 부적격하며 대신 저녁 식사가 잠재 사업 상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위한 시간으로 보다 적절한 편이다. 사업 상대와 저녁 식사 미팅을 가질 경우 비용은 초청자가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비교적 친절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개인신상에 관한 질문(나이, 체중, 소득 수준 등)을 자세하게 하는 것은 큰 결례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 두어야 한다. 또한 사교석상 일지라도 과음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무실과 회의실과 같은 대부분의 캐나다 사업장에서는 금연이 일반적이며 식당에서의 흡연은 특별히 지정된 좌석에서만 가능하다. 일부 호텔의 경우 지정된 층에서는 흡연을 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정된 렌터카나 모든 여객기의 국내선, 기차, 버스 내에서는 금연이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자신의 앞에서 흡연하는 것을 큰 실례로 생각하며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전에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에티켓이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다. 현재 캐나다 내 모든 건물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업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개인적인 친분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 초대를 받았을 경우네는 정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문 시에는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꽃이나 와인, 자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 등의 선물은 하는 것이 좋다. 사업상의 선물은 큰 거래가 성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별로 흔하지 않다.

정부의 관리에게 선물을 할 경우 편이나 펜과 같은 외국인 회사나 자국의 기념품을 제외하고가의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택시 운전사, 운반인, 벨보이, 이발사, 웨이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 팁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인데 전체 금액의 10-15%를 팁으로 주며 수하물을 운반해주는 운반인에게는 보통 C\$1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64. 전반적 투자여건

< 투자진출환경 >

캐나다는 "사업에 개방적인 나라"로 투자진출 상대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국내시장의 규모나 성장률이 타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캐나다가 세계무역의 기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경제는 거대한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대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의 설립 이후 캐나다는 4억에 달하는 북미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4억 인구의 총 경제생산은 U\$12조에 달한다. 캐나다는 이스라엘(1997), 칠레(1997), 코스타리카(2001)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으며 WTO의 영향력 있는 회원국으로서 국제 무역 장벽들을 허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캐나다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사업에 유리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의 캐나다의 경쟁력은 권위 있는 각종 국제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회계/컨설팅 법인인 KPMG가 2004년 발표한 "매력적인 투자대상지 - 북미, 유럽, 일본의 사업비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주요국과의 사업비용 비교에서 비용대비 사업효과가 가장 큰 나라로 선정, 신규사업을 계획하거나 기존사업을 확대하려는 많은 다국적기업에게 각광받는 나라로 인정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제조업군 (7개 업종), 소프트웨어군 (2개 업종), 연구개발군 (2개 업종), 비즈니스 서비스군의 4개 사업 군 내 12개 표준업종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력, 세금, 운송비, 에너지비용, 기반시설이용료 등 각 부문별로 설정된 총 27개 비용요소를 국가/ 도시 별로 비교하였다. 또한 국가 간의 비용 비교가 용이하도록 미국의 수치를 100으로 기준하여 각국의 비용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하였다.

결과, 캐나다는 각 사업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평균 15% 내외의 비용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4년 중 캐나다화가 14% 정도 평가절상 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캐나다는 미국보다 5% 이상의 비용경쟁력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 투자하기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1)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사업환경
- 2) 높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고급인력의 보유
- 3)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 및 시장의 잠재력
- 4) 효율적인 경제기반 및 인프라
- 5)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및 지원 환경
- 6)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
- 7) 인건비 및 경영 비용의 경쟁력
- 8) 세계적 수준의 기업서비스 기반
- 9) 풍부한 국제비즈니스 인력 네트워크
- 10) 건전한 경제 및 산업환경 구조 등

캐나다 정부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사업하기 편리한 여건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타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세제도는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들에게 대한 규제조치는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고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제도를 보조하며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비교적 용이하게 지원된다. 또한, 캐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입국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를 희망하는 투자자를 위해 비교적 용이한 이민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의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과거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조치를 실행하였다. 외국인의 투자자 국가차원에서의 캐나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점차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투자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자본유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결국 1985년 캐나다는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제정하여 캐나다가 보다 "사업에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의 NAFTA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의 투자는 더욱 자유로워졌다.

캐나다 투자법령은 국내 및 국제 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과정은 그 기준의 폭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에 특별한 규제가 따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가의 기간산업 및 안보와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는데, 주로 캐나다 투자법령과 연방법에 명시된 특별 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사업 이외의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고절차와 검토과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지 않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동 캐나다 투자법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30일 내에 캐나다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의 투자에 대해 산업부는 제한여건의 여부를 검토하며, 특정 투자가 캐나다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산업부는 평가 후 45일 내에 장관에게 1차 보고를 해야 하며 장관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평가 기준은 3개 분야로 분류된다.

- 1) WTO 회원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2) 국가의 핵심 산업부분의 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3) 그 외 기타 해외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의 규모가 C\$5백만 이하인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기업인수의 경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이 모회사의 인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그렇지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C\$5천만 이하이거나 인수금액이 그 기업 자산 총액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WTO회원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관대한 편으로 캐나다는 WTO 체제를 준수하려는 목적 하에 기업인수에 대한 기준을 낮추었다. 경영권 인수의 경우 투자액이 2004년 기준 C\$2억2천3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부문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과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농축수산업 생산을 바탕으로 고도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통해 G7 회원국이 되었다. 국민의 소득은 높으나 자원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부분의 경공업 소비재와 산업재의 수요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한국 업체들의 캐나다 시장 진출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공적인 캐나다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캐나다 시장의 특성에 대한 사전지식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캐나다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출장 시 사전 약속된 바이어 및 투자 대상자를 방문할 뿐만 아니라 관할 무역관에 출장 및 상담일정을 사전통보, 가능하다면 많은 바이어 및 관련사업자들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강한 유통망을 소유한 특정 유통업자 및 세일즈랩 등 중개인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잠재 업체를 확보하여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지 업체와의 상담 이전에는 상담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충분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격표도 CIF 와 FOB 기준의 두 종류를 준비하며, 상담수의 현지 지불조건이 Term (기한부 지불) 조건이므로 은행이자와 환율변동 등의 상황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타 한국업체와 동종의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와는 상담을 피하는 것이 좋는데 대부분의 경우 현재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바이어가 요구하여 한국업체들 간의 무리한 상호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상담이 끝난 후에는 인내를 가지고 신용장이 도래할 때까지 바이어와의 교신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65. 투자유치정책

1. 투자유치정책 개황

캐나다 연방정부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 유치정책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장기적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적인 균형발전 추구, 수입대체 생산확대,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 제고 및 부존자원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정부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안정적인 사업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캐나다는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위한 훌륭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자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없다. 단, 국가 차원의 안보 및 기간산업에 대해 규제조항이 있으나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는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비교적 간단한 입국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 거주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비교적 간단한 이민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정부지원정책

가. 수행사업 종류 및 내용

- 투자희망 외국기업에 대한 캐나다 내 투자유형 사례 자료 제공
- 잠재투자 가능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캐나다 내 투자가능성 설명
- 투자희망업체의 현지방문 알선, 제휴가능업체 소개 등 현지 투자관련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해당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공동 지원
- 해외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중소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합작투자 알선
- 투자희망업체에 대한 캐나다정부정책, 지원프로그램, 특혜제도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캐나다 내 투자관련 제반 문의사항 회신
- 투자 및 기술합작 관련 캐나다 환경 소개 및 성공사례 자료발간
- 국내외 투자현황 및 추이, 경쟁국가의 투자진흥정책, 투자가능성 조사분석

나. 관대한 규제정책

"사업에 개방적"이라는 정책의 기초하에 캐나다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 관대한 편이며, 특히, 노동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C\$2억2천3백만 이상의(2004년 기준, 매년 소폭 상향조정) 직접투자를 하는 WTO 회원국가들에 한해서는 투자허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산업부에 간단한 형식의 보고만 요구한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간단한 보고절차만이 필요하며 해외 투자가들에 대한 규제는 일부 국가기밀에 관련된 산업에 한정되어 있다.

캐나다 정부는 소비자, 투자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만 규제는 명료하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품질기준, 공기업의 재무보고, 환경보호, 노동정책, 토지사용 등이 이 같은 규제에 포함되고 있으며 정부는 최근 이런 규제들이 시장원리에 더욱 부합되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캐나다의 조세제도는 장기적 관점의 균형된 경제발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며, 모든 종류의 기업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자본 이득에 대한 특별 혜택을 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세금의 감면은 다른 공업국가중 가장 후하며 이는 지식기반의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캐나다의 조세제도는 다른 선진 공업국가들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는 사업, 소재지와 소득에 따라 15.6% - 51.0% 사이이다.

캐나다의 조세제도는 국가의 장기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사업활동을 더욱 우대하는데 여러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특별한 감가 상각율과 제조업 분야의 수익에 적용되는 우호적인 세금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첨단 제조, 처리의 기술분야에서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혜제도는 캐나다 내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인 회사와 외국기업의 캐나다 내 회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계 기업에게 큰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캐나다 기업과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기업은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캐나다는 많은 국가들과 조세협정을 맺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한다. 이러한 조세협정에 부합되는 일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도 있다.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캐나다 영토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25%의 원천과세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정해진 과세를 원래대로 부담해야 한다.

라. 벤처산업의 지원

최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은 기술개발과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활발하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런 회사들은 전체의 63%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캐나다 내 벤처산업은 총 C\$22억의 투자되지 않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자본금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산업부는 연방정부의 '캐나다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첨단 기술산업에 대해 C\$2억5천만을 지원할 것이다.

마. 사업지원정책

캐나다 정부는 국제무역, 직업능력, 투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

각 연방부처와 기관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부 캐나다, 북부온타리오주, 퀘벡주, 대서양연안지역 등 4개 지역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지원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기관을 통하여 대학과 정부의 연구자료와 시설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 Networks of Centres of Excellence,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등의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부와 산학간의 협동 연대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바. 외국자본 투자유치 전문기관

1985년 1월 1일부 제정된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의거,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투자심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설립한 캐나다 투자청(Investment Canada)은 1994년 초 정부기구의 축소 및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해체되어 투자유치 및 지원기능은 외교통상부로, 투자심사 및 연구기능은 산업부로 분리, 귀속되었다.

3. 투자유치 관련 법규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코자 하는 정부의 투자 정책에 따라 1985년 6월 30일을 기해 외국인 투자 심의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은 폐지되고 새로운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가 제정되었다.

캐나다 정부는 WTO 가 무역관련투자협정(TRIMS)에 의거, 회원국가들의 특정 형태의 무역 관련 투자금지 조치를 제한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국내 규정은 이미 여타국가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WTO의 TRIMS협정에 이미 준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내 투자법의 개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5년 개정된 캐나다 투자법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시 투자절차의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과 함께 신규기업설립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를 사후 신고제(통상 투자 후 30일 이내)로 전환 하였다.

이러한 캐나다 투자 사전심의를 캐나다 산업부 산하의 투자심의 부서에서 실시하는데 통상적으로 4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최고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는 일회 시행하며 투자업체가 동종 산업에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정기적 심사는 하지 않지만 여타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캐나다 소재 업체들이 외국기업의 투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외국업체에게 의존하는 국내 기생업체가 국내 경제산업계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기존의 캐나다 경제 및 교역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주로 1차 산업에 의존하였는데, 최근에는 고부가 가치성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및 투자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장기 경제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추구 (취약한 북서구권 산업개발), 수입 대체산업 육성,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부족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66. 외국인투자제한

1. 외국인 투자제한 개황

외국인에 의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역시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시에는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규제장치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투자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해졌으며 자본 유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결국 1985년 캐나다는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제정하여 "사업에 개방적인 국가"라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캐나다 투자법령은 국내 및 국제 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과정은 그 기준의 폭을 확대하여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에 특별한 규제가 따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 대한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토위원회가 개입하고 있는데, 주로 캐나다 투자법령과 연방법에 명시된 특별 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사업 이외의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고절차와 검토과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제외되지 않은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이 캐나다 투자법령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30일 내에 캐나다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의 투자에 대해 산업부는 제한여건의 여부를 검토하며, 특정 투자가 캐나다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한다. 산업부는 평가 후 45일 내에 장관에게 1차 보고를 해야 하며 장관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가. 평가 기준

- 1) WTO 회원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2) 국가의 핵심 산업부분의 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3) 그 외 기타 해외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자산의 규모가 C\$5백만 이하인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기업인수의 경우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이 모회사의 인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그렇지만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C\$5천만 이하이거나 인수금액이 그 기업 자산 총액의 절반 이상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WTO회원 국가의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관대한 편으로 캐나다는 WTO 체제를 준수하려는 목적 하에 기업인수에 대한 기준을 낮추었다. 경영권 인수의 경우 투자액이 2004년 기준 C\$2억2천3백만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부문 간접투자의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2. 투자제한 분야

가. 핵심 국가산업

관대한 투자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일부 주요 국가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외국인의 특정산업 소유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캐나다 투자법은 5개 특정 분야 -통신 및 방송업, 금융업, 운송업, 우라늄 생산, 문화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동 4개 분야에 대한 직접인수 형식의 투자액수는 WTO 회원국가의 투자가라 할지라도 C\$5백만으로 제한되며 간접인수형식의 투자액수는 C\$5천만에 한한다.

나. 문화산업

문화산업은 캐나다의 독창적인 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각별하게 보호되고 있다. 문화산업은 출판업, 영화산업, 음악산업 등을 포함하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와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에 의해 검토 대상으로 간주된다. 또한 캐나다 투자법뿐 아니라 지방자치체의 투자법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와 투자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다.

3. 지방별 투자제한

대부분의 캐나다 지방자치지역은 외국인의 지역 내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의 주요 근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농업토지 매입에 대한 특별세 부과조치나 출판업과 같은 문화사업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이 있다.

NAFTA 협정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 출신의 투자가들은 캐나다 내 투자에 관련,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NAFTA 소속 국가의 기업은 실제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동 협정의 혜택을 받게 된다.

4. 자국으로의 송금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들의 투자에서 획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화는 미화 등의 외화와의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천과세는 배당금, 금리, 이윤배당, 봉급, 보너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등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원천과세율은 25%지만, 최근 여러 국가와의 쌍무관세협정을 통해 15% 나 10%, 또는 5%로 세율이 하락하였고 심지어는 원천과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의 일부 채권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67. 투자진출절차

1. 투자심의

가. 심의신청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투자심의 신청서를 작성, 투자 개시 전 산업부 내 투자심의를 담당하는 부서에 제출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나 서면각서(Written Memorandum)를 별도로 제출한다.

산업부 내 투자심의 담당부서는 투자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투자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최대 30일까지 심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투자신청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심의기한(연장기간 포함) 내 동 부서의 승인여부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심의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투자심의 중점 검토 사항

- 고용증대, 자원개발, 캐나다산 부품 사용 및 서비스 활용 등 국내경제에 끼치는 효과
- 캐나다인의 참여도 및 가능성
- 해당 투자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 진보 및 제품혁신에 끼치는 효과
- 기존 국내 기업과의 경쟁 여부
- 연방 및 정부의 산업, 경제, 문화정책과의 조화 여부 등

2. 우리나라 기업의 캐나다 투자 시 투자절차

가. 법인

캐나다 내 일정 주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주의 주법에 의거하여 법인등록을 하고 캐나다 전 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연방법에 의거하여 등록해야 한다.

□ 사업체 등록 연락처:

1) 연방 등록 (Federal Incorporation)

- Corporation Directorate, Industry Canada
 - 주 소: 9th floor Jean Edmonds Tower, South 365 Laurier Ave., West, Ottawa, Ontario, Canada K1A 0C8
 - 전 화: 1-613-941-9042
 - 팩 스: 1-613-941-0601

2) 주별 등록

< 온타리오주 >

- Ministry of Consumer and Commercial Relations, Company Branch

- 주 소: 393 University Ave., 2nd floor Toronto, Ontario, Canada M5G 2M2
- 전 화: 1-416-314-8880
- 팩 스: 1-416-314-4852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 Ministry of Finance & Corporate Relations, Corporate and Personal Property Registries
 - 주 소 : 2nd floor, The Waddington Building 940 Blanshard St., Victoria, B.C., Canada V8W 3E6
 - 전 화: 1-250-387-7848
 - 팩 스: 1-250-356-9422

< 퀘벡주 >

- Direction des Entreprises L'Inspecteur General des Institutions Financieres
 - 주 소: 800, Place d'Youville, 6e etage, Quebec, Canada G1R 4Y5
 - 전 화: 1-418-643-3625
 - 팩 스: 1-418-643-3336

법인등록 외에도 사업 분야에 따라 각 시 정부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인가의 취득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사업 분야 별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특수한 인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다.

□ 라이선스 취득요구 사업분야:

- . 회계법인, 회계사 (주 정부)
- . 법률 집행관 (주 정부)
- . 묘지의 운영과 관리 (주 정부)
- . 각종 대금회수 기관 (주 정부)
- . 화장품 (연방 보건부)
- . 세관 브로커 (연방 국세청)
- . 의료제품 (연방 보건부)
- . 수출관련 (연방 외교통상부)
- . 주차장 운영과 관리 (시 정부)
- . 주유소 (주 정부)
- . 수입관련 (연방 국세청, 외무국제무역부)
- . 제조분야 (주 정부)
- . 주류 (주 정부)
- . 의료 기기 (연방 보건부)
- . 모기지 브로커 (주 정부)
- . 자동차 딜러 (주 정부)
- . 부동산 (주 정부)
- . 관광 관련산업 (주 정부)
- . 여행사 및 도매상 (주 정부)
- . 트럭 운수업 (주 정부)

나. 사무소

캐나다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명칭을 등록한 후 사무실의 임대와 관련된 면허 발급을 위해 관할 시 정부에 문의해야 한다.

다. 지사

법인 설립 절차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인가의 취득이 요구되는데, 특히 법인을 등록할 시에는 지사가 소재한 주에서 사업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 합작투자

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사업체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인가의 취득을 요구한다.

68. 지사 및 현지법인개설

1. 개요

외국계 기업이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법인 설립의 3가지로 나뉜다. 연락사무소는 다른 형태의 진출방법에 비해 최소의 법적 의무를 지니나 권리 또한 최소로 제한된다. 현지법인은 가장 많은 법적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되고 지사는 연락사무소와 현지법인의 중간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지진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의 진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캐나다 진출을 위한 첫 단계이다.

가. 연락사무소(관) (Liaison Office)

캐나다는 정식으로 연락사무소(관)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공식적인 사업체(Legal entity)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사무소(관)를 구분하는 경계는 다소 모호하다.

따라서 연락사무소(관)에 대한 정의를 임의로 내린다면 캐나다 내에 반영구적 소재지를 갖지 않고 본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기 출장자로 볼 수 있다. 즉, 거래는 캐나다 기업과 외국 본사 간에 이루어지며 연락사무소(관)는 현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관)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반면,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방문객의 체류자격을 갖는다.

만약, 캐나다 내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관)가 캐나다 기업과 직접 상거래를 할 경우, 연간 매출이 C\$3만 이하일 경우에만 Minority Supplier(소규모 납품업체)로 구분되어 조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연간 매출이 C\$3만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관)도 세금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지사 (Foreign Corporation's Branch Office in Canada)

캐나다 내에 외국기업의 지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만을 취득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캐나다 외의 타 국가에서

법인등록이 된 외국 기업이 캐나다 각 주에서 영업권을 취득하여 외국기업의 지사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사 업무에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및 채무는 모기업에 귀속된다.

지사의 현지법인 대비 장점은 현지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국내기업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사와 현지법인의 선택은 영업활동의 규모 및 목적에 좌우되며 회계/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 ②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③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 ④ 사업자 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 ⑤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지사설립을 추진할 경우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는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의 취득으로 당해 주 밖에서 법인 설립된 기업에게 영업을 허가하는 면허이다. 외래기업 면허 취득절차 및 비용은 주간 약간의 편차를 제외하고는 일괄적이다.

다. 현지법인 (Foreign Corporation's Subsidiary in Canada)

캐나다 내에 외국인으로서 현지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캐나다에 현지 법인등록을 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인등록을 통해 개설된 현지법인은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경영권만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에서 법인은 연방법인 또는 주법인 중 택일하여 설립할 수 있다.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 ②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③ 현지법인 설립
- ④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 ⑤ 사업자 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 ⑥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1) 연방법인 (Incorporating at the federal level)

캐나다 연방기업법(CBCA: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영업면허나 등록을 요구하기도 하나 각 주는 연방법인이 당해 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 따라서 다수의 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는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렇지만 연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연방기업법은 법인의 연간 매출이 C\$10백만 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C\$5백만을 초과할 경우 재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공개할 것으로 요구한다. 재정보고서에는 현지법인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매출 및 자산도 공개해야 한다.

2) 주법인 (Incorporating at the provincial level)

캐나다 연방기업법에 상응하는 주 별 기업법에 의거,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기업의 활동은 법인을 설립한 주에 한정되지만 타 주에서 당해 주 외래기업(Extra-Provincial Corporation)으로서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주 마다 외래기업의 등록(Registration)을 요구하기도 하며 면허(License)의 취득을 요구하는 주도 있다.

2. 연락사무소, 지사 및 현지법인 설립 세부절차

①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캐나다는 1985년에 제정된 캐나다투자법(ICA: Investment Canada Act, http://investcan.ic.gc.ca/en_doc_a.htm)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액수가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특정산업으로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통한 허가를 요하기도 한다.

가. 투자제한액

캐나다는 외국인 투자에 상한액을 적용한다.

상한선 이내의 투자는 통보대상 투자(notifiable transaction)로 분류되어 투자 이전이나 투자 이후 30일 이내에 산업부에 투자금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투자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투자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 투자(reviewable transaction)로 분류되어 투자 이전에 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투자 제한액의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일반	WTO 회원국1
직접인수	C\$5백만	C\$2억2천3백만
간접인수	C\$5천만	제한 없음

주1: 투자대상 산업이 금융, 우라늄 생산, 운송, 문화산업일 경우에는 WTO 회원국일지라도 일반 투자제한을 적용.

주2: 액수는 공식에 의해 매년 조정

나. 특정산업으로의 투자제한

개방적인 투자정책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몇 개의 핵심 국가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더욱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외국인 소유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캐나다 투자법은 금융업(은행, 투자신탁, 용자, 보험 등), 운송업(항공운수, 공공교통 등), 우라늄 생산, 문화산업(텔레콤, 미디어 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 WTO 회원국에 대한 특혜 투자제한액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인수 C\$5백만 이상, 간접인수 C\$5천만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캐나다 전통문화 및 국가 주체성에 관련된 산업은 투자액수에 상관없이 필히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전통문화부 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 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캐나다로의 투자신고 또는 심의는 캐나다 산업부 투자심의부서(Investment Review Division)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신고 및 심의신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재한 후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하여도 된다.

▶ 캐나다 산업부 투자신고 및 심의신청 웹사이트: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1k00010e.html

▶ 우편 발송 주소 및 팩스 번호

Industry Canada
 Director of Investments
 235 Queen Street, Room 301B East Tower
 C.D. Howe Building
 Ottawa, Ontario
 K1A 0H5
 FAX (613) 996-2515

기타 투자신고 및 허가신청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http://investcan.ic.gc.ca>

라. 투자신고 및 허가 절차

1) 투자신고 (notifiable transaction의 경우)

상기 투자제한액수 이내의 투자는 캐나다 산업부 투자심의부서(Investment Review Division)에 투자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투자개시전이나 사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 신고는 기존 캐나다기업 인수 시(Notification to acquire control of an existing

Canadian business)와 신규 법인 개설 시(Notification of establishing a new Canadian business)로 구분하여 해야 한다.

2) 심의신청 (reviewable transaction의 경우)

상기 투자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규제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개시 전 투자심의부서에 심의신청(Application for review)을 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 서면각서(Written Memorandum)를 별도 제출한다.

산업부 내 투자심의 부서는 투자심의 신청서를 접수 후 45일 이내에 투자신청인의 투자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30일까지 심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 필요할 경우는 투자신청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심의기한(연장기간 포함) 내 동 부서의 승인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투자심의 결과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된다.

▶ 투자심의 결과 공시: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1k00014e.html

※ 참고사항

○ 투자심의 중점 검토 사항

- 고용증대, 자원개발, 캐나다산 부품 사용 및 서비스 활용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 캐나다인의 참여도 및 가능성
- 해당 투자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 진보 및 제품혁신에 미치는 효과
- 기존 국내 기업과의 경쟁 여부
- 연방 및 정부의 산업, 경제, 문화정책과의 조화 여부

○ 투자신고 및 심의신청 웹사이트: <http://investcan.ic.gc.ca>

② 업체명 조회 및 등록

기존 상호 및 상표의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내의 상호 및 상표는 NUANS(Newly Upgraded Automated Names Search)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저장되어 있다. NUANS에 희망 상호 및 상표명을 입력하면 이와 유사한 기존 상호/상표가 50개까지 보고서(NUANS Report)의 형태로 출력된다. 이 보고서는 조회일자로부터 통상 90일까지 유효하며 당해 정부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기존 상호와 희망 상호 간의 상충 여부를 판단해 상호 및 상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NUANS 보고서는 통상 기업등록(지사 및 법인 설립신청) 시 동시에 제출되나 사전에 제출하면 상호 및 상표를 사전 확보해 둘 수도 있다. 정부는 신청 상호/상표가 기존의 것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이유를 들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데, NUANS 보고서를 사전 제출하면 기업등록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상호/상표 사전확보

기간은 보고서의 유효기간인 90일이다.

NUANS 보고서 입수방법은 두 가지로 연방법인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에는 산업부가 별도의 온라인 계정을 발급해 NUANS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보고서 발급을 직접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NUANS RTS(Real-Time System)로 불리는 동 시스템의 이용비용은 C\$20이며 http://strategis.ic.gc.ca/sc_mrksv/corpdire/corpFiling/engdoc/index.html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또 다른 NUANS 보고서 입수방법은 NUANS 공식 검색대행업체(NUANS Registered Search House)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하는 방법이다. 공식 검색대행업체는 서비스요금 포함 C\$40 가량을 수수하며 검색을 대행하여 보고서를 출력, 제공한다. 또한 이들 업체들은 기업등록에 대한 서류절차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기도 한다. NUANS에 대한 정보와 공식 검색대행업체 리스트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nuans.com>

③ 현지법인 설립

캐나다 현지법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법과 주법 중 택일하여 설립할 수 있다. 주 별 법인신청 절차 및 구비조건은 각 주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연방법인 설립신청과도 흡사하다.

가. 연방법인 설립절차

연방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하여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 동 법안의 법인신청양식 1, 3, 6 (CBCA Form 1, 3 and 6)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각 양식의 정식명과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Form 1 – Articles of Incorporation** : 법인에 관한 기본정보(상호, 주식 배당방법 등) 기재
- **Form 3 – Notice of Registered Office or Notice of Change of Registered office** 법인 사무실 소재지 및 관련정보 기재. 추후 소재지 변경 시에도 동일 양식으로 통보
- **Form 6 – Notic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Address of a Present Director** : 법인의 이사(들)에 관한 정보 기재. 추후 이사 관련 정보 변경 시에도 동일 양식으로 통보

상기 양식 1, 3, 6과 함께 NUANS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NUANS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상호/상표를 사전등록을 마치면 상호사용 거부 시 새로 다른 상호/상표명으로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연방법인 설립은 온라인상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통상의 C\$250보다 저렴한 C\$200이다. 온라인 신청은 Corporations Canada Online Filing Centre의 웹사이트를 통해 행해진다.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Corporations Canada 웹사이트 또는 사무소에서 인포메이션 키트와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입수할 수 있다.

▶ Corporations Canada Online Filing Centre:
http://strategis.ic.gc.ca/sc_mrksv/corpcdir/corpFiling/engdoc/index.html

▶ Corporations Canada 법인설립 신청양식 및 인포메이션 키트 다운로드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d-dgc.nsf/en/h_cs02141e.html

※ 법인설립 신청양식 송부처 및 연락처 (Corporations Canada)

▶ Publication and Information Unit
 Corporations Canada
 Industry Canada
 9th Floor, Jean Edmonds Towers South
 365 Laurier Avenue West
 Ottawa ON K1A 0G8
 Tel.: (613) 941-9042
 Toll-free: 1-866-333-5556
 Fax: (613) 941-0601

※ 지역 사무소 전화번호

- BC주 (밴쿠버): 604-666-9875
- 퀘벡주 (몬트리얼): 514-496-1797
- 온타리오주 (토론토): 416-954-2714

나. 온타리오주 법인 등록 절차

온타리오주에서 법인설립을 할 경우, 온타리오주 기업법(BC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 신청하게 되며 동 법안의 양식 1 (BCA Form 1)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BCA Form 1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현지 법무법인, 법인설립 대행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신청비용은 C\$360이며, 연방법인 설립신청과 마찬가지로 NUANS 보고서 제출을 통한 상호/상표 등록을 같이 해야 한다.

▶ BCA Form 1 다운로드:
<http://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

또한 온타리오주 내 법인설립은 주정부가 지정한 아래의 온라인 신청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C\$300으로 할인되나 대행업체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 Cyberbahn Inc:
www.cyberbahn.ca

▶ OnCorp Direct Inc.
www.concorp.com

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법인 등록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인 등록비용은 C\$ 350 이며 개인이 직접 주정부 운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으며 또는 현지 법무법인, 법인설립 대행업체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할 수도 있다. 제3자가 법인등록을 대행할 경우에는 등록 비용외에도 서비스 비용이 추가된다.

▶ BC Online

www.corporateonline.gov.bc.ca

④ 외래기업 영업 면허/등록

캐나다의 각 주에서 타주나 연방 또는 타국법인으로 영업할 경우, 외래기업으로서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래기업 등록/면허는 Extra-Provincial Registration/License로 일괄적으로 불리며 신청절차 및 구비요소도 각 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연방법인이거나 캐나다 내 타주 법인의 경우 외래기업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며 외국법인일 경우 외래기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가. 온타리오주 외래기업등록 (Extra-Provincial Registration)

온타리오주는 기업정보법(CIA: Corporations Information Act)에 의거, 주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이나 타주에 등록된 기업이라도 온타리오주 내에서 영업할 경우 동 법안 양식 2(CIA Form 2)를 기재해 온타리오주 내 영업개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 내용은 법인 주식배당 방법, 영업 목적, 소재지 등의 일반적인 정보이다. 양식은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서비스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에서 입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기재양식은 아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거나 내방 제출하면 된다.

▶ 외래기업 등록 양식 (CIA Form 2):

<http://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

▶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MCBS
393 University Avenue, Suite 200 (우편송부 시)
375 University Avenue, 2nd Floor (내방 시)
Toronto, Ontario
M5G 2M2
Toll-free: 1-800-361-3223 (in Ontario)
Telephone: (416) 314-8880
TTY: (416) 212-1476

나. 온타리오주 외래기업면허 (Extra-Provincial License)

온타리오주에서 외국법인으로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내기업(연방 또는 타주법인)과는 달리 외래기업법(EPCA: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Act)에 의거, 외래기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외래기업면허 신청은 상호/상표를 새로이 등록해야 하므로 NUANS 보고서와 동반되어야 하며 법인설립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상호/상표를 사전등록 할 수 있다. 필수 작성양식은 EPCA Form 1(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과 Form 2 (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Form 2에서 서비스 대리인(Agent of Service)를 지목해야 하는 점으로 서비스 대리인은 외국기업을 대리하는 온타리오주 거주자 또는 상주법인이다.

외래법인면허 신청양식 입수, 기재서류 접수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부에서 할 수 있다. 수수료는 C\$330이며 면허 서류접수 3-4주 이후에 발급된다.

▶ MCBS - 내방 시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MCBS
375 University Avenue, 2nd Floor
Toronto, Ontario
M5G 2M2
Toll-free: 1-800-361-3223
Telephone: (416) 314-8880
TTY: (416) 212-1476

▶ MCBS - 우편송부 시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MCBS
393 University Avenue, Suite 200
Toronto, Ontario
M5G 2M2
Toll-free: 1-800-361-3223
Telephone: (416) 314-8880
TTY: (416) 212-1476

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외래기업(Extra Provincial company) 설립절차

외국기업이 British Columbia(B.C.)주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Extra Provincial company로 등록을 하여야 함. 필요서류는 하기와 같음.

1. Extraprovincial company 신청서(소정서류 Form 13): 약 캐\$ 300
2. Name approval form (소정서류): 약 캐\$ 30

3.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Form 15)
4.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원본 및 영문번역본)

등기소 공증필요 (법인 증명서 및 정관으로 개정했을 경우 개정된 내용 포함)

▶ 서류입수 및 제출처

Canada / British Columbia Business Service Centre
 601 West Cordova Street, Vancouver, B.C. V6B 1G1
 전화: 1-604-775-5525, 팩스: 1-604-775-5520
 홈페이지: www.smallbusinessbc.ca

▶ 상세 정보 (B.C. 주정부 법인 등기소)에서 입수가능.

Registrar of Companies
 940 Blanshard Street, 2nd Floor, Victoria, B.C. V8W 3E6
 전화: 1-250-356-8648, 팩스: 1-250-356-8932

⑤ 사업자 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캐나다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고용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를 취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지사 인가번호와는 다른 개체로 재정, 세무 업무를 이행할 때 사용된다. 개인과 비교해 보면 법인/지사 인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회보장번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연방정부번호(BN: Business Number)와 주정부번호가 별도로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온타리오주 사업자등록번호를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호칭하고 있다.

가. 연방정부 사업자등록 (BN: Business Number)

연방정부번호는 연방정부가 수거하는 기업세(Corporate Income Tax),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부가가치세), 고용세(Payroll Deduction), 수출입관세(Import/ Export Tariff) 회수의 목적으로 발행된다. 당해 기업 BN 하에 상기 4개 세금구좌가 개설되며 만약 수출입을 하지 않아 관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면 관세 계좌는 개설할 필요가 없다.

※ BN 및 하위 조세구좌 구성의 예

당해 기업이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고 판매활동을 하여 이윤을 취득하나 수출입은 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기업 BN 아래 하기 3종류의 조세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종류*	계좌번호
123456789	RP	0001
123456789	RC	0001
123456789	RT	0001

* 계좌종류

- 1) RP: 고용세 (Payroll Deduction)
- 2) RC: 기업세 (Corporate Income Tax)
- 3) RM: 수출입관세 (Import/Export Tariff)
- 4) RT: 상품용역세 (GST: Goods and Service Tax)

BN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며 작성양식은 RC 1으로 하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전국 국세청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우편, 팩스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내방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하기 바란다.

▶ RC 1 양식 다운로드

<http://www.cra.gc.ca/E/pbg/tf/rc1/README.html>

▶ BN 온라인 신청

<https://www.businessregistration-inscriptionentreprise.gc.ca/dchmf/brom/bro/start.do?language=english>

▶ 캐나다 국세청 문의처

Client Service Directorat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Place Vanier, Tower A
Ottawa, ON K1A 0L5
T: 1-800-959-5525

나. 주정부 사업자등록

연방정부 사업자등록 외에도 소재한 각 주 정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각주정부도 판매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부르고 있으며 외래기업의 경우 외래기업면허 신청 시 BIN이 발급된다. 온타리오 주 내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Ontario Business Registration Form 1을 작성, 수수료 C\$60과 함께 제출함으로 사업자등록과 BIN을 발급받게 된다.

신청은 외래기업면허를 발급하는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부에서 받고 있으며 동일 연락처 및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MCBS
393 University Avenue, Suite 200 (우편송부 시)
375 University Avenue, 2nd Floor (내방 시)
Toronto, Ontario
M5G 2M2

Toll-free: 1-800-361-3223 (in Ontario)

Telephone: (416) 314-8880

TTY: (416) 212-1476

[www.http://www.cbs.gov.on.ca/obc](http://www.cbs.gov.on.ca/obc)

<브리티쉬 콜럼비아(BC)주>

BC주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BN(Business Number)과 연동되어 연방 국세청, 주정부 재무부, 주정부 세무부 등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 BC주 Business Number (BN)의 예

예시: 123456789 BT 0001

123456789 = 9단위 사업체 번호

BT = BC주 세금 (PST, hotel room tax 등)

0001 = BC주 관련 계좌번호

⑥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상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기본 영업면허 및 세금구좌 외에도 영업종류에 따라 추가로 면허를 받거나 세금구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는 소매판매업을 개설하는 경우 온타리오주 정부의 판매세 (PST: Provincial Sales Tax)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윈저 시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 정부 판매세 계좌 개설은 온타리오주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www.fin.gov.on.ca)에서 해야 하며 시 정부 사업자 등록은 각 시의 시청에서 해야 한다.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판매세 계좌 개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 Ministry of Provincial Revenue
 - Customer Service and Information Branch
 - Suite 800, 360 West Georgia Street
 - Vancouver, B.C. V6B 6B2
 - Telephone: (604) 660-4524
 - www.rev.gov.bc.ca/ctb/

필요한 면허 및 세금 계좌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으며 보통 관할지역 시 정부에 문의하면 시정부가 요구하는 요소와 주정부가 요구하는 요소를 함께 알려준다.

3. 주재원 입국 및 체류 관련

캐나다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비자인 EA(Employment Authorization)를 취득해야 한다. EA는 심사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EA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취업초청을 받은 뒤, 캐나다 인력자원부(Human Resources Canada)로부터 취업초청 확인서(Confirmation of Offer of Employment)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주한캐나다대사관 영사과에 상기 서류를 제출, EA 신청을 해야 한다.

한국기업의 캐나다 지사로 주재원으로 입국,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도 EA가 필요하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업초청 확인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이 직접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EA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주재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캐나다 국외 기업으로부터 캐나다 내 관련기업으로 영구가 아닌 일정기간 부임하는 조건
- 캐나다 입국 전 최소 1년간 당해 해외기업에 근무해야 함
- 기업의 간부, 관리직, 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ttp://www.cic.gc.ca>

▶ 캐나다 인력자원부

<http://www.hrsdc.gc.ca>

▶ 주한 캐나다대사관

<http://www.korea.gc.ca/>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우편사서함 6299

전화: 82-2-3455-6000

팩스: 82-2-755-0686

69. 공장설립

1. 공장설립 개황

캐나다 내에서 외국인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으나 일반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 이외에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을 임차하는 절차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아울러, 캐나다인과 외국인 모두 공장을 설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으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참고: ‘지사 및 현지법인 개설’ 항목

2. 공장부지의 확보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확보 절차는 캐나다인과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금감면이나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우대조치가 실시될 경우 캐나다인 및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70. 산업단지

1. 캐나다의 산업단지 개요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 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별로 지방정부인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공단 지역 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공단이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지역이 소재해 있는 시 정부의 경제개발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시 공단지역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이 입주하기 가능 하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단 찾아볼 수 없다.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그렇지만 연방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제도,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제도 등 각종 기업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활용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대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된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ACOA(대서양), FORDQ(퀘벡주), FEDNOR(온타리오주북부), WEDC(서부) 등의 4개 산하기관을 두고 동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산업지원제도로는 온타리오주 해외 시장개척기금(TEF), 기업혁신 및 생산성제고 지원제도(OIPS), 퀘벡주의 수출진흥 프로그램(APEX)과 산업개발지원제도(CQIDP) 등이 있다.

2. 주요 산업단지

- ①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 ② Crestwood Industrial/Business Park
- ③ Tilbury Business Park and Delta Industrial centre
- ④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 ⑤ Westwind Industrial Park
- ⑥ Cambridge Business Park
- ⑦ London Industrial Park (Trafalgar & Oxford)
- ⑧ Welland Industrial Park (Southwell, Ontario Industrial & North Welland)
- ⑨ Gateway Industrial Park, Sault Ste Marie
- ⑩ Vaughan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소재지	Hwy 91 & Richmond Connector, Delta, B.C.				
부지면적	1,046,710m ²	조성주체	Gorsvenor International Canada Ltd./Royal Le Page / Town Group (개인기업)		
공단성격	서울 여의도와 유사한 섬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 도로, 철도, 공항에 근접하며 미국 국경과도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요충지로서 주로 유통산업 업체로 구성				
입주비용	- 구입시: C\$93만/acre - 임차시: C\$4.75-8.25/sq.ft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Delta Seaport 에서 20km			
	철도	CN rail 에서 10km 이내			
	공항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도로	Hwy 91에서 5km, Hwy 401 인접			
전 력	- BC전력공사에서 관할 - 산업용 전력 사용료: C\$0.0649/KW, BC GAS - C\$3.718/GJ				
용 수	C\$0.3222/m ³ (상수료는 없고 하수료 개념으로 부과. 분기당 최소 C\$30.56 부과 리치먼드 시에서 관할)				
통신	- BC Tel: 1 commercial line - 설치: C\$112 + Tax (14%) - 기본사용료/월: C\$52.80 + Tax (14%)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현재 B.C.주의 실업률(약 9%)이 높고 종합대학이 3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 -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전후로 캐나다 여타 지역과 비슷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입주업체 150여 사 중 약 40%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무역관 의견	- 교통이 편리하고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창고 및 물류센터로 활용 유망 - 제조업은 경공업위주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Royal Le Page			
	주 소	# 400-885 Dunsmuir St., Vancouver, B.C., V6C 1N8			
전화	1-604-683-3111	팩스	1-604-683-0432	담당자	Mr. Ken Blunt

Crestwood Industrial / Business Park					
소재지	Fraser Road - Westminster Hwy - Jacombs Rd - NO. 6 Road, Richmond, B.C.				
부지면적	2,428,026m ²	조성주체	Bentall Properties (개인기업)		
공단성격	서부캐나다의 부동산 및 관리로 유명한 벤틀사에서 기획한 주요 산업단지로서 밴쿠버 국제 공항이 위치한 리치몬드시에 위치. 미 국경과 연결되는 Hwy 91에 근접한 요충지이며 주로 컴퓨터 산업과 관련된 유통업체가 입주되어있음				
입주비용	C\$60-85만/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Delta Seaport에서 15km			
	철도	CN Rail에서 20km			
	공항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에서 10km 이내			
	도로	Hwy 91에서 10km 이내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전력공사에서 관할 - 산업용 전력 사용료: C\$0.06491 KW, BC GAS - C\$3.718/GJ 				
용 수	C\$0.3222/m ³ (상수료는 없고 하수료 개념으로 부과. 분기당 최소 C\$30.56 부과. 리치몬드시에서 관할)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Tel : 1 commercial line - 설치비: C\$112 + Tax (14%) - 기본사용료/월: C\$ 52.80 + Tax (14%) - 시외, 국제전화는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B.C.주의 실업률(약 9%)이 높고 종합대학이 3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 -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전후로 캐나다 여타 지역과 비슷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입주업체 약 100여 개사 중 35%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주요 고속도로 및 교통이 편리하며 소비시장에 인접하여 주로 유통업관계, 특히 전자제품의 유통업체가 주위에 많아 전자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로 이용				
공단연락처	업체명	Bentall Properties			
	주 소	3100-595 Burrard St, Vancouver, B.C., V7X 1B1			
전화	1-604-661-5000	팩스	1-604-661-5055	담당자	Mr. Bruce Tama

Tilbury Business Park and Delta Industrial Centre					
소재지	River Rd, Delta, B.C.				
부지면적	1,432,535m ²	조성주체	BDDC & Intrawest Dev. Corp. / Royal Le Page (개인기업)		
공단성격	개인기업이 분양. 미국 및 B.C. 주의 소비시장에 인접한 유리한 지리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입주비용	C\$215,000-250,000/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Delta Seaport 인접			
	철도	CN Rail에서 약 20km			
	공항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이내			
	도로	Alex Fraser Bridge 근접, Hwy 91에서 5km 이내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전력공사에서 관할 - 산업용 전력 사용료: C\$0.0649/KW, BC GAS - C\$3.718/GJ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료는 C\$0.45/m³ (분기당 최소 C\$ 44.50 부과) - 하수료는 상수 사용량에 대해 C\$0.35/m³ (분기당 최소 C\$55 부과. 델타시에서 관할)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 Tel: 1 Commercial Line - 설치비: C\$ 112 + Tax (14%) - 기본사용료/월: C\$ 52.80 + Tax (14%)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B.C. 주의 실업률(약 9%)이 높고 종합대학이 3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 -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전후로 캐나다 여타지역과 비슷함 				
외국기업 입주현황	총 입주업체 200여 사 중 약 45%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워싱턴주와 B.C. 주를 연결하는 Hwy 91에서 5km 이내에 있으며 편리한 교통조건으로 인해 유통창고로 활용 유망 - 제조업은 경공업위주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Royal Le Page			
	주소	#206-14888-104th Avenue			
전화	1-604-640-5803	팩스	1-604-684-4602	담당자	Mr. Hendrik Zessel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소재지	52nd St & Glenmore Trail S.E., Calgary, Alberta				
부지면적	-	조성주체	캘거리시		
공단성격	캘거리 남부 시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동 공업단지는 주로 경공업 및 통신 등 첨단산업이 유통업위주로 개발된 시 관리공단으로서 1995년에 개발				
입주비용	C\$15만/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밴쿠버항 이용)			
	철도	CN Rail에서 7km			
	공항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도로	Hwy 2 에서 5km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 1) 5,000KWH/월 이하 사용시 기본요금: C\$12.45/월, 사용료: C\$0.00954/KWH 2) 5,000KWH/월 초과 사용시 기본요금: C\$5.50/월 사용료: 최초 2500 KW - C\$263.00, 2,500- 2,600 KW - C\$0.00905/KW 2,600 - 2,700 KW - C\$0.00750/KW, 초과분: C\$0.00284/KW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1) 상수료 기본요금: C\$18.21 + 사용료 사용료: 100m3 이하- C\$0.9004/m3, 101-1,000 m3: C\$0.5303/m3 1,000m3 이상: C\$0.3845/m3 2) 하수료 : 상수료의 73.02% 부과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버타주 전화국(Alberta Government Telephone)에서 관할 -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60 + (Tax, 7%) - 월 사용료: C\$40.98 + (Tax, 7%)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 및 조달 용이 -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 2,000 전후이며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 				
외국기업 입주현황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2002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 -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 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The City of Calgary. Corporate Properties Group #8052			
	주소	P.O.BOX 2100, Postal Station M, Calgary, Alberta, T2P 2M5			
전화	1-403-268-2212	팩스	1-403-268-1948	담당자	Mr. Scott Hooper

Westwind Industrial Park					
소재지	47 TH Street N.E. & McKnight Blvd., N.E., Calgary, Alberta				
부지면적	-	조성주체	캘거리 시		
공단성격	캘거리 시 관할지역으로 시청 도시개발부에서 직접 분양. 경공업개발계획 단지로서 유통업을 첨가할 계획에 있음				
입주비용	C\$17.5만/acre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밴쿠버항 이용)			
	철도	CN Rail 에서 5km			
	공항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4.5km			
	도로	Hwy 91 에 근접, Hwy 20에서 7km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 1) 5,000 KW/월 이하 사용시 기본요금: C\$12.45/월, 사용료: C\$0.00954/KW 2) 5,000 KW/월 초과 사용시 기본요금: C\$5.50/월 사용료: 최초 2500 KW - C\$ 263.00 , 2,500 - 2,600 KW: C\$0.00905/KW 2,600 - 2,700 KW : C\$0.00750/KW, 초과분: C\$0.00284/KW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1) 상수료 기본요금; C\$18.21 + 사용료 사용료: 100 m3 이하 - C\$0.9004/m3, 101- 1,000 m3: C\$0.5303/m3 1,000 m3 이상: C\$ 0.3845/m3 2) 하수료 : 상수료의 73.02% 부과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버타주 전화국(Alberta Government Telephone)에서 관할 -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60 + (Tax, 7%) - 월 사용료: C\$40.98 + (Tax, 7%) -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 및 조달 용이 -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2,000 전후이고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 				
외국기업 입주현황	-				
한국기업 입주명단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임 -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 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The City of Calgary, Corporate Properties Group #8052			
	주소	P.O.BOX 2100, Postal Station M, Calgary, Alberta, T2P 2M5			
전화	1-403-268-2212	팩스	1-403-268-1948	담당자	Mr. Scott Hooper

Cambridge Business Park					
소재지	Cambridge, Ontario (온타리오주 남부지역)				
부지면적	10.1백만km ²	조성주체	Cambridge시 (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부품, 자동차조립, 기계, 금속가공, 항공 부품업이 발달				
입주비용	공단지: C\$70/평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에리, 휴론, 온타리오 호수로부터 1시간 거리			
	철도	토론토, 몬트리얼 등 대도시와 철도로 연결			
	공항	Waterloo - Guelph Regional Airport와 인접, 토론토 국제 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도로	Hwy 401, 국도 24, 8번 도로 등 통과			
전력	- 전력 공급 풍부, 현재 200 MVA 용량, 27,600 V 공급 - 월 50-1,000 KW 사용시: 0-250 KW - \$10.88센트/KW 250 - 12,250 KW - C\$7.43/KW				
용수	- 공단 내 약 5백만 갤런의 저수지 및 1백5십만 갤런 물탱크 보유. - 월 수도료: C\$9.78센트/m ³				
통신	Bell Canada 서비스 지역으로 광섬유 등 첨단 통신네트워크 완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주변 기술인력 45만 명 보유, 고급인력 풍부 - 시간당 평균 임금: 일반기계공 C\$13.80, 용접 C\$14.90, 빌딩관리인 C\$10.20, 금속공 C\$20.10				
외국기업 입주현황	Toyota, Ciba Geigy, Allen Bradley 등 대표적 다국적 기업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 개발제도 활용 가능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고급인력을 요하는 자동차, 금속가공업 관련 첨단 산업 진출 요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 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Cambridge			
	주소	73 Water Street North, P.O. Box 669, Cambridge, ON N1R 5W8			
전화	1-519-623-1340	팩스	1-519-740-4512	담당자	Mr. Donald G. Eastwood

London Industrial Park (Trafalgar & Oxford)					
소재지	London, Ontario (온타리오주 남서부지역)				
부지면적	2백8십만km ²	조성주체	런던시 (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조립/부품, 플라스틱, 기계, 식품가공, 인쇄, 의료기술 등 발달				
입주비용	공단지: C\$60/m ² 선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5대호로부터 차량으로 2시간 거리			
	철도	토론토, 몬트리얼, 시카고 등과 철도로 연결			
	공항	London International Airport 보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2시간 거리			
	도로	Hwy 401, 402, 403 등 주요 고속도로 통과			
전력	- 전력 공급 풍부, 현재 200 MVA 용량, 27,600V 공급 - 월 50-1,000 KW 사용시: 0 - 250 KW - C\$10.88센트/KW 250 - 12,250 KW - C\$7.43센트/KW				
용수	용수 공급 원활. 월 수도료 기준 C\$53.29센트/m ³				
통신	첨단통신 네트워크 완비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사무, 기술인력 총 20만 명 보유. - 시간당 평균 임금: 일반기계공 C\$16.50, 용접 C\$15.50, 금속공 C\$18.00				
외국기업 입주현황	3M Canada, Cami Automotive 등 대표적 기업				
한국입주 기업명단	없음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제도 활용 가능. 주-시 정부 차원 창업비 지원책 마련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동 지역에 발달한 산업과의 유관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진출 유망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London			
	주소	300 Dufferin Avenue, P.O. Box 5035, London, ON N6A 4L9			
전화	1-519-661-4535	팩스	1-519-661-5331	담당자	Mr. Mathew Fischer, Director

Welland Industrial Park (Southwell, Ontario Industrial & North Welland)					
소재지	Welland, Ontario (온타리오주 남서부)				
부지면적	3백만km ²	조성주체	웰런드시 (지방정부)		
공단성격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미국 국경과 1시간 내 인접,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등 교통 요지				
입주비용	공단임대료 1/2acre당 C\$17,500 (Southwell 기준)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Welland 운하 건착장 시설 완비			
	철도	CN, CP 철도 서비스를 통한 미 뉴욕주 버팔로 직결			
	공항	Niagara District Airport 보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도로	Hwy 406, QEW 통과, 토론토 및 버팔로 1시간 내 연결			
전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land Hydro: 각 공단부지에 15,000 KW 전력 공급 - 월 50-1,000kw 사용시, 0-250 KW - C\$11.05센트/KW 250-12,250 KW - C\$7.25센트/KW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공급 1일 2,100 m³, 하수처리 1,600 m³/일 - 월 수도료 기준 48.95센트/m³ 				
통신	Bell Canada 광섬유 통신시설 등 첨단 네트워크 완비				
인력조달및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아가라 지역 내 약 16만 명 고급인력 보유 - 시간당 평균 임금: 공작기계공 C\$11.02, 용접 C\$10.64, 금속연마공 C\$17.15 				
외국기업 입주현황	TRW Canada, Atlas Specialty Steels 등 대표적 기업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삼미그룹 현지법인 Atlas Specialty Steels				
입주자격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제도 활용 가능. 시 정부 차원에서 공단부지 선정 지원				
입주여건에 대한무역관 의견	시 관할 이외에 민간공단들이 입주업체 유치에 치열하여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입주 가능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orporation of the City of Welland			
	주소	411 East Main Street, Welland, ON L3B 3X4			
전화	1-905-735-1700	팩스	1-905-732-1919	담당자	Mr. Stan Neathery

Gateway Industrial Park Sault Ste. Marie, Ontario			
소재지	Sault Ste. Marie, Ontario		
부지면적	16십만km ²	조성주체	수세마리시(지방정부) 및 Algoma 철강 (사기업)
공단성격	Algoma 철강에 인접한 호반 개발지로 입주업체는 전기요금 15-20% 할인 혜택 수혜		
입주비용	분양가는 1 acre당 U\$15,000-25,000 이나 협상 가능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교통	항만	Algoma 항만시설 (Marina Port Facility)	
	철도	Wisconsin Central 철도 및 캐나다 국철(CN) 연결	
	공항	공단으로부터 15분 거리에 대규모 활주로를 갖춘 공항 소재	
	도로	미국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및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17번과 연결	
전 력	Great Lakes Power 및 Central Gas사가 할인율로 공급		
용 수	오대호 인접으로 용수 풍부		
통신	광섬유 통신 시설 등 통신시설 완비		
인력조달및 임금수준	고기능 인력의 즉시 고용 가능		
외국기업 입주현황	미국 Algoma Steel Georgia Pacific - Flakeboard 합작회사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General Metal Diffusion 社 (담당: Andrew Park, Jong You)		
입주자격및 규제현황	없음		
우대조치	연방 및 지방정부의 對기업 지원책 및 인근대학 등이 운영하는 인력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인프라, 교통 및 전력, 용수 등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고임금 및 국내 시장협소가 애로사항		
공단연락처	업체명	Sault Ste. Marie Economic Development Corp.	
	주 소	99 Foster Dr. Civic Centre Level 3, Sault Ste. Marie, ON P6A 5N1	
전화	1-705-759-5432	팩스	1-705-759-2185
담당자	Mr. Jake Pastore, Economic Development Officer		

Vaughan			
소재지	Vaughan, Ontario (토론토 서북경계 소재)		
부지면적	공업지역 총 27,655,831m ²	조성주체	시당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 개인 및 기업이 분할 소유
공단성격	토론토 서북쪽에 인접하여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발달된 공업지역		
입주비용	소유주와 계약으로 매수, 임차 가능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지번에 따라 조성이 완성된 곳과 나대지 등이 혼재		
교통	항만	남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한 토론토항을 이용	
	철도	캐나다 국철(CN) 화물 주 분류장이 시 내부에 소재하며 Canadian Pacific 철도의 환적 터미널도 있음	
	공항	토론토 국제공항이 15-30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Buttonville 공항 소재	
	도로	Hwy 407, 7, 427, 27 이 남쪽에서 7번 도로를 관통하게 됨	
전 력	Vaughan 전력회사가 최고수준의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전기 공급		
용 수	온타리오호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 용수가 풍부, 하수시설도 완비		
통신	광섬유 통신망 및 100% 디지털 교환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시설이 광통신 시설인지의 여부는 즉시 확인 가능함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약 65,000명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인근 광역 토론토 지역에는 2백만의 노동인구가 있음		
외국기업 입주현황			
한국입주 기업명단	한국 한화그룹, 현지 제조합작법인 Acan Windows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입주에 앞서 Vaughan시 관계자와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함		
우대조치	없음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토론토 인근지로 소비층이 두터우며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지역		
공단연락처	업체명	Economic & Technology Development Dept. City of Vaughan	
	주 소	2141 Major Mckenzie Dr., Vaughan, ON	
전화	1-905-832-8521	팩스	1-905-832-6248
담당자	Mr. Frank Miele, Commissioner		

71. 자유무역지대

현재 캐나다 내에는 경제관련 특수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로 일컬어지는 경제관련 특수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단 및 산업 클러스터지역이나 민간기업들의 공단지역이 각지에 형성되어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원주민들의 국경 통과 시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참고: ‘산업단지’ 항목

72. 조세제도

1. 캐나다 조세제도

□ 납세 의무자

캐나다의 납세 의무자는 캐나다 시민과 세법 상의 영주권자이다.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1년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에는 세법상 영주권자로 분류되어 각종 소득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갖게 된다.

□ 세금의 종류

- 개인종합소득세 (갑근세, 불로 소득세, 양도 소득세 등)
- 회사 법인세: 계산 방법은 회계 원칙 적용
- 회사 재산세: 중소기업에는 거의 적용 되지 않음
- 회사 최저세: 중소기업에는 거의 적용 되지 않음
- 주(州)별 상해 보험: 고용주 부담의 상해보험
- 원천과세: 고용인의 근로 소득에서 징수
- 재산세: 시/군 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 통관세: 수입품에 대한 세금 징수
-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 부담 (한국과 대동소이)
- 판매세: 소모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

□ 조세행정

캐나다의 조세행정은 징수기관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

- 연방정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 관세, 부가가치세, 회사법인세 등을 징수
- 각 주정부: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소득세, 소매 영업세, 자본세, 임금세 등의 세금을 징수.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지방자치: 재산세를 징수

이러한 3단계의 조세 제도는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납세 계획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납세의무 여부를 가능하는 것 역시

가능하게 해 준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소득 (해외 소득 포함)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들은 캐나다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직접세를 부과할 권리는 주 정부에 있으며 기타의 권한은 연방 정부에 있다. 연방 정부가 간접세를 부과하는 한편 주 정부가 직접세를 대신 징수하여 연방정부에 전달한다. 캐나다의 과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득의 재분배'를 과세제도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료 국민의료보험 혜택과 최근에 확대되어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 등은 캐나다 복지정책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캐나다 한국 세무 협정

- 1978년 협정 체결
- 1980년 시행
- 목적: 이중과세 방지
- 대상: 양국 납세자
- 세율: 15% 원천징세

3. 기업에 대한 세금

캐나다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은 핵심적인 기업경영과 관리가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 상 캐나다에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 주재하는 기업은 캐나다 내외에서 획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비(非)주재 기업들은 캐나다 내의 소득과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가. 연방소득세 (법인세)

과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총소득은 조세제도의 규칙에 따라 조정되며, 배당금, 로얄티, 이자 소득, 자본 이득과 같은 영업 외 수익이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캐나다 기업들은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한 특별 혜택을 받는데,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본 이득의 75% 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외에서 획득한 영업 외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다.

기업의 운영 중에 소요하는 정당한 사업비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자본 원가 총당금이라고 불리는 감가상각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된다. 대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의 최하 4% 에서 최고 30% 의 비율로 정해지는데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4% 이며 기계류의 감가상각비가 30% 이다.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비율의 절반 정도이다.

일부 연구개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도 20% 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오락, 여가활동이나 개인 차량의 운행에 쓰인 비용에 대한 세금 역시 기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증빙된다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 4%의 부가세를 포함한 과세 소득의 29.12%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한다. 제조나 가공 등 분야의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사실상 22.12%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된다.

캐나다가 소유한 사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CCPC)들은 연간 영업소득 중 처음의 2만 달러에 대해서는 16%의 연방 소득세 특별 공제를 받는다. 이러한 혜택은 과세 자본이 C\$1천만 이하인 모든 사기업들에 제공되며 과세 자본이 C\$1천만 이상 C\$1천5백만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적어진다. CCPC는 비거주자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을 의미한다.

나. 주(州) 소득세

주 정부는 관할지역 내의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세율은 주 별로 다르다. 대부분의 주 정부는 제조와 가공 분야의 소득에 대한 특별 세율을 적용하며 모든 주가 중소기업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부 공제하고 있다. CCPC가 아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합한 총 세금 부담율은 유콘준주의 24.6%에서부터 사스카치완주, 마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의 39.1%까지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 대기업세

연방세인 대기업세(Large Corporations Tax)는 과세 자본이 C\$1천만이 넘는 캐나다 내의 대기업에게 징수된다. 대기업 세율은 캐나다 내 총 소유 자본의 0.225%이며 일부 기업 간 상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내 상주 조직이 없는 외국인 기업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4%의 연방 부가세는 대기업세의 액수를 줄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연방 부가세가 대기업세의 부담을 초과할 경우 미래의 대기업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차액이 향후 7년간 연기될 수 있고 현재 시점 기준 3년 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라. 온타리오주의 최소 기업세

온타리오주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자산의 규모가 C\$5백만 이상이거나 수입이 C\$1천만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기업세(Corporate Minimum Tax)가 적용된다.

최소 기업세의 세율은 기업의 재무 제표에 나타나는 총 소득의 4%이며 기업간 상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중 과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킨다. 기업이 총 소득의 4% 이상을 주 소득세로 납부하였을 때는 최소 기업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최소 기업세로 지불한 세금은 다른 일반 소득세에서 10년간 공제된다.

마. 주 자본세

캐나다 내 5개 주에서는 자기 자본이나 유보 이익을 포함한 기업 자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의 주 자본세율은 0.3%이며, 사스카치완주의 세율은 0.6%, 퀘벡주의 세율은 0.64%이다. 세율 적용에는 자본의 최저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은 사스카치완주의 경우 C\$1천만이며 나머지 4개 주의 기준 범위는 C\$1억에서 C\$2억 사이이다.

4. 개인 세금

가. 소득세

피고용자는 총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일부의 경우에 한해 특정 면제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소득은 소득세 법령이 특별히 지정한 혜택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의 혜택을 포함한다. 그 중 한 예로, 회사 차량의 개인사용은 과세의 적용을 받는 혜택이지만 등록된 연금 제도나 개인 의료보험과 같은 고용자의 부담에 의한 혜택은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독으로 또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은 소득을 산정할 때 기업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캐나다 주재의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개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기업의 차원에서 이미 한 번 세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배당금의 총액은 25% 확대되고 개인은 배당세 공제를 받게 된다. 캐나다에 주재하지 않는 기업의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은 개인 소득에 전액 반영된다.

자본 이득의 75%는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자본 손실이 이득보다 클 경우 미래의 자본 이득을 상쇄할 수 있도록 차액이 현 시점 이후로 연기될 수 있고 현재의 3년 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 캐나다의 거주하는 개인은 C\$50만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평생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이러한 자본 이득이 캐나다 주재 중소기업이나 농업재산의 지분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개인의 주거지에서 취득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는 1가구당 1개의 주거지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정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되거나 또는 반대 상황의 경우 자본 자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나. 세율과 세금공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본 연방 소득세는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처음 C\$35,000의 과세 소득에는 16%의 세율이 징수되고 그 다음의 C\$35,000의 과세 소득에는 22%의 세율이 징수되며 그 다음 C\$43,804의 과세 소득에는 26%의 세율이 징수된다. C\$113,804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일관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개인은 기본 연방 세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연방 부가세를 납부한다. 기본 연방 세금의 처음 C\$12,500에 대해서는 3%의 부가세가 산정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5%의 부가세가 산정되며, 주 소득세도 여기에 부과된다.

퀘벡주는 자체의 세금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별도의 주 세금 보고서를 요구한다. 다른 모든 주는 45-69%에 달하는 기본 연방 세금의 비율로 계산된 소득세를 징수하며, 일부 주에서는 고액의 주 세금에 대한 비례세와 부가세를 징수한다.

특정 종류의 세금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는 감소할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기본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등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기타세제

가. 임금세

연방정부는 고용 보험과 연금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임금세를 징수하며 이 비용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모두 부담된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니토바주, 뉴펀들랜드주, 유콘준주 역시 별도의 임금세를 징수한다. 임금세율은 임금의 규모에 따라 0.98-4.26 % 의 비율로 나타난다.

나. 상품과 용역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

캐나다 정부는 GST (7%)라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다. GST는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용역에 적용된다. 소매상을 포함한 생산과 분배망을 통한 사업은 국내 판매에 GST를 부과하지만 이러한 사업 운용에서 생기는 여타 비용과 재화 구매를 위해 지불한 GST에 대해서는 투입세 공제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종 소비자는 완전 구매가격 내의 재화의 구매가격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주택매입과 같은 구매의 경우에는 부분적 환불이 가능하다.

GST는 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의료기기, 농수산물 등과 같은 "zero 등급" (과세 대상이 아닌 등급)의 상품과 용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매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판매자는 재화의 구매에 포함되어 지불한 GST를 부분적으로 공제 받는다. 이는 의료, 교육, 육아,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과 같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와 대비된다.

다. 주(州)소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매세가 추정되지만 알버타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이다. 상품과 용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는 각 주마다 다른데, 세금은 소매상들이 징수하며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는 수입세를 주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주 소매세는 퀘벡주의 6.5% 에서부터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10% 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는 연방 및 주 판매세를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 HST)라고 불리는 단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각 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퀘벡주는 GST와 유사한 판매세를 부과하며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는 판매세를 단일한 15%의 통일판매세(7%의 GST를 포함)로 대체시켰다.

라. 관세

캐나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과 규칙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캐나다는 통일된 상품 설명과 코드 시스템(HS System)을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무역 대상국과 비슷하다.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NAFTA 협정은

3개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왔다.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 토지 판매세

일부 주에서는 토지를 처분할 때 세금이 징수되는데 경우에 따라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에게 보다 높은 토지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다.

6.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캐나다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소유의 투자회사(non-resident-owned corporation: NRO)라 불리는 특정한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소득세 법령에는 이러한 기업 설립절차에 대한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NRO는 캐나다 내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자본 이득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NRO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의 수준과 비슷하다.

7. 국제적 쟁점

캐나다는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통한 다수의 조세 협정에 등록되어 있다. 최근의 협정들은 OECD 기준의 이중 과세 면제를 위한 모범 협약(Model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을 따르고 있다. 이들 협정은 조세제도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각국의 조세 당국에게 과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이중 과세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와 징수에 대한 권리는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에게 있다. 캐나다에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상주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징수한다.

'상주 기관'과 같은 용어의 정의와 각종 세부 조항은 협정마다 차이가 있는데 조세 협정에 동의한 나라는 이중 과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가는 거주자가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의 규모와 일치하는 외국인 세금 공제를 부여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주정부는 캐나다가 맺은 조세협정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비거주자가 연방 세금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 세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73. 사회간접자본

1. 에너지

캐나다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유로 인한 에너지생산 및 소비량이 큰 국가로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영향으로 에너지 의존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초금속, 제조, 화학,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전체적인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 수(水)자원

상·하수도, 식수, 공업용수의 상태는 전부 양호한 편이며 특히 5대호 연안에 위치한 온타리오주의 경우 민물보유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3. 교통

광대한 국토 면적과 함께 산맥, 호수, 하천, 삼림 지대 등의 다양한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캐나다의 가장 큰 과제는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락 수송수단을 확립하는 것이다. 영토가 방대하고 1, 2차 산업제품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캐나다의 주요 교통망은 5대호 주변 및 서부캐나다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집중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의 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1930년대에는 주요 교통망 중 철도운송의 비중이 85%에 달했으나 1970년 후반부터는 도로운송이 철도운송을 능가하고 있다. 현재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 등을 운반하는 물류운송 수단으로 철도, 선박, 트럭, 파이프라인 등이 이용되고 있다.

가. 도로

캐나다 내 도로의 총 연장은 9십만km(연방 및 주정부 관리국도 300,000 km)이며 1942년-1953년에 군용도로로 완성된 알래스카 하이웨이와 1962년에 완성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Trans Canada Highway)가 있다.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도슨크리크에서 북서쪽으로 포트세인트존, 포트벨슨, 유콘준주, 남서부의 테스린, 화이트호스 등을 지나 알래스카의 타나크로스, 빅델타, 페어뱅크스에 달하는 전장 2,440km의 고속도로이다.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는 1962년에 완성되었으며 캐나다의 교통, 운송 체계에 새로운 동맥역할을 하게 되었다.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는 대서양 연안의 세인트존(뉴펀들랜드주)에서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빅토리아에 이르는 최초의 캐나다 대륙횡단 고속도로(7,820km)이며 세계 최장 고속도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도로이용은 무료이며 전국 승객 운송의 약 90%와 화물수입의 50% 이상이 도로교통망에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의 화물트럭 수송량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운송업자들은 미국과의 호혜협정 체결로 북미주 전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나. 철도

캐나다의 철도망은 전국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국민 1인당 철도길이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캐나다의 철도의 주요노선은 캐나다 동서를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한다. 남북 방향의 철도들은 각각 허드슨 만에 면한 마니토바주의 처칠과 마니토바, 제임스 만에 면한 온타리오주의 무스니시, 래브라도 반도에 있는 퀘벡주의 새퍼빌까지 연결되어 있다.

캐나다의 철도망은 2곳의 대규모 철도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캐나다 국립 철도회사(CN: Canadian National Railway)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영 기업체였으나 1995년 민영화되었으며, 캐나다 퍼시픽 철도회사(CPR: Canadian Pacific Railway)는 CN의 뒤를 잇는 민간

합자회사이다. 철도의 총 연장은 91,365km로 1974년 당시 96,400km의 최대를 기록한 후에 폐쇄되는 철도 수가 신설되는 철도 수보다 많아 전체 철도노선의 길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높은 소득수준 등의 영향으로 국내 항공 및 도로이용이 선호되고 있어 철도망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이다. 지하철은 토론토와 몬트리얼에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 항공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지형이 험하며 기후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민간항공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에어 캐나다(Air Canada)를 포함한 국제항공사와 수백 개의 소형 항공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68개의 주요 대규모 공항과 관제탑이 없는 140개의 소규모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라. 수상교통

캐나다에서는 화물 수송에 수상교통 수단이 수송에 많이 이용되는 편이다. 내륙의 수로 중 가장 주요 수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건설(1954-1959년)한 대서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인트로렌스-5대호 수로이다. 1959년 이 수로의 개통은 미국의 17개 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4개 주 간의 수상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5대호 주변의 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중부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밀과 5대호 주위의 철광석 등이 대서양 방면으로 편리하게 수송될 수 있게 하였다. 이 수로의 깊이는 7.9m 이상으로 대서양에서 슈퍼리어호까지 3,747km에 달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운하를 포함하고 있다. 목재, 철강 등의 운송과 관광, 교통 등에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

마. 파이프라인

캐나다의 파이프라인망은 1950년까지 도시 간 화물 수송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의 건설과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 이를 통한 화물 수송량이 도시간 총 화물 수송량의 25% 를 차지하게 되었다. 알버타주와 사스카치완주의 유전과 가스전에서 동부로는 몬트리얼, 서부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미국 북서부를 잇는 수백 km에 이르는 긴 파이프라인들이 중부평야 지대와 록키산맥을 관통하여 건설되었다.

4. 통신

통신망의 보급상태 및 송수신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특히 장거리 통화의 요금수준은 한국보다 저렴하다. 캐나다의 통신산업은 임산업의 10배 규모로 1990년에는 국내 전기통신 부문에 총 C\$110억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C\$70억이 전화, 컴퓨터, 유선방송 사업 등에 투입되었다.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구축이 정책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캐나다의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었다.

가. 통신업계 근황

- 1994년 초 정보고속도로 사업 착수: 국내 5대 통신업체와 미국 Hearst사 합작으로 C\$7억5천만을 투자하여 공동개발에 착수. 1995년부터 퀘벡주 내에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실시, 적용분야는 홈뱅킹, 인터넷쇼핑, 이메일 서비스 등으로 UBI (Universal Bi-directional Interactive) 서비스 제공 예정

- 캐나다 산업부, 개인통신서비스(PCS)제공업체 4개 선정, Bell Canada, Cantel (현재 Rogers), Telus, MicroCell 등 4개 업체로 확정. 이에 따라 PCS서비스 제공업체간의 과당 경쟁이 초래되었으며 핸드폰, 호출기 등의 사용비용 절감으로 소비자의 수요는 급증. 2004년 말 현재 Roger(구 Cantel)가 MicroCell 을 인수, 합병하여 현재 개인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수는 3개로 변경됨
- 1997년 2월 27일 연방통신위원회(CRTC)가 밀튼 소재 Alpha Star사에 인공위성 방송권을 부여, 국내 방송사에 의한 위성방송시대가 개막
- 1997년 5월 1일 연방통신위원회(CRTC)가 유선방송(Cable TV)과 근거리전화(Local Call) 관련업체의 타 분야 진출을 허용. 유선방송업체들은 연간 C\$80억 규모의 근거리전화시장 진출권을 획득하였으며 전국적인 전화서비스업체인 Bell Canada 역시 유선방송산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됨. 이러한 방송통신시장의 전면자유화로 소비자들은 Bell Canada, Rogers 등의 전화서비스업체들로부터 전화, TV, 비디오,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 2005년 6월 16일, 연방통신위원회가 위성 라디오 방송을 허가함에 따라 위성 라디오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

5. 우편제도

국영기업체인 CANADA POST에서 지역마다 우체국 또는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08:30-17:00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점마다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민간 속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는 D.H.L., Priority Post, Purolator 등과 같은 업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배달은 그 다음날 이루어지고, 기타 해외국가로의 배달도 2-3일 후에 이루어지지만 이용 요금은 비싼 편이다 (DHL의 경우 500g에 C\$70선).

74. 노동여건

1. 노동법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노동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 피고용자들은 노동 분쟁시 일차적으로 주정부 노동법에 따르고 있다. 다만, 핵심 국가산업이나 2개 주 이상에 걸친 산업의 노동행정은 연방정부 노동법에 의거 조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관할의 산업에는 철도, 항공, 정보통신, 곡물 수송, 우라늄 산업 등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노동법령은 다양한 고용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용기준, 작업환경의 안전 및 보건, 연금,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용자들의 단체 협상권은 보장되지만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법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정당한 고용행위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인종, 종교, 외모, 성별, 나이 등의 조건에 의해 고용이 차별화 되는 것을 막고

있다. 고용자는 같은 일을 하는 남녀에게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의 최소 연령은 지역과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캐나다의 모든 법적 관할권 내에는 최소한의 고용기준이 명시돼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2. 임금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1988년 이후에는 실질임금이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GST(상품용역세)의 도입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1991년을 제외하고는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여 왔으며 실질임금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간의 임금격차 철폐를 목표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추진은 연방 총선과 주 선거에서 쟁점공약의 하나였다. 남녀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평등권)는 1985년 4월 17일을 기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법률적인 보장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금수준은 산업 별, 주 별로 다르며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정하지 않다. 또한 주 별로 학생, 연소자, 미경험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경험이 있는 성인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시간당 C\$7 선이다. 일부 주에서는 학생, 청년 근로자, 기술 훈련생, 농민, 주부 등의 피고용자들은 특별히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피고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3. 노동조건

가. 근로시간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은 피고용자가 지정된 일당 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고용자로 하여금 일반 작업에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함과 동시에 근무시간 외의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외 노동 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당 최소한 하루는 휴업하여야 한다.

연방정부 고용법의 경우 노동법에 의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초과 시에는 초과 근무수당으로 기준액의 1.5배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각 주 별로 상이하다. 대부분의 기업 근무시간은 주당 40-41시간으로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나. 휴가제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최소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고 근무기간이 몇 년간 지속되면 연간 3주의 휴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휴가 1주당 최소한 연봉의 2% 이상을 휴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는 연간 10일의 국가 공휴일을 갖고 있으며, 각 주마다 연간 1일 이상의 주 공휴일을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유급 법정휴일 일수는 다르다.

여성 피고용자는 지역에 따라 17-52주간의 무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휴가기간은 해당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좌우된다. 휴가에서 돌아온 피고용자는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 해고

캐나다 노동법 상 고용관계는 두 가지 이유로 중단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시적 해고 기간 포함)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부족 등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해고에 관한 사전 통보는 요구되지 않는다. 일시적 해고는 불경기, 구조조정, 과잉인력 상태 등에서 초래된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고용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간을 거친 후 해고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사전에 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알버타주와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행정 구역 내에서는 단체 해고 시 추가로 더 긴 통보기간을 가져야 한다. 불경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라. 부가급부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캐나다의 고용자들은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급부를 제공하는데 의료보험 혜택, 치과 보험, 생명보험, 병가, 장기간의 장애휴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혜택은 능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노동력 이동을 감소하게 한다.

마. 연금제도

모든 고용자들은 캐나다 연금기금이나 그와 유사한 퀘벡주의 연금기금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야 하는데 이는 퇴직, 노동 장애, 사망 시에 피고용자와 그의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재정적으로 연금 부담을 하는데 피고용자가 임금을 지급 받을 시 임금에서 부담금이 삭감된다. 고용자, 피고용자가 임금의 4.95% 를 각각 부담하며 연간 최대 납입 상한금액은 2004년의 경우 고용자, 피고용자 각각C\$1831.50이다.

피고용자는 계속 직업들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65세 이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후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대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사내연금기금을 제공하는데 일정 부분은 피고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연금기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재정의 조달방법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 규칙에 의하면 연금은 일종의 거치된 배상임으로 고용자는 향후 피고용자에게 연금으로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일정기간의 고용 후에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연금수령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바. 고용보험

1996년 7월 1일 연방정부는 근로자들이 경기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보험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주 행정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훈련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연방-주정부간의 협력 아래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임금세에 의해서 총당된다. 최대 보험가능수익까지 고용자가 2.75%, 피고용자가 1.98% 를 부담하며 연간 최대 납입 상한액은 고용자가 C\$1,081.08 피고용자는 C\$772.20이다.

피고용자는 전년도에 법적 최소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실업상태가 될 경우 기여 수익 55% 에 해당하는 기본 혜택을 최초로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의 최대한도는 주당 750불로 50주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율은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감소한다. 수입이 낮은 가장의 경우에는 추가혜택을 요청할 수 있고 실업수당 청구자는 새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사. 근로자 재해보상

캐나다의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가 존재하여 모든 산업재해로부터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일종의 유, 무과실 보상제도로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고용자들이 각 지방의 근로 재해보상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각 산업 별 기준과 과거 고용자 손해배상 기록에 의해 결정된다.

아. 직업안전과 보건

캐나다의 모든 행정구역은 직업관련 사고와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법률과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 및 안전당국은 작업 환경이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을 조사하며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한다. 일부 지역의 대규모 작업현장에서는 노사공동의 안전 및 보건 위원회의 구성이 의무화되고 있다.

4. 단체 협상 및 노조

캐나다의 단체협상제도는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관계법령과 노동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며 고용자와 단체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기업의 약 20%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고 이 중 대규모의 노조들은 주로 대규모의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작업장애를 초래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체 협상권을 가진 노조를 인정한다. 노조는 경영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을 대신하여 단체 협상권을 가지고

기업의 핵심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피고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관계 위원회가 노조를 단체 협상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면 그 노조는 고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

노조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를 대표하여 협상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모든 근로자들을 공정하게 대변할 의무를 지닌다. 노조는 노동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일정기간 동안에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다른 노조로 대체될 수 있다.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단체협상기간 동안 파업과 공장폐쇄가 금지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중재를 통한 화합을 유도하는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만 파업이 가능하다.

5.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일시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캐나다의 고용자 역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의 일시적인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용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75.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개관

캐나다의 사회복지제도는 종교단체 및 기타 자선단체의 자선사업과 영국의 빈민구호법에서 유래되었는데,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하고 제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사회복지제도 실행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캐나다 헌법에는 주 정부가 구호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그 규정이 다소 애매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협력하여 다 방면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 의료보험(MSP) 및 사회보장제도(CPP)

주 정부는 각 시 정부와 함께 의료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1968년 제정된 연방 의료보장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의료보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민의 99.5%는 국가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용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에 대한 지원이 삭감되어 주 정부 및 시 정부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지난 2003년 이후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 감소로 인해 일부 병원의 통, 폐합 및 의료진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각 주 정부는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종합병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려 하였으나 의료비 증가 및 국민부담 가중을 사유로 시민들과 각종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및 앨버타주 등 서부지역은 그나마 의료서비스가 나은

상황이나 온타리오주 정부는 2004년 의료보험제도의 프리미엄을 수거하기로 결정, 동년 7월을 기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간 C\$900까지의 프리미엄이 공제될 수 있게 하였다.

의료보험제도 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캐나다 연금기금은 퇴직자, 장애인, 유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인생활 안정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최저 생계보장법에 따라 노령 연금 수혜자들 중 총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국민들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캐나다의 모든 근로자는 국가 연금기금(Canada Pension Plan, 퀘벡주는 Quebec Pension Plan)에 가입되어 있으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 수입의 4.9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연금소득과 배우자를 포함한 기금 가입자의 유족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 정부 차원에서 세금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교육비, 연수비 지원, 보너스 제공, 차량 제공, 이익분배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든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다.

3. 실업보험제도(UI)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Plan)에 가입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급여의 1.98% 정도이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2.75% 정도이다. 65세 이상의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임시 농업 근로자, 구난 작업요원, 목사 및 일정한 비거주자 등은 실업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이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보험금의 지급 또한 증가하게 되자 정부는 실업보험법을 개정, 1993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보험금의 지급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76. 현지 생활여건

1. 주거환경

주재상사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은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콘도미니엄과 연립주택식 타운하우스 등이 가장 보편적인 편이며, 대도시의 시내 각지에는 공원이 발달되어 있어 자연환경을 근접한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도시에 위치한 콘도미니엄 및 타운하우스의 구비시설에는 임대료의 수준과 지역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임대료로 C\$1,600-2,500 를 납부하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2개의 침실, 거실 및 식당, 부엌, 2개의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 통제식 냉난방시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도 수영장, 사우나, 헬스클럽 및 기타 위락 시설, 라운지, 각종 보안시설, 무료세탁소, 개인소유품 저장 창고, 지하주차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의 경우 콘도미니엄들의 공실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해약 시 유의사항들에 대해 미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집주인과의 마찰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상반기를 기해 임대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임대인은 적기에 월 임차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생필품 구입의 용이성

생필품 구입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가까운 식품점(Grocery store)이나 약국, 편의점(Convenience Store) 등의 위치와 영업시간 등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다.

3. 병원·약국

가. 의료보험

캐나다의 일인당 연간 의료지출비는 US\$ 1,795수준으로서 국가 총생산의 약 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15명이며, 평균수명은 남성 73세, 여성은 80세이다.

캐나다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당초 Social Insurance Number 라고 불리는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은 주인과 유학생, 피고용인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여 왔다.

그러나 온타리오주는 주정부의 의료보험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1994년 4월1일부터 비(非)영주권자를 주 의료보험제도(OHIP)의 수혜대상에서 제외, 그 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유학생과 임시근로자의 가족들은 1994년 6월 30일을 기해 의료보험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온타리오주에 소재한 우리나라의 현지업체 근무자와 그 가족들은 사설 보험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만 한다. 다만 3년 이상 캐나다 현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입국비자 신청 시 근로기간 및 사유 등을 신고하고 입국 시 캐나다 이민국의 고용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 보건부에 제출하면 체류 기간 중 본인과 직계가족에 한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이 부담하는 사설 의료보험료는 매달 1인당 C\$1백을 초과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주 외에 마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주 및 유콘준주 역시 외국 유학생을 의료보험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나. 병원 진료절차

의사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가정의(Family doctor)의 1차 진료를 거친 후 병세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주정부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은 별도의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편리하나 위급할 경우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직접 방문,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방문자의 병원진료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 보험회사에서 방문기간 동안의 병원진료 비용을 지불하는 여행자 단기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의료보험이 없는 방문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C\$ 50-100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

다. 약국

약품의 구입은 Shopper's Drug Mart 나 Pharma Plus, IDA 등 대표적인 약국 체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소규모의 개인 약국 또는 편의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기본적인 의약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약품의 가격은 제조회사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세금을 포함해서 대략 C\$5-10 선이다. 약국의 영업시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데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있지만 오후 5-6시 경이면 문을 닫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여행시에는 투숙한 호텔의 직원에게 가까운 약국 및 영업시간을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4. 레저 여건

주말이나 휴가철에 방문할 만한 여행지로는 자연 경관이 수려한 밴프, 자스퍼, 나이아가라 폭포 등의 국립공원들이 있는데, 한인 여행사에 문의하면 계절에 따른 다양한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여름에는 골프 및 각종 수상스포츠,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등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토론토의 경우 근교에 200 여 개가 넘는 골프장을 갖추고 있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음악회나 미술전시회와 같은 문화행사 역시 수시로 개최되는데 신문의 문화, 예술관련 지면을 참고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박물관으로는 토론토 Royal Ontario Museum 및 밴쿠버 소재 Vancouver Museum 등이 있으며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 근교에는 30 여 개가 넘는 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피크닉이 항상 가능하다.

한인사회의 동우회로는 대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각 지방별 친목회 등이 발달되어 있으며 주로 골프대회를 통한 단합행사도 곁들이고 있다.

5. 치안상태

캐나다의 범죄율은 미국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야간외출이나 단독여행, 전철승차 시 안전에 유념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인 치안상태는 미국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 캐나다인들의 한국인 인식

다민족국가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의 국민들은 관념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배척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도 타민족에 대해 필요 이상의 호기심을 표현하거나 차별을 두는 등의 태도는 찾아보기 힘든 편이다. 개인주의와 가족중심주의가 발달되어 있어 개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편으로, 상호간 의사소통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77. 이주정착가이드

1. 거주지 선정

캐나다로의 이주 후 거주지 선정은 향후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토론토의 경우 그 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은 도심 북쪽에 위치한 North York 지역을 주거지로 선호하여 왔는데 이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으며 학교와 지역환경,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North York의 단점은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으며 한국인 이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심 지역에서 교외로 10분 정도만 벗어나면 주거비용과 생활 환경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주 전에 캐나다를 미리 방문하여 교통, 학교,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밴쿠버의 경우에는 Vancouver West, Burnaby, Coquitlam, Surrey 지역 등에 신규 이민자가 많이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거주지를 선정할 시 지역 별 학교의 차이를 많이 고려하는 편이다. 전반적으로 광역밴쿠버 지역 내에는 서부지역의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동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가. 거주지 선정 시 고려사항

[환경]

- ① 주변에 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가?
- ② 치안상태의 문제점은 없는가?
- ③ 이웃 주민의 구성은? 동남아인, 난민, 인도, 흑인 및 캐네디언 등의 민족구성은?

[교통]

- ① 지하철 역에서 근접하여 위치해 있는가?
- ② 가까운 곳에 버스 노선이 갖추어져 있는가?
- ③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이 있는가?

[편의시설]

- ① 쇼핑몰이 가까이 있는가?
- ② 거주 단지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 ③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가?
- ④ 지하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가?

[임대료]

- ① 월 임대료는 적정수준인가?
- ② 월 임대료에는 관리비, 용수비, 전기료, 주차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③ 퇴거 시 조건 및 만기일 연장 시 조건은?

[자녀들 학교]

- ① 해당 학교는?
- ② 해당 학교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가?
- ③ 사립학교 또는 카톨릭 학교가 부근에 있는가?

[학교 선택]

- ① 지역 내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우수한 학교가 있는가?
- ②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방법은?
- ③ 학생의 구성은? 한국인, 인도, 동남아인, 난민, 캐나다인 등의 민족구성은?
- ④ 자녀가 입학하려는 학교에 대한 교민들의 평판은?

2. 전화신청

캐나다로의 이주 후 거주지가 정해지면 먼저 전화개설 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 내에는 전화개설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전화개설 신청을 할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향과 필요에 따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전화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교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신청

- Sprint Canada: 1-800-652-7633
- AT&T Canada: 1-800-565-4708
- Bell Canada: 1-800-555-1111
- 최근 인터넷 교환 전화시스템이 발달하여 지역별로 한인이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업체에 신청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3. 자녀 교육**가. 초중고 과정**

- 학제는 철저한 교육 자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구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유치원, 초등학교6년, 중등학교 6~7년이 기본적인 학제이다.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대부분 주의 경우 초·중등학교 12학년의 의무교육제도를 실시)
- 공립학교의 경우 초등과정은 물론 중등과정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비 부담은 전혀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초등 및 중등 과정에서 상당한 교육비가 부담된다.
- 학교선정은 보통교육의 경우 무상 의무교육제이며 지역 내에서의 학교의 수준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 내에 위치한 학교(Home School)에 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도 있어 학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녀의 입학관련 서류를 준비할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에는 출생 증명서가, 초등학교(1~8학년)나 중등학교 (9~12학년) 전학에는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와 전학년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 캐나다 현지학교들은 각종 예방접종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접종 일시, 종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중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학년제 진급이 아닌 과목별 진급제(Credit System)를 도입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선수과목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한다.

-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동포 2세들을 위한 한글학교(주말, 주중저녁)가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론토에는 현재 약 60개의 한글학교가 있으며 밴쿠버에도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나. 대학교 과정

- 대학교 과정은 크게 2 종류로 분류되는데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지역사회 대학 및 직업학교와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 (University) 및 전문대학 (College)가 있다. 수학기간은 대학교 3~6년, 전문대학 2~3년, 대학원 2년 이상 등으로 과정에 따라 다양하다.
- 대학교과정 입학 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희망전공을 수학하는데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서류로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필수 이수과목 성적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교의 추천서 등이 요구된다.
- 대학교과정 입학전형은 대학별 입학 시험 없이 각 주의 대학교 연합회에서 입학지원 서류를 1차로 접수하여 해당학교에 전달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3개 대학까지 복수지원이 허용되며 재학학교의 추천서가 입학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학 간 상호 학점인정이 제도화되어 있어 대학 간 학적 이동이 자유로운 편이다. 그 외에 전공 별로 정해진 특정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필히 이수해야 한다.

4.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캐나다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데 신청서는 공증된 비자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신청 시 지참 서류는 여권과 비자이며,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서명한다.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된 카드는 신청 후 약 3주 후에 거주지로 우송된다.

가. 지참해야 할 서류

- ① 이민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이민비자, 고용허가서
- ② 거주지 증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운전면허증, 은행 잔고증명, 주택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보험가입서, 학교 성적표 등
- ③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SIN, 신용카드 또는 은행카드, 학생증 등

나. 신청장소 (토론토, 밴쿠버지역)

- Etobicoke 지역: 3300 Bloor St. W. Suite 142 Retail Mall M9C 4V2
- Mississauga 지역: 201 City Center Dr. 2nd Floor L5A 3M1
- North York 지역: 4400 Dufferin St. M3H 6A8
- 밴쿠버지역 : Sinclair Centre Suite 415, 757 West Hastings St. V6C 1A1

5. 의료보험제도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무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부 관할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의료보험증에는 사진이 부착되므로 신청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Child Tax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부모가 각각 서명하고, 부모 및 자녀의 여권과 비자의 사본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비자의 사본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또는 신부, 교사, 은행의 매니저, 경찰관, 우체국의 장, 공증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수입이 C\$25,951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금액의 5%를 지급액에서 감하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입명세에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도착한 해를 포함하여 이전 2년도(총 3개년) 간의 소득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출처: Revenue Canada, 875 Heron Rd. Ottawa, Ontario K1A 1A2

6. 운전면허 교환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에 체결된 운전면허 상호교환약정에 따라 한국의 운전면허를 교환한 사람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캐나다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내에서 운전면허 교환이 가능한 주는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퀘벡주, 알버타주, 마니토바주, 사스카치완주이며 기타 지역에서는 해당 주 교통법에 따라 별도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한국의 1종이나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온타리오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운전면허 소지기간이 2년을 초과한 운전자는 온타리오 G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할 필요는 없다. 운전면허 소지기간이 2년 미만인 운전자는 온타리오 G2면허를 발급받게 되는데 G2 면허 발급 후 총 운전경력이 2년이 되는 시기부터 도로 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G2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주 별로 세부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국의 운전면허를 캐나다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내 한국공관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한국의 운전면허에 대한 영사의 공증을 받은 후 거주지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발급처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한 시력검사 후에 운전면허를 발급해 준다.

면허증 교환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권 및 비자,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공관에서 발급한 번역 공증 등이 필요한데 공관의 공증은 한국 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주정부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면허증 교환신청 당일 간단한 시력검사 및 색맹검사 등을 실시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고 정식 면허증은 약 2주 후 주소지로 송부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초 운전면허 교환 시 2년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 후 갱신 시에는 통상 5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데 알버타주는 교환신청 당일 정식 면허증을 발급하고 처음부터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7. 자동차 구입

시기, 장소마다 자동차의 가격, 부대비용 및 임대 시 적용이율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 전 이를 비교해 본다. 자동차 구입 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을 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문가는 각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연방 산업부와 운전자보호협회(APA)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자동차 판매상들이 수익성이 높은 임대계약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은행구좌 개설

시중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Social Insurance Number,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구좌 개설 시 자동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수표를 동시에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우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수표의 발급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뱅킹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9. 공과금 납부

- **개인수표 (Cheque) 우송:** 개인수표에 금액, 수신인 등을 기재하여 우송한다. 전화회사 등에서는 요금을 청구할 시 수표를 발송할 봉투를 동봉한다.
- **VOID Cheque 우송:** 개인 수표에 대각선으로 사선을 긋고, "VOID"라고 표시해서 납부처에 보내면 매달 공과금이 본인 구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된다. VOID 수표에는 싸인을 하지 않는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공과금이 신용카드 구좌에서 이체되도록 신청하면 매달 해당금액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자동 청구된다.
- **인터넷/텔레폰 뱅킹:** 캐나다의 모든 대형 은행은 인터넷 및 텔레폰 뱅킹으로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은행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공과금 계좌 등록을 한 후 납입금을 입력하면 된다.

10. 가정의 (Family Doctor) 선정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진료기관인 가정의를 방문, 의료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의료보험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가정의의 선정은 가능하다.

78. 자녀 교육여건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유치원부터 대학 예비과정까지의 공립과 사립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육정책은 주 정부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독립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4, 5세의 캐나다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1, 2년 동안 유치원에 다니게 되며,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학기는 대부분 9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까지 운영되고 중등교육과정은 주 별로 11 또는 12학년까지로 이후 대학, 전문대학 등의 과정으로 연결된다.

현재 많은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해외 유학생의 입학 허용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의 운영 및 관리는 그 지역 해당 교육위원회(School Boards)가 맡고 있다.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남녀 공학으로 주간 프로그램만을 실시한다. 카톨릭 및 기독교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 주 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해외 유학생과 새로 입학하는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규 학과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과정(ESL)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 정책과 연간 학비는 지역 교육위원회 별로 차이가 있다.

모든 사립학교는 각 주의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과 기타 운영사항들은 반드시 각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에 진학하려는 해외 유학생들은 남학교, 여학교 또는 남녀공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는 완전한 기숙학교 또는 주간 학교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두 형식을 모두 제공하기도 한다. 일부 사립학교는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독특한 윤리교육을 강조하기도 하며 엄격한 학습 수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캐나다 전역에는 다수의 종합대학 및 단과 대학 등이 설립되어 있어 그 선택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캐나다가 현재의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1663년 퀘벡주의 한 신학교가 캐나다 최초의 고등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뉴브런즈윅주의 대학은 처음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1785년을 기해 학생들의 입학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많은 캐나다의 대학들은 수준 높은 강의와 연구시설의 완비로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대부분의 캐나다 대학은 모두 공립으로 지역과 학문 영역에 관계없이 우수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두 대학의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최소 1,000 명에서 최대 35,000 명 가량의 학생(full time)이 등록되어 있으며 많은 Part time 학생과 평생 교육원에서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들 또한 등록되어 있다. 다수의 대학들은 방대한 범위의 학과와 학부에서 박사학위까지의 다양한 학위과정을 제공하며 비용은 각 주 별, 학교 별, 프로그램 별로 차이가 있다. 대학의 학기는 대개 9월에 시작하여 5월에 끝난다. 현재 캐나다 전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입학 시험은 없으며 각 대학은 자체적으로 입학 조건을 지정하여 입학 희망자의 자격 요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캐나다 대학에서 수여되는 학위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기타 영연방 선진국 대학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받는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2개의 공식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생은 영어 또는 불어로 수업하는 교육기관의 학위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영어사용 학교의 학위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영어실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영어시험의 성적을 구비해야 한다. 주로 TOEFL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캐나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있거나 기타 영어시험의 성적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대학 별 영어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대사관이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해외 유학생들이 불어를 사용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별도로 거쳐야 하는 표준화된 불어시험은 없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지원자들의 불어실력을 개인별로 심사하며 학생의

불어 구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대학의 자체 필기시험을 거치게 할 수도 있다.

종합 단과대학은 특정 전문과정과 학위과정이 개설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장점을 모두 가진 교육기관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합 단과대학은 대학의 학사학위와 전문대학의 수료증 및 졸업장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은 이 기관에서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 단과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학사과정은 물론 전문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나 수료증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종합 단과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후원제도나 소규모 수업, 활발한 교내 활동 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내에는 지역사회 전문대학협회(Association of Canadian Community Colleges)에 소속된 175 개의 지역사회 전문대학이 있으며 공식명칭은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또는 CEGEP(퀘벡주에만 해당) 라고 한다. 10개 주(Province)와 3개 준주(Territory)를 포함한 12개의 교육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교육목적의 다양화와 경영형태 및 정책 등을 대변한다. 이러한 교육기관 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문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종전 이 같은 교육기관은 학위가 아닌 졸업증서만을 수여했으나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협회 내 전문대학 중 적어도 5개 학교에서 학위수여 과정도 제공하게 되었다.

전문대학은 2-3 년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직업 지향적인 교과 과정은 물론 일반 교양과목의 집중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대학 졸업자 중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문직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 보다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기술 및 평생교육 교과과정 등의 취업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은 단순 기술직에서 예능직까지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 걸쳐 있으며, 기타 과정으로는 의료, 경영, 응용 미술, 사회사업, 성인 재교육, 대학진학준비 등이 있다.

캐나다 대학의 특징은 다양한 능력의 인재양성 교육을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동향에 따라 고용인이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을 총합한다는 것이다. 전문대학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고용의 필요성에 맞춰 개발된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캐나다 대학들도 함께 변화하게 될 것이다.

사립기관인 기술전문학교는 일정기간의 집중적인 교육 후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실무기술 교육에 주력한다. 경영, 컴퓨터, 비서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러한 직업전문학교는 주 정부의 인가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며 운영 및 관리는 주 정부의 규제 하에 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 2개의 공식언어를 채택한 이중언어 국가로 해외 유학생들은 영어연수 또는 불어연수를 위한 장소로 캐나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정도 택할 수 있다. 캐나다의 영어는 언어학자들이 일컫는 가장 표준적인 영어일 뿐만 아니라 사투리나 지방특유의 발음과 억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고, 낮은 범죄율,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기후 등의 이유로 캐나다는 영어연수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에는 해외 유학생을 위한 영어연수과정이며 일반적으로 모든 사설 영어학원은 입학시기와 입학요구조건이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불어가 캐나다의 또 다른 공식언어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사설기관 또는 일부 대학부설 교육기관에서 불어를 연수할 수 있다. 주로 퀘벡주에 위치하고 있는 불어연수학교에는 영어연수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시기에 입학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다.

공립학교 (Public School) - 각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주관	
밴쿠버지역	
Burnaby School Board	(604) 664-8441
Coquitlam School Board	(604) 939-9201
Delta School Board	(604) 946-4101
Langley School Board	(604) 534-7891
Maple Ridge-Pitt Meadows School Board	(604) 463-4200
New Westminster School Board	(604) 903-3444
North Vancouver School Board	(604) 987-8141
Richmond School Board	(604) 668-6000
Surrey School Board	(604) 596-7733
Vancouver School Board	(604) 731-5000
West Vancouver School Board	(604) 981-1000
토론토지역	
Toronto School Board	(416) 397-3000
Scarborough School Board	(416) 396-7100
York Region School Board	(416) 969-8131
York Catholic School Board	(416) 221-5050

Private School (사립학교)	
밴쿠버지역	
St. George's College(Boys)	(604) 224-1304
Vancouver College, a Catholic day school	(604) 261-4285
Vancouver Oral Centre for Deaf Children	(604) 437-0255
Vancouver Bilingual Pre-School Society	(604) 261-1221
Council of Parent Participation Preschools	(604) 435-4430
토론토지역	
The Bishop Strachan School	(416) 483-4325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416) 285-0870

전문대학 (College)	
British Columbia Institute Technology	(604) 434-1610
Vancouver Community College (B.C.)	(604) 443-8420
Capilano College (B.C.)	(604) 986-1911
Douglas College (B.C.)	(604) 527-5478
George Brown College (ON)	(416) 415-2000
Seneca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ON)	(416) 491-5050

종합대학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C)	(604) 822-2211
University of Victoria (B.C)	(250) 721-7211
Simon Fraser University (B.C.)	(604) 291-3111
University of Toronto (ON)	(416) 978-2011
McGill University (Quebec)	(514) 398-4455
McMaster University (ON)	(905) 525-9140
Queen's University (ON)	(613) 533-2000
York University (ON)	(416) 736-2100
University of Waterloo (ON)	(519) 888-4567
Brock University (ON)	(905) 688-5550
University of Ottawa (ON)	(613) 562-5700
Ontario College of Arts and Design (ON)	(416) 977-6000

79. 진출기업

<현지진출 한국기업>

금호타이어 캐나다 법인 Kumho Tire Canada Inc.	
소재지	Richmond, British Columbia
주소	#118-11782 Hammersmith Way, Richmond, B.C., V7A 5E3
전화	(1-604) 241-4142
팩스	(1-604) 241-5591
대표	김병희 (법인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자동차 타이어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77
국내 모기업	금호타이어(주)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금호빌딩
	전화: (02) 6303-8114
	팩스: (02) 6303-8297
	대표: 오세철
대한항공 밴쿠버지점 Korean Airlines Co. Ltd. Vancouver Regional Office	
소재지	Richmond, British Columbia
주소	3211 Grant Maconachi Way, Suite C3113.3A, Vancouver Int'l Airport, B.C.
전화	(1-604) 248-1146
팩스	(1-604) 689-3484
대표	이경용 (법인장)
업종	운수, 창고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서비스업-여객/화물운송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74
국내 모기업	대한항공(주)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전화: (02) 656-2001
	팩스: (02) 656-7716
	대표: 조양호
데이텍 일렉트로닉스 (대우) Daytek Electronics Corp.	
소재지	Delta, British Columbia
주소	1488 Cliveden Ave, Delta, B.C., V3M 6L9
전화	(1-604) 523-6321
팩스	(1-604) 523-6322
대표	강성윤 (지사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3
국내 모기업	대우 인터네셔널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전화: (02) 759-2114
	팩스: (02) 753-9489
	대표: 이태용
동아건설 Dong Ah Canada Development Corp.	
소재지	Burnaby, British Columbia
주소	#506-4538 Kingsway, Burnaby, B.C., V5H 4T9

전화	(1-604) 739-8850
팩스	(1-604) 739-8807
대표	김광호 (법인장)
업종	건설업
취급분야	주택 및 상가건설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6
국내 모기업	동아건설산업(주)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
	전화: (02) 3709-2114
	팩스: (02) 3709-3000
대표: -	
포스코캐나다 (POSCO Canada Ltd.)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2350, 650 W. Georgia St., Vancouver, B.C., V6B 4N9
전화	(1-604) 669-6689
팩스	(1-604) 669-5805
대표	장문환 (법인장)
업종	광업
취급분야	석탄광산개발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3
국내 모기업	포스코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
	전화: (02) 3469-5000
	팩스: (02) 3469-6700
대표: 이구택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밴쿠버-버나비지점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Vancouver-Burnaby Branch	
소재지	Burnaby, British Columbia
주소	#100-4900 Kingsway, Burnaby, B.C., V5H 2E3
전화	(1-604) 432-1984
팩스	(1-604) 432-1964
대표	정청원 (지점장)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여, 수신업무, 수출입 외환업무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3
국내 모기업	한국외환은행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전화: (02) 729-8000
	팩스: (02) 757-7897
대표: 로버트 펠런 (Robert Fallon)	

한진해운 밴쿠버지점 Hanjin Shipping Co., Ltd. Vancouver Branch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801, 750 West Pender St, Vancouver, B.C., V6C 2T8
전화	(1-604) 682-8384
팩스	(1-604) 681-6520
대표	Frank Vanduyn
업종	운수, 창고업
취급분야	해운서비스업-화물수송
진출형태	지점
진출연도	1991
국내 모기업	한진해운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 빌딩
	전화: (02) 3770-6114
	팩스: (02) 3770-6748
대표: 조수호	
현대상선 밴쿠버사무소 Hyundai Merchant Marine Co. Vancouver Branch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주소	#1400-543 Granville St, Vancouver, B.C., V6C 1X8
전화	(1-604) 601-2901
팩스	(1-604) 687-2396
대표	이효성 (지점장)
업종	운수, 창고업
취급분야	해운서비스업-화물수송
진출형태	지점
진출연도	1996
국내 모기업	현대상선
	주소: 서울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상선 빌딩
	전화: (02) 3706-5114
	팩스: (02) 736-8496
대표: 노정익	
서울도시가스 캐나다 법인 SCG Forest Inc.	
소재지	Courtenay, British Columbia
주소	#4040 Comox Logging Rd, Courtenay, B.C., V9N 9P3
전화	(1-250) 338-4243
팩스	(1-250) 338-4246
대표	전익식 (사장)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목재 주문생산
진출형태	단독 법인
진출연도	2003

국내 모기업	서울도시가스(주)
	주소: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0-6 탐라영재관 빌딩 1-4층
	전화: (02) 810-8000
	팩스: (02) 3665-1849
	대표: 김영민
금호타이어 (토론토 지사) Kumho Tire Canada Inc.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1100 Sheppard Ave. W. # 302, Toronto, Ontario, M3K 2B4
전화	(1-416) 636-0904
팩스	(1-416) 636-9673
대표	송준로 (지사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자동차 타이어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77
국내 모기업	금호타이어(주)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금호빌딩
	전화: (02) 6303-8114
	팩스: (02) 6303-8297
	대표: 오세철
기아자동차 KIA Canada, Inc.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180 Forester Crescent, Mississauga, Ontario, L5R 4J5
전화	(1-905) 755-6250
팩스	(1-905) 755-6251
대표	추연정 (법인장)
업종	판매업, 무역업
취급분야	자동차, 관련부품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8
국내 모기업	현대기아 자동차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전화: (02) 3464 1114
	팩스: (02) 3464 6800
	대표: 정몽구
대동산업 Prime Auto Machinery Co.	
소재지	Belleville, Ontario
주소	1 Greenleaf Court, Belleville, Ontario, K8N 5B5
전화	(1-613) 969-9522
팩스	(1-613) 969-9524

대표	최효건 (법인장)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8
국내 모기업	대동산업
	주소: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능리 110
	전화: (031) 236-8761
	팩스: (031) 236-8762
	대표: 정지동
대림통상 (Daelim Trading Co. Ltd.)	
소재지	Concord, Ontario
주소	6 Gemma Court, Concord, Ontario, L4K 5E6
전화	(1-905) 738-0867
팩스	(1-905) 738-4639
대표	권병구 (지사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타이어, 연관류 설비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4
국내 모기업	대림통상
	주소: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2
	전화: (02) 730-9811
	팩스: (02) 733-1341
	대표: 김응만
대우 캐나다 Daewoo Canada Ltd.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1500 Don Mills Rd, Suite 403, Toronto, Ontario, M3B 3K4
전화	(1-416) 510-2886
팩스	(1-416) 510-0908
대표	박흥준 (법인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컴퓨터 모니터, 경공업 제품
진출형태	지사
진출연도	1992
국내 모기업	대우
	주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전화: (02) 759-2114
	팩스: (02) 753-9489
	대표: 이태용

대한항공 토론토지점 Korean Airlines Co. Ltd., Toronto Regional Office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55 University Ave, Toronto, Ontario, M5J 2H7
전화	(1-416) 862-8381
팩스	(1-416) 862-2105
대표	설은중 (지점장)
업종	항공운송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서비스업-여객/화물운송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78
국내 모기업	대한항공(주)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70
	전화: (02) 656-2001
	팩스: (02) 656-7716
대표: 조양호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7037 Financial Drive,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N 6R3
전화	(1-905) 542-3535
팩스	(1-905) 819-4407
대표	박재순 (법인장)
업종	판매업, 무역업
취급분야	전자, 통신제품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7
국내 모기업	삼성전자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50
	전화: (02) 727 7114
	팩스: (02) 727 7449
대표: 윤종용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토론토지점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4950 Yonge St. Suite 1101, Toronto, Ontario, M2N 6K1
전화	(1-416) 222-5200
팩스	(1-416) 222-5822
대표	최윤철 (행장)
업종	금융업
취급분야	여/수신업무, 수출입 외환업무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1

국내 모기업	한국외환은행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전화: (02) 729-8000
	팩스: (02) 757-7897
	대표: 로버트 펠런 (Robert Fallon)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Toronto Office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700 Bay St. Suite 1903, Toronto, Ontario, M5G 1Z6
전화	(1-416) 348-9056
팩스	(1-416) 348-9058
대표	강옥희 (지사장)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서비스업 - 관광진흥활동
진출형태	지사
진출연도	1990
국내 모기업	한국관광공사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전화: (02) 729-9600
	팩스: (02) 754-2077
	대표: 조흥규
한국타이어 Hankook Tire Canada Corp.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6485 Kennedy R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T 2W4
전화	(1-905) 670-1811
팩스	(1-905) 670-7050
대표	지광진 (법인장)
업종	판매업, 무역업
취급분야	자동차 타이어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3
국내 모기업	한국타이어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5
	전화: (02) 222-1000
	팩스: (02) 222-1100
	대표: 조충환
한라공조 Halla Climate Control Corp. Canada Inc	
소재지	Belleville, Ontario
주소	360 University Ave, Belleville, Ontario, K8N 5T6
전화	(1-613) 969-1460
팩스	(1-613) 969-1399

대표	이창형 (법인장)
업종	금속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용 냉난방 시설
진출형태	현지법인 (합작)
진출연도	1989
국내 모기업	한라중공업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9-1
	전화: (042) 930-0114
	팩스: (042) 930-6129
	대표: 신영주
한진해운 토론토지점 Hanjin Shipping Co. Ltd.	
소재지	Toronto, Ontario
주소	401 Bay St. Suite 2121, Toronto, Ontario, M5H 2Y4
전화	(1-416) 361-3040
팩스	(1-416) 361-3451
대표	Frank Vanduyn
업종	운수, 창고업
취급분야	해운서비스업-화물수송
진출형태	지점
진출연도	1991
국내 모기업	한진해운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한진해운 빌딩
	전화: (02) 3770-6114
	팩스: (02) 3770-0983
	대표: 조수호
현대종합상사 캐나다 현지법인 Hyundai Canada Inc.	
소재지	Markham, Ontario
주소	75 Frontenac Drive, Markham, Ontario, L3R 6H2
전화	(1-905) 477-0101
팩스	(1-905) 477-3983
대표	이창범 (법인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기계, 철강, 건설장비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3
국내 모기업	현대종합상사
	주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전화: (02) 746-1114
	팩스: (02) 741-2341
	대표: 전명현

현대자동차 Hyundai Auto Canada Inc.	
소재지	Markham, Ontario
주소	75 Frontenac Drive, Markham, Ontario, L3R6H2
전화	(1-905) 477-0114
팩스	(1-905) 477-0187
대표	Steve Keller
업종	제조업, 무역업
취급분야	자동차 및 부품 제조, 판매업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5
국내 모기업	현대자동차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전화: (02) 3464-1114
	팩스: (02) 746-0470
대표: 정몽구	
LG 전자 LG Electronics Canada Inc.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550 Matheson Blvd., Mississauga, Ontario, L4Z 4G3
전화	(1-905) 568-6800
팩스	(1-905) 507-9149
대표	권순황 (법인장)
업종	판매업, 무역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판매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86
국내 모기업	LG 전자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LG트윈타워
	전화: (02) 3777-3456
	팩스: (02) 787-3400
대표: 김쌍수	
(주) 진웅 North Pole Inc.	
소재지	Mississauga, Ontario
주소	3279 Lenworth Drive, Unit A, Mississauga, Ontario, L4X 2G9
전화	(1-905) 625-8770
팩스	(1-905) 625-8776
대표	정지수 (법인장)
업종	무역업
취급분야	여행용 텐트, 캠핑도구
진출형태	현지법인
진출연도	1994

국내 모기업	진웅
	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8-2
	전화: (02) 455-6010
	팩스: (02) 458-5393
	대표: 이윤재

80. 주요경제지표

< 주요경제지표 >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망
실질 GDP (C\$억)	9,615	9,927	10,160	10,483	10,756
실질성장률(%)	1.5	3.1	2.0	2.9	2.6
물가상승률(%)	2.6	2.2	2.8	1.8	2.1
실업률(%)	7.2	7.7	7.6	7.2	6.9
수출(US\$억)	2,677	2,524	2,717	3,160	3,810
수입(US\$억)	2,264	2,220	2,394	2,729	3,240
외환보유고 (US\$억)	338	365	360	345	-
환율 (C\$/US\$)	1.55	1.57	1.40	1.20	1.21

주1: 2004년 외환보유고와 환율은 2004.12.31 수치

주2: 해마다 환율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GDP 는 캐나다화로 표기

주3: 적용환율 C\$1 = US\$0.8120 (2005.6.29)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Scotiabank Economics, 2005.6.29 현재)

<주요 산업별 경제 총생산>

	2001	2002	2003	2004
경제총생산 (C\$억)	9,615	9,927	10,160	10,483
- 농림수산업	208	202	220	232
- 광산개발업	357	352	375	387
- 제조업	1,707	1,740	1,742	1,811
- 건설업	522	538	562	586
- 공익산업	257	263	258	259
- 운송, 보관업	468	475	477	502
- 정보, 문화	395	418	425	429
- 도매업	549	588	622	662
- 소매업	532	561	577	600
- 금융, 부동산업	1,901	1,988	2,032	2,099
- 과학, 기술산업	423	443	457	466
- 행정지원, 폐기물 처리/재활용	198	208	216	221
- 공공행정	536	549	565	574
- 교육업	443	447	450	454

- 의료, 사회복지	569	591	614	622
- 예체능	90	97	101	101
- 숙박, 요식업	229	231	227	233
- 기타	231	237	242	245

주1: 해마다 환율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GDP 는 캐나다화로 표기

주2: 적용환율 C\$1 = U\$0.8120 (2005.6.29)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81. 대외거래지표

< 대외거래지표 >

(단위: U\$ 억)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 전망
해외 투자유치	2,576	2,817	2,886	2,969	-
해외 직접투자	3,220	3,468	3,222	3,614	-
경상수지	204	171	149	130	164
무역수지	394	303	320	431	570
수출	2,610	2,524	2,717	3,160	3,810
수입	2,216	2,221	2,397	2,729	3,240
외환보유고	338	359	363	345	-

주1: 2004년 외환보유고는 2004.12.31 기준

주2: 적용환율 C\$1 = U\$0.8120 (2005.6.29)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Scotiabank Economics, 2005.6.29 현재)

82.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출

< 수출 >

(단위: US\$ 백만, %)

수출대상국	2001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총계	260,958	252,413	271,748	316,452	112,708	12.4
1. 미국	227,161	219,929	233,100	267,478	95,672	11.9
2. 일본	5,386	5,323	5,811	6,573	2,224	13.9
3. 영국	3,267	2,822	4,343	5,952	2,132	18.4
4. 중국	2,754	2,631	3,400	5,110	1,853	20.8
5. 독일	1,892	1,882	2,066	2,048	722	8.1
6. 멕시코	1,779	1,541	1,578	2,300	676	0.2
7. 한국	1,303	1,284	1,382	1,740	668	26.5
8. 프랑스	1,402	1,275	1,561	1,826	628	18.8
9. 네덜란드	1,005	1,130	1,157	1,549	524	-6.0
10. 이태리	1,067	948	1,230	1,336	488	2.9

주: 순위는 2005. 1-4 기준. 증감률은 2005. 1-4 수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16 현재)

83.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수입

< 수입 >

(단위: US\$ 백만, %)

수입대상국	2001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총계	221,581	222,147	239,709	272,955	99,575	16.9
1. 미국	140,972	139,104	145,384	160,484	57,936	11.8
2. 중국	8,217	10,191	13,251	18,511	6,722	36.2
3. 일본	9,455	9,821	9,859	10,272	4,028	20.7
4. 멕시코	7,829	8,115	8,695	10,301	3,673	15.1
5. 영국	7,567	6,201	6,570	7,414	2,836	26.7
6. 독일	5,166	5,281	6,162	7,234	2,744	21.0
7. 노르웨이	2,263	2,504	3,078	3,806	1,556	54.9
8. 한국	2,974	3,098	3,644	4,474	1,432	13.4
9. 프랑스	3,557	3,729	3,616	4,096	1,409	11.8
10. 이태리	2,600	3,296	3,296	3,512	1,217	11.6

주: 순위는 2005.1-4 기준. 증감률은 2005.1-4 수입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16 현재)

84.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입품

< 주요 수입품 >

(단위: US\$ 백만, %)

주요 수입품	2001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총계	221,581	222,147	239,709	272,955	99,575	16.9
1. 승용차	14,697	17,109	17,925	17,718	6,741	18.1
2. 자동차부품	16,300	17,565	17,602	19,734	6,623	-3.3
3. 원유	8,165	7,646	9,855	12,329	5,322	68.7
4. 컴퓨터	6,554	6,138	6,510	7,326	2,702	17.8
5. 트럭	4,072	4,922	6,101	6,789	2,545	21.4
6. 의약품	3,245	3,735	4,746	5,374	1,963	10.7
7. 내연엔진	4,450	4,215	4,275	4,563	1,637	8.8
8. 페트로 가스 및 액체가스	352	570	1465	2131	1,351	90.3
9. 전기회로	3,819	2,538	2,519	3,408	1,322	18.0
10. 석유, 역청유 (원유제외)	1,708	1,323	1,994	2,824	1,108	52.2

주1: 순위는 2005.1-4월 기준, 증감률은 2005.1-4 수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2: HS 4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3 현재)

85.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통계/주요 수출품

< 주요 수출품 >

(단위: US\$ 백만, %)

주요 수출품	2001	2002	2003	2004	2005. 1-4	증감률
총계	260,958	252,413	271,748	316,452	112,708	12.4
1. 승용차	31,779	32,081	31,334	36,628	11,753	0.6
2. 페트로 가스 및 액체가스	18,059	12,985	20,324	22,779	10,146	36.2
3. 원유	10,386	11,472	14,585	19,296	6,378	12.4
4. 자동차부품	9,711	10,744	11,826	12,381	4,471	2.5
5. 트럭	8,887	9,146	9,122	8,994	3,031	-5.5
6. 목재(두께 >6mm)	7,558	7,009	6,472	8,968	2,981	16.4
7. 비페트로계 유가공품	4,475	4,615	5,890	6,936	2,764	39.7
8. 비행기	6,435	5,797	6,481	5,484	2,466	15.6
9. 신문용지	4,677	4,032	4,027	4,080	1,407	2.8
10. 화학처리 펄프	3,847	3,532	3,788	4,364	1,398	-0.2

주1: 순위는 2005. 1-4월 기준, 증감률은 2005.1-4 수출액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2: HS 4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3 현재)

86.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연도별 수출입규모

< 연도별 수출입규모 >

(단위: US\$ 천, %)

연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1,551,209	2.4	1,975,154	-24.2
1999	1,638,478	5.6	1,792,944	-9.2
2000	2,426,732	48.1	2,107,789	17.6
2001	2,035,728	-16.1	1,821,335	-13.6
2002	2,340,630	15.0	1,845,542	1.3
2003	2,682,125	14.6	1,860,185	0.8
2004	3,383,074	26.1	2,188,806	17.7
2005년 1-5월	1,446,087	10.8	979,291	6.6

주: 연도별 수출입실적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2005년 1-5월 수출입실적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단위: US\$ 천, %)

연도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1998	△423,945	-61.1
1999	△154,466	-63.6
2000	318,943	N/A
2001	214,393	-32.8
2002	495,088	130.9
2003	821,940	66.0
2004	1,194,268	45.3
2005년 1-5월	466,796	20.9

주1: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연도 증가율을 산출할 수 없어 N/A 로 표기 (2000년)

주2: 2005년 1-5월 무역수지의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87.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입 상품

<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입 상품 >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2002	2003	2004	2005년 1-5월	증감률
1	제지원료	338,298	350,203	389,712	137,487	-16.0
2	석탄	204,113	170,275	270,656	119,672	35.5
3	사료	11,318	52,38	20,758	86,465	2,528
4	니켈괴, 스크랩	75,814	64,875	126,538	84,037	9.6
5	칼륨비료	39,487	54,001	65,020	41,090	64.8
6	알루미늄괴, 스크랩	99,890	133,263	102,732	34,054	-45.2
7	가축육류	68,668	44,532	39,384	32,397	155.1
8	석유화학합성원료	83,491	104,152	106,975	30,976	-28.5
9	동광	29,981	20,858	72,513	22,493	-47.1
10	원목	23,333	31,934	37,347	21,202	19.4
11	유선전송장치	91,780	69,651	55,072	15,569	-10.1
12	기타 석유화학제품	2,417	35,125	33,316	15,470	25.5

13	소가죽	25,911	18,003	16,483	12,612	44.9
14	제재목	21,840	24,450	35,849	11,686	-18.4
15	의약품	27,128	21,137	25,680	10,108	60.8
16	곡류	23,009	35,287	24,932	10,071	10.8
17	집적회로반도체	4,584	20,035	25,712	9,257	5.3
18	밍크모피	16,054	8,672	10,795	9,128	73.2
19	기타기계류	4,628	10,799	12,107	8,967	481.4
20	식물성유지	9,497	13,649	16,765	8,074	-4.1
전체		1,845,542	1,860,185	2,188,806	979,291	6.6

주1: 순위는 2005년 1-5월 수입실적 기준

주2: 증감률은 2005년 1-5월 수입실적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3: MIT 4단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88. 우리나라와의 교역통계/주요 수출 상품

< 한국의 대 캐나다 주요 수출 상품 >

(단위: US\$ 천, %)

순위	품목	2002	2003	2004	2005년1-5월	증감률
1	승용차	810,457	1,098,810	1,298,156	558,552	8.2
2	무선통신기기	157,540	147,737	307,729	125,623	259.0
3	선박	111	124	133,218	65,680	-50.7
4	자동차부품	48,073	60,605	78,682	42,752	37.8
5	타이어	62,999	69,827	80,408	40,432	12.8
6	합성수지	27,243	39,758	38,574	31,429	70.7
7	철강관	13,894	19,086	26,774	16,902	84.0
8	아연도강판	20,660	28,065	43,194	16,200	57.8
9	칼라 TV	15,191	25,723	43,209	16,076	71.2
10	펌프	17,535	29,886	45,408	15,980	-28.5
11	밸브	21,146	23,469	25,578	15,931	88.8
12	합성고무	8,929	14,069	19,788	14,426	164.7
13	기타 화학공업제품	5,974	5,580	20,468	14,060	372.4

14	전동기	38,251	42,396	45,156	14,053	-33.1
15	섬유기계	1,088	12,555	25,456	13,480	29.0
16	집적회로반도체	7,421	6,502	19,882	12,911	149.8
17	냉장고	15,526	14,404	24,567	12,813	138.1
18	기타플라스틱 제품	23,288	23,417	31,590	12,521	3.0
19	철강,비합금강형강	27,596	15,035	48,511	12,472	4.5
20	건설 중장비	7,427	8,871	18,943	12,346	97.0
전체		2,340,630	2,682,125	3,383,074	1,446,087	10.8

주1: 순위는 2005년 1-5월 수출실적 기준

주2: 증감률은 2005년 1-5월 수출실적의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주3: MTI 4단위 기준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2005.6.27 현재)

89. 대외투자진출통계

< 캐나다 해외 직접투자 >

[캐나다 해외 직접투자 대상국]

(단위: C\$ 백만)

투자대상국	2001	2002	2003	2004
총계	399,253	433,364	403,444	445,063
1. 미국	188,481	199,298	166,384	193,855
2. 영국	39,682	40,740	40,977	43,991
3. 바베이도스	26,465	27,047	29,546	30,595
4. 아일랜드	8,991	17,737	19,482	20,564
5. 버뮤다	12,414	11,766	11,072	11,749
6. 네덜란드	12,046	10,784	10,684	10,896
7. 프랑스	3,834	4,487	10,483	10,441
8. 헝가리	9,231	10,669	8,897	10,049
9. 일본	7,026	9,707	8,444	9,576
10. 케이먼 군도	5,573	10,389	10,214	9,544
31. 한국	725	749	649	686

주: 순위는 2004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분야별 캐나다 해외 직접투자]

분 야	전체투자에서의 비중 (%)
1. 금융/보험	45%
2. 에너지/광물	22%
3. 서비스/소매	12%
4. 목재/펄프	2.7%
5. 기계설비	1.1%
기타	17.2%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90. 외국인 투자유치 통계

[국가별 대캐나다 직접투자]

(단위: C\$백만)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319,116	340,429	354,122	354,466	365,675
1. 미국	193,651	219,927	229,860	227,421	238,155
2. 영국	23,955	26,913	27,861	27,397	29,461
3. 프랑스	36,997	31,477	31,258	31,535	27,824
4. 네덜란드	15,335	13,820	13,937	16,119	14,525
5. 일본	8,041	7,864	9,162	9,610	10,583
6. 스위스	5,846	6,373	7,174	7,502	10,583
7. 독일	7,375	6,357	6,971	7,052	8,077
8. 홍콩	3,374	3,931	4,125	4,679	5,262
9. 룩셈부르크	2,988	2,977	3,098	3,104	3,307
10. 버뮤다	2,065	2,054	2,815	2,635	2,728
23. 한국	232	269	274	329	342

주: 순위는 2004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분야별 캐나다의 해외 직접투자 유치]

분야	총투자액에서의 비중
1. 에너지/광물	15%
2. 금융/보험	12%
3. 서비스/소매	8.2%
4. 목재/펄프	4%
5. 기계설비	3.5%
기타	57.3%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91. 우리나라와의 투자교류통계/투자교류통계

< 투자교류통계 >

(단위: 건, US\$백만)

연도	대캐나다투자		대한투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8	59	14	63
1999	12	19	48	347
2000	35	41	54	520
2001	31	80	26	1,506
2002	23	10	32	261
2003	24	36	36	73
2004	37	48	44	224
2005 최신통계	12 (2005.1~4)	4 (2005.1~4)	2 (2005.1~3)	3 (2005.1~3)
누계	271	2,061	344	3,219

주1: 한국의 대캐나다투자는 총 신고기준

주2: 누계는 대캐나다투자는 1968년부터, 대한투자는 1962년부터의 수치

(자료원: 수출입은행(대캐나다 투자), 산업자원부(대한민국 투자), 2005.6.28 현재)

<주요부문 별 한국의 대캐나다 투자동향>

(단위: 건, US\$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2005.4		1968~2005.4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계	31	80	23	9.7	24	36	49	52	271	2,061
농림,수산광업	0	1.2	2	1.2	1	11.2	4	31	18	1,151
제조업	7	40	6	3.1	4	2	4	1.3	67	659
도소매업	5	31	6	1.5	4	14	6	1.3	65	176
기타	19	7.8	9	3.9	15	8.8	23	14.4	121	75

주1: 총 신고기준

주2: 누계는 1968년부터 2005년 1월까지의 수치

(자료원: 수출입은행, 2005.6.28 현재)

<주요부문 별 캐나다의 대한 투자동향>

(단위: 건, US\$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2005.3		1962~2005.3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총계	26	1,506	32	261	36	73	46	227	344	3,219
농림,수산광업	1	0.04	0	0	0	0	0	0	3	0.3
제조업	7	8.9	8	41	8	7.5	14	183	123	886
서비스산업	18	1,498	24	220	28	66	30	43	206	2,328
종합건설업	0	0	0	0	0	0	2	0.3	12	5

주1: 총 신고기준

주2: 누계는 1962년부터 2004년까지의 수치

(자료원: 산업자원부, 2005.6.28 현재)

92. 물가금융지표

< 물가금융지표 >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6
소비자물가지수 (1992=100)	116.4	119.0	122.8	125.4	125.0 (2005.5)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2	2.8	2.1	1.6
통화량 (C\$백만)*	517,391	549,988	601,277	638,577	648,914 (2005.5)
주가지수 (TSX)	7,732	7,036	7,162	9,264	9,908 (6.28)
환율 (연평균, C\$/US\$)	1.55	1.57	1.40	1.30	1.23
금리 (%)**	5.81	4.21	4.69	4.25	4.25

주1: 통화량은 광의통화 (M2), 금리는 Prime Rate, 주가지수 (TSX)는 매년 말일 기준

주2: 2005년 6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5월 통계가 최신 자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5년 5월 물가지수의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

주3: 2005.6 환율은 2005년 상반기 평균 환율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2005.6.28 현재)

93. 노동통계

< 노동통계 >

지표	2001	2002	2003	2004	2005.5
고용인구 (1,000명, 15세 이상)	16,246	16,689	17,047	17,377	16,153
실업률 (%)	7.2	7.7	7.6	7.1	6.8
평균임금 (시간당, C\$)*	16.78	17.08	17.48	18.18	18.88
임금상승률 (연평균, %)*	4.6	4.8	4.0	4.0	N/A
주당평균근로시간*	31.6	31.9	32.1	33.4	33.8

주1: 2005년 6월 현재 5월 노동통계가 최신 자료

주2: 2005년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2006년 이후 발표 전망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3 현재)

(* 전체산업 평균)

94. 지방자치구역동향/유관기관

< 유관기관 >

1. 대한민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기관명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오타와)		
주 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전 화	(1-613) 244-5010	팩 스	(1-613) 244-5043
Web-site	http://www.emb-korea.ottawa.on.ca		
E-mail	consul@emb-korea.ottawa.on.ca		
기관개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관명	주캐나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토론토)		
주 소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전 화	(1-416) 920-3809	팩 스	(1-416) 924-7305
Web-site	http://www.consulatekorea-tor.org		
E-mail	toronto@consulatekorea-tor.org		
기관개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관명	주캐나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몬트리얼)		
주 소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H3B 2C4		
전 화	(1-514) 845-2555	팩 스	(1-514) 845-1119
Web-site	http://www.koreanconsulate.qc.ca		
E-mail	Korean@koreanconsulate.qc.ca		
기관개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기관명	주캐나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밴쿠버)		
주 소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전 화	(1-604) 681-9581, 9582	팩 스	(1-604) 681-4864
Web-site	http://www.koreavan.org		
E-mail	Vancouver@mofat.go.kr		
기관개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기관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북미지역 본부 (뉴욕)		
주 소	460 Park Ave. Suite 402, New York, NY 10022 U.S.A		
전 화	(1-212) 826-0900	팩 스	(1-212) 888-4930
Web-site	www.kotra.or.kr		
E-mail	kotrany@ix.netcom.com		
기관개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기관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토론토)		
주 소	65 Queen Street West, Suite 600, Toronto, Ontario, Canada, M5H 2M5		
전 화	(1-416) 368-3399	팩 스	(1-416) 368-2893
Web-site	www.kotra.ca (무역관 자체 홈페이지)		
E-mail	info@kotra.ca		
기관개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기관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밴쿠버)		
주 소	Suite 1710, One Bentall Centre, 505 Burrard Street, Vancouver, B.C., Canada, V7X 1M6		
전 화	(1-604) 683-1820	팩 스	(1-604) 687-6249
Web-site	www.kotra.or.kr		
E-mail	kto@kotrayvr.com		
기관개요	대한민국 산업자원부		

3. 한국기업 현지법인 및 지사

기관명	한국관광공사 토론토 지사		
주 소	700 Bay St. Suite 1903, Toronto, Ontario, Canada, M5G 1Z6		
전 화	(1-416) 348-9056	팩 스	(1-416) 348-9058
Web-site	http://english.tour2korea.com/toronto/		
E-mail	toronto@knto.ca		
기관개요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기관명	대한항공 Korean Airline Toronto (토론토)		
주 소	55 University Avenue, Toronto, Ontario, Canada, M5J 2H7		
전 화	(1-416) 862-8381	팩 스	(1-416) 862-2105
Web-site	http://www.koreanair.com (북미지역 통합 홈페이지)		
E-mail	N/A		
기관개요	대한항공		

기관명	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토론토)		
주 소	Madison Centre, 4950 Yonge St., Suite 1101, Toronto, Ontario, Canada, M2N 6K1		
전 화	(1-416) 222-5200	팩 스	(1-416) 222-5822
Web-site	http://www.kebcanada.com		
E-mail	comment@kebcanada.com		
기관개요	한국외환은행		

기관명	금호 타이어 Kumho Tire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Suite 302, 1100 Sheppard Ave.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3K 2B4		
전 화	(1-416) 636-0904	팩 스	(1-416) 636-9673
Web-site	http://www.kumhotire.ca		
E-mail	N/A		
기관개요	금호타이어		

기관명	기아자동차 KIA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180 Forester Crescent,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R 4J5		
전 화	(1-905) 755-6250	팩 스	(1-905) 755-6251
Web-site	www.kia.ca		
E-mail	consumer@kia.ca		
기관개요	현대기아 자동차		

기관명	대동산업 Prime Auto Machinery Co. (토론토)		
주 소	1 Greenleaf Court, Belleville, Ontario, Canada K8N 5B5		
전 화	(1-613) 969-9522	팩 스	(1-613) 969-9524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대동산업		

기관명	대림통상 Daelim Trading Co. (토론토)		
주 소	6 Gemma Court, Concord, Ontario, Canada, L4K 5E6		
전 화	(1-905) 738-0867	팩 스	(1-905) 738-4639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대림통상		

기관명	대우 캐나다 Daewoo Canada Ltd. (토론토)		
주 소	1500 Don Mills Rd. Suite 403, North York, Ontario, Canada, M3B 3K4		
전 화	(1-416) 510-2886	팩 스	(1-416) 510-0908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대우		

기관명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7037 Financial Drive,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N 6R3		
전 화	(1-905) 542-3535	팩 스	(1-905) 819-4407
Web-site	www.samsung.ca		
E-mail	N/A		
기관개요	삼성전자		

기관명	진웅 North Pole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3279 Lenworh Dr. Unit A, Mississauga, Ontario, Canada, L4X 2G9		
전 화	(1-905) 625-8770	팩 스	(1-905) 625-8776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진웅		

기관명	한국타이어 Hankook Tire Canada Corp. (토론토)		
주 소	6485 Kennedy Roa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T 2W4		
전 화	(1-905) 670-1811	팩 스	(1-905) 670-7050
Web-site	http://www.hankooktire.ca/		
E-mail	info@hankooktire.ca		
기관개요	한국타이어		

기관명	한라공조 Halla Climate Control Corp. Canada Inc		
주 소	360 University Ave, Belleville, Ontario, Canada, K8N 5T6		
전 화	(1-613) 969-1460	팩 스	(1-613) 969-1399
Web-site	www.halla.on.ca		
E-mail	N/A		
기관개요	한라중공업		

기관명	현대자동차 Hyundai Auto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75 Frontenac Drive, Markham, Ontario, Canada, L3R 6H2		
전 화	(1-905) 477-0202	팩 스	(1-905) 477-5092
Web-site	http://www.hyundaicanada.com		
E-mail	N/A		
기관개요	현대자동차		

기관명	현대 종합상사 Hyundai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75 Frontenac Drive, Markham, Ontario, Canada, L3R 6H2		
전 화	(1-905) 477-0101	팩 스	(1-905) 477-3983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현대 종합상사		

기관명	LG 전자 LG Electronics Canada Inc. (토론토)		
주 소	550 Matheson Blv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4Z 4G3		
전 화	(1-905) 568-6800	팩 스	(1-905) 507-9149
Web-site	http://ca.lge.com/		
E-mail	N/A		
기관개요	LG 전자		

기관명	금호타이어 Kumho Tire Canada Inc. (밴쿠버)		
주 소	#118-11782 Hammersmith Way, Richmond, B.C., Canada, V7A 5E3		
전 화	(1-604) 241-4142	팩 스	(1-604) 241-5591
Web-site	http://www.kumhotire.ca		
E-mail	N/A		
기관개요	금호타이어		

기관명	동아건설 Dong Ah Canada Development Corp. (밴쿠버)		
주 소	#601-4538 Kingsway, Burnaby, B.C., Canada, V5H 4T9		
전 화	(1-604) 739-8850	팩 스	(1-604) 739-8807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동아건설		

기관명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Co. (밴쿠버)		
주 소	#1400-543 Granville St, Vancouver, B.C., Canada, V6C 1X8		
전 화	(1-604) 601-2901	팩 스	(1-604) 687-2396
Web-site	N/A		
E-mail	N/A		
기관개요	현대상선		

4. 캐나다 정부 기관

기관명	캐나다 공식 홈페이지 Canada Site		
주 소	Communication Canada, Ottawa, Ontario, Canada, K1A 1M4, ATTN: CANADA SITE		
전 화	(1-800) 755-7047	팩 스	(1-613) 941-1827
Web-site	http://www.canada.gc.ca		
E-mail	sitecanadasite@communication.gc.ca		
기관개요	캐나다를 소개하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로 캐나다에 대한 세부 정보와 각 정부기관 및 부처 링크가 정리되어 있다.		

기관명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주 소	Information Services (SXCI), 125 Sussex Drive, Ottawa, Ontario, Canada, K1A 0G2		
전 화	(1-613) 944-4000	팩 스	(1-613) 996-9709
Web-site	http://www.dfait-maeci.gc.ca		
E-mail	engserv@dfait-maeci.gc.ca		
기관개요	캐나다 외교통상부		

기관명	Industry Canada		
주 소	C.D. Howe Building, 235 Queen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A 0H5		
전 화	(1-613) 954-2788	팩 스	(1-613) 954-1894
Web-site	http://www.ic.gc.ca		

E-mail	N/A
기관개요	캐나다 산업부

기관명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주 소	2265 St. Laurent Boulevard, 1 st Floor, Ottawa, ON, Canada, K1G 4K3		
전 화	(1-613) 991-0520	팩 스	(1-613) 991-1407
Web-site	http://www.cbsa-asfc.gc.ca		
E-mail	N/A		
기관개요	캐나다 국세청으로 관세와 반덤핑규제를 포함한 각종 수입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관명	Strategis Canada		
주 소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 참고		
전 화	(1-613) 954-5031	팩 스	캐나다 산업부 참고
Web-site	http://www.strategis.ic.gc.ca		
E-mail	strategis@ic.gc.ca		
기관개요	캐나다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 각종 산업 정보 및 무역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기관명	Statistics Canada		
주 소	R.H. Coats Building, Lobby, Holland Avenue, Ottawa, Ontario, Canada, K1A 0T6		
전 화	(1-613) 951-8116	팩 스	(1-877) 287-4369
Web-site	http://www.statcan.ca		
E-mail	infostats@statcan.ca		
기관개요	캐나다 통계청		

기관명	Business Gateway Canada		
주 소	Business Gateway, 235 Queen Street, Room 186B, Ottawa, Ontario, Canada, K1A 0H5		
전 화	(1-866) 287-4283	팩 스	N/A
Web-site	http://businessgateway.ca		
E-mail	info@businessgateway.ca		

기관개요	캐나다 창업 및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사이트이다. 주 정부 관련 비즈니스 사이트는 다음 링크에 정리되어 있다. http://www.cbasc.org/english/contacts/all.cfm		
------	---	--	--

기관명	Investment Partnership Canada		
주 소	캐나다 산업부 참고		
전 화	(1-866) 287-4283	팩 스	캐나다 산업부 참고
Web-site	http://investincanada.ic.gc.ca		
E-mail	invest.canada@ic.gc.ca		
기관개요	캐나다 연방 정부 투자 유치 기관 (산업부 산하)		

기관명	Contracts Canada		
주 소	Place du Portage III, 301, 11 Laurier Street, Hull, Quebec, Canada, K1A 0S5		
전 화	(1-819) 956-3440	팩 스	(1-819) 956-6123
Web-site	http://contractscanada.gc.ca		
E-mail	ncr.contractscanada@pwgsc.gc.ca		
기관개요	캐나다 연방정부 조달청		

기관명	Embassy of Canada in Seoul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우편사서함 6299		
전 화	(82-2) 3455-6000	팩 스	(82-2) 755-0686
Web-site	http://www.korea.gc.ca		
E-mail	N/A		
기관개요	주한 캐나다 대사관		

5. 민간 기관

기관명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주 소	Delta Office Tower, 350 Sparks Street Suite 501, Ottawa, Ontario, Canada, K1R 7S8		
전 화	(1-613) 238-4000	팩 스	(1-613) 238-7643
Web-site	http://www.chamber.ca		
E-mail	info@chamber.ca		
기관개요	캐나다 상공회의소		

기관명	Canadian Association of Importers and Exporters		
주 소	438 University Avenue Suite 1618, Toronto, Ontario, Canada, M5G 2K8		
전 화	(1-416) 595-5333	팩 스	(1-416) 595-8226
Web-site	http://www.importers.ca		
E-mail	info@iecanada.com		
기관개요	캐나다 수출입업자 협회		

기관명	Alliance of Manufacturers and Exporters Canada		
주 소	1 Nicholas Street Suite 1500, Ottawa, Ontario, Canada, K1N 7B7		
전 화	(1-613) 238-8888	팩 스	(1-613) 563-9218
Web-site	http://www.cme-mec.ca		
E-mail	info@cme-mec.ca		
기관개요	캐나다 제조업 및 수출업자 협회		

기관명	Canadian Standard Association		
주 소	5060 Spectrum Way Suite 100, Mississauga, Ontario, Canada, L4W 5N6		
전 화	(1-416) 747-4044	팩 스	(1-416) 747-2510
Web-site	http://www.csa.ca		
E-mail	sales@csa.ca		
기관개요	캐나다 표준 협회		

기관명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Canada		
주 소	2800 Skymark Avenue, Suite 402, Mississauga, Ontario Canada L4W 5A6		
전 화	(1-905) 602-8345	팩 스	(1-905) 602-8346
Web-site	http://www.itac.ca		
E-mail	info@itac.ca		
기관개요	캐나다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 협회		

6. 기타 유용한 정보

사이트	Yahoo Canada Maps - 캐나다 지도
Web-site	http://ca.maps.yahoo.com
사이트	Yellow Page - 전화번호
Web-site	http://www.yellowpages.ca
사이트	현지 캐나다 한국일보
Web-site	http://www.koreatimes.net
사이트	현지 캐나다 중앙일보
Web-site	http://www.joongangcanada.com
사이트	GLOBE and MAIL 현지 전국지
Web-site	http://www.globeandmail.ca
사이트	캐나다 날씨 정보
Web-site	http://cbc.ca/weather

95. 지방자치구역동향/온타리오주 경제동향

< 온타리오주 경제동향 및 예상 >

1. 온타리오주 개황

-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
 - 온타리오주는 2004년 기준 캐나다 전체 GDP의 40.0%, 인구의 38.8%를 차지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산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
- 자동차 및 기계류 생산산업이 주류
 - 타국에서의 원자재와 부품을 수입한 후 조립완성품의 대미수출이 주된 무역 형태
 -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본거지인 Detroit와 인접하여 위치한 이유로 자동차 생산업체인 BIG 3의 제조공장 및 부품 조달업체가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일본업체의 자동차 생산공장도 소재
 - 주요 수출품, 수입품 역시 자동차 및 관련부품이 주류를 이루는 등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 금융업을 위시로 한 서비스업 또한 크게 발달

○ 대미무역 편중현상 심화

- 대미수출이 총 수출의 90% 이상을, 수입은 총 수입의 69% 이상을 차지하며 대미무역 의존도가 타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

[온타리오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517,614 (캐나다 전체의 40.0%)
인구 (천명, 2005.1)	12,449.5 (캐나다 전체의 38.8%)
총수출액 (C\$백만, 2004)	198,874 (캐나다 전체의 48.3%)
총수입액 (C\$백만, 2004)	220,227 (캐나다 전체의 62.0%)
주요수출국 (%)	1. 미국 (90.5) 2. 영국 (2.0) 3. 중국 (0.65)
주요수입국 (%)	1. 미국 (70.5) 2. 중국 (5.6) 3. 멕시코(5.0)
주요수출품 (%)	1. 자동차/ 자동차부품(34.4) 2. 기계류(11.0), 3. 전기/전자 (5.3)
주요수입품 (%)	1. 자동차/자동차부품(22.9) 2. 기계류(18.0), 3. 전기/전자(11.0)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2005년 경제, 성장둔화 기록 전망

- 2004년 온타리오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들어 다소 성장둔화 현상이 출현
- 캐나다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대미수출의 약세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감소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

○ 제조업과 대미수출의 약세

- 대미수출 의존도가 심한 온타리오주의 제조업은 캐나다화 절상으로 인해 신규출하가 감소하였고 기업의 수익률도 크게 하락
- 주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2005년 이후 더욱 심화된 미국 빅3 자동차 제조업체의 영향으로 생산량 감소, 공장 폐쇄 등이 출현
- 대미수출 약세는 온타리오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대미수출이 전체수출의 90%가 넘는 온타리오주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용시장은 안정세 지속

- 2005년 상반기 온타리오주 고용시장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업률은 7.0% 이하로 하락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명목 GDP (C\$백만)	470,567	493,501	517,614	-
고용인구(천명)	6,068	6,208	6,316	6,409.7 (5월)

실업률 (%)	7.1	7.0	6.8	6.9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80	81	85	76
소매판매 (C\$백만)	115,262	118,446	128,650	11,396 (4월)
소비자물가지수 (1992=100)	120.1	123.3	125.6	128.0 (4월)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연간 신규주택 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Scotiabank, 2005.6.29 현재)

3. 수출입동향

○ 온타리오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206,543	189,141	198,874	65,420 (-0.4)
미국	192,806	172,887	180,078	58,769 (-1.6)
영국	2,048	2,722	3,935	1,582 (37.6)
노르웨이	820	823	786	480 (17.3)
중국	857	976	1,365	362 (-22.8)
멕시코	1,370	905	1,108	354 (13.9)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 온타리오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224,693	210,099	220,227	74,266 (4.5)
미국	162,938	150,165	152,240	20,928 (0.5)
중국	7,765	9,407	12,225	41,45 (22.1)
멕시코	10,658	10,019	11,108	3,592 (3.5)
일본	6,969	5,992	7,289	28,39 (36.8)
독일	3,825	3,916	4,334	1,471 (7.2)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4. 2005년 전망

○ 2005년 경제 성장률 2.1% 기록 전망

- 2005년 경제성장률은 2004년의 2.6%에서 하락한 2.1%를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200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감소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환율현상으로 인한 수출약세가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

○ 신규주택 건설시장, 전년대비 소폭 하락 전망

- 2004년 8만5천 가구가 새로 건설된 주택시장은 2005년에는 다소 감소한 7만6천 가구가 신규로 건축될 것으로 전망

[주요 예상 경제지표]

온타리오주	2004	2005	2006
-------	------	------	------

실질 경제성장률 (%)	2.6	2.1	2.0
고용인구 증감률 (%)	1.7	1.0	0.8
실업률 (%)	6.8	6.7	6.7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85	76	64
자동차 판매 (천대)	585	598	584
주정부 재정 수지 (C\$백만)	-5,483	-6,000	-2,796

(자료원: Scotiabank, 2005.6.29 현재)

96. 지방자치구역동향/BC주 경제동향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경제동향 및 예상>

1.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개황

- 여타지역에 비해 아시아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보유
 - BC주의 경우 전체 수출의 40% 이상이 아시아계 APEC국가로 수출
- 풍부하고 다양한 천연자원 보유
 - 에너지 및 광산업 발달, 세계 10위 이내 생산자원 20여종 보유
 - 석탄, 가스, 원유, 우라늄, 니켈, 아연, 목재, 펄프, 곡물 등
- 경공업 소비재 제조산업 취약
 - 1차 산업 위주의 수출 및 공산품 위주의 수입구조
- BC주는 최근 ICT, BT, ET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두각

[BC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156,481 (캐나다 전체의 11.9%)
인구 (천명, 2005.1)	4,220 (캐나다 전체의 13.1%)
총수출액 (C\$백만, 2004)	32,830 (캐나다 전체의 8.0%)
총수입액 (C\$백만, 2004)	32,868 (캐나다 전체의 9.3%)
주요수출국 (%)	1. 미국(63.7) 2. 일본(11.7) 3. 중국(5.2)
주요수입국 (%)	1. 미국(38.6) 2. 중국(18.6) 3. 일본(14.0)
주요수출품 (%)	1. 목재(26.8) 2. 광물(16.4) 3. 펄프(9.5)
주요수입품 (%)	1. 자동차(25.0) 2. 기계류(12.7), 3. 전기/전자(9.3)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내수경기 및 신규 주택건설시장의 호조
 - 2010 동계올림픽 개최로 결정으로 중장기 경제전망은 긍정적
 - 건설자재, 건설인력 등 수요 급증

- 원자재 국제 시세 초강세에 따라 자원산업이 주경제 주도
 - 석탄, 목재 등 원자재 수출 호조
- 친기업 성향의 자유당 신정부가 2기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첨단산업 및 아시아 게이트웨이 경제정책의 지속 추진 기대
 - 2001년 6월 및 2005년 5월에 실시된 주총선에서 자유당이 집권함에 따라 주정부의 컴퓨터, 환경, 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시책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
 - BC 주정부, Leading Edge BC 설립(비영리 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 (미국 북서부지방과 동일 경제권에 속하며 Silicon Valley North 지향)
- 이례적으로 강세인 부동산 시장 영향으로 건설업(주택 및 비거주) 호조
 - 부동산 경기호조, 해외이민 및 타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증가로 주택 신축 증가
-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 신규 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가구,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증가
 - 소비재 수요의 증가는 소매판매의 증가를 촉진
- 견실한 경제에 따른 고용증대는 캐나다 최고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명목 GDP (C\$백만)	138,368	145,500	156,481	-
고용인구(천명)	1,973	2,023	2,093	2,132.0 (5월)
실업률 (%)	8.5	8.1	6.4	5.7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21.6	26.2	35.3	33.0
소매판매 (C\$백만)	43,265	44,421	47,217	4,082 (3월)
소비자물가지수(1992=100)	117.9	120.4	123.7	125.2 (5월)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연간 신규주택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Scotiabank, 2005.6.28 현재)

3. 수출입동향

- BC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19,272	21,079	25,226	8,728 (16.6)
미국	13,189	13,935	16,054	5,701 (16.9)
일본	2,484	2,629	2,955	967 (11.8)
중국	548	814	1,317	357 (17.8)
한국	493	605	726	247 (11.6)
대만	229	326	393	126 (12.6)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 BC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20,077	22,306	25,290	9,038 (16.3)
미국	7,529	8,252	9,757	3,540 (19.5)
중국	2,666	3,292	4,719	1,727 (42.2)
일본	4,573	4,617	3,514	1,248 (-10.3)
한국	1,255	1,523	1,934	706 (16.3)
대만	628	622	670	219 (9.6)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4. 2005년 전망

- 경제성장: 캐나다 달러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탄, 목재 등 원자재 국제시세 강세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 전망. BC주의 지속적인 신규 주택건설 붐과 해외 및 타주로부터의 인구 유입, 고용증대 등에 따른 소비지출은 강세. 주정부 예산이 재정흑자를 기록하여 2004년에는 캐나다 각주중 경제성장 1위를 기록, 2005년에는 3.3% 경제성장 전망
 - 2003년 2.5% → 2004년 3.9% → 2005년 3.6% → 2006년 3.4%
 - [Scotia Bank, 2005. 6 전망치]

[주요 예상 경제지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4	2005	2006
실질 경제성장률 (%)	3.9	3.6	3.4
고용인구 증감률 (%)	2.3	2.3	1.9
실업률 (%)	7.2	6.8	6.7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33	33	32
자동차 판매 (천대)	178	182	183
주정부 재정 수지 (C\$백만)	-959	1,440	220

(자료원: Scotiabank, 2005.6.28 현재)

97. 지방자치구역동향/알버타주 경제동향

< 알버타주 경제동향 및 예상 >

1. 알버타주 개황

- 20년간 지속적으로 캐나다 10개 주 중 최고 경제성장률 수준 유지
 - 연평균 3.7% 성장
 - 캐나다 내 가장 낮은 세금 정책 보유
- 캐나다 오일샌드 (Oil Sand) 및 천연가스 보유하고
 - 오일샌드 매장량: 총 1.6조 배럴 (세계 최대규모)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2,600억 배럴 매장)
 - 추출 가능량: 1,750억 배럴

- 현 추출량: 153만 배럴/일
- 캐나다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국가 (생산 3위)
- 알버타주는 캐나다 에너지 총생산의 69%를 차지
 - . Conventional Oil: 캐나다 총생산량의 65%
 - . 천연가스: 캐나다 총생산량의 80%
 - . Bitumen & Synthetic Crude Oil: 캐나다 총생산량의 100%

[알버타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187,430 (캐나다 전체의 14.0%)
인구 (천명, 2005.1)	3,223 (캐나다 전체의 10.0%)
총수출액 (C\$백만, 2004)	66,721 (캐나다 전체의 16.2%)
총수입액 (C\$백만, 2004)	13,582 (캐나다 전체의 3.8%)
주요수출국 (%)	1. 미국(89.0) 2. 중국(2.1) 3. 일본(1.9)
주요수입국 (%)	1. 미국 (70.6) 2. 중국(4.4) 3. 멕시코(4.0)
주요수출품 (%)	1. 광물(70.1) 2. 플라스틱류(3.3), 3. 기계류(2.9)
주요수입품 (%)	1. 기계류(22.0) 2. 전기/전자(11.7) 3. 광물(7.5)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고유가에 따른 오일샌드 개발에 신규 투자와 원유추출지 투자로 전반적인 성장세 유지
- 고유가 및 세제상 혜택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소매경기 지속 호조
- 경기호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증대로 실업률 안정세 유지
 - 실업률은 캐나다 최저 기록중
- 에너지산업 호황
 - 국제 시세 강세에 따른 호황 지속전망
 - 원유가격(WTI): 1999년 평균 U\$ 19.24 / 배럴
 2000년 평균 U\$ 30.20 / 배럴
 2001년 평균 U\$ 25.90 / 배럴
 2002년 평균 U\$ 26.09 / 배럴
 2003년 평균 U\$ 31.04 / 배럴
 2004년 평균 U\$ 41.39 / 배럴
 2005년 5월 평균 U\$ 50.05 / 배럴

(자료원: Alberta Economic Development, 2005.6.28 현재)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명목 GDP (C\$백만)	150,660	170,803	187,430	-
고용인구(천명)	1,674	1,721	1,763	1788.3 (5월)

실업률	5.3	5.1	4.6	3.5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38.8	36.2	39.6	34.7
소매판매 (C\$백만)	37,663	39,318	43,372	4,046 (4월)
소비자물가지수(1992=100)	124.2	129.7	132.5	133.4 (5월)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연간 신규주택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AED, 2005.6.28 현재)

3. 수출입동향

○ 알버타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백만, %)

	2002	2003	2004	2005. 1-4 (증감률)
전체	31,402	40,943	51,404	20,169 (26.8)
미국	27,616	36,730	45,760	17,964 (27.7)
중국	484	561	1,062	579 (52.9)
일본	787	826	947	321 (2.6)
한국	278	223	283	161 (66.8)
멕시코	292	294	506	125 (-24.6)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현재)

○ 알버타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백만, %)

	2002	2003	2004	2005. 1-4 (증감률)
전체	8,186	9,312	10,447	4,67 (34.5)
미국	5,933	6,705	7,376	3,295 (42.1)
중국	211	292	461	227 (81.1)
멕시코	317	353	413	158 (10.7)
독일	163	210	226	101 (20.7)
영국	232	261	281	96 (-9.6)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4. 2005년 전망

- 국제 원유가 강세에 따라 소매매출, 주택판매, 수출, 제조 출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호조가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율은 캐나다 최저 기록 전망.
 - 비주거용 건설경기 향후 2년간 호조 예상
 - 타주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율 캐나다 내 최고 유지
- 광우병 여파로 대미 가축 수출금지가 지속되어 농가 소득은 저조, 주거용 건설경기는 다소 하락세

[주요 예상 경제지표]

알버타주	2004	2005	2006
실질 경제성장률 (%)	3.7	3.8	3.5

고용인구 증감률 (%)	2.3	2.1	1.9
실업률 (%)	4.6	4.3	4.2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36	33	32
자동차 판매 (천대)	189	194	197
주정부 재정 수지 (C\$백만)	4,136	4,314	1,520

(자료원: Scotia Bank, 2005.6.28 현재)

98. 지방자치구역동향/퀘벡주 경제동향

<퀘벡주 경제동향 및 예상>

1. 퀘벡주 개황

- 온타리오주에 이은 캐나다 제2의 경제 중심지
 - 2004년 기준 퀘벡주 경제 총생산은 캐나다 전체의 20.7%
 - 서비스 관련산업이 전체 경제총생산의 70% 차지
 -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도 발달
- 과학기술 관련 사업 발달
 - 가. 우주항공
 - 몬트리올은 시애틀에 이어 세계 2번째 항공기 제조 도시
 - 총 260업체, 40,000명의직원
 - 총 판매량 9억 달러, 80% 이상수출
 - 나. 생물약제
 - 캐나다 전체의 42%의 생물약제 일자리와 투자가 퀘벡주에 집중
 - 150업체, 15,000명의직원
 - 다. IT
 - 직원 100,000명, 4,000개의업체
 - 수출 9억 달러

[퀘벡주 산업구조]

서비스산업	69.2 %
금융, 보험, 부동산	16.4 %
교육 및 의료	11.1 %
무역	11.5 %
Commercial Services	10.9 %
제조산업	28.3 %
제조	23.2 %

건설	5.1 %
자원	2.5 %

(자료원: 퀘백주 재정부, 2004년 기준, 2005.6.29 현재 최신자료)

[퀘백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267,032 (캐나다 전체의 20.7%)
인구 (천명, 2005.1)	7568.6 (캐나다 전체의 23.6%)
총수출액 (C\$백만, 2004)	68,563 (캐나다 전체의 16.6%)
총수입액 (C\$백만, 2004)	57,394 (캐나다 전체의 16.2%)
주요수출국 (%)	1. 미국(81.7) 2. 영국(2.2) 3. 일본(1.6)
주요수입국 (%)	1. 미국(32.4) 2. 영국(8.2) 3. 중국(7.9)
주요수출품 (%)	1. 비행기(11.2) 2. 펄프(9.2) 3. 기계류(8.6)
주요수입품 (%)	1. 광물(19.5) 2. 기계류(11.2) 3. 전기/전자(10.4)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캐나다 경기호조의 영향으로 2.6%의 경제 성장 이룩
 - 고용인구의 증가와 실업률의 감소 등 경기안정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출현
 - 신규주택 건설도 전년대비 1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소비경제의 활성화와 물가의 안정 출현
 - 소매판매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 경제성장에 기여
 - 소비자물가 역시 전년대비 1.5% 소폭 상승, 물가의 안정을 시사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전망)
명목 GDP (C\$백만)	242,914	254,263	265,579	-
고용인구(천명)	3,593	3,650	3,686	3,677.6 (5월)
실업률 (%)	8.6	9.1	8.5	8.5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43	50	58	40
소매판매 (C\$백만)	69,910	72,969	78,480	7,265 (4월)
소비자물가지수 (1992=100)	115.5	118.4	120.7	123.1 (5월)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연간 신규주택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통계청, Scotiabank, 2005.6.29 현재)

3. 수출입동향

○ 퀘벡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68,454	64,190	68,563	23,551 (5.0)
미국	57,202	53,218	53,027	19,233 (4.3)
영국	1,111	1,288	1,523	442 (-15.2)
일본	721	881	1,068	383 (19.3)
프랑스	959	939	972	344 (24.8)
네덜란드	825	522	591	263 (-21.3)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 퀘벡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51,428	52,379	57,394	20542 (18.4)
미국	19,216	17,395	18,571	6167 (4.6)
영국	4,597	4,475	4,698	1872 (31.9)
중국	3,331	3,686	4,530	1521 (26.3)
알제리	1,723	2,386	2,890	1172 (42.6)
노르웨이	1,859	2,259	2,240	971 (52.7)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4. 2005년 전망

○ 2005년 경제, 2.2%의 안정적인 성장 전망

- 2005년 퀘벡주의 경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2.2%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
- 미화대비 캐나다화 평가절상이 계속될 경우 초래될 수출약세와 수입증가로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예상. 특히 섬유/의류 제조업 분야는 중국산을 비롯한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최근 경영난이 심화
- 최근 몇 년간 활황세를 누린 신규주택 건설은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예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퀘벡주의 실업률은 온타리오주나 마니토바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에 비해 높은 편

[주요 예상 경제지표]

퀘벡주	2004	2005	2006
실질 경제성장률 (%)	2.2	2.2	2.3
고용인구 증감률 (%)	1.7	1.0	0.8
실업률 (%)	8.5	8.3	8.2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58	50	40
자동차 판매 (천대)	397	403	399
주정부 재정 (C\$백만)	-358	0	0

(자료원: Scotiabank, 2005.6.29 현재)

99. 지방자치구역동향/마니토바주 경제동향

< 마니토바주 경제동향 및 예상 >

1. 마니토바주 개황

- 캐나다 서부와 동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
 - 마니토바주의 수도인 위니펙은 밴쿠버와 토론토를 연결하는 유통의 중심지로서 캐나다 10대 화물회사 중 5개사가 위니펙에 본사소재
 - 위니펙 국제공항은 연평균 2시간 이내의 결항시간을 가진 신뢰도 높은 공항으로 명성이 높음
-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과 넓고 비옥한 평야지대를 갖추고 있어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
 - 특히 밀을 포함한 곡물의 생산량은 세계적 수준
 -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력발전 비용도 북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자랑
 - 비금속 및 석유, 기타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
- 다양한 산업구조
 - 마니토바주의 산업규모는 다른 주에 비해 크지 않지만, 의학, 우주항공, 식음료 산업, 기계/전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고루 발달
 - 농업이 발달한 주 경제특성의 영향으로 농업장비 제조업이 특히 발달, 캐나다 농업장비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고 있음

[마니토바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40,265 (캐나다 전체의 3.1%)
인구 (천명, 2005.1)	1,174.6 (캐나다 전체의 3.7%)

총수출액 (C\$백만, 2004)	10,010 (캐나다 전체의 2.4%)
총수입액 (C\$백만, 2004)	10,565 (캐나다 전체의 3.0%)
주요수출국 (%)	1. 미국(72.9) 2. 일본(5.1) 3. 중국(4.6)
주요수입국 (%)	1. 미국(80.7) 2. 중국(3.7) 3. 멕시코(1.7)
주요수출품 (%)	1. 곡물(10.9) 2. 광물(9.6) 3. 자동차(7.5)
주요수입품 (%)	1. 기계류(24.9) 2. 자동차(12.5) 3. 전기/전자 (7.8)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2005년 마니토바주 경제, 안정적인 성장 지속
 - 전반적인 국가경제 활황으로 마니토바주 경제는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2004년부터 크게 성장한 신규주택 건설시장이 2005년 상반기에도 호조를 지속
 - 건설시장의 호조로 전력 공급사업 역시 활황
- 상반기 고용시장은 안정
 - 마니토바주의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5.3% 수준을 유지
 - 고용인구도 연간 꾸준한 성장을 기록 중에 있으나 5월 고용시장은 2004년에 비해 낮은 수준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전망)
명목 GDP (C\$백만)	36,832	37,992	40,265	-
고용인구(천명)	567	569	608	578.6 (5월)
실업률 (%)	5.2	5.0	5.3	5.1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2.2	2.7	4	4
소매판매 (C\$백만)	10,649	10,890	11,739	12,333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연간 신규주택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3. 수출입동향

- 마니토바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9,569	9,299	10,010	3,278 (1.2)
미국	7,175	7,093	7,298	2,439 (3.0)
일본	476	501	515	200 (20.6)
중국	80	151	458	101 (-23.3)
멕시코	168	212	295	62 (-24.7)
홍콩	112	129	172	52 (-17.3)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 마니토바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1-4 (증감률)
전체	11,340	10,402	10,565	3,772 (8.4)
미국	8,393	8,241	8,527	3,091 (9.6)
중국	244	279	389	110 (11.9)
멕시코	187	193	181	68 (13.5)
독일	136	194	181	65 (10.0)
일본	111	113	139	59 (10.7)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9 현재)

4. 2005년 전망

- 2005년 마니토바주의 전반적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
 - 주택 건설시장의 호황과 전력공급 사업의 활기 예측
 - 국제적인 원자재 수요급증과 가격상승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산업도 호조를 띠 전망

[주요 예상 경제지표]

마니토바주	2004	2005	2006
실질 경제성장률 (%)	2.3	2.4	2.7
고용인구 증감률 (%)	0.9	0.8	0.7
실업률 (%)	5.3	5.2	5.0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4	4	4
자동차 판매 (천대)	43	44	44
정부재정 (C\$백만)	13	314	3

(자료원: Scotiabank, 2005.6.29 현재)

100. 지방자치구역동향/사스카치완주 경제동향

< 사스카치완주 경제동향 및 예상 >

1. 사스카치완주 개황

- 농산물 및 에너지 자원 위주의 경제에서 식품가공, Bio, Advanced Manufacturing 산업 등으로 다변화중
- 정부, 산학협동 연구단체의 농바이오 및 식품가공 클러스터 형성
 - Saskatoon, SK: Agricultural Biotechnology
- 캐나다 유일의 방사광연구소 (Canadian Light Source Inc.) 보유
 - 캐나다 최대 과학 프로젝트중 하나, 세계 최첨단 3세대 방사광 연구소로서 2004. 10월 사스카츠완대학(사스카툰)내 개소(캐\$ 174백만규모)
 - Synchrotron Light : 태양 빛 보다 수백만배 밝은 광선을 통해 물질의 원자 단위(초정밀 현미경과 같은 역할) 및 미분자 움직임의 나노 초단위 관찰. 산업적으로는 컴퓨터 칩의 패턴 에칭, 체모보다 폭이 작은 기어장치(gear) 개발 등.
 - 적용 가능분야 : 환경, 화학물질 반응연구, 제약 및 백신개발, 컴퓨터용 마이크로칩 디자인, bio-medical implant 제조, 신소재 연구 등
- 캐나다 원유 생산 2위
 - 매장량 : 약 350억 배럴
 - 2003 : 22,000 유정에서 총1.5억 배럴 생산
-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 3위
 - 매장량: 약 2.7조 입방피트
- 캐나다 광물 (비연료성) 생산 3위
 - 세계 최대 탄성칼륨(potash) 생산 및 수출, 세계 수요의 35%
 -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지 ; 전세계 생산량의 30% 이상
 - 캐나다 3대 석탄 생산지 ; 매장량 300억 톤 이상
 - 기타 주요광물 : 동, 아연, 금, 납, 카드뮴, 니켈, 다이아몬드 등

[사스카치완주 주요 통계지표]

명목 GDP (C\$백만, 2004)	40,456 (캐나다 전체의 3.0%)
인구 (천명, 2005.1)	995 (캐나다 전체의 3.1%)
총수출액 (C\$백만, 2004)	12,219 (캐나다 전체의 3.0%)
총수입액 (C\$백만, 2004)	4,666 (캐나다 전체의 1.3%)
주요수출국 (%)	1. 미국 (65.3) 2. 중국 (5.8) 3. 일본 (4.3)
주요수입국 (%)	1. 미국 (89.5) 2. 독일 (1.3) 3. 중국 (1.2)
주요수출품 (%)	1. 광물 (31.6) 2.비료 (18.7) 3. 곡물(14.7)
주요수입품 (%)	1. 기계류(29.2) 2. 자동차(14.0) 3. 화학제품(7.5)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2. 2005년 경제현황

- 신규 천연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어 주 경제성장 주도
 - 2003년 4.5% → 2004년 3.5% → 2005년 3.2% → 2006년 3.1%
[Scotia Bank, 2005. 6 전망치]
- 전체적인 경기호조로 주택건설은 증가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02	2003	2004	2005 현재
명목 GDP (C\$백만)	34,419	36,544	40,456	-
고용인구(천명)	482	487	485	484.9 (5월)
실업률	5.7	5.6	5.4	4.5 (5월)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3.0	3.3	4.8	0.7
소매판매 (C\$백만)	9,389	9,859	10,259	930 (4월)
소비자물가지수(1992=100)	123.7	126.5	131.3	131.8 (5월)

주: 2005년 신규주택 건설수치는 2005년 5월 발표된 신규주택건설 전망치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Scotiabank, 2005.6.28 현재)

3. 수출입동향

- 사스카치완주의 주요 수출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 1-4 (증감률)
전체	7,184	7,515	9,404	3,399 (18.5)
미국	4,462	4,736	6,139	2,317 (21.3)
중국	309	294	541	251 (32.5)
일본	387	354	400	154 (22.1)
인도네시아	56	53	113	53 (34.9)
멕시코	129	168	246	50 (-24.2)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 사스카치완주의 주요 수입대상국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 1-4 (증감률)
전체	2,632	2,962	3,585	1,475 (29.7)
미국	2,368	2,645	3,210	1,313 (29.4)
중국	24	31	44	21 (85.2)
일본	17	29	27	20 (161.0)
멕시코	30	25	27	16 (65.7)
독일	27	52	45	14 (-20.9)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2005.6.28 현재)

4. 2005년 전망

- 에너지 분야가 주 성장 주도 전망
 - 신규 원유 시추 및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 전망
- 경제성장의 안정과 고용시장의 안정 출현 전망
 -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분야 호조 지속
 - 제조출하는 캐나다 최고
 - 200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3.2%, 고용인구 증가율은 1.7%, 실업률은 5.1%로 양호한 경제성장 실현 기대

[주요 예상 경제지표]

사스카치완주	2004	2005	2006
실질 경제성장률 (%)	3.5	3.2	3.1
고용인구 증감률 (%)	0.9	1.7	0.8
실업률 (%)	5.3	5.1	5.0
신규주택건설 (천 가구)	4	3	3
자동차 판매 (천대)	37	37	37
주정부 재정 수지 (C\$백만)	1	289	0

(자료원: Scotiabank, 2005.6.28 현재)